

APEC 국가 진출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중국 최근 법률개정 동향 자료

2021.12.20

KOSM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목차

초록 (Abstract) **1**
요약 **4**

제 1 장 외상투자법 **24**
☐ 제정 배경 24
☐ 입법취지 25
☐ 경과규정 25
☐ 주요 변경내용 25
☐ 구법과 신법 내용 대조 28
☐ 시사점 30
☐ 출처 30
☐ 파일첨부 30

제 2 장 화장품감독관리조례 **42**
☐ 제정 배경 42
☐ 입법취지 42
☐ 주요 내용 42
☐ 시사점 45
☐ 출처 45
☐ (구)조례와 개정 조례 내용 대조 45
☐ 파일첨부 47

제 3 장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76**
☐ 제정 배경 76
☐ 입법취지 76
☐ 주요 변경내용 76
☐ 시사점 77
☐ 출처 78
☐ 파일첨부 78

제 4 장 온라인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 87
☐ 제정 배경.....87
☐ 입법취지.....87
☐ 주요 내용.....87
☐ 시사점 88
☐ 출처.....89
☐ 파일첨부.....89

제 5 장 개인정보법 107
☐ 제정 배경.....107
☐ 입법취지.....108
☐ 주요 내용.....108
☐ 시사점 110
☐ 출처.....110
☐ 파일첨부.....111

제 6 장 네트워크안전법..... 132
☐ 제정 배경.....132
☐ 입법취지.....132
☐ 주요 내용 133
☐ 시사점 135
☐ 출처.....136
☐ 파일첨부.....136

제 7 장 데이터안전법..... 160
☐ 제정 배경.....160
☐ 입법취지.....160
☐ 주요 내용.....161
☐ 시사점 162
☐ 출처.....163
☐ 파일첨부.....163

제 8 장 특허법 ***176***
☐ 개정 배경 **176**
☐ 입법취지 **176**
☐ 주요 개정내용 **177**
☐ 시사점 **178**
☐ 출처 **178**
☐ 신구조문 대조표 **178**
☐ 파일 첨부 **187**

제 9 장 저작권법 ***213***
☐ 개정 배경 **213**
☐ 입법취지 **213**
☐ 주요 개정내용 **213**
☐ 시사점 **215**
☐ 출처 **215**
☐ 주요 조항 조문 대조표 **215**
☐ 파일첨부 **217**

참고문헌 ***245***

초록 (Abstract)

중국은 최근 경제 및 각 산업분야의 발전에 따라 시대적으로 뒤떨어지거나 변화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각종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하여 중국의 법치주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 내 진출하였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에 변화를 줄만한 내용으로 최근 주목할만한 법 제정 또는 개정이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기업인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동향 자료를 작성하게 되었다. 본 고는 최근 2 년 내 제정 및 개정이 완료된 법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상투자법>,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온라인거래 감독관리방법>, <보안 3 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의 순서로 주로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을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2019 년 제정된 <외상투자법>은 종전의 외자 3 법을 폐지하고 외상투자기업을 내자기업에 준하여 공평하게 대우한다고 하는 기본 기조를 선언하였고 외국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조치가 강화되었고 외국 투자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관리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외국 투자자 관련 행정서비스 간편화 등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 및 중국 시장의 점진적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내 소비재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특히 화장품 및 식품시장의 확대에 따라 규제기관은 지속적으로 전체 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2020 년에 제정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화장품 품질 안전을 보장하고 화장품 인증과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며 화장품 원료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21 년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은 마찬가지로 식품 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수출입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비약적으로 발전,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과 관련하여 온라인거래 감독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공정한 온라인 경쟁 거래질서를 수호하며 안전한 온라인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 년에 <온라인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이 제정되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디지털경제로 이미 전환되었지만 상업적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유출사건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데이터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최근에 보안 3 법의 체계가 정비되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규제 강화를 목표로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조건으로 하고 데이터 수집은 합리적 목적이 있을 때 최소한으로 수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이 2021 년 제정되었고, 새로운 과학기술 이용에 따른 네트워크 안전에 대한 위협 하에서 네트워크 안전을 국가 안보정책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네트워크안전법>이 2017 년에 이미 제정되어 이미 시행 중이고 <데이터안전법>은 데이터를 국가 안전의 측면에서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2021 년 제정되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또한 향상되었으나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 하에 최근 2021 년 피해자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부분) 디자인보호제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과 저작물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저작권법>에 대한 법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요약

1. 외상투자법

□ 제정 배경

- 과거 외자 3 법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할 당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 경영기법 등을 도입하지만 무분별한 외국자본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자는 취지로 제정되었지만,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일부 규정은 시의성을 잃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점, 다른 일부 규정은 회사를 규율하는 일반법인 <회사법(公司法)>과 내용이 충돌하여 실무에서 적지않은 혼란을 가져온 점, 외상투자법인과 내자 법인의 적용기준을 통일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요청되어 온 점 등을 반영하여 신법이 제정되기에 이름

□ 주요 변경내용

- 회사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합자기업(Equity JV) 및 유한책임회사(有限责任公司)를 중심으로 신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지분비율	- 구법에서는 합작·합자법인의 경우 외국투자자 지분률 25% 이상이어야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신법에서는 이 규정이 폐기됨

합자의 주체	- 구법에서는 외국투자자가 중국인 자연인과는 합자·합작할 수 없었고 반드시 중국측(中方) 투자자는 법인인 경우만 가능하였으나 신법에서는 중국인 자연인과도 가능하게 됨
'1 인회사'의 설립 수 제한	- 구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1 인회사를 다수 설립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중국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설립 수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됨
기술출자 시 출자액 산정	- 구법에서는 기술출자와 관련하여 독점기술을 포함한 비화폐자산의 출자 시 각 투자자의 합의만 있으면 임의로 출자액의 책정이 가능하였으나, 신법에서는 제 3 기관의 가치평가를 거쳐 그 가격도 객관적으로 적절하여야 함
최고 권력기구의 변화	- 구법에서 합자기업의 경우 회사 내의 권력기관(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董事会)이며 주주회를 별도로 두지 아니한 것과 달리, 신법에서는 권력기관으로서 주주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회사의 중대한 사항들은 모두 주주회에서 의결하도록 함 - 신법에서 이사회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어 사실상 경영계획과 기본관리제도의 제정, 내부관리조직의 설치, 총경리·재무책임자 등의 주요 고급관리임원의 임면권만 부여됨
이사회의 구성	- 구법에서 합자기업의 경우 이사의 선출방식과 관련하여 각 주주가 위임·파견하고 임기는 4 년으로 규정하였으나 신법 하에서는 주주회 중심의 회사지배구조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사는 주주회에서 그 임면을 결의하고 임기는 3 년을 초과하지 못함
의사결정규칙	- 구법에서 합자·합작기업의 경우 회사의 중대한 결의사항, 예컨대 회사정관의 개정, 등록자본금의 증자 또는 감자 결의, 회사의 합병·분리·해산, 회사형태의 변경 등은 전체 이사(법 규정상 출석한 이사)의 만장일치 동의로써 의결하였으나, 신법 하에서는 2/3 이상의 의결권을 갖는 주주의 동의로써 결의가 가능하게 됨
이사회의 의사결정 정족수	- 구법에서 이사회 의사규칙과 관련하여 2/3 이상의 이사가 출석하여야만 결의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신법 하에서는 이사회의 회의

	개회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없어 회사정관에서 정하는 것에 따르게 됨
법정대표자	- 구법에서 합자·합작기업의 경우 회사의 법정대표자는 이사장(董事长)이었으며 이사장은 이사회의 소집과 회의 주재를 관장하는 역할을 하는 등 비교적 권한이 강하였으나, 신법 하에서는 회사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이사회가 없는 경우는 집행이사) 또는 총경리 중에서 선정이 가능함
이익배당	- 구법에서 합자기업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에 대하여 투자자의 약정납입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도록 하였으나 신법 하에서는 회사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전체 주주가 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를 수 있음
잔여재산분배	- 구법에서 합자기업의 경우 회사청산 후 잔여재산의 분배와 관련하여 합자계약서나 회사정관에 특약이 있는 경우 약정납입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신법 하에서는 회사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함
주주 이외의 제 3 자에 대한 지분권 양도	- 구법에서 합자기업의 경우 투자자 중 어느 일방이 그 보유지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투자자 이외의 제 3 자에게 양도하려면 다른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였고, 합작기업의 경우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거쳐야 가능하였음 - 신법 하에서는 회사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주주 사이에는 그 지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롭게 서로 양도할 수 있고, 주주 이외의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주주에게 관련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함과 동시에 다른 주주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2.화장품감독관리조례

□ 제정 배경

- 2020 년 6 월 29 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총 6 장, 80 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新<화장품감독관리조례(化妆品监督管理条例) >(이하 '조례')를 발표하고 202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중. 이에 따라 30 년간 시행되어 왔던 <화장품위생감독조례>(1990.1.1.일부 시행) 및 실시세칙을 2021 년부터 폐지함

□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변경 내용
적용범위	- 조례는 화장품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인체표면에 바르거나 뿌리는 등 청결, 보호, 미화, 단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용 화학공업제품"이라고 명시함 - 일반 비누는 본 조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화장품의 효능이 있는 비누(예: 미백비누 등)는 화장품에 포함되므로 본 조례의 적용대상임 - 치약은 일반화장품 규정을 참조하여 관리하지만 화장품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치약에 대한 구체적 관리방법은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함
분류	- 조례는 화장품을 '특수화장품'과 '일반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종전의 '특수화장품'과 '비(非)특수화장품'으로 분류했던 방식을 변경하여 특수화장품은 허가관리, 일반화장품은 등록관리로 전환함 - (구)조례에 의하면 특수화장품의 유형을 기존의 육모, 염색, 파마, 제모, 가슴관리, 바디슬리밍, 제취, 기미제거, 자외선차단 등 9 개로 분류하였는데, 新조례는 염색, 파마, 기미제거,자외선차단, 탈모방지 및

	기타 신기능화장품 등 5 가지 제품을 특수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등 특수화장품의 유형을 조정함
新원료	- 조례는 新화장품원료에 대한 규제도 담고 있는데 방부, 자외선차단, 착색, 염색, 기미제거, 미백 기능이 있는 신원료와 기타 고위험성 신원료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허가를 받도록 함 - (구)조례 하에서 (신)조례 시행하기 전에 기존에 사용해 왔던 新화장품원료에 대해서는 (신)조례 시행 후 3 년의 관찰기간을 두어 3 년 관찰기간 내 안전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비로소 그 해당 원료는 정식으로 당국의 화장품원료목록에 추가됨
안전생산 및 품질관리	-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생산기술, 인원, 품질검사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함 - 화장품 생산기업은 정부 감독관리 당국에서 제정한 생산품질 관리규범에 따라 원료 관리, 생산 및 품질 관리, 설비 관리, 제품 검사 및 샘플 관리, 불합격 제품 리콜 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제품안전평가를 진행하는 전문인원을 배치하고 생산기업은 제품 추적이 가능하도록 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점검·판매상황을 기록해야 하고 그 기록보존기간은 최소 2 년임
라벨 및 광고	- 화장품 라벨 관련 규제도 대폭 강화되어 최종 판매되는 개별 제품에도 라벨이 부착돼야 하며, 라벨에 화장품 전체 성분 표기를 의무화했음 - 의학적 효능을 명시·암시하는 내용, 과대·허위 선전·소비자 오인을 유도하거나 혼동시키는 표현,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 기타 법률 금지 내용 등은 표기가 금지됨 - 조례는 화장품 광고 및 홍보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제품, 성분의 효능을 홍보함에 있어 평가자료, 연구데이터, 학술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홍보·광고 문구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규정함
수입화장품	-수입화장품 중 특수화장품은 중앙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일반화장품은 각 지방 부처에서 비안신고를 하도록 하여 구분하고 특수화장품의 인증서 유효기간은 5 년으로 함

	-수입화장품은 '화장품허가·등록인' 제도를 시행하여 외국기업은 반드시 중국 내 법인을 지정해 제품의 인증·등록, 제품 판매, 불량반응 측정 및 리콜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 화장품허가·등록인은 수입제품별로 제품에 대한 안전, 품질, 운영, 리콜 등을 관리하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판매관리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는 화장품 입점자에 대해 실명등록을 해야 하며 법위반 행위 발견 즉시 약품감독관리부처에 보고하고 판매행위를 중단시켜야 하는 등 관리책임을 부과함
법위반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 무허가 생산, 화장품 생산에 금지된 원료·미인증 신원료 사용, 상품 합격증 미취득 제품 판매, '화장품 위생기준' 미달 생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위법 소득의 3~5 배 벌금 부과, 생산과 영업 중지 및 화장품 생산허가증 취소 등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
경과규정	-본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등록한 육모·제모·가슴미용·바디슬리밍·제취 화장품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5 년간의 과도기를 설정하여 그 과도기 내에는 생산·수입·판매를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과도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해당 화장품을 생산·수입·판매할 수 없음

3.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 제정 배경

- 중국정부는 중국 내 수입식품 급증에 따라 식품의 안전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수입식품의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2021 년 4 월 12 일,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중국 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등록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이하 '관리규정'이라 함)>과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을 발표하고 202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예정임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주 요 변 경 내 용
해외 생산기업의 등록범위 확대	-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기업은 해관총서(GACC)에 해외 생산기업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수출작업장 생산업체의 등록범위를 종전의 육류□ 수산□ 유가공품□ 제비집 등의 4 개 식품군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관리 대상으로 구분함
해외 생산기업 소재국의 감독관리 강화	- 해외 생산기업 소재의 주관 당국(예:한국 식약처)의 감독관리역할을 강화하여 중국으로의 수출제품의 식품안전에 대하여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정보를 공유함 -정부관리대상은 상기 4 개 식품군을 포함하여 건강기능식품 등 14 개를 추가하여 총 18 개 식품군으로 확대하였으며 민간관리대상은 정부관리대상 외의 모든 식품으로 규정함
해외 생산기업의 등록조건	- 등록 조건으로 △수출 국가(예:한국)의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이 중국 해관총서와 동등 평가 수준이며 △수출 국가의 주관 정부 당국의 합법적 허가에 의하여 설립되고 감독을 받고 있으며 △식품안전 위생 관리와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합법적 생산 수출을 하며 중국의 식품 법규에 부합되어야 하며 △해관총서와 수출 해당 국가 간의 검역 요구 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적용범위	- 중국으로의 수출 식품의 생산·가공·저장 등에 적용되며, 기타 수출입 식품첨가제 및 식품 포장재 등의 생산경영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음
라벨 표기	-수입식품의 라벨 표기는 반드시 중국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보건·특수 식품, 영유아식품, 임산부 영양보충제 등의 라벨은 반드시 판매 용기의 포장에 인쇄돼야 하고 스티커 등으로 부착해서는 안됨

등록 유효기간	- 등록의 유효기간을 종래 4 년에서 5 년으로 변경함

4. <온라인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의 시행

□ 제정 배경

-중국시장감독관리국은 2021 년 3 월 15 일 <온라인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이하 '본 방법')을 공표하여 2021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본 방법은 총 5 장 56 개 조항으로 총칙, 온라인거래사업자, 감독관리, 법적 책임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새로운 전자상거래 산업 모델 내 경영자에 대한 책임 규정	- SNS 를 통한 온라인거래와 라이브방송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예:왕홍, KOL)도 본 방법의 적용대상으로 봄 - SNS, 라이브방송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경영자에게 온라인 경영장소와 상품조회, 주문생성, 온라인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온라인거래 플랫폼경영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플랫폼 내에서 온라인 거래를 하는 경영자(판매자)는 플랫폼 내의 사업자 의무를 이행해야 함
플랫폼사업자의 책임강화	-온라인거래 플랫폼경영자(网络交易平台经营者)는 시장감독관리부서에 플랫폼 내 경영자(판매자)의 신분정보를 제공하고 플랫폼 내의 경영자(판매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정보에 대하여 검사모니터링제도를 구축하여야 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시에 조치하고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함
소비자의 권익보호문제	- 플랫폼 내 경영자(판매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함 - 온라인거래 플랫폼경영자는 플랫폼 내 사업자(판매자)가 소비자의 재산, 신체상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거나 소비자 권익 침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경영자와 플랫폼 내 경영자(판매자)는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문제	- 온라인거래 플랫폼경영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시 이에 대한 목적과 방식,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강압적 또는 변칙적으로 소비자를 강요하여 경영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하여서는 안 됨 - 나아가 민감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일일이 소비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함

5. 개인정보보호법

□ 제정 배경

- 2021 년 8 월 20 일, 중국 <개인정보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이 중국 제 13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0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21 년 11 월 1 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하고 있음
- 2017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네트워크안전법>과 202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하는 <데이터안전법>과 더불어 개인정보와 데이터 영역에서의 3 대 핵심 법률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적용대상의 역외 확대	- 신법의 적용대상은 중국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역외에서 중국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적용 가능함
개인정보처리 원칙	-개인정보 처리 시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 목적과 부합하는 처리, 공개적이고 투명한 원칙 준수, 개인정보 처리 규칙 명시 등이 필요
개인정보 사용의 사전 고지와 동의	-개인정보 사용 시 사전고지와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계약의 이행·체결에 필요한 경우, 법적 직책·의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 그 예외를 인정함
개인정보를 이용한 차별대우 금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 의사결정 방식(예:알고리즘)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에 있어서 개인에게 비합리적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개인정보이전권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그가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가 서로 다른 플랫폼 사이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였음
민감정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	- 차별을 당할 수 있거나 신체·재산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14 세 미만 미성년자의 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해당 미성년자 정보의 처리 시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취득하도록 함
사자의 개인정보	-사자(死者)의 근친속(近亲属)이 사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시 그 사용목적이 적법하고 정당한 이익의 취득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권리는 열람·복제·수정·삭제 등의 권리에 한정하고 사자의 의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음
개인정보의 역외이전	① 국가 네트워크 정보부처의 안전성 평가 통과 ②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인증 진행

	③ 정부부서가 제정한 표준계약에 따라 중국 역외 수령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개인정보보호 표준에 부합하여야 함 ④ 법률, 행정법규 혹은 국가네트워크정보부처가 규정한 기타 조건을 만족한 경우 가능
처벌	심각한 위반 시 ①시정명령, 위법소득 몰수 ②최대 5,000 만 위안 이하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 이하 과태료 부과 ③책임자에게 는 10 만~100 만 위안 과태료 ④관련 업무 정지, 영업 중단, 영업 허가 취소

6.네트워크안전법

□ 제정 배경

- <네트워크안전법>은 2016 년 11 월 7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 2017 년 6 월 1 일부터 사이버 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본 법률로 정식 발효되었고 총 7 장 79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네트워크 운영 안전, 개인정보보호, 불법 정보 단속, 네트워크 제한 조치, 법률 책임 등으로 구성됨
- 본 법은 네트워크 공간상의 주권과 국가 안전·사회 공공이익을 수호하고 공민·법인·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의 보호, 경제사회 정보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됨

□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적용범위	- 중국 내에서 건설·운영·유지·사용되는 네트워크와 그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데이터를 구축, 운영, 유지하는 외자기업과 내자기업 모두 해당됨 - 원칙적으로 중국 내의 네트워크 활동에만 적용되지만, 중국 국외의 기관, 조직, 개인이 중국의 핵심정보 인프라시설에 대해 공격, 침입, 방해, 파괴 등 행위를 함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해당 기관, 조직, 개인에 대하여 재산동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두고 있음
적용대상	-본 법의 적용 대상은 중국 내 '네트워크 운영자(网络运营者)'와 '핵심정보 인프라 시설운영자(关键信息基础设施的运营者)' 등임 -네트워크 운영자는 네트워크의 소유자, 관리자 및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네트워크를 이용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제공자를 가리키며 구체적으로 기초통신 운영자, 네트워크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 주요 정보 시스템 사업자 또는 운영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유선전화·휴대전화 운영자, 정보 발표 및 메신저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포함하는 등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하여 커버함 -핵심정보 인프라시설 운영자는 공공통신 및 정보 서비스, 에너지, 운송, 수자원관리, 금융, 공공서비스, 전자정부 등 국가의 중요 산업과 영역에서 파괴, 기능 상실 또는 데이터 유출로 인해 국가의 안전 및 국민생활과 공공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핵심정보 인프라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다 높은 보안의무가 부과됨
주무부서	- 중국 국가 인터넷정보부서(国家互联网信息公室)가 네트워크 안전 관련 감독관리업무를 총괄하고, 국무원 전기통신주관부서 및 공안부 등 기타 관련부서가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네트워크 안전에 관한 보호와 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네트워크 운영 안전	- 국가는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제도(网络安全等级保护制度)를 실시해야 하고, 네트워크 운영자는 안전등급 보호제도의 요구에 따라 안전보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네트워크 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안전결함 등 리스크 발생 시 즉시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네트워크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개인정보 수집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 네트워크 운영자는 네트워크 접속 절차를 처리하거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반드시 사용자에게 실명 정보를 요청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됨
핵심정보 인프라 시설의 운영 보안	-핵심정보 인프라시설의 운영자는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및 중요 데이터베이스 백업 등의 안전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보 인프라시설은 보안심사 및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함 - 중국 내 수집, 생산된 개인정보와 중요데이터는 중국 경내에 저장해야 하며 해외에 제공 필요 시 국가 네트워크 정보부서에서 안전 평가를 진행해야 함 - 네트워크 안정성 및 잠재적 리스크에 대하여 최소 연 1 회 이상 측정·평가를 진행해야 하고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시 국가안전심사 통과 의무,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해야 함
네트워크 정보 안전	- 네트워크 운영자는 개인정보 수집 사용 시 합법, 정당, 필요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를 획득하는 등 네트워크 운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에 대하여 엄격히 비밀을 유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구할 것을 요구 -본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란 전자 또는 기타 수단으로 기록되어 단독 또는 기타 정보와 결합하여 자연인 개인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뜻함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데, 네트워크 운영자가 규정 또는 약정을 어기고 개인정보 수집과 사용 시 그 개인은 해당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 정보의 오류가 존재 시에도 정정 요구가 가능함
법적 책임	-개인정보 및 주요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련 주무부처 시정 명령, 불법소득 몰수, 50,000위안 이상 500,000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관련 업무 일시 중단 명령, 영업 중단, 웹사이트 폐쇄, 관련 서비스 인허가 취소 또는 영업집조 취소 등의 책임이 부과됨

7. 데이터안전법

□ 제정 배경

- 중국인민대표대회는 2020 년 6 월 28 일 <데이터안전법(초안)>을 처음으로 심의한 후, 총 3 차에 걸친 심의안을 논의한 끝에 <데이터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이하 '데이터안전법'이라 함)을 최종 확정하고 공포하여 202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데이터안전법>은 데이터안전 및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본법률로서 총 7 장 55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데이터 등급 분류 보호제도를 데이터 안전의 기본 핵심제도로 하여 등급분류를 통한 데이터 보호를 강조하고 데이터 해외 이전에 대한 안전관리, 업계규범제정, 데이터 안전관리 중의 국가기관의 직책과 협조체제 강조, 중요 데이터에 대한 보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적용범위	- 중국 경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처리 및 해외에서 진행하는 데이터처리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전, 공공이익 또는 중국의 개인,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본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적용범위를 역외로 확대
용어 정의	- '데이터'란 전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루어진 정보에 대한 모든 기록을 가리킴 -'데이터 처리'란 데이터의 수집, 저장, 사용, 가공, 전송, 제공, 공개 등을 지칭 -'데이터 안전'이라 함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합법적으로 이용되는 상태를 확보하며 지속적인 안전상태를 보장하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을 지칭함 -'국가핵심데이터'는 국가안전 및 국민경제의 근간, 중요한 민생, 중대한 공공이익과 관련된 데이터를 말함

데이터 분류 등급	– 국가는 데이터 중요도 및 데이터의 불법 이용 시 초래할 수 있는 위해 정도에 근거하여 데이터에 대한 등급 분류 보호를 실시하여야 함 – 일반데이터, 중요데이터, 핵심데이터 등으로 분류하여 중요데이터 및 핵심데이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고강도의 보호조치를 시행함
데이터 안전 심사 제도	–국가는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안전심사를 진행해야 함
중요 데이터 리스크 평가 제도	– '중요 데이터 처리자(重要数据的处理者)'는 데이터 처리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위험 리스크 평가를 진행하고 유관 주관부서에 리스크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중요 데이터의 정의에 대해서는 하위 규범에서 확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데이터 안전 보호의무	–조직과 개인은 데이터 처리 진행 중 데이터 안전보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데이터 안전관리제도 수립, 데이터 안전교육, 리스크 모니터링,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주관부서에 대한 보고, 데이터 획득의 합법성·정당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함
해외 사법기관의 데이터 제공 협조	–해외 사법기관 또는 집행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 시 중국 내 회사 또는 개인은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만 해외 사법기관 또는 집행기관에 중국 역내에 저장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 해외 국가의 법률상 중국 사법기관 또는 집행기관의 데이터 요청에 제한을 두고 있다면 중국 주관부서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해외 국가의 데이터 이용 차별성 조치에 대한 보복조치	– 어떠한 국가 또는 지역(정부)가 데이터와 데이터 개발 이용 기술 관련 투자 및 무역 방면에서 중국에 대해 차별적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 또는 지역(정부)에 대해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데이터 사용 및 데이터 개발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투자 및 무역에 대한 외국의 제한조치에 대응한 보복조치 가능성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자국 기업의 경제·무역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데이터 보호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법위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허가 취소, 벌금 등을 부과하는데 직접적인 책임자는 최고 500 만 위안의 벌금, 국가

	주권·안전과 발전이익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최고 1 천만 위안의 벌금에 처함

8. 특허법 개정

□ 개정 배경

-중국은 1985 년 <특허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이하 '특허법'이라 함)을 제정한 이래로 3 차례의 개정이 있었고 이번 4 차 개정은 2020 년 10 월 17 일에 개최된 제 13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2 차 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 2021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개정 특허법은 총 8 장 82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권자의 입증책임부담의 완화,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평가되며 부분디자인권 보호, 의약품 특허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의 실시와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 개정 내용
특허권자의 합법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고의적이며 중대한 특허권 침해의 경우 불법이익의 최고 5 배 이하까지 배상 가능, 침해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법정 손해배상액을 종전 '1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 에서 '3 만 위안 이상

권익 보호 강화	500 만 위안 이하' 로 증액, 입증책임 부담의 완화, 소송제기 전의 보존조치 시행, 특허권 침해소송 시효를 3 년(종전 2 년)으로 연장함 -의약품 특허분쟁의 조기 해결제도(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하여 의약품 출시 심사과정에서 허가신청인, 특허권자, 이해관계인 등 간의 분쟁발생 시 행정심판 제기, 인민법원 제소, 감독관리부서의 허가심사중단 등 심사단계에서 조기해결 메커니즘을 도입함 -특허권자의 신의성실 원칙 준수 규정 신설하여 특허 출원과 특허권 행사에서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지 않도록 특허권 남용 금지를 명문화하였으며 특허권 남용, 경쟁제한 또는 배제 등의 독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반독점법' 으로 처리
특허 실시·활용 촉진	-직무발명을 통한 특허의 실시·활용 촉진의 목적으로 직무발명자에게 지분권·선물옵션·배당 등의 방식으로 발명자의 혁신에 대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의약품 특허기간 보상제도 신설하여 특허권자가 신약 출시 허가 관련하여 심사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최장 5 년 이내)를 신설
디자인 보호 강화	-부분디자인제도 도입하여 디자인의 정의에서 제품 전체 뿐만 아니라 일부분의 형상, 도안, 또는 그 결합 등 제품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도 포함하여 보호한다고 하여 제품의 일부분만으로 디자인권 등록 가능하게 됨 -디자인 보호기간을 종전의 10 년에서 15 년으로 연장 확대하고 이는 2021 년 6 월 1 일 이후 출원건부터 적용 -개정신법에서는 디자인(外观设计专利)에도 국내우선권제도 도입하여 디자인의 중국 내 최초 출원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동일한 주제로 한국에 출원했던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종래 발명특허와 실용신안특허에 대해서만 국내우선권을 인정했던 국내우선권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9. 저작권법 개정

□ 개정 배경

- 2020 년 11 월 11 일, 중국 제 13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0 년 11 월 11 일 <저작권법>(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이하 '저작권법'이라 함)에 대한 3 차 개정안(이하 "3 차 개정 저작권법")을 통과시켰고 2021 년 6 월 1 일부터 정식으로 시행 중이며 총 6 장 67 조로 구성됨

- 중국 경제 및 산업발전, 기술 진보에 따라 종전의 규정으로는 권리자 및 저작물 보호에 미흡하다는 반성적 고려 하에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10 년 만에 개정하기에 이름

□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저작물 보호 범위 확대	-저작물의 정의를 종래 하위규범에서 정했던 것을 직접 '법률' 형식으로 규정하면서, 그 내용도 "문학, 예술, 과학영역 내에서 독창성을 구비하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적 성과를 가리킨다"로 수정함으로써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확대 - '영화저작물 및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을 '시청각 저작물'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쇼트클립(Short clip, 短视频) 등의 새로운 유형의 영상 저작물을 포함하는 등 보호범위를 확대 -"저작물의 특징에 부합하는 기타 지적성과"라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형식의 장르도 저작권에 포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

온라인 공간에서의 보호범위 확대	-기술 진보에 따라서 구법 하에서 상정하지 못했던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권 등을 포함시키고 라이브방송 등을 저작권의 범위에 포함시킴 -방송권과 네트워크권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 전자는 "Non-interactive"를 특징으로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Interactive (쌍방향의, 互动的)" 방식으로 전달하며 이용자가 시간과 장소 선택 가능하는 것으로 구별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중계방송 또는 전파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을 보호함
저작물의 권리 귀속 명확화	-영화와 드라마 작품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귀속되며 작가, 감독 등은 서명권 및 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권을 갖음 - 영화와 드라마 작품 이외의 시청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하고 합의가 없을 경우 제작자에게 귀속한다고 하여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자율성을 존중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강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으로 △저작권자가 권리침해로 입은 실제 손실, △침해자의 위법소득, △해당 저작권의 권리 이용료(로열티)의 배수, △500 만 위안 이하의 법정 배상금 등으로 규정함 -침해 정도가 엄중한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액의 최대 5 배까지 배상하도록 함

제 1 장 외상투자법

외상투자법



□ 제정 배경

- 2019 년 3 월 15 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종전의 '외자 3 법 (외자기업법,[1] 중외합자경영기업법 [2], 중외합작경영기업법 [3], 이하 '구법'이라 함)'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한 새로운 <외상투자법(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 (이하 '외상투자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202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중임

- 과거 외자 3 법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할 당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 경영기법 등을 도입하지만 무분별한 외국자본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음

- 그러나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일부 규정은 시의성을 잃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점, 다른 일부 규정은 회사를 규율하는 일반법인 <회사법(公司法)>과 내용이 충돌하여 실무에서 적지않은 혼란을 가져온 점, 외상투자법인과 내자법인(内资法人)의 적용기준을 통일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요청되어 온 점 등을 반영하여 신법이 제정되기에 이름 [4]

---

[1] <외자기업법(外资企业法)>은 외자 지분이 100%인 '외상독자기업(WFOE)'에 적용되는 법

[2]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资经营企业法)>은 출자비율에 따라 중국과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합자기업(Equity Joint Venture)'에 적용되는 법

[3]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经营企业法)>은 계약에 의해 중국과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권, 손익에 대한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합작기업(Contractual Joint Venture)'에 적용되는 법

[4] 이제 신법인 <외상투자법>에 근거하면 외상투자법인은 중국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회사에 관한 일반법인 회사법의 적용을 받게 됨

□ 입법취지

- 신법에서는 △외상투자기업을 내자기업에 준하여 공평하게 대우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및 강제적 기술이전 금지 등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의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허용 분야를 확대하기 위하여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5] 관리한다는 규정을 신법에서 '법률'의 형태로 천명(제 4 조)하였으며 △외국 투자자 관련 서비스 질 제고 및 자본이동의 자율성 확대 등 행정서비스 간편화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 및 중국 시장의 점진적 대외개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임

□ 경과규정

- 신법이 시행(2020.1.1.)된 후에도 폐지된 '외자 3 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들의 조직 형태와 조직 구조는 5 년의 과도기 기간 동안 그 효력이 유지되나 5 년 이내로 외상기업의 조직형태, 조직기구, 활동준칙 등은 모두 <회사법>에 부합하도록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함[6]
-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여 법인을 설립한 우리 기업들도 위의 취지에 맞춰 5 년 내에 그 조직구조, 의사표결규칙 등을 신법의 입법취지에 맞춰서 변경하여야 함[7]

□ 주요 변경내용

-본 고에서는 구법과 신법의 변경내용 중 주로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관심사인 회사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차이점을 비교하되 그 중에서도 합작기업(Contractual JV), 주식유한회사(股份有限公司), 합화기업(合伙企业) 은 설립 사례가 많지 않은 점, 외상독자자기업(WOFE)은 실제로 중국 회사법과 지배구조 면에서

[5]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식'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에 비하여 더욱 개방적인 것으로 인정되는데 외국투자기업 진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네거티브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 분야에서는 외국인의 독자적 투자를 허용하는 것임

[6] 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은 2020 년 1 월 1 일부터 2025 년 1 월 1 일까지 5 년의 기간 내에 조직형태, 조직기구, 활동준칙 등을 신법에 맞게 변경해야 함(외상투자법 부칙 제 42 조).

[7] 예컨대, 신법에 의하면 최고권력기구는 이사회(董事会)가 아닌 주주회이므로 주주회 미(未)설립 시에는 주주회를 설립하여야 하며, 신법의 이사의 선정방식, 중요 의결사항의 의결정족수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회사의 정관 또한 수정하여야 함

차이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합자기업(Equity JV) 및 유한책임회사(有限责任公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구분	주요 내용
지분비율	- 구법에서는 합작·합자법인의 경우 외국투자자 지분률 25% 이상이어야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신법에서는 이 규정이 폐기됨
합자의 주체	- 구법에서는 외국투자자가 중국인 자연인과는 합자·합작할 수 없었고 반드시 중국측(中方) 투자자는 법인인 경우만 가능하였으나 신법에서는 중국인 자연인과도 가능하게 됨
'1 인회사'의 설립 수 제한	- 구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1 인회사를 다수 설립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중국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설립 수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됨
기술출자 시 출자액 산정	- 구법에서는 기술출자와 관련하여 독점기술을 포함한 비화폐자산의 출자 시 각 투자자의 합의만 있으면 임의로 출자액의 책정이 가능하였으나, 신법에서는 제 3 기관의 가치평가를 거쳐 그 가격도 객관적으로 적절하여야 함
최고 권력기구의 변화	- 구법에서 합자기업의 경우 회사 내의 권력기관(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董事会)이며 주주회를 별도로 두지 아니한 것과 달리, 신법에서는 권력기관으로서 주주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회사의 중대한 사항들은 모두 주주회에서 의결하도록 함 - 신법에서 이사회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어 사실상 경영계획과 기본관리제도의 제정, 내부관리조직의 설치, 총경리·재무책임자 등의 주요 고급관리임원의 임면권만 부여됨
	- 구법에서 합자기업의 경우 이사의 선출방식과 관련하여 각 주주가 위임·파견하고 임기는 4 년으로 규정하였으나 신법

이사회의 구성	하에서는 주주회 중심의 회사지배구조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사는 주주회에서 그 임면을 결의하고 임기는 3 년을 초과하지 못함
의사결정규칙	- 구법에서 합자·합작기업의 경우 회사의 중대한 결의사항(특별결의사항), 예컨대 회사정관의 개정, 등록자본금의 증자 또는 감자 결의, 회사의 합병·분리·해산, 회사형태의 변경 등은 전체 이사(법 규정상 출석한 이사)의 만장일치 동의로써 의결하였으나, 신법 하에서는 2/3 이상의 의결권을 갖는 주주의 동의로써 결의가 가능하게 됨
이사회의 의사결정 정족수	- 구법에서 이사회 의사규칙과 관련하여 2/3 이상의 이사가 출석하여야만 결의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신법 하에서는 이사회의 회의 개회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없어 회사정관에서 정하는 것에 따르게 됨
법정대표인	- 구법에서 합자·합작기업의 경우 회사의 법정대표자는 이사장(董事长)이었으며 이사장은 이사회의 소집과 회의 주재를 관장하는 역할을 하는 등 비교적 권한이 강하였으나, 신법 하에서는 회사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이사회가 없는 경우는 집행이사) 또는 총경리 중에서 선정이 가능함
이익배당	- 구법에서 합자기업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에 대하여 투자자의 약정납입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도록 하였으나 신법 하에서는 회사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전체 주주가 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를 수 있음
잔여재산분배	- 구법에서 합자기업의 경우 회사청산 후 잔여재산의 분배와 관련하여 합자계약서나 회사정관에 특약이 있는 경우 약정납입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신법 하에서는 회사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함

주주 이외의 제 3 자에 대한 지분권 양도	- 구법에서 합자기업의 경우 투자자 중 어느 일방이 그 보유지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투자자 이외의 제 3 자에게 양도하려면 다른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였고, 합작기업의 경우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타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거쳐야 가능하였음 - 신법 하에서는 회사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주주 사이에는 그 지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롭게 서로 양도할 수 있고, 주주 이외의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주주에게 관련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함과 동시에 다른 주주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구법과 신법 내용 대조**

중국 (구)외자 3 법과 신법(외상투자법) 내 용 대조표

구분	구법(외자 3 법)	신법(외상투자법)에 따른 규율 [8]
외국 투자자의 출자비율	25% 이상이어야 함(합자·합작기업)	제한 없음
투자자 자격	중국측 투자자는 법인이어야 함 (합자·합작기업)	중국인 자연인도 가능

[8] 신법인 외상투자법에 근거하면 외상투자법인은 중국 내자법인과 동일하게 회사에 관한 일반법인 회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아울러 종전의 외자 3 법에서 지칭한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등의 개념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기업의 분류는 회사법과 합화기업법 (合伙企业法) 에 따라 통일적으로 유한회사(有限责任公司), 주식유한회사 (股份有限公司) , 합화기업(Partnership) 등으로 정하게 된다.

최고 권력기구	이사회(합자·합작기업), 주주회 (외자기업)	주주회
이사회	3 인이상의 이사(합자·합작기업)	이사회는 필수적 기구는 아님. 주주의 수가 적거나 소규모회사는 집행이사(执行懂事) 1 인으로 대신할 수 있음
이사장/부이사장	중국측 투자자와 외국투자자가 각자 임명	정관에 의함
이사 임기	4 년(합자·합작기업), 연임가능	3 년, 연임가능
이사 선정방식	주주들이 각자 위임 파견, 변경하는 등 직접 임명	이사 또는 집행이사는 주주회에서 선출
의사정족수(법적 출석인 수)	이사회 2/3 이상의 의사 출석	별도 규정은 없고 회사 정관에 약정할 수 있음
중대 사항 표결권	중대 사항 결의 [9]시 반드시 회의에 출석한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 필요(합자·합작기업)	2/3 이상의 의결권을 갖는 주주의 동의
법정대표인	이사장 (합자·합작기업)	이사장, 집행이사 또는 총경리 등 정관규정에 따름
감사	규정 없음(합자·합작기업)	감사 또는 감사회
제 3 자에 대한 지분양도 제한	양도인을 제외한 기타 주주의 만장일치 필요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인을 제외한 기타 주주의 과반수의 동의 필요
이익배당	등록자본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함 (합자기업)	정관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전체 주주사이 별도 약정이 가능하여 출자비율과 다른 비율로 이익배당 가능

[9] 정관의 수정, 등록자본금의 증가·감소,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시사점**

- 신법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구법 하에서 내자법인과 비교하여 차별을 받는 것을 지양하고 내자법인과 동일하게 통일적으로 규율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중국 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환경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임
- 반면에 외상투자라는 이유로 차별이 없어지는 대신에 우대 또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규제의 측면에서도 중국 내자기업과 같은 수준의 것이 예상되므로 중국 내 경영활동의 준법성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동 법의 하위규범 제정의 동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함

□ **출처**

-중문 원문 다운로드: 전국인민대표대회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http://www.npc.gov.cn/zgrdw/npc/xinwen/2019-03/15/content_2083532.htm)

□ **파일첨부**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 전문(한글본)

제 1 장 총칙

제 1 조
대외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외국인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인투자 관리를 규정하고, 전면적 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안 (이하 '중국 국경 안'이라 한다) 에 있는 외국인투자에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외국인투자란 외국의 자연인・기업・그 밖의 조직 (이하 '외국투자가'라 한다) 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중국 국경 안에서 하는 투자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관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또는 그 밖의 투자가와 공동으로 중국 국경 안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2) 외국투자가가 중국 국경 안에 있는 기업의 주식・주주권・자산배당・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익을 취득하는 경우
(3)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또는 그 밖의 투자가와 공동으로 중국 국경 안에서 신규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4) 법률・행정법규・국무원이 규정하는 그 밖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이 법에서 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투자하여, 중국 법률에 따라 중국 국경 안에서 등기를 등록하여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제 3 조
국가는 대외개방의 기본적인 국가 정책을 유지하고,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중국 국경 안에서 투자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고도의 투자 자유화・편의화 정책을 시행하며, 외국인투자 촉진 매커니즘을 수립 및 보완하고, 안정성・투명성・예측성・거래공정성을 갖춘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제 4 조
국가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진입 전 내국민 대우와 외국인투자 제한 목록(Negative list)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진입 전 내국민 대우'란 투자 진입 단계에서 외국투자가 및 그가 하는 투자가 내국 투자가 및 그가 하는 투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인투자 제한 목록'이란 국가가 정하는 특정 분야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진입 특별관리 조치를 말한다. 국가는 외국인투자 제한 목록 이외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해준다.

외국인투자 제한 목록은 국무원이 곧바로 발표하거나 비준하여 발표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협정에 외국투자가의 진입 대우에 대하여 혜택을 주는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 5 조
국가는 중국 국경 안에서 외국투자가의 투자・수익・그 밖의 합법적인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한다.

제 6 조
중국 국경 안에서 투자활동을 하는 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 법률・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중국의 국가안보・사회 공공이익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제 7 조

국무원 상거래 주무부서・투자 주무부서는 직무와 책임에 따라 분업하며, 외국인투자 촉진・보호・관리 업무를 한다. 그 밖의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 직무와 책임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보호・관리에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법률・법규와 해당 급의 인민정부가 정하는 직무와 책임에 따라 분업하며, 외국인투자촉진・보호・관리 업무를 한다.

제 8 조
외국인 투자기업 직원은 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그 기업의 노동조합에게 필요한 활동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2 장 투자 촉진

제 9 조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국가는 기업발전에 지원하는 각 정책 사항들을 평등하게 적용한다.

제 10 조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법률・법규 ・규장의 제정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견과 제안을 적절한 방식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규범성 문건・재판문건 등은 법에 따라 적시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 11 조
국가는 건전한 외국인투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하여 법률 및 법규・정책 조치・투자 항목 정보 등의 방면에서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2 조
국가는 다른 국가・지역・국제 조직과 다자간・양자간 투자촉진 합작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투자 영역에서 국제교류와 합작을 강화한다.

제 13 조
국가는 수요에 따라 특별경제구역을 설립하거나 지역 일부에 외국인투자 시범 정책조치를 시행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제 14 조
국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수요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특정 업종・분야・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도한다. 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행정 법규・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우대적 대우를 누릴 수 있다.

제 15 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에 따라 평등하게 표준 제정 업무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표준 제정에 관한 정보공개와 사회감독을 강화한다.
국가가 제정하는 강제성 표준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도 평등하게 적용한다.

제 16 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에 따라 공정하고 평등한 경쟁을 통하여 정부 조달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국경 안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제공하는 서비스를 법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하여 조달한다.

제 17 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주식・회사채 등의 공개 발행을 통하여 증권과 그 밖의 방식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 18 조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법률・행정법규・지방성 법규 규정에 따라 법정 권한 안에서 외국인투자 촉진과 편의를 위한 정책 조치를 정할 수 있다.

제 19 조
각 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편의성・고효율성・투명성 원칙에 따라 사무 절차를 간소화하며 사무 효율을 높이고 정부 업무 서비스를 최적화하여 외국인투자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 관련 주무부서는 외국인투자가이드를 편성하여 공포하고, 외국 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하여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3 장 투자 보호

제 20 조
국가는 외국투자가의 투자에 대하여 징수(征收)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상황인 경우 국가는 공익적인 필요성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외국투자가의 투자에 대하여 징수 또는 징용을 시행할 수 있다. 징수・징용은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적시에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제 21 조
외국투자가는 중국 국경 안에서 출자, 이윤, 자본이익, 자산처분 소득, 지식재산권 허가에 따른 사용료, 법에 따라 취득하는 보상 또는 배상, 청산소득 등을 법에 따라 인민폐 또는 외화로 자유롭게 환입, 환출할 수 있다.

제 22 조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권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국가는 외국인투자 과정에 있어서 자발성 원칙과 상업 규칙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 합작을 장려한다. 기술 합작의 조건은 투자 당사자가 각자 공평성 원칙을 준수하며 평등하게 협상하여 정한다. 행정기관 및 그 업무자는 행정수단을 이용하여 기술을 양도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3 조

행정기관 및 그 업무자는 직무와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 알게 된
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비밀을 법에 따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유출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4 조
각 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범성 문건의 규정을 법률・법규에
부합하도록 제정하여야 한다. 법률・행정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인
이익의 감소・손해 또는 의무의 증가가 발생하여서는 안되며, 시장 진입 또는 시장 철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안된다.

제 25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하여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정책 공약 및 법에 따라 체결된 각종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 이익・사회 공공이익 때문에 정책 공약 또는 약정한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법에 따라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제 26 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 신고 업무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전달하는 문제를 적시에 처리하고 관련 정책을 보완하는 조치에 협조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는 행정기관 및 그 업무자의 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지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신고업무 메커니즘을 통하여 협조 및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행정기관 및 그 업무자의 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지하는 경우 앞 관(款)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신고업무
메커니즘을 통하여 협조 및 해결을 요청하는 방식 이외에 법에 따라 행정심판 요청・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도 있다.

제 27 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상인연합회・협회를 설립하거나 상인연합회・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상인연합회・협회는 법률・법규・정관에 따라 정하여진 관련 활동을 하고,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4 장 투자 관리

제 28 조
외국인투자 제한목록의 투자 진입 금지 분야에 외국투자가가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투자 제한목록에 투자 제한으로 규정된 분야에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진행하려면
외국인투자 제한목록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제한목록 이외의 분야에는 내국민 투자와 외국인 투자를 동일시 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리를 시행한다.

제 29 조

외국인투자에 투자항목 심사비준・등록이 필요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30 조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업종・분야에 투자를 하려는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주무부서는 내국민 투자와 동일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외국투자가의 허가 신청을 심사비준한다. 단, 법률・행정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 31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 형식・조직 기구 및 그 활동 준칙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중화인민공화국 합화기업법》 등의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제 32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경영활동은 노동보호・사회보험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률・행정법규・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세무・회계・외환 등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관련 주무부서가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33 조
외국투자가가 중국 국경 안에 있는 기업을 인수합병 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독점방지법》 규정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 34 조
국가는 외국투자가 정보 보고제도를 수립한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등기 시스템 및 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상무 주무부서에 투자 정보를 보고하고 제출하여야 한 다.
외국투자가 정보 보고의 내용과 범위는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부서를 통한 정보 공유로 얻을 수 있는 투자 정보에 대하여 다시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5 조
국가는 외국인투자 안전심사제도를 수립하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안전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진행된 안전심사 결정은 최종결정이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36 조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 진입제한 목록의 투자 금지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관련 주무부서는 해당 외국투자가가 투자 활동을 중지하고 기한 내에 주식・자산을 처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투자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그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외국투자가의 투자활동이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목록에서 규정된 제한적 진입 특별 관리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주무부서는 기한을 정하여 진입 특별관리 조치에 부합하는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을 초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앞 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외국투자가의 투자활동이 외국인 투자 진입제한 목록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앞의 두 관의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 이외에 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제 37 조
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투자가 정보보고 제도에서 요구되는 투자 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무 주무부서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을 초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8 조
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이 법률・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하고 국가 관련 규정대로 신용정보 시스템에 입력한다.

제 39 조
행정기관 업무자가 외국인투자의 촉진・보호・관리 업무 중에 직권 남용・직무유기・불법이익 추구를 하거나 직무 및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 알게 된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장 부칙

제 40 조
투자 방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차별대우 성격의 금지・제한・그 밖의 조치를 취하는 모든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이 취하는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1 조
외국투자가가 중국 국경 안에서 은행업・증권업・보험업 등 금융 업종이나 증권시장・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서 행하는 투자에 대하여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 42 조
이 법은 202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이 법이 시행된 후 5 년까지 원래의 기업 조직 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국무원 규정에 의한다.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 전문(중문)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

（2019 年 3 月 15 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二次会议通过）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进一步扩大对外开放，积极促进外商投资，保护外商投资合法权益，规范外商投资管理，推动形成全面开放新格局，促进社会主义市场经济健康发展，根据宪法，制定本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以下简称中国境内）的外商投资，适用本法。

本法所称外商投资，是指外国的自然人、企业或者其他组织（以下称外国投资者）直接或者间接在中国境内进行的投资活动，包括下列情形：

（一）外国投资者单独或者与其他投资者共同在中国境内设立外商投资企业；

（二）外国投资者取得中国境内企业的股份、股权、财产份额或者其他类似权益；

（三）外国投资者单独或者与其他投资者共同在中国境内投资新建项目；

（四）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规定的其他方式的投资。

本法所称外商投资企业，是指全部或者部分由外国投资者投资，依照中国法律在中国境内经登记注册设立的企业。

第三条　国家坚持对外开放的基本国策，鼓励外国投资者依法在中国境内投资。

国家实行高水平投资自由化便利化政策，建立和完善外商投资促进机制，营造稳定、透明、可预期和公平竞争的市场环境。

第四条　国家对外商投资实行准入前国民待遇加负面清单管理制度。

前款所称准入前国民待遇，是指在投资准入阶段给予外国投资者及其投资不低于本国投资者及其投资的待遇；所称负面清单，是指国家规定在特定领域对外商投资实施的准入特别管理措施。国家对负面清单之外的外商投资，给予国民待遇。

负面清单由国务院发布或者批准发布。

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协定对外国投资者准入待遇有更优惠规定的，可以按照相关规定执行。

第五条　国家依法保护外国投资者在中国境内的投资、收益和其他合法权益。

第六条　在中国境内进行投资活动的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应当遵守中国法律法规，不得危害中国国家安全、损害社会公共利益。

第七条　国务院商务主管部门、投资主管部门按照职责分工，开展外商投资促进、保护和管理工作；国务院其他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外商投资促进、保护和管理的相关工作。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依照法律法规和本级人民政府确定的职责分工，开展外商投资促进、保护和管理工作。

第八条　外商投资企业职工依法建立工会组织，开展工会活动，维护职工的合法权益。外商投资企业应当为本企业工会提供必要的活动条件。

第二章　投资促进

第九条　外商投资企业依法平等适用国家支持企业发展的各项政策。

第十条　制定与外商投资有关的法律、法规、规章，应当采取适当方式征求外商投资企业的意见和建议。

与外商投资有关的规范性文件、裁判文书等，应当依法及时公布。

第十一条　国家建立健全外商投资服务体系，为外国投资者和外商投资企业提供法律法规、政策措施、投资项目信息等方面的咨询和服务。

第十二条　国家与其他国家和地区、国际组织建立多边、双边投资促进合作机制，加强投资领域的国际交流与合作。

第十三条　国家根据需要，设立特殊经济区域，或者在部分地区实行外商投资试验性政策措施，促进外商投资，扩大对外开放。

第十四条　国家根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需要，鼓励和引导外国投资者在特定行业、领域、地区投资。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可以依照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的规定享受优惠待遇。

第十五条　国家保障外商投资企业依法平等参与标准制定工作，强化标准制定的信息公开和社会监督。

国家制定的强制性标准平等适用于外商投资企业。

第十六条　国家保障外商投资企业依法通过公平竞争参与政府采购活动。政府采购依法对外商投资企业在中国境内生产的产品、提供的服务平等对待。

第十七条　外商投资企业可以依法通过公开发行股票、公司债券等证券和其他方式进行融资。

第十八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可以根据法律、行政法规、地方性法规的规定，在法定权限内制定外商投资促进和便利化政策措施。

第十九条　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按照便利、高效、透明的原则，简化办事程序，提高办事效率，优化政务服务，进一步提高外商投资服务水平。

有关主管部门应当编制和公布外商投资指引，为外国投资者和外商投资企业提供服务和便利。

第三章　投资保护

第二十条　国家对外国投资者的投资不实行征收。

在特殊情况下，国家为了公共利益的需要，可以依照法律规定对外国投资者的投资实行征收或者征用。征收、征用应当依照法定程序进行，并及时给予公平、合理的补偿。

第二十一条　外国投资者在中国境内的出资、利润、资本收益、资产处置所得、知识产权许可使用费、依法获得的补偿或者赔偿、清算所得等，可以依法以人民币或者外汇自由汇入、汇出。

第二十二条　国家保护外国投资者和外商投资企业的知识产权，保护知识产权权利人和相关权利人的合法权益；对知识产权侵权行为，严格依法追究法律责任。

国家鼓励在外商投资过程中基于自愿原则和商业规则开展技术合作。技术合作的条件由投资各方遵循公平原则平等协商确定。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不得利用行政手段强制转让技术。

第二十三条　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对于履行职责过程中知悉的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的商业秘密，应当依法予以保密，不得泄露或者非法向他人提供。

第二十四条　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制定涉及外商投资的规范性文件，应当符合法律法规的规定；没有法律、行政法规依据的，不得减损外商投资企业的合法权益或者增加其义务，不得设置市场准入和退出条件，不得干预外商投资企业的正常生产经营活动。

第二十五条　地方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履行向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依法作出的政策承诺以及依法订立的各类合同。

因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需要改变政策承诺、合同约定的，应当依照法定权限和程序进行，并依法对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因此受到的损失予以补偿。

第二十六条　国家建立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机制，及时处理外商投资企业或者其投资者反映的问题，协调完善相关政策措施。

外商投资企业或者其投资者认为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的行政行为侵犯其合法权益的，可以通过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机制申请协调解决。

外商投资企业或者其投资者认为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的行政行为侵犯其合法权益的，除依照前款规定通过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机制申请协调解决外，还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提起行政诉讼。

第二十七条　外商投资企业可以依法成立和自愿参加商会、协会。商会、协会依照法律法规和章程的规定开展相关活动，维护会员的合法权益。

第四章　投资管理

第二十八条　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规定禁止投资的领域，外国投资者不得投资。

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规定限制投资的领域，外国投资者进行投资应当符合负面清单规定的条件。

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以外的领域，按照内外资一致的原则实施管理。

第二十九条　外商投资需要办理投资项目核准、备案的，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第三十条　外国投资者在依法需要取得许可的行业、领域进行投资的，应当依法办理相关许可手续。

有关主管部门应当按照与内资一致的条件和程序，审核外国投资者的许可申请，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第三十一条　外商投资企业的组织形式、组织机构及其活动准则，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等法律的规定。

第三十二条　外商投资企业开展生产经营活动，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有关劳动保护、社会保险的规定，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办理税收、会计、外汇等事宜，并接受相关主管部门依法实施的监督检查。

第三十三条　外国投资者并购中国境内企业或者以其他方式参与经营者集中的，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的规定接受经营者集中审查。

第三十四条　国家建立外商投资信息报告制度。外国投资者或者外商投资企业应当通过企业登记系统以及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商务主管部门报送投资信息。

外商投资信息报告的内容和范围按照确有必要的原则确定；通过部门信息共享能够获得的投资信息，不得再行要求报送。

第三十五条　国家建立外商投资安全审查制度，对影响或者可能影响国家安全的外商投资进行安全审查。

依法作出的安全审查决定为最终决定。

第五章　法律责任

第三十六条　外国投资者投资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规定禁止投资的领域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停止投资活动，限期处分股份、资产或者采取其他必要措施，恢复到实施投资前的状态；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外国投资者的投资活动违反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规定的限制性准入特别管理措施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采取必要措施满足准入特别管理措施的要求；逾期不改正的，依照前款规定处理。

外国投资者的投资活动违反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规定的，除依照前两款规定处理外，还应当依法承担相应的法律责任。

第三十七条　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违反本法规定，未按照外商投资信息报告制度的要求报送投资信息的，由商务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

第三十八条　对外国投资者、外商投资企业违反法律、法规的行为，由有关部门依法查处，并按照国家有关规定纳入信用信息系统。

第三十九条　行政机关工作人员在外商投资促进、保护和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或者泄露、非法向他人提供履行职责过程中知悉的商业秘密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六章　附　　则

第四十条　任何国家或者地区在投资方面对中华人民共和国采取歧视性的禁止、限制或者其他类似措施的，中华人民共和国可以根据实际情况对该国家或者该地区采取相应的措施。

第四十一条　对外国投资者在中国境内投资银行业、证券业、保险业等金融行业，或者在证券市场、外汇市场等金融市场进行投资的管理，国家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四十二条　本法自 2020 年 1 月 1 日起施行。《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同时废止。

本法施行前依照《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设立的外商投资企业，在本法施行后五年内可以继续保留原企业组织形式等。具体实施办法由国务院规定。

제 2 장 화장품감독관리조례



화장품감독관리조례

□ 개정 배경

-2020 년 6 월 29 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총 6 장, 80 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新<화장품감독관리조례(化妆品监督管理条例) >(이하 '조례')를 발표하고 202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함
- 이에 따라 30 년간 시행되어 왔던 <화장품위생감독조례(化妆品卫生监督条例)>(1990.1.1.일부 시행) 및 실시세칙을 2021 년부터 폐지함

□ 입법취지

- 화장품 품질 안전을 보장하고 화장품 인증과 등록절차를 간소화하여 서비스를 최적화하며 산업발전의 속도에 비교하면 법적 규율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반영하여 화장품 원료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상거래 화장품 판매 책임주체 명시, 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임

□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변경 내용

적용범위	- 조례는 화장품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인체 표면에 바르거나 뿌리는 방식으로 청결, 보호, 미화, 치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용 화학공업제품”이라고 명시함 - 일반 비누는 본 조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화장품의 효능이 있는 비누(예: 미백비누 등)는 화장품에 포함되므로 본 조례의 적용대상임 - 치약은 일반화장품 규정을 참조하여 관리하지만 화장품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치약에 대한 구체적 관리방법은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함
분류	- 조례는 화장품을 ‘특수화장품’과 ‘일반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종전의 ‘특수화장품’과 ‘비(非)특수화장품’으로 분류했던 방식을 변경하여 특수화장품은 허가관리, 일반화장품은 등록관리로 전환함 - (구)조례에 의하면 특수화장품의 유형을 기존의 육모, 염색, 파마, 제모, 가슴관리, 바디슬리밍(健美), 제취(除臭), 기미제거, 자외선차단 등 9 개로 분류하였는데, 新조례는 염색, 파마, 기미제거,자외선차단, 탈모방지 및 기타 신기능화장품 등 5 가지 제품을 특수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등 특수화장품의 유형을 조정함
新원료	- 조례는 新화장품원료에 대한 규제도 담고 있는데 방부, 자외선차단, 착색, 염색, 기미제거, 미백 기능이 있는 신원료와 기타 고위험성 신원료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허가를 받도록 함 - (구)조례 하에서 (신)조례 시행하기 전에 기존에 사용해 왔던 新화장품원료에 대해서는 (신)조례 시행 후 3 년의 관찰기간을 두어 3 년 관찰기간 내 안전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비로소 그 해당 원료는 정식으로 당국의 화장품원료목록에 추가됨
안전생산 및 품질관리	-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생산기술, 인원, 품질검사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함

	- 화장품 생산기업은 정부 감독관리 당국에서 제정한 생산품질 관리규범에 따라 원료 관리, 생산 및 품질 관리, 설비 관리, 제품 검사 및 샘플 관리, 불합격 제품 리콜 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제품안전평가를 진행하는 전문인원을 배치하고 생산기업은 제품 추적이 가능하도록 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점검·판매상황을 기록해야 하며, 그 기록보존기간은 최소 2 년임
라벨 및 광고	- 화장품 라벨 관련 규제도 대폭 강화되어 최종 판매되는 개별 제품에도 라벨이 부착돼야 하며, 라벨에 화장품 전체 성분 표기를 의무화했음 - 의학적 효능을 명시·암시하는 내용, 과대·허위 선전·소비자 오인을 유도하거나 혼동시키는 표현,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 기타 법률 금지 내용 등은 표기가 금지됨 - 조례는 화장품 광고 및 홍보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제품, 성분의 효능을 홍보함에 있어 평가자료, 연구데이터, 학술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홍보·광고 문구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규정함
수입화장품	-수입화장품 중 특수화장품은 중앙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일반화장품은 각 지방 부처에서 비안신고를 하도록 하여 구분하고 특수화장품의 인증서 유효기간은 5 년으로 함 -수입화장품은 '화장품허가·등록인' 제도를 시행하여 외국기업은 반드시 중국 내 법인을 지정해 제품의 인증·등록, 제품 판매, 불량반응 측정 및 리콜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 화장품허가·등록인은 수입제품별로 제품에 대한 안전, 품질, 운영, 리콜 등을 관리하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판매관리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는 화장품 입점자에 대해 실명등록을 해야 하며 법위반 행위 발견 즉시 약품감독관리부처에 보고하고 판매행위를 중단시켜야 하는 등 관리책임을 부과함

법위반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 무허가 생산, 화장품 생산에 금지된 원료 ·미인증 신원료 사용, 상품 합격증 미취득 제품 판매, '화장품 위생기준' 미달 생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위법 소득의 3~5 배 벌금 부과, 생산과 영업 중지 및 화장품 생산허가증 취소 등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
경과규정	-본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등록한 육모·제모·가슴미용·바디슬리밍·제취 화장품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5 년간의 과도기를 설정하여 그 과도기 내에는 생산·수입·판매를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과도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해당 화장품을 생산·수입·판매할 수 없음

□ 시사점

-조례 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국 당국의 화장품 생산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면서 시장에서는 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향상된 제품이 유통될 것이라고 예상됨
- 향후 중국 진출의 우리 기업은 해외의 유명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품질 안전이 향상된 로컬업체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됨
- 조례에 의하면 종래에는 수출이 불가능했던 신원료를 함유한 화장품 수출이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신제품의 연구 단계에서부터 중국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발하는 등 우리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규정 변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함

□ 출처

-중문 원문 다운로드:중화인민공화국 인민정부(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0-06/29/content_5522593.htm

□ (구)조례와 개정 조례 내용 대조 [10]

[10] 개정 조례에서는 신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구조례와 개정조례에서 비교될만한 내용만 발췌하여 정리함

중국 화장품감독관리(구)조례와 개정 조례 대조표

(구)조례	개정 조례
제 1 조 화장품에 대한 위생감독을 강화하고 화장품의 위생품질과 사용안전을 보장하며 소비자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1 조 화장품 생산, 경영 활동을 규범화하고, 화장품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화장품 품질 안전을 보증하고, 소비자 건강을 보장하며 화장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화장품이라 함은 바르거나 분사하거나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인체 표면의 모든 부위 (피부, 모발, 손발, 입술 등)에 살포하여 청결, 악취 제거, 피부 보호, 미용 및 치장의 목적을 이루는 일용화학공업 제품을 말한다.	제 3 조 본 조례에서 화장품이라 함은 바르거나 분사(喷洒)하거나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인체의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인체표면에 사용하여 청결, 보호, 미화, 치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용화학공업제품을 말한다.
제 9 조 화장품 신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무원 화장품감독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화장품 신원료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화장품 생산에 사용된 천연 또는 인공 원료를 말한다.	제 11 조 화장품 신원료는 중국 국경 내에서 처음으로 화장품에 사용되는 천연 또는 인공원료를 말한다. 방부, 자외선차단, 착색, 염모, 기미 제거 및 미백 기능이 있는 화장품 신원료는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의 허가(注册)를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고, 기타 화장품 신원료는 사용 전에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록(备案)해야 한다. 국무원 약품 감독관리부문은 과학연구의 발전에 따라 허가관리를 실시하는 화장품 신원료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고 실시한다.
제 10 조 특수용도의 화장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국무원 화장품감독관리부서의 비준을 받고 비준등록기호를 취득하여야 생산할 수 있다. 특수용도 화장품은 육발(育发) · 염색 · 파마 · 제모 · 미유(美乳) · 건강미 · 악취 제거 · 기미 제거 · 자외선 차단 등에 쓰이는 화장품을 가리킨다.	제 16 조 특수 화장품은 염색(染发), 퍼머, 기미 제거 및 미백, 자외선차단, 탈모 방지에 사용되는 화장품 및 새로운 효능을 선전하는 화장품을 가리킨다. 특수 화장품 이외의 화장품은 일반화장품이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이 화장품의 효능선전, 작용부위, 제품 제형(剂型), 사용대상 등 요소에 따라 화장품 분류규칙 및 분류목록을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 14 조 화장품의 광고선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있어서는 안된다. (1) 화장품의 명칭, 제조법, 효용 또는 성능이 허위적으로 과장된 것, (2) 타인의 명의로 보증하였거나 암시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오해하게 한 경우, (3) 의료역할을 선전하는 것	제 43 조 화장품 광고의 내용은 반드시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화장품 광고는 제품이 의료작용이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되며, 허위 또는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되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을 유도해서는 안된다.
제 25 조 비준등록기호를 취득하지 않은 특수용도의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화장품에 금지된 원료와 비준을 받지 않은 화장품 신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과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3~5 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해당 기업에 영업중지를 명하거나 화장품생산허가증을 취소할수 있다. 제 26 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 또는 검사를 거치지 않은 수입화장품을 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 제품 및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3~5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27 조 국가의 <화장품위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화장품을 생산 또는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제품 및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3~5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제 59 조 아래의 정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에서 위법소득, 위법 생산 경영한 화장품 및 위법 생산 경영에 전문으로 사용한 원료, 포장재료, 공구, 설비 등 물품을 몰수한다. 위법 생산 경영한 화장품 총가 금액이 1 만 위안이 안되는 경우 5 만 위안 이상, 1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총가 금액이 1 만 위안 이상인 경우 총가금액의 15 배 이상, 3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생산 및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리고, 등록부문에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원래의 허가증을 발급한 부문에서 화장품 허가증을 취소하고, 10 년 동안 화장품 등록을 처리하지 않거나 화장품 행정허가 신청을 수리하지 않으며, 위법기업의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 전년도에 해당 기업이 취득한 소득의 3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해당 인원에 대해 종신(終身)토록 화장품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파일첨부**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전문 (한글본)

제 1 장 총칙

제 1 조
화장품 생산 경영 활동을 규범화하고, 화장품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화장품 품질 안전을 보증하고, 소비자 건강을 보장하며 화장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화장품의 생산 경영활동 및 그 감독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본 조례에서 화장품이라 함은 바르거나 분사(喷洒)하거나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인체의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인체표면에 사용하여 청결, 보호, 미화, 치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용화학공업제품을 말한다.

제 4 조
국가는 리스크 정도에 따라 화장품, 화장품 원료에 대해 분류관리를 시행한다.
화장품은 특수 화장품과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한다. 국가는 특수 화장품에 대해 허가관리(注册管理)를 시행하고 일반 화장품에 대해 등록관리(备案管理)를 시행한다.
화장품 원료는 신원료와 기사용된 원료로 분류한다. 국가는 리스크가 비교적 높은 화장품 신원료에 대해 허가관리를 시행하고, 기타 화장품 신원료에 대해 등록관리를 시행한다.

제 5 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은 전국의 화장품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 관련 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화장품과 관련된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县)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은 해당 행정구역의 화장품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유관 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화장품과 관련된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 6 조
화장품 허가인·등록인(注册人、备案人)은 화장품의 품질안전 및 효능 선전에 대해 책임진다.
화장품 생산 경영자는 반드시 법률, 법규, 강제성 국가표준 및 기술 규범에 따라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하여 화장품 품질안전을 보증해야 한다.

제 7 조

화장품 업계 협회는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화장품 생산 경영자가 법에 의거하여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해야 하며 업계의 신의성실 체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제 8 조
소비자협회 및 기타 소비자 조직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사회적 감독을 진행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는 화장품 연구, 혁신, 소비자 수요 만족, 화장품 브랜드 건설 추진, 브랜드 견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한다. 국가는 단위(单位)와 개인이 전개하는 화장품 연구, 혁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화장품 생산 경영자가 선진기술과 선진관리규범을 채택하여 화장품 품질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현대 과학기술을 운용하고 중국의 전통적인 우세 항목 및 특색 있는 식물자원을 결합하여 화장품을 연구, 개발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한다.

제 10 조
국가는 화장품 감독관리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온라인 정부 업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화장품 행정허가, 등록 처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감독관리 정보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

제 2 장 원료 및 제품

제 11 조
화장품 신원료는 중국 국경 내에서 처음으로 화장품에 사용되는 천연 또는 인공원료를 말한다. 방부, 자외선차단, 착색, 염모, 기미 제거 및 미백 기능이 있는 화장품 신원료는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의 허가(注册)를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고, 기타 화장품 신원료는 사용 전에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록(备案)해야 한다. 국무원 약품 감독관리부문은 과학연구의 발전에 따라 허가관리를 실시하는 화장품 신원료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고 실시한다.

제 12 조
화장품 신원료 허가 또는 화장품 신원료 등록을 신청할 때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허가 신청인, 등록인의 명칭, 주소, 연락처
(2)신원료의 연구, 제조 보고
(3)신원료의 제조공정, 안정성 및 품질관리 표준 등 연구자료
(4)신원료의 안전성 평가자료

허가 신청인, 등록인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 과학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 13 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은 신원료 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업무일 내에 신청자료를 기술심사기구에 전달해야 한다. 기술심사기구는 신청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90 업무일 내에 기술심사를 완료하여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에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은 심사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20 업무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요구에 부합할 경우 허가를 승인하고 화장품 신원료 허가증을 발급한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반려하고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 한다.

화장품 신원료 등록인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의 온라인 정부 업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본 조례에서 규정한 등록자료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성한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은 화장품 신원료 허가를 승인한 날로부터 또는 등록인이 등록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5 업무일 내에 허가 및 등록 관련 정보를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제 14 조
신원료 허가인, 등록인은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여 화장품 신원료에 투입하여 사용한 후 3 년 내에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에 신원료의 사용 및 안전 정황을 보고해야 한다. 안전성 문제가 있는 신원료에 대해서는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허가를 철회하거나 등록을 취소한다.
3 년 만기 시까지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이 제정하는 기(已)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에 수록한다.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화장품 신원료는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에 수록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화장품 신원료로 관리한다.

제 15 조
화장품 생산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료목록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제정하고 공포한다.

제 16 조
특수 화장품은 염색(染发), 퍼머, 기미 제거 및 미백, 자외선차단, 탈모 방지에 사용되는 화장품 및 새로운 효능을 선전하는 화장품을 가리킨다. 특수 화장품 이외의 화장품은 일반화장품이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이 화장품의 효능선전, 작용부위, 제품 제형(剂型), 사용대상 등 요소에 따라 화장품 분류규칙 및 분류목록을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 17 조
특수 화장품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은 후에 생산, 수입할 수 있다. 국산 일반 화장품은 반드시 출시, 판매하기 전에 성,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 인민정부의 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 일반화장품은 반드시 수입 전에 국무원 약품감독 관리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제 18 조
화장품 허가 신청인, 등록인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
(2)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을 진행하는 제품에 적합한 품질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3)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및 평가 능력을 갖춰야 한다.

제 19 조
특수 화장품 허가를 신청하거나 일반 화장품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허가 신청인 또는 등록인의 명칭, 주소, 연락처
(2)생산기업의 명칭, 주소, 연락처
(3)제품 명칭
(4)제품 처방 또는 제품 전(全)성분

(5)제품 집행의 표준
(6)제품 라벨 견본
(7)제품 검사보고서
(8)제품 안전성평가자료

허가 신청인이 처음으로 특수 화장품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인이 처음으로 일반 화장품 등록을 진행할 때 반드시 본 조례 제 18 조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 특수 화장품 허가를 신청하거나 수입 일반 화장품 등록을 진행할 때 반드시 제품 원산국(지역)에서 이미 판매되었다는 증명서류 및 국외 생산기업이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 시장 전용으로 생산하여 생산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에서 이미 판매되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 또는 실험 데이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 신청인, 등록인은 관련 자료의 진실성, 과학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 20 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분은 본 조례 제 13 조 제 1 항에 규정한 화장품 신원료 허가, 심사 절차에 따라 특수 화장품 허가 신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허가를 승인하고 특수 화장품 허가증을 발급한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반려하고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한다. 이미 허가를 받은 특수 화장품이 제조공정, 효능선전 등 방면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허가인은 원래 허가를 받은 부문에 허가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일반 화장품 등록인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분 온라인 정부 업무 서비스 플랫폼에 본 조례에서 규정한 등록자료를 제출하면 등록이 완성된다.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분은 특수 화장품 허가를 승인 한 날로부터 또는 등록인이 등록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5 업무일 내에 허가 및 등록 관련 정보를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제 21 조
화장품 신원료 및 화장품 허가 신청, 등록 전에 허가 신청인, 등록인은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기구에 위탁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성 평가에 종사하는 인원은 반드시 화장품 품질안전 관련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고, 5 년 이상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 22 조
화장품의 효능 발표에는 응당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은 반드시 국무원 약품관리감독부서가 규정한 전문 사이트에 효능 선언의 근거로 되는 문헌자료, 연구데이터 또는 제품효능 평가자료의 요지를 공포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3 조
경외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은 반드시 중국 국경 내에 있는 기업 법인을 지정하여 화장품 허가, 등록을 처리해야 하고,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제품 회수 실시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제 24 조

특수 화장품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 년이다. 유효기간이 만기하여 허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기 30 업무일 전에 허가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본 조항 제 2 관(款) 규정의 상황을 제외하고,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은 반드시 특수 화장품 허가증 유효기간 만기 전에 연장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한을 넘겨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연장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다.
(1)허가인이 규정 기한 내에 허가 연장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강제성 국가표준, 기술규범이 이미 개정되어 허가 연장을 신청한 화장품이 개정된 표준, 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제 25 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은 화장품 강제성 국가표준의 프로젝트 제안, 기초조직(组织起草), 의견청취(征求意见) 및 기술심사를 책임진다. 국무원 표준화 행정부문은 화장품 강제성 국가표준의 입안, 일련번호 부여 및 대외통보를 책임진다.
화장품 국가표준은 반드시 사회에 무료로 공개해야 한다.
화장품은 반드시 강제성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기업이 국가표준보다 엄격한 기업표준을 제정하도록 장려한다.

제 3 장 생산, 경영

제 26 조
화장품 생산에 종사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1)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기업이어야 한다.
(2)생산하는 화장품에 적합한 생산 장소, 환경 조건, 생산 시설 및 설비를 갖춰야 한다.
(3)생산하는 화장품에 적합한 기술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4)생산하는 화장품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인원 및 검사설비를 갖춰야 한다.
(5)화장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하는 관리 제도를 갖춰야 한다.

제 27 조
화장품 생산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문에 신청해야 하고, 본 조례 제 26 조 규정 조건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문은 신청 자료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하고, 신청인의 생산장소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접수한 날부터 30 업무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규정 요건에 부합한 경우 허가를 승인하고 화장품 생산 허가증을 발급한다. 규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반려하고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한다.

화장품 생산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 년이다. 유효기간이 만기 되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제 28 조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은 자체적으로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고, 기타 기업에 위탁하여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다.

위탁하여 화장품을 생산하는 경우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은 상응하는 화장품 생산허가를 취득한 기업에 위탁해야 하고, 수탁기업(이하 '수탁생산기업'이라 한다)이 법정요구에 따라 생산하도록 수탁생산기업의 생산 활동을 감독해야 한다. 수탁생산기업은 법률, 법규, 강제성 국가표준, 기술 규범 및 계약 약정에 따라 생산을 진행해야 하고, 생산활동에 대해 책임지고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9 조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 수탁생산기업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제정한 화장품 생산품질관리규범의 요구에 따라 생산 화장품을 조직하고, 화장품 생산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공급업체 선정, 원료 검수, 생산 과정 및 품질 통제, 설비관리, 제품 검사 및 샘플 보관 등 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 수탁생산기업은 화장품 허가 또는 등록 자료에 명시된 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 화장품을 생산해야 한다.

제 30 조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료는 반드시 강제성 국가표준, 기술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사용기한을 초과하였거나 폐기, 회수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31 조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 수탁생산기업은 반드시 원료 및 화장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료의 입하검사(进货查验) 기록 제도, 제품 판매 기록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입하검사 기록과 제품 판매 기록은 반드시 진실하고, 완전하며, 추적 가능해야 하고, 보존기한은 제품 사용기한 만료 후 1 년보다 짧아서는 안 되며, 사용기한이 1 년이 안되는 경우 기록 보존기한은 2 년보다 짧아서는 안된다.
화장품은 공장 출하검사에 합격해야만 시장에 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 32 조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 수탁생산기업은 반드시 품질안전책임자를 설정하여 상응하는 제품 품질안전관리와 제품 출하 허가 직책을 책임져야 한다.
품질안전책임자는 반드시 화장품 품질안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춰야 하고, 5 년 이상의 화장품 생산 또는 품질안전관리 경력을 갖춰야 한다.

제 33 조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 수탁생산기업은 종업인의 건강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주관부문에서 규정한 화장품 품질안전에 영향을 주는 질병이 있는 인원은 직접적으로 화장품 생산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제 34 조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 수탁생산기업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생산품질관리규범의 집행 상황에 대하여 자가 점검을 진행해야 하고, 생산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여 더 이상 화장품 생산품질관리규범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화장품 품질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반드시 즉시 생산을 정지하고,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 35 조
화장품의 최소 판매단위(单元)에는 반드시 라벨이 있어야 한다. 라벨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강제성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내용은 진실하고 완전하며 정확해야 한다.
수입 화장품은 직접 중문라벨(标签)을 사용할 수 있고, 중문라벨을 추가로 부착할 수도 있으며, 부착한 중문라벨은 원래 라벨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제 36 조
화장품 라벨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1)제품 명칭, 특수 화장품 허가증 일련번호
(2)허가인, 등록인, 수탁생산기업의 명칭, 주소
(3)화장품 생산허가증 일련번호
(4)제품 집행 표준의 일련번호
(5)전(全)성분
(6)정(净)함량
(7) 사용기한, 사용방법 및 필요한 안전경고
(8) 법률, 행정법규 및 강제성 국가표준에서 반드시 표기하도록 규정한 기타 내용

제 37 조
화장품 라벨은 아래의 내용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1) 의료작용이 있음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
(2) 허위 또는 기타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
(3) 사회 공서양속을 위반하는 내용
(4) 법률, 행정법규에서 표시를 금지한 기타 내용

제 38 조
화장품 경영자는 입하검사기록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공급업자의 시장주체등록증명서, 화장품등록 또는 등록상황, 제품출하검사 합격증명서를 검사하고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기록과 증빙자료의 보존기한은 본 조례 제 31 조 제 1 관(款)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화장품 경영자는 자체적으로 화장품을 조제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화장품 생산 경영자는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 및 화장품 라벨 표시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저장, 운송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제때에 변질 또는 품질보증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처리해야 한다.

제 40 조
화장품 집중거래시장 설립자, 전시회 개최자는 입점 또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화장품 경영자의 시장주체 등기 증명을 심사해야 하고, 입점 또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화장품 경영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화장품 경영자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입점 또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화장품 경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제지하고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의 약품감독관리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 41 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의 화장품 경영자에 대해 실명 등기를 진행해야 하고, 플랫폼 내의 화장품 경영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플랫폼 내의 화장품 경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반드시 즉시 제지하고, 플랫폼 경영자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엄중한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화장품 경영자에 대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플랫폼 내 화장품 경영자는 전면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게 적절한 시기에 경영하는 화장품의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제 42 조
미용미발기구, 호텔 등이 경영 중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제공할 경우, 본 조례에서 규정한 화장품 경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43 조
화장품 광고의 내용은 반드시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화장품 광고는 제품이 의료작용이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허위 또는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되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이 화장품에 품질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기타 원인으로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즉시 생산을 정지하고 이미 출시, 판매된 화장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해야 하며, 관련 경영자와 소비자에게 경영, 사용을 정지하도록 통지하고, 회수 및 통지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은 반드시 회수한 화장품에 대해 보완, 무공해 처리, 소각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화장품 회수 및 처리 정황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 시 인민정부의 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수탁생산기업, 화장품 경영자가 생산, 경영하는 화장품에 전관(前款)에 규정한 정황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생산, 경영을 정지하고, 관련 화장품 허가인 또는 등록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화장품 허가인 또는 등록인은 즉시 회수를 실시해야 한다.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이 감독 검사 중 화장품에 본 조 제 1 관에 규정한 정황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에게 회수를 실시하도록 통지하고, 수탁생산기업, 화장품 경영자에게 생산, 경영을 정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이 회수를 실시할 경우, 수탁생산기업, 화장품 경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 수탁생산기업, 경영자가 본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생산, 경영 정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이 회수 또는 생산, 경영 정지를 실시하도록 명령한다.

제 45 조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하는 화장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불합격하면 수입할 수 없다.

수입상은 수입하는 화장품이 이미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화장품인지 여부와 본 조례 및 강제성 국가표준, 기술규범 부합 여부에 대해 확인 해야 하고, 확인 결과 불합격이면 수입해서는

안된다. 수입상은 사실대로 수입 화장품의 정보를 기록해야 하고, 기록의 보존기한은 본 조례 제 3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수출하는 화장품은 수입국(지역)의 표준 또는 계약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4 장 감독관리

제 46 조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이 화장품 생산, 경영에 대해 감독 검사를 진행할 때, 아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생산, 경영 장소에 진입하여 현장 검사 실시
(2)생산, 경영하는 화장품에 대해 샘플링 검사 진행
(3)관련 계약서, 어음,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 복사, 열람
(4)강제성 국가표준, 기술규범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체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증명이 있는 화장품 및 그 원료, 화장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료 등, 위법 생산 경영에 사용된 증거·증명이 있는 공구, 설비 등의 조사봉인(查封), 압수
(5)위법으로 화장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한 장소 봉쇄

제 47 조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이 화장품 생산, 경영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할 때 감독검사 인원은 2 명 이상이어야 하고, 반드시 법을 집행하는 증거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감독검사 인원은 감독검사 중 알게 된 검사를 받는 기업의 상업비밀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검사를 받는 기업은 검사에 협조해야 하고, 관련 정황을 은폐해서는 안된다.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은 감독검사 정황 및 처리 결과를 기록해야 하고, 감독검사 인원과 검사를 받은 기업의 책임자가 서명해야 하며, 검사를 받은 기업의 책임자가 서명을 거절한 경우 명시해야 한다.

제 48 조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문은 반드시 화장품에 대해 샘플링 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은 신고를 비교적 많이 받았거나 일상 감독검사 중 문제가 비교적 많이 발견되는 화장품에 대해 전문 샘플링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샘플링 검사는 반드시 샘플링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소요비용은 해당 정부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적시에 화장품 샘플링 검사결과를 공포해야 한다.

제 49 조
화장품 검사기관은 국가 관련 인증허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질 인정 취득 후 화장품 검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화장품 검사기구의 자질인정 조건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제정한다.
화장품 검사규범 및 화장품 검사 관련 표준품 관리규정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제정한다.

제 50 조
모조품을 섞거나 화장품 생산에 사용을 금지하는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 국가표준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으로 검사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는 추가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을 제정하여 화장품 샘플 검사, 화장품 품질 안전 사건 조사 처리와 불량 반응을 조사 처리하다.

제 51 조
본 조례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론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화장품 생산, 경영자는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7 업무일 내에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 부문 또는 상급의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에 재검(复检)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검 신청을 접수한 부문에서 재검기구 명단 중에서 무작위로 재검기구를 확정하여 재검을 진행한다. 재검기구에서 발급한 재검결론을 최종검사 결론으로 한다. 재검기구와 첫 검사기구는 동일한 기구여서는 안된다. 재검기구 명단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 부문에서 공포한다.

제 52 조
국가는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제도를 수립한다.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은 출시, 판매하는 화장품의 부작용을 모니터링해야 하고, 즉시 평가를 진행하여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수탁생산기업, 화장품 경영자 및 의료기구에서 화장품 사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발견한 경우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기타 기관 및 개인이 화장품 사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기구 또는 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하는 것을 장려한다.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기구는 화장품 부작용 정보 수집, 분석 및 평가를 책임지고,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에 처리에 대한 건의를 제출한다.
화장품 생산, 경영자는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기구,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에 협조하여 화장품 부작용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화장품 부작용이란 정상적으로 화장품을 사용하여 야기한 피부 및 그 부속 기관(器官)의 병변 및 인체 국부 또는 전신성 손해를 가리킨다.

제 53 조
국가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리스크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화장품 품질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에 대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진행하며, 화장품 품질안전 리스크 통제 조치 및 표준을 제정, 화장품 샘플링 검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국가 화장품 안전성 리스크 모니터링 계획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제정, 발표하고 조직, 실시한다. 국가 화장품 안전성 리스크 모니터링 계획은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품목, 항목 및 지역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은 화장품 품질안전리스크 정보 교류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화장품 생산, 경영자, 검사기구, 업계협회, 소비자협회 및 신문, 매체 등을 조직하여 화장품 품질안전 리스크 정보에 대해 교류, 소통한다.

제 54 조
인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화장품의 경우,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은 생산, 경영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령하는 긴급통제조치를 취하고, 안전 경고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수입 화장품에 속하는 경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문에서 수입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 55 조
과학연구의 발전에 따라 화장품,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에 대해 인식 상의 변화가 있거나 화장품, 화장품 원료에 결함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문은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의 허가인, 등록인이 안전성평가를 진행하도록 명령하거나 직접 안전성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재평가 결과 화장품, 화장품 원료가 안전을 보증할 수 없을 경우 원래의 허가부문에서 허가를 철회하고, 등록부문에서 등록을 취소하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해당 화장품 원료를 화장품 생산에 사용을 금지하는 원료목록에 수록하고 사회에 공포한다.

제 56 조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화장품 행정허가, 등록, 일상 감독검사 결과, 위법행위 조사, 처리 등 감독관리정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감독관리정보를 공포할 때에는 당사자의 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은 화장품 생산, 경영자 신용정보 파일을 작성해야 한다. 불량신용기록이 있는 화장품 생산, 경영자에 대해서는 감독검사 빈도를 늘리고, 엄중한 불량신용기록이 있는 생산, 경영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연합 징계를 실시한다.

제 57 조
화장품 생산, 경영 과정에 안전성 위험이 있는데 즉시 조치를 취하여 제거하지 않은 경우 약품감독관리부문은 화장품 생산, 경영자의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에 대해 책임면담(责任约谈)을 진행할 수 있다. 화장품 생산, 경영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시정하고, 안전성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책임면담 정황 및 시정 상황은 화장품 생산자 경영자의 신용정보 파일에 기록한다.

제 58 조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은 반드시 본 부문의 웹사이트 주소, 전자메일 주소 또는 전화를 공포해야 하고 자문, 고발,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답변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조사하여 고발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제보자에게 보상을 제공한다.

제 5 장 법률책임

제 59 조
아래의 정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에서 위법소득, 위법생산, 경영한 화장품 및 위법 생산, 경영에 전문으로 사용한 원료, 포장재료, 공구, 설비 등 물품을 몰수한다. 위법 생산, 경영한 화장품 총가 금액이 1 만 위안이 안되는 경우 5 만 위안 이상, 1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총가 금액이 1 만 위안 이상인 경우 총가금액의 15 배 이상, 3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생산 및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리고, 등록부문에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원래의 허가증을 발급한 부문에서 화장품 허가증을 취소하고, 10 년 동안 화장품 등록을 처리하지 않거나 화장품 행정허가 신청을 수리하지 않으며, 위법기업의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 전년도에 해당 기업이 취득한 소득의 3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해당 인원에 대해 종신(终身)토록 화장품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허가를 거치지 않고 화장품 생산활동에 종사한 경우, 또는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이 화장품생산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기업에게 화장품생산을 의뢰한 경우
(2) 허가증을 받지 않은 특수 화장품을 생산 또는 수입한 경우

(3) 화장품 생산에 사용을 금지하는 원료를 사용했거나 응당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신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생산하였거나, 화장품에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불법으로 첨가하였거나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폐기 또는 회수한 화장품 또는 원료로 화장품을 생산한 경우

제 60 조
아래의 정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에서 위법소득, 위법 생산, 경영한 화장품과 위법 생산, 경영에 전문으로 사용한 원료, 포장재료, 공구, 설비 등 물품을 몰수한다. 위법 생산, 경영한 화장품 총가금액이 1 만 위안이 안되는 경우, 1 만 위안 이상, 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총가금액이 1 만 위안 이상의 경우 총가금액의 5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생산 및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리고, 등록부문에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원래의 허가증을 발급한 부문에서 화장품 허가증을 취소하고, 위법기업의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 전년도에 해당 기업이 취득한 소득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10 년 간 화장품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강제성 국가표준, 기술규범에 부합하지 않은 원료나 화장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포장재료를 사용하였거나, 응당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화장품 신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생산했거나, 강제성 국가표준 또는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강제성 국가표준, 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화장품 허가, 등록자료에 명시한 기술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생산, 경영한 경우
(3)화장품 생산품질 관리규범의 요구에 따라 생산하지 않은 경우
(4)화장품의 사용기한을 변경한 경우
(5)화장품 경영자가 임의로 화장품을 조제하였거나 변질, 사용기간이 지난 화장품을 사용한 경우
(6)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회수를 명했지만 명령을 거부하고 회수하지 않았거나,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생산, 경영을 일시 정지 또는 정지할 것을 명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생산, 경영을 일시 정지하지 않거나 또는 정지하지 않는 경우

제 61 조
아래의 정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에서 위법소득, 위법 생산, 경영한 화장품을 몰수하고, 동시에 위법 생산, 경영에 전문으로 사용한 원료, 포장재료, 공구, 설비 등 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위법 생산, 경영한 화장품의 총가금액이 1 만 위안 이안되는 경우, 1 만 위안 이상, 3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총가금액이 1 만 위안 이상인 경우 총가금액의 3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생산 및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리고, 등록부문에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원래의 허가증을 발급한 부 문에서 화장품 허가증을 취소하고, 위법기업의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 는 인원에 대해 전년도에 해당 기업이 취득한 소득의 1 배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10 년 간 화장품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등록하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출시판매, 경영 또는 수입한 경우
(2)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품질안전책임자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3)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이 수탁생산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해 감독하지 않은 경우
(4)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종업인원의 건강관리 제도를 수립 및 집행하지 않는 경우
(5) 라벨이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생산, 경영한 경우

생산, 경영한 화장품의 라벨에 문제가 있지만 제품의 품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 오인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며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수정하지 않은 경우, 2 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2 조
아래의 정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고조치를 취하며, 1 만 위안 이상, 3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생산 및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3 만 위안 이상, 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기업의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 1 만 위안 이상, 3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 효능선전 근거의 개요를 공포하지 않은 경우
(2)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입하검사 기록 제도 및 제품 판매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하지 않은 경우
(3)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 생산품질관리규범의 집행상황에 대해 자가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4)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을 저장 및 운송하지 않은 경우
(5)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작용 모니터링,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기구, 약품감독관리담당부문에서 진행하는 부작용 관련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수입상이 본 조례에 따라 수입 화장품 정보를 기록 및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서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63 조
화장품 신원료 허가인, 등록인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 신원료의 사용 및 안전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약품감독 관리부문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5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화장품 신원료 허가증을 취소하거나 화장품 신원료 등록을 취소하며, 동시에 2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4 조
화장품행정허가 신청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사기수단을 사용한 경우 행정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이미 행정허가를 받은 경우 행정허가 결정을 내린 부문에서 행정허가를 취소하고, 5 년 간 당사자의 화장품 관련 행정허가 신청을 수리하지 않으며, 위법소득과 위법 생산, 수입한 화장품을 몰수하고, 이미 생산, 수입한 화장품 총가금액이 1 만 위안이 안되는 경우 5 만 위안 이상, 1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총가금액이 1 만 위안 이상인 경우 총가금액의 15 배 이상, 3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기업의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 전년도에 해당 기업이 취득한 소득의 3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종신토록 화장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화장품 허가증을 위조, 변조,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 또는 원래의 증명서를 발급한 부분에서 몰수 또는 취소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이 1 만 위안이 안되는 경우, 5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1 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소득의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관리 행위를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에서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 처벌을 내리고,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5 조
등록 시 허위자료를 제공한 경우, 등록부문에서 등록을 취소하 고, 3 년 동안 해당 항목의 등록을 처리하지 않으며, 위법소득과 이미 생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몰수한다. 이미 생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의 총가금액이 1 만 위안이 안되는 경우, 1 만 위안 이상, 3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총가금액이 1 만 위안 이상인 경우, 총가금액의 3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생산, 영업 정지명령을 내리고, 원래의 허가증 발급부문에서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취소하고, 위법기업의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 전년도에 해당 기업이 취득한 소득의 1 배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5 년 동안 화장품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미 등록된 자료가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록부문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그 중에 화장품 및 화장품 신원료의 안전성과 관련된 등록자료가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록부문은 동시에 판매 및 사용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록부문에서 등록을 취소한다.
등록부문에서 등록을 취소하고 나서도 여전히 해당 화장품 신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해당 일반 화장품을 판매, 수입한 경우, 본 조례의 제 60 조,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66 조
화장품 집중거래시장의 설립자, 전시회 개최자가 본 조례에서 규정한 심사, 검사, 제지, 보고 등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2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황이 심각한 경우, 1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 과한다.

제 67 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본 조례에서 규정한 실명등기, 제지, 보고, 전자상거래 플랫품 서비스 제공 중단 등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 차지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무법(电子商务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68 조
화장품 경영자가 본 조례에서 규정한 입하검사 기록 등 의무를 이행하였고, 경영한 화장품이 강제성 국가표준, 기술규범에 부합하지 않거나 화장품 허가, 등록자료에 명시된 기술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강제성 국가표준, 기술규범에 부합하지 않거나 화장품 허가, 등록자료에 명시된 기술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영을 한 그 화장품을 몰수(收缴)하고, 행정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제 69 조

화장품 광고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기타 방식으로 화장품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선전을 한 경우,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 70 조
중국 국경 외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이 지정한 중국 국경 내의 기업 법인이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제품 회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조치를 취하며, 2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1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은 5 년 간 화장품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중국 국경 외의 화장품 허가, 등록인이 본 조례에 의거하여 내린 행정처분 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10 년 간 화장품 수입을 금지한다.

제 71 조
화장품 검사기구가 허위 검사보고서를 발급한 경우, 인증인가 감독관리부문에서 검사기구의 검사자질증서를 취소하고, 10 년 간 자질 인증신청을 수리하지 않으며, 수취한 검사비용을 몰수하고, 5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 전년도에 해당 기업이 취득한 소득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에 의거하여 강등(降低岗位), 면직 또는 해고 처분을 내린다. 해고 처분을 받은 경우, 10 년 간 화장품 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 72 조
화장품 기술심사평가기구,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기구 및 화장품 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지 않아, 기술심사, 평가, 부작용 모니터링 및 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업무에 중대한 실수를 일으킨 경우,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조치를 취하며, 통보하여 비평(通报批评)한다. 심각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강등, 면직 또는 해고 처분을 내린다.

제 73 조
화장품 생산, 경영자, 검사기관에서 화장품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되는 인원이나 화장품 검사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되는 인원을 고용, 채용하여 화장품 생산, 경영 또는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우,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 또는 기타 관련 부문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조치를 취한다. 거부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생산 및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화장품 허가증 취소, 검사기구 자질 증서를 취소할 수 있다.

제 74 조
아래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치안관리 위반행위가 성립 될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내리고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의 담당 직원이 법에 의거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2)증거자료를 위조, 소각, 은닉하거나 봉인, 압수한 물품을 은닉, 전이, 매도, 소각한 경우

제 75 조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의 직원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개인적 동기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경고조치를 취하고, 위반 또는 대위반 기록처분(记大过的处分)을 내린다. 심각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법에 따라 강등, 면직 또는 해고 처분을 내리고,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6 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인신, 재산 또는 기타 손해를 일으킨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 6 장 부칙

제 77 조
치약은 본 조례와 관련된 일반 화장품의 규정을 참조하여 관리한다. 치약 등록인은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따라 효능평가를 진행한 후 치약이 충치예방, 치석억제, 항(抗) 상아질 민감, 잇몸문제 경감 등의 효능이 있다고 선전할 수 있다. 치약의 구체적 관리방법은 국무원 약품 감독관리부분에서 제정하고,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하여 심사, 발표한다.

비누는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으나 특수 화장품의 효능이 있음을 선전할 경우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 78 조
본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이미 등록된 육모, 탈모, 가슴미용, 바디슬리밍, 제취 화장품은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5 년간의 과도기를 설정한다. 과도기 내에 생산, 수입, 판매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과도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해당 화장품을 생산, 수입, 판매할 수 없다.

제 79 조
본 조례에서 기술규범이라고 함은 아직 제정하지 않은 강제성 국가표준과 국무원 약품관리감독부서가 감독관리업무의 필요성과 결부하여 제정한 화장품품질안전보충 기술요구를 말한다.

제 80 조
본 조례는 202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동시에“화장품 위생감독조례”는 폐지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 727 호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전문 (중문)

化妆品监督管理条例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化妆品生产经营活动，加强化妆品监督管理，保证化妆品质量安全，保障消费者健康，促进化妆品产业健康发展，制定本条例。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化妆品生产经营活动及其监督管理，应当遵守本条例。

第三条　本条例所称化妆品，是指以涂擦、喷洒或者其他类似方法，施用于皮肤、毛发、指甲、口唇等人体表面，以清洁、保护、美化、修饰为目的的日用化学工业产品。

第四条　国家按照风险程度对化妆品、化妆品原料实行分类管理。

化妆品分为特殊化妆品和普通化妆品。国家对特殊化妆品实行注册管理，对普通化妆品实行备案管理。

化妆品原料分为新原料和已使用的原料。国家对风险程度较高的化妆品新原料实行注册管理，对其他化妆品新原料实行备案管理。

第五条　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负责全国化妆品监督管理工作。国务院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与化妆品有关的监督管理工作。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负责本行政区域的化妆品监督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与化妆品有关的监督管理工作。

第六条　化妆品注册人、备案人对化妆品的质量安全和功效宣称负责。

化妆品生产经营者应当依照法律、法规、强制性国家标准、技术规范从事生产经营活动，加强管理，诚信自律，保证化妆品质量安全。

第七条　化妆品行业协会应当加强行业自律，督促引导化妆品生产经营者依法从事生产经营活动，推动行业诚信建设。

第八条　消费者协会和其他消费者组织对违反本条例规定损害消费者合法权益的行为，依法进行社会监督。

第九条　国家鼓励和支持开展化妆品研究、创新，满足消费者需求，推进化妆品品牌建设，发挥品牌引领作用。国家保护单位和个人开展化妆品研究、创新的合法权益。

国家鼓励和支持化妆品生产经营者采用先进技术和先进管理规范，提高化妆品质量安全水平；鼓励和支持运用现代科学技术，结合我国传统优势项目和特色植物资源研究开发化妆品。

第十条　国家加强化妆品监督管理信息化建设，提高在线政务服务水平，为办理化妆品行政许可、备案提供便利，推进监督管理信息共享。

第二章　原料与产品

第十一条　在我国境内首次使用于化妆品的天然或者人工原料为化妆品新原料。具有防腐、防晒、着色、染发、祛斑美白功能的化妆品新原料，经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注册后方可使用；其他化妆品新原料应当在使用前向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备案。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可以根据科学研究的发展，调整实行注册管理的化妆品新原料的范围，经国务院批准后实施。

第十二条　申请化妆品新原料注册或者进行化妆品新原料备案，应当提交下列资料：
（一）注册申请人、备案人的名称、地址、联系方式；
（二）新原料研制报告；
（三）新原料的制备工艺、稳定性及其质量控制标准等研究资料；
（四）新原料安全评估资料。
注册申请人、备案人应当对所提交资料的真实性、科学性负责。

第十三条　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自受理化妆品新原料注册申请之日起 3 个工作日内将申请资料转交技术审评机构。技术审评机构应当自收到申请资料之日起 90 个工作日内完成技术审评，向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提交审评意见。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自收到审评意见之日起 20 个工作日内作出决定。对符合要求的，准予注册并发给化妆品新原料注册证；对不符合要求的，不予注册并书面说明理由。

化妆品新原料备案人通过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在线政务服务平台提交本条例规定的备案资料后即完成备案。

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自化妆品新原料准予注册之日起、备案人提交备案资料之日起 5 个工作日内向社会公布注册、备案有关信息。

第十四条　经注册、备案的化妆品新原料投入使用后 3 年内，新原料注册人、备案人应当每年向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报告新原料的使用和安全情况。对存在安全问题的化妆品新原料，由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撤销注册或者取消备案。3 年期满未发生安全问题的化妆品新原料，纳入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制定的已使用的化妆品原料目录。

经注册、备案的化妆品新原料纳入已使用的化妆品原料目录前，仍然按照化妆品新原料进行管理。

第十五条　禁止用于化妆品生产的原料目录由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制定、公布。

第十六条　用于染发、烫发、祛斑美白、防晒、防脱发的化妆品以及宣称新功效的化妆品为特殊化妆品。特殊化妆品以外的化妆品为普通化妆品。

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根据化妆品的功效宣称、作用部位、产品剂型、使用人群等因素，制定、公布化妆品分类规则和分类目录。

第十七条　特殊化妆品经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注册后方可生产、进口。国产普通化妆品应当在上市销售前向备案人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备案。进口普通化妆品应当在进口前向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备案。

第十八条　化妆品注册申请人、备案人应当具备下列条件：
（一）是依法设立的企业或者其他组织；
（二）有与申请注册、进行备案的产品相适应的质量管理体系；
（三）有化妆品不良反应监测与评价能力。

第十九条　申请特殊化妆品注册或者进行普通化妆品备案，应当提交下列资料：
（一）注册申请人、备案人的名称、地址、联系方式；
（二）生产企业的名称、地址、联系方式；
（三）产品名称；
（四）产品配方或者产品全成分；
（五）产品执行的标准；
（六）产品标签样稿；
（七）产品检验报告；
（八）产品安全评估资料。
注册申请人首次申请特殊化妆品注册或者备案人首次进行普通化妆品备案的，应当提交其符合本条例第十八条规定条件的证明资料。申请进口特殊化妆品注册或者进行进口普通化妆品备案的，应当同时提交产品在生产国（地区）已经上市销售的证明文件以及境外生产企业符合化妆品生产质量管理规范的证明资料；专为向我国出口生产、无法提交产品在生产国（地区）已经上市销售的证明文件的，应当提交面向我国消费者开展的相关研究和试验的资料。
注册申请人、备案人应当对所提交资料的真实性、科学性负责。

第二十条　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依照本条例第十三条第一款规定的化妆品新原料注册审查程序对特殊化妆品注册申请进行审查。对符合要求的，准予注册并发给特殊化妆品注册证；对不符合要求的，不予注册并书面说明理由。已经注册的特殊化妆品在生产工艺、功效宣称等方面发生实质性变化的，注册人应当向原注册部门申请变更注册。
普通化妆品备案人通过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在线政务服务平台提交本条例规定的备案资料后即完成备案。
省级以上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自特殊化妆品准予注册之日起、普通化妆品备案人提交备案资料之日起 5 个工作日内向社会公布注册、备案有关信息。

第二十一条　化妆品新原料和化妆品注册、备案前，注册申请人、备案人应当自行或者委托专业机构开展安全评估。
从事安全评估的人员应当具备化妆品质量安全相关专业知识，并具有 5 年以上相关专业从业经历。

第二十二条　化妆品的功效宣称应当有充分的科学依据。化妆品注册人、备案人应当在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规定的专门网站公布功效宣称所依据的文献资料、研究数据或者产品功效评价资料的摘要，接受社会监督。

第二十三条　境外化妆品注册人、备案人应当指定我国境内的企业法人办理化妆品注册、备案，协助开展化妆品不良反应监测、实施产品召回。

第二十四条　特殊化妆品注册证有效期为 5 年。有效期届满需要延续注册的，应当在有效期届满 30 个工作日前提出延续注册的申请。除有本条第二款规定情形外，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在特殊化妆品注册证有效期届满前作出准予延续的决定；逾期未作决定的，视为准予延续。
有下列情形之一的，不予延续注册：
（一）注册人未在规定期限内提出延续注册申请；
（二）强制性国家标准、技术规范已经修订，申请延续注册的化妆品不能达到修订后标准、技术规范的要求。

第二十五条　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负责化妆品强制性国家标准的项目提出、组织起草、征求意见和技术审查。国务院标准化行政部门负责化妆品强制性国家标准的立项、编号和对外通报。

化妆品国家标准文本应当免费向社会公开。

化妆品应当符合强制性国家标准。鼓励企业制定严于强制性国家标准的企业标准。

第三章　生产经营

第二十六条　从事化妆品生产活动，应当具备下列条件：

（一）是依法设立的企业；

（二）有与生产的化妆品相适应的生产场地、环境条件、生产设施设备；

（三）有与生产的化妆品相适应的技术人员；

（四）有能对生产的化妆品进行检验的检验人员和检验设备；

（五）有保证化妆品质量安全的管理制度。

第二十七条　从事化妆品生产活动，应当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提出申请，提交其符合本条例第二十六条规定条件的证明资料，并对资料的真实性负责。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对申请资料进行审核，对申请人的生产场所进行现场核查，并自受理化妆品生产许可申请之日起 30 个工作日内作出决定。对符合规定条件的，准予许可并发给化妆品生产许可证；对不符合规定条件的，不予许可并书面说明理由。

化妆品生产许可证有效期为 5 年。有效期届满需要延续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的规定办理。

第二十八条　化妆品注册人、备案人可以自行生产化妆品，也可以委托其他企业生产化妆品。

委托生产化妆品的，化妆品注册人、备案人应当委托取得相应化妆品生产许可的企业，并对受委托企业（以下称受托生产企业）的生产活动进行监督，保证其按照法定要求进行生产。受托生产企业应当依照法律、法规、强制性国家标准、技术规范以及合同约定进行生产，对生产活动负责，并接受化妆品注册人、备案人的监督。

第二十九条　化妆品注册人、备案人、受托生产企业应当按照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制定的化妆品生产质量管理规范的要求组织生产化妆品，建立化妆品生产质量管理体系，建立并执行供应商遴选、原料验收、生产过程及质量控制、设备管理、产品检验及留样等管理制度。

化妆品注册人、备案人、受托生产企业应当按照化妆品注册或者备案资料载明的技术要求生产化妆品。

第三十条　化妆品原料、直接接触化妆品的包装材料应当符合强制性国家标准、技术规范。

不得使用超过使用期限、废弃、回收的化妆品或者化妆品原料生产化妆品。

第三十一条　化妆品注册人、备案人、受托生产企业应当建立并执行原料以及直接接触化妆品的包装材料进货查验记录制度、产品销售记录制度。进货查验记录和产品销售记录应当真实、完整，保证可追溯，保存期限不得少于产品使用期限届满后 1 年；产品使用期限不足 1 年的，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 2 年。

化妆品经出厂检验合格后方可上市销售。

第三十二条　化妆品注册人、备案人、受托生产企业应当设质量安全负责人，承担相应的产品质量安全管理和产品放行职责。

质量安全负责人应当具备化妆品质量安全相关专业知识，并具有 5 年以上化妆品生产或者质量安全管理经验。

第三十三条　化妆品注册人、备案人、受托生产企业应当建立并执行从业人员健康管理制度。患有国务院卫生主管部门规定的有碍化妆品质量安全疾病的人员不得直接从事化妆品生产活动。

第三十四条　化妆品注册人、备案人、受托生产企业应当定期对化妆品生产质量管理规范的执行情况进行自查；生产条件发生变化，不再符合化妆品生产质量管理规范要求的，应当立即采取整改措施；可能影响化妆品质量安全的，应当立即停止生产并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报告。

第三十五条　化妆品的最小销售单元应当有标签。标签应当符合相关法律、行政法规、强制性国家标准，内容真实、完整、准确。

进口化妆品可以直接使用中文标签，也可以加贴中文标签；加贴中文标签的，中文标签内容应当与原标签内容一致。

第三十六条　化妆品标签应当标注下列内容：

（一）产品名称、特殊化妆品注册证编号；

（二）注册人、备案人、受托生产企业的名称、地址；

（三）化妆品生产许可证编号；

（四）产品执行的标准编号；

（五）全成分；

（六）净含量；

（七）使用期限、使用方法以及必要的安全警示；

（八）法律、行政法规和强制性国家标准规定应当标注的其他内容。

第三十七条　化妆品标签禁止标注下列内容：

（一）明示或者暗示具有医疗作用的内容；

（二）虚假或者引人误解的内容；

（三）违反社会公序良俗的内容；

（四）法律、行政法规禁止标注的其他内容。

第三十八条　化妆品经营者应当建立并执行进货查验记录制度，查验供货者的市场主体登记证明、化妆品注册或者备案情况、产品出厂检验合格证明，如实记录并保存相关凭证。记录和凭证保存期限应当符合本条例第三十一条第一款的规定。

化妆品经营者不得自行配制化妆品。

第三十九条　化妆品生产经营者应当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和化妆品标签标示的要求贮存、运输化妆品，定期检查并及时处理变质或者超过使用期限的化妆品。

第四十条　化妆品集中交易市场开办者、展销会举办者应当审查入场化妆品经营者的市场主体登记证明，承担入场化妆品经营者管理责任，定期对入场化妆品经营者进行检查；发现入场化

妆品经营者有违反本条例规定行为的，应当及时制止并报告所在地县级人民政府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

第四十一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应当对平台内化妆品经营者进行实名登记，承担平台内化妆品经营者管理责任，发现平台内化妆品经营者有违反本条例规定行为的，应当及时制止并报告电子商务平台经营者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发现严重违法行为的，应当立即停止向违法的化妆品经营者提供电子商务平台服务。

平台内化妆品经营者应当全面、真实、准确、及时披露所经营化妆品的信息。

第四十二条　美容美发机构、宾馆等在经营中使用化妆品或者为消费者提供化妆品的，应当履行本条例规定的化妆品经营者义务。

第四十三条　化妆品广告的内容应当真实、合法。

化妆品广告不得明示或者暗示产品具有医疗作用，不得含有虚假或者引人误解的内容，不得欺骗、误导消费者。

第四十四条　化妆品注册人、备案人发现化妆品存在质量缺陷或者其他问题，可能危害人体健康的，应当立即停止生产，召回已经上市销售的化妆品，通知相关化妆品经营者和消费者停止经营、使用，并记录召回和通知情况。化妆品注册人、备案人应当对召回的化妆品采取补救、无害化处理、销毁等措施，并将化妆品召回和处理情况向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报告。

受托生产企业、化妆品经营者发现其生产、经营的化妆品有前款规定情形的，应当立即停止生产、经营，通知相关化妆品注册人、备案人。化妆品注册人、备案人应当立即实施召回。

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在监督检查中发现化妆品有本条第一款规定情形的，应当通知化妆品注册人、备案人实施召回，通知受托生产企业、化妆品经营者停止生产、经营。

化妆品注册人、备案人实施召回的，受托生产企业、化妆品经营者应当予以配合。

化妆品注册人、备案人、受托生产企业、经营者未依照本条规定实施召回或者停止生产、经营的，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责令其实施召回或者停止生产、经营。

第四十五条　出入境检验检疫机构依照《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的规定对进口的化妆品实施检验；检验不合格的，不得进口。

进口商应当对拟进口的化妆品是否已经注册或者备案以及是否符合本条例和强制性国家标准、技术规范进行审核；审核不合格的，不得进口。进口商应当如实记录进口化妆品的信息，记录保存期限应当符合本条例第三十一条第一款的规定。

出口的化妆品应当符合进口国（地区）的标准或者合同要求。

第四章　监督管理

第四十六条　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对化妆品生产经营进行监督检查时，有权采取下列措施：

（一）进入生产经营场所实施现场检查；

（二）对生产经营的化妆品进行抽样检验；

（三）查阅、复制有关合同、票据、账簿以及其他有关资料；

（四）查封、扣押不符合强制性国家标准、技术规范或者有证据证明可能危害人体健康的化妆品及其原料、直接接触化妆品的包装材料，以及有证据证明用于违法生产经营的工具、设备；

（五）查封违法从事生产经营活动的场所。

第四十七条　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对化妆品生产经营进行监督检查时，监督检查人员不得少于 2 人，并应当出示执法证件。监督检查人员对监督检查中知悉的被检查单位的商业秘密，应当依法予以保密。被检查单位对监督检查应当予以配合，不得隐瞒有关情况。

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应当对监督检查情况和处理结果予以记录，由监督检查人员和被检查单位负责人签字；被检查单位负责人拒绝签字的，应当予以注明。

第四十八条　省级以上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应当组织对化妆品进行抽样检验；对举报反映或者日常监督检查中发现问题较多的化妆品，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可以进行专项抽样检验。

进行抽样检验，应当支付抽取样品的费用，所需费用纳入本级政府预算。

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应当按照规定及时公布化妆品抽样检验结果。

第四十九条　化妆品检验机构按照国家有关认证认可的规定取得资质认定后，方可从事化妆品检验活动。化妆品检验机构的资质认定条件由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制定。

化妆品检验规范以及化妆品检验相关标准品管理规定，由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制定。

第五十条　对可能掺杂掺假或者使用禁止用于化妆品生产的原料生产的化妆品，按照化妆品国家标准规定的检验项目和检验方法无法检验的，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可以制定补充检验项目和检验方法，用于对化妆品的抽样检验、化妆品质量安全案件调查处理和不良反应调查处置。

第五十一条　对依照本条例规定实施的检验结论有异议的，化妆品生产经营者可以自收到检验结论之日起 7 个工作日内向实施抽样检验的部门或者其上一级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提出复检申请，由受理复检申请的部门在复检机构名录中随机确定复检机构进行复检。复检机构出具的复检结论为最终检验结论。复检机构与初检机构不得为同一机构。复检机构名录由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公布。

第五十二条　国家建立化妆品不良反应监测制度。化妆品注册人、备案人应当监测其上市销售化妆品的不良反应，及时开展评价，按照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的规定向化妆品不良反应监测机构报告。受托生产企业、化妆品经营者和医疗机构发现可能与使用化妆品有关的不良反应的，应当报告化妆品不良反应监测机构。鼓励其他单位和个人向化妆品不良反应监测机构或者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报告可能与使用化妆品有关的不良反应。

化妆品不良反应监测机构负责化妆品不良反应信息的收集、分析和评价，并向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提出处理建议。

化妆品生产经营者应当配合化妆品不良反应监测机构、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开展化妆品不良反应调查。

化妆品不良反应是指正常使用化妆品所引起的皮肤及其附属器官的病变，以及人体局部或者全身性的损害。

第五十三条　国家建立化妆品安全风险监测和评价制度，对影响化妆品质量安全的风险因素进行监测和评价，为制定化妆品质量安全风险控制措施和标准、开展化妆品抽样检验提供科学依据。

国家化妆品安全风险监测计划由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制定、发布并组织实施。国家化妆品安全风险监测计划应当明确重点监测的品种、项目和地域等。

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建立化妆品质量安全风险信息交流机制，组织化妆品生产经营者、检验机构、行业协会、消费者协会以及新闻媒体等就化妆品质量安全风险信息进行交流沟通。

第五十四条　对造成人体伤害或者有证据证明可能危害人体健康的化妆品，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可以采取责令暂停生产、经营的紧急控制措施，并发布安全警示信息；属于进口化妆品的，国家出入境检验检疫部门可以暂停进口。

第五十五条　根据科学研究的发展，对化妆品、化妆品原料的安全性有认识上的改变的，或者有证据表明化妆品、化妆品原料可能存在缺陷的，省级以上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可以责令化妆品、化妆品新原料的注册人、备案人开展安全再评估或者直接组织开展安全再评估。再评估结果表明化妆品、化妆品原料不能保证安全的，由原注册部门撤销注册、备案部门取消备案，由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将该化妆品原料纳入禁止用于化妆品生产的原料目录，并向社会公布。

第五十六条　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应当依法及时公布化妆品行政许可、备案、日常监督检查结果、违法行为查处等监督管理信息。公布监督管理信息时，应当保守当事人的商业秘密。

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应当建立化妆品生产经营者信用档案。对有不良信用记录的化妆品生产经营者，增加监督检查频次；对有严重不良信用记录的生产经营者，按照规定实施联合惩戒。

第五十七条　化妆品生产经营过程中存在安全隐患，未及时采取措施消除的，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可以对化妆品生产经营者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进行责任约谈。化妆品生产经营者应当立即采取措施，进行整改，消除隐患。责任约谈情况和整改情况应当纳入化妆品生产经营者信用档案。

第五十八条　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应当公布本部门的网站地址、电子邮件地址或者电话，接受咨询、投诉、举报，并及时答复或者处理。对查证属实的举报，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举报人奖励。

第五章　法律责任

第五十九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由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没收违法所得、违法生产经营的化妆品和专门用于违法生产经营的原料、包装材料、工具、设备等物品；违法生产经营的化妆品货值金额不足 1 万元的，并处 5 万元以上 15 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 1 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 15 倍以上 30 倍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产停业、由备案部门取消备案或者由原发证部门吊销化妆品许可证件，10 年内不予办理其提出的化妆品备案或者受理其提出的化妆品行政许可申请，对违法单位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其上一年度从本单位取得收入的3倍以上5倍以下罚款，终身禁止其从事化妆品生产经营活动；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未经许可从事化妆品生产活动，或者化妆品注册人、备案人委托未取得相应化妆品生产许可的企业生产化妆品；

（二）生产经营或者进口未经注册的特殊化妆品；

（三）使用禁止用于化妆品生产的原料、应当注册但未经注册的新原料生产化妆品，在化妆品中非法添加可能危害人体健康的物质，或者使用超过使用期限、废弃、回收的化妆品或者原料生产化妆品。

第六十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由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没收违法所得、违法生产经营的化妆品和专门用于违法生产经营的原料、包装材料、工具、设备等物品；违法生产经营的化妆品货值金额不足 1 万元的，并处 1 万元以上 5 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 1 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 5 倍以上 20 倍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产停业、由备案部门取消备案或者由原发证部门吊销化妆品许可证件，对违法单位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其上一年度从本单位取得收入的 1 倍以上 3 倍以下罚款，10 年内禁止其从事化妆品生产经营活动；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使用不符合强制性国家标准、技术规范的原料、直接接触化妆品的包装材料，应当备案但未备案的新原料生产化妆品，或者不按照强制性国家标准或者技术规范使用原料；

（二）生产经营不符合强制性国家标准、技术规范或者不符合化妆品注册、备案资料载明的技术要求的化妆品；

（三）未按照化妆品生产质量管理规范的要求组织生产；

（四）更改化妆品使用期限；

（五）化妆品经营者擅自配制化妆品，或者经营变质、超过使用期限的化妆品；

（六）在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责令其实施召回后拒不召回，或者在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责令停止或者暂停生产、经营后拒不停止或者暂停生产、经营。

第六十一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由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没收违法所得、违法生产经营的化妆品，并可以没收专门用于违法生产经营的原料、包装材料、工具、设备等物品；违法生产经营的化妆品货值金额不足 1 万元的，并处 1 万元以上 3 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 1 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 3 倍以上 10 倍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产停业、由备案部门取消备案或者由原发证部门吊销化妆品许可证件，对违法单位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其上一年度从本单位取得收入的 1 倍以上 2 倍以下罚款，5 年内禁止其从事化妆品生产经营活动：

（一）上市销售、经营或者进口未备案的普通化妆品；

（二）未依照本条例规定设质量安全负责人；

（三）化妆品注册人、备案人未对受托生产企业的生产活动进行监督；

（四）未依照本条例规定建立并执行从业人员健康管理制度；

（五）生产经营标签不符合本条例规定的化妆品。

生产经营的化妆品的标签存在瑕疵但不影响质量安全且不会对消费者造成误导的，由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 2000 元以下罚款。

第六十二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由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并处 1 万元以上 3 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产停业，并处 3 万元以上 5 万元以下罚款，对违法单位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 1 万元以上 3 万元以下罚款：

（一）未依照本条例规定公布化妆品功效宣称依据的摘要；

（二）未依照本条例规定建立并执行进货查验记录制度、产品销售记录制度；

（三）未依照本条例规定对化妆品生产质量管理规范的执行情况进行自查；

（四）未依照本条例规定贮存、运输化妆品；

（五）未依照本条例规定监测、报告化妆品不良反应，或者对化妆品不良反应监测机构、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开展的化妆品不良反应调查不予配合。

进口商未依照本条例规定记录、保存进口化妆品信息的，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依照前款规定给予处罚。

第六十三条　化妆品新原料注册人、备案人未依照本条例规定报告化妆品新原料使用和安全情况的，由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处 5 万元以上 20 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吊销化妆品新原料注册证或者取消化妆品新原料备案，并处 20 万元以上 50 万元以下罚款。

第六十四条　在申请化妆品行政许可时提供虚假资料或者采取其他欺骗手段的，不予行政许可，已经取得行政许可的，由作出行政许可决定的部门撤销行政许可，5 年内不受理其提出的化妆品相关许可申请，没收违法所得和已经生产、进口的化妆品；已经生产、进口的化妆品货值金额不足 1 万元的，并处 5 万元以上 15 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 1 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 15 倍以上 30 倍以下罚款；对违法单位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其上一年度从本单位取得收入的 3 倍以上 5 倍以下罚款，终身禁止其从事化妆品生产经营活动。

伪造、变造、出租、出借或者转让化妆品许可证件的，由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或者原发证部门予以收缴或者吊销，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不足 1 万元的，并处 5 万元以上 10 万元以下罚款；违法所得 1 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 10 倍以上 20 倍以下罚款；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六十五条　备案时提供虚假资料的，由备案部门取消备案，3 年内不予办理其提出的该项备案，没收违法所得和已经生产、进口的化妆品；已经生产、进口的化妆品货值金额不足 1 万元的，并处 1 万元以上 3 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 1 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 3 倍以上 10 倍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产停业直至由原发证部门吊销化妆品生产许可证，对违法单位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其上一年度从本单位取得收入的 1 倍以上 2 倍以下罚款，5 年内禁止其从事化妆品生产经营活动。

已经备案的资料不符合要求的，由备案部门责令限期改正，其中，与化妆品、化妆品新原料安全性有关的备案资料不符合要求的，备案部门可以同时责令暂停销售、使用；逾期不改正的，由备案部门取消备案。

备案部门取消备案后，仍然使用该化妆品新原料生产化妆品或者仍然上市销售、进口该普通化妆品的，分别依照本条例第六十条、第六十一条的规定给予处罚。

第六十六条　化妆品集中交易市场开办者、展销会举办者未依照本条例规定履行审查、检查、制止、报告等管理义务的，由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处 2 万元以上 10 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并处 10 万元以上 50 万元以下罚款。

第六十七条　电子商务平台经营者未依照本条例规定履行实名登记、制止、报告、停止提供电子商务平台服务等管理义务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的规定给予处罚。

第六十八条　化妆品经营者履行了本条例规定的进货查验记录等义务，有证据证明其不知道所采购的化妆品是不符合强制性国家标准、技术规范或者不符合化妆品注册、备案资料载明的技术要求的，收缴其经营的不符合强制性国家标准、技术规范或者不符合化妆品注册、备案资料载明的技术要求的化妆品，可以免除行政处罚。

第六十九条　化妆品广告违反本条例规定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的规定给予处罚；采用其他方式对化妆品作虚假或者引人误解的宣传的，依照有关法律的规定给予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七十条　境外化妆品注册人、备案人指定的在我国境内的企业法人未协助开展化妆品不良反应监测、实施产品召回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药品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并处 2 万元以上 10 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处 10 万元以上 50 万元以下罚款，5 年内禁止其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从事化妆品生产经营活动。

境外化妆品注册人、备案人拒不履行依据本条例作出的行政处罚决定的，10 年内禁止其化妆品进口。

第七十一条　化妆品检验机构出具虚假检验报告的，由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吊销检验机构资质证书，10 年内不受理其资质认定申请，没收所收取的检验费用，并处 5 万元以上 10 万元以下罚款；对其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其上一年度从本单位取得收入的 1 倍以上 3 倍以下罚款，依法给予或者责令给予降低岗位等级、撤职或者开除的处分，受到开除处分的，10 年内禁止其从事化妆品检验工作；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七十二条　化妆品技术审评机构、化妆品不良反应监测机构和负责化妆品安全风险监测的机构未依照本条例规定履行职责，致使技术审评、不良反应监测、安全风险监测工作出现重大失误的，由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通报批评；造成严重后果的，对其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或者责令给予降低岗位等级、撤职或者开除的处分。

第七十三条　化妆品生产经营者、检验机构招用、聘用不得从事化妆品生产经营活动的人员或者不得从事化妆品检验工作的人员从事化妆品生产经营或者检验的，由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责令停产停业直至吊销化妆品许可证件、检验机构资质证书。

第七十四条　有下列情形之一，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阻碍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工作人员依法执行职务；

（二）伪造、销毁、隐匿证据或者隐藏、转移、变卖、损毁依法查封、扣押的物品。

第七十五条　负责药品监督管理的部门工作人员违反本条例规定，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警告、记过或者记大过的处分；造成严重后果的，依法给予降级、撤职或者开除的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七十六条　违反本条例规定，造成人身、财产或者其他损害的，依法承担赔偿责任。

第六章　附　　则

第七十七条　牙膏参照本条例有关普通化妆品的规定进行管理。牙膏备案人按照国家标准、行业标准进行功效评价后，可以宣称牙膏具有防龋、抑牙菌斑、抗牙本质敏感、减轻牙龈问题等功效。牙膏的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拟订，报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审核、发布。

香皂不适用本条例，但是宣称具有特殊化妆品功效的适用本条例。

第七十八条　对本条例施行前已经注册的用于育发、脱毛、美乳、健美、除臭的化妆品自本条例施行之日起设置 5 年的过渡期，过渡期内可以继续生产、进口、销售，过渡期满后不得生产、进口、销售该化妆品。

第七十九条　本条例所称技术规范，是指尚未制定强制性国家标准、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结合监督管理工作需要制定的化妆品质量安全补充技术要求。

第八十条　本条例自 2021 年 1 月 1 日起施行。《化妆品卫生监督条例》同时废止。

제 3 장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 제정 배경

- 중국정부는 중국 내 수입식품 급증에 따라 식품의 안전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수입식품의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규정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등록관리 규정을 발표함

- 2021 년 4 월 12 일,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중국 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등록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이하 '관리규정'이라 함)>과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을 발표하고 202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예정임

□ 입법취지

- 중국 내 해외식품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식품 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수출입 식품안전을 보장하며 기존에 분산되었던 등록관리 기관을 신(新)규정에서는 해관총서로 일원화하고 등록 관리 대상 및 대상업체를 명확히 함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주 요 변 경 내 용

해외 생산기업의 등록범위 확대	-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기업은 해관총서(GACC)에 해외 생산기업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수출작업장 생산업체의 등록범위를 종전의 육류□ 수산□ 유가공품□ 제비집 등의 4 개 식품군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관리 대상으로 구분함
해외 생산기업 소재국의 감독관리 강화	- 해외 생산기업 소재의 주관 당국(예:한국 식약처)의 감독관리역할을 강화하여 중국으로의 수출제품의 식품안전에 대하여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정보를 공유함 -정부관리대상은 상기 4 개 식품군을 포함하여 건강기능식품 등 14 개를 추가하여 총 18 개 식품군으로 확대하였으며 민간관리대상은 정부관리대상 외의 모든 식품으로 규정함
해외 생산기업의 등록조건	- 등록 조건으로 △수출 국가(예:한국)의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이 중국 해관총서와 동등 평가 수준이며 △수출 국가의 주관 정부 당국의 합법적 허가에 의하여 설립되고 감독을 받고 있으며 △식품안전 위생 관리와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합법적 생산 수출을 하며 중국의 식품 법규에 부합되어야 하고 △해관총서와 수출 해당 국가 간의 검역 요구 사항에 부합되어야 함
적용범위	- 중국으로의 수출 식품의 생산·가공·저장 등에 적용되며, 기타 수출입 식품첨가제 및 식품 포장재 등의 생산경영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음
라벨 표기	-수입식품의 라벨 표기는 반드시 중국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보건·특수 식품, 영유아식품, 임산부 영양보충제 등의 라벨은 반드시 판매 용기의 포장에 인쇄돼야 하고 스티커 등으로 부착해서는 안됨
등록 유효기간	- 등록의 유효기간을 종래 4 년에서 5 년으로 변경함

□ 시사점

- 본 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외기업에 대해 보다 엄격해진 심사방식이 적용될 것이 예상되므로 식품 안전 리스크 방지를 위하여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식품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됨

□ **출처**

-중문 원문 다운로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3619591/index.html

□ **파일첨부**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 전문 (한글본)

제 1 장　총칙

제 1 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대한 등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험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식품 등 제품에 대한 안전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 특별규정> 등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가공・저장 업체(이하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라 함)에 대한 등록 관리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앞 관(前款)에 규정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는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 생산・가공・저장 업체가 포함되지 않는다.

제 3 조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대한 등록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담당한다.

제 4 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반드시 해관총서의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등록 조건과 절차

제 5 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조건:
(1) 소재 국가(지역)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 해관총서의 동등성 평가・심사 통과
(2)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승인을 거쳐 설립되었고 주관 당국의 효과적인 감독・관리를 받음
(3) 효과적인 식품안전 위생관리와 예방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소재 국가(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 및 수출되었으며,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이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함을 보장함
(4) 해관총서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합의한 관련 검사검역 요구사항에 부합함

제 6 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방식에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등록을 추천하는 방식과 업체가 등록을 신청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해관총서는 식품 원료공급원・생산 가공공정・식품안전 역사데이터(历史数据)・소비자군・식용방식 등 요소에 대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또한 국제관례와 결합하여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방식과 신청서류를 확정한다.
리스크 분석 또는 어떤 종류의 식품 리스크에 변화가 발생함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을 경우, 해관총서는 관련 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방식과 신청서류를 조정할 수 있다.

제 7 조
아래에 열거하는 식품의 해외생산업체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해관총서에 등록을 추천한다.
육류와 육제품, 케이싱(肠衣),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燕窝)과 제비집 제품, 벌꿀제품, 계란과 계란제품, 식용유지와 식용유 원료, 소를 넣은 면류(包馅面食), 식용곡물, 곡물제분 공업제품과 맥아(麦芽), 신선도를 유지하고 건조시킨 채소(保鲜和脱水蔬菜) 및 건두(干豆), 조미료, 견과와 씨앗류, 마른 과일(干果), 로스팅을 하지 않은 커피콩과 코코아, 특수선식식품(特殊膳食食品), 건강식품(保健食品).

제 8 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반드시 등록을 추천하는 업체에 대한 심사검사를 실시하여 등록요구에 부합함을 확인한 후 해관총서에 등록을 추천하며 다음과 같은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1)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서한
(2) 업체명단과 업체 등록 신청서
(3) 업체신분증명서류, 예를 들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营业执照) 등
(4) 추천업체가 본 규정 요구에 부합함을 약속하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성명서
(5)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관련 업체에 대해 심사검사를 실시한 심사보고서

필요 시, 해관총서는 업체의 식품안전 위생과 예방시스템 문서, 예를 들면 업체 생산구역・작업장・냉동창고의 평면도 및 공정흐름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
본 규정 제 7 조에 열거된 식품 이외의 기타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생산업체는 반드시 자체적으로 또는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해관총서에 등록을 신청하고 다음과 같은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1) 업체 등록 신청서
(2) 업체신분증명서, 예를 들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 등
(3) 본 규정 요구사항에 부합함을 서약하는 업체의 성명서

제 10 조
업체의 등록 신청서 내용에는 기업명칭, 소재국가(지역)명, 생산장소 주소, 법정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승인한 등록번호, 등록신청 식품종류, 생산유형, 생산능력 등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11 조

등록 신청 서류는 중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며, 관련 국가(지역)와 중국이 등록방식과 신청서류에 대한 별로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양측 합의에 따라 이행한다.

제 12 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 완전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진다.

제 13 조
해관총서는 자체적으로 또는 관계 기관에 의뢰하여 심사팀을 구성하며, 서면검사・영상검사・현장검사 등 방식과 이러한 방식의 조합을 통하여 등록신청을 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팀은 2 명 이상의 평가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상기 평가심사 업무를 협조해야 한다.

제 14 조
해관총서는 평가심사 상황에 근거하여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대한 등록을 실시하고 중국에서의 등록번호를 부여하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등록을 허용해 주지 않고,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15 조
이미 등록된 기업이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경우, 반드시 식품 내 포장 및 외포장에 중국에서 부여받은 등록번호나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승인한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제 16 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 유효기간은 5 년이다.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시, 등록 유효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을 확정해야 한다.

제 17 조
해관총서는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명단을 일괄적으로 공표한다.

제 3 장　등록 관리

제 18 조
해관총서는 자체적으로 또는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심사팀을 구성하여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지속적으로 등록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한다. 심사팀은 2 명 이상의 평가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 19 조
등록 유효기간 내에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정보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등록신청 경로를 통해 해관총서에 변경 신청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1) 등록사항 변경 정보 대조표
(2) 변경된 정보와 관련한 증빙서류

해관총서는 평가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보변경을 허용한다.
생산 장소 이전, 법정대표자 변경 또는 소재 국가(지역)이 부여한 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중국에서의 등록번호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제 20 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등록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 3~6 개월 전에 등록신청 경로를 통해 해관총서에 등록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연장 신청 서류는 다음 서류를 포함한다.
(1) 등록연장 신청서
(2) 지속적으로 등록 요구사항에 부합함을 서약하는 성명서

해관총서는 등록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연장을 승인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5 년 연장한다.

제 21 조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관총서는 동 업체의 등록을 말소하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통보하고 이를 공표한다.
(1) 규정에 따라 등록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자진하여 말소 신청한 경우
(3) 본 규정 제 5 조 제(2)항 요구사항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 22 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등록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하고, 등록업체가 지속적으로 등록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독려하며, 등록 부적합 사항 발견 시 즉각 통제조치를 취하고 관련 업체의 대중국 식품 수출을 잠정 중단하며, 그 중단은 시정을 거쳐 등록 요구사항에 부합할 때까지 지속된다.
수입식품 해외등록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 부적합 사항을 발견할 경우, 자진하여 중국 수출을 잠정 중단하고 즉각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단은 시정을 거쳐 등록 요구사항에 부합할 때까지 지속된다.

제 23 조
해관총서가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더 이상 등록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음을 발견할 경우, 규정된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하고, 시정기간에는 관련 업체의 식품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등록을 추천한 업체가 수입 잠정 중단 결정을 받을 경우, 주관 당국은 관련 업체가 규정 기한 내에 시정을 완성하도록 감독해야 하며, 해관총서에 서면 시정보고서와 등록 요구사항 적합 서면 성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또는 대리인에 위탁하여 등록을 신청한 업체가 수입 잠정 중단 결정을 받을 경우, 규정 기한 내에 시정을 완성하여야 하며, 해관총서에 서면 시정보고서와 등록 요구사항 적합 서면 성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관총서는 업체의 개선 상황을 심사하며, 심사 합격할 경우 관련 업체의 식품 수입을 회복한다.

제 24 조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관총서는 동 업체의 등록을 철회하고 이를 공표한다.
(1) 업체 자체 원인으로 수입식품에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수입 검사검역 중 중국으로 수출된 식품에서 식품안전문제가 발견되었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3) 업체의 식품안전 위생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존재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이 안전위생 요구사항에 부합함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4) 시정조치를 이행했으나 여전히 등록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상황을 은폐한 경우
(6) 해관총서의 재조사와 사고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7) 등록번호를 임대, 대여, 양도, 전매, 도용하는 경우

제 4 장 부칙

제 25 조
국제기구 또는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지역)의 주관 당국이 전염병 상황을 발표하거나 수입 검사검역 중 관련 식품에서 전염병・공중보건사태 등 중대한 문제를 발견할 경우, 해관총서는 공고를 발표하여 해당 국가(지역)의 식품 수입을 잠정 중단해야 하고 이 기간에는 해당 국가(지역) 관련 식품생산업체의 등록 신청을 받지 않는다.

제 26 조
본 규정에서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라 함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있는 국가(지역)의 식품생산업체 안전위생 감독관리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를 말한다.

제 27 조
본 규정은 해관총서에서 해석을 담당한다.

제 28 조
본 규정은 2022.1.1.부터 시행한다. 2012.3.22. 원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 145 호와 2018.11.23. 해관총서령 제 243 호에 따라 개정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 전문 (중문)

中华人民共和国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加强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的注册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及其实施条例、《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等法律、行政法规的规定，制定本规定。

第二条 向中国境内出口食品的境外生产、加工、贮存企业（以下统称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的注册管理适用本规定。

前款规定的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不包括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的生产、加工、贮存企业。

第三条 海关总署统一负责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的注册管理工作。

第四条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应当获得海关总署注册。

第二章 注册条件与程序

第五条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条件：

（一）所在国家（地区）的食品安全管理体系通过海关总署等效性评估、审查；

（二）经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批准设立并在其有效监管下；

（三）建立有效的食品安全卫生管理和防护体系，在所在国家（地区）合法生产和出口，保证向中国境内出口的食品符合中国相关法律法规和食品安全国家标准；

（四）符合海关总署与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商定的相关检验检疫要求。

第六条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方式包括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推荐注册和企业申请注册。

海关总署根据对食品的原料来源、生产加工工艺、食品安全历史数据、消费人群、食用方式等因素的分析，并结合国际惯例确定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方式和申请材料。

经风险分析或者有证据表明某类食品的风险发生变化的，海关总署可以对相应食品的境外生产企业注册方式和申请材料进行调整。

第七条 下列食品的境外生产企业由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向海关总署推荐注册：肉与肉制品、肠衣、水产品、乳品、燕窝与燕窝制品、蜂产品、蛋与蛋制品、食用油脂和油料、包馅面食、食用谷物、谷物制粉工业产品和麦芽、保鲜和脱水蔬菜以及干豆、调味料、坚果与籽类、干果、未烘焙的咖啡豆与可可豆、特殊膳食食品、保健食品。

第八条 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应当对其推荐注册的企业进行审核检查，确认符合注册要求后，向海关总署推荐注册并提交以下申请材料：

（一）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推荐函；

（二）企业名单与企业注册申请书；

（三）企业身份证明文件，如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颁发的营业执照等；

（四）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推荐企业符合本规定要求的声明；

（五）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对相关企业进行审核检查的审查报告。

必要时，海关总署可以要求提供企业食品安全卫生和防护体系文件，如企业厂区、车间、冷库的平面图，以及工艺流程图等。

第九条 本规定第七条所列食品以外的其他食品境外生产企业，应当自行或者委托代理人向海关总署提出注册申请并提交以下申请材料：

（一）企业注册申请书；

（二）企业身份证明文件，如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颁发的营业执照等；

（三）企业承诺符合本规定要求的声明。

第十条 企业注册申请书内容应当包括企业名称、所在国家（地区）、生产场所地址、法定代表人、联系人、联系方式、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批准的注册编号、申请注册食品种类、生产类型、生产能力等信息。

第十一条 注册申请材料应当用中文或者英文提交，相关国家（地区）与中国就注册方式和申请材料另有约定的，按照双方约定执行。

第十二条 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或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应当对提交材料的真实性、完整性、合法性负责。

第十三条 海关总署自行或者委托有关机构组织评审组，通过书面检查、视频检查、现场检查等形式及其组合，对申请注册的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实施评估审查。评审组由 2 名以上评估审查人员组成。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和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应当协助开展上述评估审查工作。

第十四条 海关总署根据评估审查情况，对符合要求的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予以注册并给予在华注册编号，书面通知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或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对不符合要求的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不予注册，书面通知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或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

第十五条 已获得注册的企业向中国境内出口食品时，应当在食品的内、外包装上标注在华注册编号或者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批准的注册编号。

第十六条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有效期为 5 年。

海关总署在对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予以注册时，应当确定注册有效期起止日期。

第十七条 海关总署统一公布获得注册的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名单。

第三章 注册管理

第十八条 海关总署自行或者委托有关机构组织评审组，对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是否持续符合注册要求的情况开展复查。评审组由 2 名以上评估审查人员组成。

第十九条 在注册有效期内，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信息发生变化的，应当通过注册申请途径，向海关总署提交变更申请，并提交以下材料：

（一）注册事项变更信息对照表；

（二）与变更信息有关的证明材料。

海关总署评估后认为可以变更的，予以变更。

生产场所迁址、法定代表人变更或者所在国家（地区）授予的注册编号改变的应当重新申请注册，在华注册编号自动失效。

第二十条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需要延续注册的，应当在注册有效期届满前 3 至 6 个月内，通过注册申请途径，向海关总署提出延续注册申请。

延续注册申请材料包括：

（一）延续注册申请书；
（二）承诺持续符合注册要求的声明。
海关总署对符合注册要求的企业予以延续注册，注册有效期延长 5 年。

第二十一条 已注册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总署注销其注册，通知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或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并予以公布：
（一）未按规定申请延续注册的；
（二）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或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主动申请注销的；
（三）不再符合本规定第五条第（二）项要求的。

第二十二条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应当对已注册企业实施有效监管，督促已注册企业持续符合注册要求，发现不符合注册要求的，应当立即采取控制措施，暂停相关企业向中国出口食品，直至整改符合注册要求。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自行发现不符合注册要求时，应当主动暂停向中国出口食品，立即采取整改措施，直至整改符合注册要求。

第二十三条 海关总署发现已注册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不再符合注册要求的，应当责令其在规定期限内进行整改，整改期间暂停相关企业食品进口。
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推荐注册的企业被暂停进口的，主管当局应当监督相关企业在规定期限内完成整改，并向海关总署提交书面整改报告和符合注册要求的书面声明。
自行或者委托代理人申请注册的企业被暂停进口的，应当在规定期限内完成整改，并向海关总署提交书面整改报告和符合注册要求的书面声明。
海关总署应当对企业整改情况进行审查，审查合格的，恢复相关企业食品进口。

第二十四条 已注册的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总署撤销其注册并予以公告：
（一）因企业自身原因致使进口食品发生重大食品安全事故的；
（二）向中国境内出口的食品在进境检验检疫中被发现食品安全问题，情节严重的；
（三）企业食品安全卫生管理存在重大问题，不能保证其向中国境内出口食品符合安全卫生要求的；
（四）经整改后仍不符合注册要求的；
（五）提供虚假材料、隐瞒有关情况的；
（六）拒不配合海关总署开展复查与事故调查的；
（七）出租、出借、转让、倒卖、冒用注册编号的。

第四章 附则

第二十五条 国际组织或者向中国境内出口食品的国家（地区）主管当局发布疫情通报，或者相关食品在进境检验检疫中发现疫情、公共卫生事件等严重问题的，海关总署公告暂停该国家（地区）相关食品进口，在此期间不予受理该国家（地区）相关食品生产企业注册申请。

第二十六条 本规定中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指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所在国家（地区）负责食品生产企业安全卫生监管的官方部门。

第二十七条 本规定由海关总署负责解释。

第二十八条 本规定自 2022 年 1 月 1 日起施行。2012 年 3 月 22 日原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令第 145 号公布，根据 2018 年 11 月 23 日海关总署令第 243 号修改的《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同时废止。

제 4 장 온라인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

<온라인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의 시행



□ 제정 배경

-중국시장감독관리국은 2021 년 3 월 15 일 <온라인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이하 '본 방법')을 공표하여 2021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본 방법은 총 5 장 56 개 조항으로 총칙, 온라인거래사업자, 감독관리, 법적 책임과 부칙으로 구성됨

□ 입법취지

-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2019.1.1) 이후 소비자 권익 보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등 동법의 세부적 시행 방침을 구체화 하고자 공표된 것인데, 온라인거래감독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공정한 온라인 경쟁 거래질서를 수호하며 안전한 온라인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새로운 전자상거래 산업 모델 내	- SNS 를 통한 온라인거래와 라이브방송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예:왕홍, KOL)도 본 방법의 적용대상으로 봄

경영자에 대한 책임 규정	- SNS, 라이브방송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경영자에게 온라인 경영장소와 상품조회, 주문생성, 온라인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온라인거래 플랫폼경영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플랫폼 내에서 온라인 거래를 하는 경영자(판매자)는 플랫폼 내의 사업자 의무를 이행해야 함
플랫폼사업자의 책임강화	-온라인거래 플랫폼경영자(网络交易平台经营者)는 시장감독관리부서에 플랫폼 내 경영자(판매자)의 신분정보를 제공하고 플랫폼 내의 경여자(판매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정보에 대하여 검사모니터링제도를 구축하여야 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시에 조치하고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함
소비자의 권익보호문제	- 플랫폼 내 경영자(판매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함 - 온라인거래 플랫폼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판매자)가 소비자의 재산, 신체상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거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경영자와 플랫폼 내 경영자(판매자)는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문제	- 온라인거래 플랫폼경영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시 이에 대한 목적과 방식,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강압적 또는 변칙적으로 소비자를 강요하여 경영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하여서는 안됨 - 나아가 민감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일일이 소비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함

□ 시사점

-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다수의 주체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규율의 필요성이 있어서 본 규범이 제정되었음

-온라인거래 플랫폼경영자와 그 플랫폼 내의 경영자(판매자), 왕홍, 소비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규율하기 위하여 플랫폼사업자 및 플랫폼 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설계된 것이 특징임

-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전자상거래의 혁신에 적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규범의 동향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출처**

-중문 원문 다운로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http://gkml.samr.gov.cn/nsjg/fgs/202103/t20210315_326936.html

□ **파일첨부**

온라인거래 감독관리방법 전문 (한글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온라인 거래활동을 규범화하고 온라인 거래질서를 유지하며 온라인 거래 각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터넷 등 온라인 정보망(信息网络)을 통해(이하, '정보망을 통해'라 함)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 활동과 시장감독관리부서의 감독·관리에 본 방법을 적용한다.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온라인 라이브생방송 등 정보망 활동 중 상품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에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 3 조
온라인 거래 경영자(网络交易经营者)는 경영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반드시 자발성(自愿), 평등, 공정,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법률, 법규, 규장(规章)과 상거래 윤리, 공서양속을 준수하고 시장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하며,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체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며 사회 각계의 감독을 받는다.

제 4 조
온라인 거래 감독관리에서 혁신 장려, 포용성과 신중, 최저 기준의 엄정 준수(严守底线), 온·오프라인의 통합적 감독 원칙을 견지한다.

제 5 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의 온라인 거래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조직·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온라인 거래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 6 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온라인 거래 경영자, 온라인 거래 업계 조직, 소비자 조직, 소비자가 공동으로 온라인 거래 시장관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다원적 참여, 효과적 협동,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온라인 거래 시장관리 체계 완비를 추진한다.

제 2 장 온라인거래경영자(网络交易经营者)

제 1 절 일반규정

제 7 조
본 방법에서 온라인 거래 경영자는 온라인 거래 활동을 조직, 전개하는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을 말하며,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 자체 사이트 경영자 및 기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거래활동을 전개하는 온라인 거래 경영자를 포함한다.

본 방법에서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란 온라인 거래활동에서 거래 쌍방 또는 다방을 위해 온라인 경영장소, 거래 중개, 정보 공개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래 쌍방 또는 다방으로 하여금 온라인 거래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을 말한다.

본 방법에서 플랫폼 내 경영자(平台内经营者)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거래 활동을 하는 온라인 거래 경영자를 말한다.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라이브방송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경영자에게 온라인 경영 장소, 상품 검색, 주문 생성, 온라인 결제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상술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거래활동을 하는 경영자는 법에 따라 플랫폼 내 경영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온라인 거래 경영자는 법률, 법규, 국무원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경영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0 조에서 등록이 필요 없다고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시장주체 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이 온라인을 통해 청소, 세탁, 봉제, 이발, 이사, 열쇠 제조, 배관소통(管道疏通), 가전제품·가구 수리 등 법적으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주민편리 노무서비스(便民劳务活动)에 종사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0 조 규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다.

개인이 온라인 거래에 종사하고 연간 거래액 누계가 10 만 위안을 넘지 않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0 조 규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다. 동일 경영자가 같은 플랫폼이나 다른 플랫폼에 여러 개의 쇼핑몰을 개설한 경우, 각 쇼핑몰의 거래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소액거래를 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법에 의거 시장주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9 조
온라인을 통해서만 경영활동을 하는 플랫폼 내 경영자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려면 온라인 경영 장소를 영업장소로 등록하고 상시 거주지를 주소로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주소지의 현, 자치 현,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不设区的市), 시 관할구역의 시장감독관리부서를 등록기관으로 한다. 동일한 경영자가 둘 이상의 온라인 경영 장소가 있을 경우 이를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제 10 조
플랫폼 내 경영자가 온라인 경영 장소를 영업장소로 등록 신청한 경우 그가 입점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등록기관의 요구에 부합하는 온라인 경영 장소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제 11 조
온라인 거래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는 신체, 재산의 안전보장과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거래를 금지하거나 국익과 사회 공익에 손해를 끼쳐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온라인 거래 경영자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 또는 경영활동을 하는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경영자 주체 정보 또는 당해 정보의 링크 표시를 지속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온라인 거래 경영자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전자사업자 면허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업자 등록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미 시장주체 등록을 마친 온라인거래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록정보 및 해당 경영업무와 관련된 행정허가 등의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링크표시를 성실히 공시하여야 한다:
(1) 기업은 영업집조(营业执照)에 등재된 통합사회신용코드, 명칭, 기업유형, 법정대표자(책임자), 주소, 자본(출자액) 등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2) 개별 자영업자는 영업집조에 기재된 통합사회신용코드, 명칭, 경영자 성명, 경영장소, 조직형태 등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3) 농민전문협동조합·농민전문협동조합연합사는 영업집조에 등재된 통합사회신용코드·명칭·법정대표자·주소·회원출자총액 등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0 조에 따른 등록이 필요 없는 경영자는 자신의 실제 경영활동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기 성명(声明) 및 실제 경영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성실히 공시하거나 해당 정보의 링크 표시를 해야 한다:
(1) "개인이 가내에서 생산한 농부산품(农副产品) 판매는 법에 따라 시장주체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2) "개인이 가내수공업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에 따라 시장주체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3) "개인이 자신의 기능을 이용하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주민 편리 노동 활동에 종사하기에 법에 따라 시장주체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4) "개인이 산발적으로 소액 거래활동에 종사하기에 법에 따라 시장주체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온라인 거래 경영자가 공시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10 영업일 이내에 공시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 13 조
온라인 거래 경영자가 소비자 개인 정보를 수집·사용하는 경우 합법성, 정당성, 필요성 원칙에 따르고 정보 수집·사용 목적·방식·범위를 명시하고 소비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온라인 거래 경영자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함에 있어서 수집·사용 규칙을 공개하고 법률, 법규 및 쌍방 약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수집·사용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거래 경영자는 일괄 권한부여, 묵인 권한 부여, 다른 권한 부여와의 묶기(捆绑), 설치 사용 중단 등의 수단을 통해 소비자에게 영업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의 수집·사용 동의를 강요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 개인의 생체특성, 의료건강, 금융계좌, 개인 행적 등 민감 정보를 수집·사용할 때는 항목별로 소비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온라인 거래 경영자와 그 직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법 집행 활동에의 협조 외에 피취득자의 동의 없이 관련자를 포함한 어떠한 제 3 자에게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제 14 조
온라인 거래 경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등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경쟁질서를 교란하고 기타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온라인 거래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허위 혹은 오해를 유발하는 상업선전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오도해서는 안 된다:
(1) 허위 거래와 사용자 평가 조작,
(2) 오인을 유발하는 전시방식, 좋은 평가를 앞세우고 나쁜 평가를 뒤에 배치하거나 서로 다른 상품·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뚜렷이 구분하지 않는 것
(3) 허위 현물보유주장, 허위 주문, 허위 사재기 구매 (虚假抢购)등 허위 마케팅
(4) 허위의 조회수, 관심도 등의 데이터와 허구의 좋아요, 보상 등 거래 인터랙티브 데이터 조작

온라인 거래 경영자는 혼돈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상품·서비스로 또는 다른 사람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거래 경영자는 허위 정보나 오인성 정보를 조작, 전파하여 경쟁사의 상업 신용과 상품 평판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제 15 조
온라인 거래 경영자는 법률, 행정법규, 규장에 따라 게시 또는 전송이 금지된 정보가 소비자 평가에 포함되면 법에 따라 기술적인 처리를 할 수 있다.

제 16 조
온라인 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의 동의나 요청 없이 상업적인 정보를 보내서는 안된다.

온라인 거래 경영자는 상업적 정보 발송 시 반드시 그 실체와 연락처를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확실하고 간편하며 무료로 수신 거부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한 경우 즉시 발송을 중지하며, 명의를 바꾼 후 다시 발송해서는 안된다.

제 17 조
온라인 거래 경영자가 직접 상품·서비스를 끼워 팔거나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 눈에 띄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다양한 선택 옵션이 제공된 경우 끼워팔기 상품 또는 서비스의 어떤 옵션도 소비자의 묵인 동의로 설정되어서는 안되며, 소비자가 이전 거래에서 선택한 옵션을 후속의 독립된 거래에서 묵인 동의로 설정되어서도 안된다.

제 18 조
온라인 거래 경영자는 자동연장, 자동후속납부방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기 5 일 전이나 자동연장, 자동후속납부 등의 기일 5 일 전까지 눈에 띄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하며, 서비스 기간 내에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간편하게 수시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하며, 불합리한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된다.

제 19 조
온라인 거래 경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를 포괄적이고 진실되며 정확하고 적시에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 20 조
온라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온라인 라이브방송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거래하는 온라인 거래 경영자는 뚜렷한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 및 그 실제 경영 주체, 판매 후 서비스 등의 정보를 제시하거나 혹은 그 정보 링크 표시를 해야 한다.

온라인 생방송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 거래활동에 대한 생방송 영상을 생방송이 끝난 날로부터 3 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 21 조
온라인 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 통지, 공표 등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에 대해 뚜렷한 방식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하여야 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된 규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1) 온라인 거래 경영자가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수리, 재제조(重作), 교환, 반품, 상품수량 보충, 상품대금 및 서비스 비용 환불,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일부 면제
(2) 소비자가 수리, 교환, 반품, 손해배상 및 위약금 및 기타 합리적인 배상을 받을 권리를 배제·제한
(3) 소비자가 법에 의해 고소, 고발, 조정청구, 중재신청, 소송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제한
(4) 소비자가 법에 따라 계약 변경·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제한
(5) 온라인 거래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해석권 또는 최종 해석권을 향유한다고 규정
(6) 기타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

제 22 조
온라인 거래 경영자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및 권한을 위임 받은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시간, 특정 품목, 특정 지역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판매량, 매출액 등의 정보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제 23 조
온라인 거래 경영자가 스스로 온라인 거래를 중단할 경우 30 일 전에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나 뚜렷한 위치에 온라인 거래 중지 활동 공고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소비자와 관련 사업자의 적법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 절 온라인거래플랫폼 경영자

제 24 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网络交易平台经营者)는 플랫폼에 진입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신청하는 경영자에게 신분, 주소, 연락처, 행정허가 등의 진실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검증·등록하고, 등록 파일을 만들어 최소 6 개월마다 검증하고 갱신해야 한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시장주체 등록을 하지 않은 플랫폼 내 경영자에 대해 동태 감시를 진행하여야 하며, 본 방법 제 8 조 제 3 관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시장주체 등록을 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제 25 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부서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매년 1 월과 7 월에 각각 주소지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플랫폼 내 경영자의 다음의 신분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미 시장주체 등록을 한 플랫폼 내 경영자의 명칭(성명), 통합사회신용코드, 실제 영업주소, 연락처, 온라인 쇼핑몰 명칭 및 온라인 주소 링크 등의 정보,
(2) 시장주체 등록을 하지 않은 플랫폼 내 경영자의 성명, 신분증번호, 실제 영업주소, 연락처, 온라인 쇼핑몰 명칭 및 온라인 주소 링크, 법에 의해 시장주체등록이 필요 없는 구체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자기 성명(自我声明) 등 정보. 그 중 본 방법 제 8 조 제 3 관(款)에서 정한 액수 한도를 초과하는 플랫폼 내 경영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표시를 진행한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와 시장감독관리부서 간 데이터 인터페이스 개방 형태 등 자동화된 정보보고 메커니즘 구축을 권장한다.

제 26 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가 법에 따라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플랫폼 내 경영자가 공시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3 근무일 내에 변경 상황을 플랫폼에 보고하고, 플랫폼은 7 근무일 내에 검증하여 공시를 갱신해야 한다.

제 27 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시장주체 등록을 마친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를 뚜렷한 방식으로 구분해 소비자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8 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서비스 계약과 거래 규칙을 개정할 경우 개정된 버전(版本)이 발효하기 전 3 년 동안의 모든 과거 버전을 모두 보존하고, 경영자와 소비자가 완전하고 편리하게 열람과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9 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와 그들이 게시한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에 대한 검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의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가 시장감독관리 법률, 법규, 규장을 위반하여 국가 이익과 사회 공익을 해치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플랫폼 소재지의 현급 이상 시장 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30 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법률, 법규, 규장에 따라 또는 플랫폼 서비스 계약 및 거래 규칙에 의거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경고, 일시 정지 또는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조치를 결정한 날로부터 1 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며, 플랫폼 내 경영자의 온라인 쇼핑몰 명칭, 위법 행위, 처리 조치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경고, 서비스 잠정 중단 등 단기 처리에 관한 정보는 조치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공시해야 한다.

제 31 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의 신상정보를 보존하는 기간은 플랫폼 탈퇴일로부터 3 년 이상,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에 대한 지불기록, 물류택배, 환불 및 판매 후 서비스 등 정보의 보존기간은 거래가 완료된 날로부터 3 년 이상으로 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 32 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35 조 규정을 위반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의 플랫폼 내 거래, 거래가격 및 기타 경영자와의 거래 등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붙여 플랫폼 내 사업자의 자율경영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검색순위 하락 또는 검색누락, 영업제한, 점포 차단, 서비스 요금인상 등을 통해 플랫폼 내 경영자가 스스로 여러 플랫폼에서 선택하여 영업하는 것을 금지·제한하거나, 부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특정 플랫폼에서만 영업활동을 하도록 제한
(2) 플랫폼 내 경영자의 택배물류 등 거래보조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금지 또는 제한
(3) 그 밖에 경영자의 자율적 경영을 간섭하는 행위

제 3 장 감독관리

제 33 조
현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일상적인 관리와 법 집행활동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 주소지의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업무수요에 근거하여 파악한 플랫폼 내 경영자의 신분정보를 실제 경영지의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와 제때에 공유하여야 한다.

제 34 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감독 검사, 사건 조사, 사고 처리, 결함 소비재 리콜, 소비 분쟁 처리 등 감독 집행 활동을 전개할 때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관련 플랫폼 내 경영자의 신분 정보,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 지불 기록, 물류·배송, 반품 및 판매 후 서비스 등의 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기술적 측면에서 시장감독관리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온라인 거래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온라인 거래 경영자에게 홍보 선전, 지불 결제, 물류·배송, 온라인 접속, 서버 위탁관리, 가상호스트, 클라우드 서비스, 웹 디자인 제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이하, 기타 서비스 제공자)는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온라인 거래의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단속하는데 협력하고 보유하고 있는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온라인 거래 경영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법에 따라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 기타 서비스 제공자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 기타 서비스 제공자는 협조해야 한다.

제 35 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위법 혐의가 있는 온라인 거래 행위를 조사·처리할 때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법한 온라인 거래 행위와 관련된 장소 현장 점검
(2) 위법한 온라인 거래 행위와 관련된 계약서, 어음, 장부 등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3) 위법한 온라인 거래 행위와 관련된 전자데이터 수집, 조사, 복제
(4) 위법한 거래 혐의가 있는 온라인 거래 행위 당사자 신문
(5) 위법한 온라인 거래 행위와 관련된 자연인, 법인, 비법인 조직에 대한 조사를 통한 관련 상황 파악
(6) 법률, 법규가 인정한 기타 조치.

전관(前款)에 규정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법에 의거 비준(批准)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비준 수속을 해야 한다. 온라인 거래 위법행위에 대한 시장감독관리부서의 기술 감시 기록 자료는 행정 처벌이나 행정조치 실시를 위한 전자데이터 증거가 될 수 있다.

제 36 조
시장감독관리 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온라인 거래 경영자가 제공하는 데이터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고,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 영업비밀에 대해 엄격히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37 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온라인 거래 경영자에 대한 신용 감독을 실시하여 온라인 거래 경영자의 등록 등기, 기록, 행정 허가, 추출 검사 결과, 행정 처벌, 경영 이상 목록과 중대한 위법·불신 기업 명단 등의 정보를 국가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종합하여 공시한다. 중대한 위법·불신행위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연합(联合) 징계를 실시한다.

전관에서 규정한 정보는 시장감독관리부서 홈페이지, 온라인 검색엔진, 경영자가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홈페이지의 뚜렷한 위치 등을 통해 공시할 수 있다.

제 38 조
온라인 거래 경영자가 법에 따라 법정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온라인 거래 질서를 교란하거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책임 범위에 따라 그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와 면담(约谈)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법적책임

제 39 조
법률, 행정법규에 온라인 거래 위법행위의 처벌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 40 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본 방법 제 10 조를 위반하여 입점 플랫폼 내 경영자의 온라인 경영장소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1 만위안 이상 3 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1 조
온라인 거래 경영자가 본 방법 제 11 조, 제 13 조, 제 16 조, 제 18 조를 위반했을 때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책임 범위에 따라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5 천위안 이상 3 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42 조
온라인 거래 경영자가 본 방법 제 12 조, 제 23 조를 위반하여 법정 정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76 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그 중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8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3 조
온라인 거래 경영자가 본 방법 제 14 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4 조
온라인 거래 경영자가 본 방법 제 17 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77 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5 조
온라인 거래 경영자가 본 방법 제 20 조를 위반한 경우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른다.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1 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6 조

온라인 거래 경영자가 본 방법 제 22 조를 위반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5 천위안 이상 3 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7 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본 방법 제 24 조 제 1 항, 제 25 조 제 2 항, 제 31 조를 위반하여 법정 검증, 등록의무, 관련 정보보고 의무, 상품 및 서비스 정보 및 거래 정보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80 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8 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본 방법 제 27 조, 제 28 조, 제 30 조를 위반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1 만위안 이상 3 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9 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본 방법 제 29 조를 위반한 경우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른다. 법률, 행정법규 규정이 없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책임범위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1 만위안 이상 3 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50 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본 방법 제 32 조를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51 조
온라인 거래 경영자는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제 52 조
온라인 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공한 서비스가 신체 및 재산상 안전 보장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거나 응당 알아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당해 플랫폼 내 경영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소비자의 생명, 건강에 관계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온라인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의 자격에 대한 심사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 53 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집행 활동에 대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를 은닉, 파기, 이전하거나, 기타 거부하여 감독집행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법률, 행정 법규, 기타 시장감독관리부서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고, 법률, 행정 법규, 기타 시장감독관리부서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5 천위안 이상 3 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54 조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직원이 직무태만, 직권남용, 부정행위,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영업비밀 등을 누설, 판매 또는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제 55 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 장 부 칙

제 56 조
본 방법은 2021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2014 년 1 월 26 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 60 호로 공포한 <온라인거래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온라인거래 감독관리방법 전문 (중문)

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2021 年 3 月 15 日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第 37 号公布）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网络交易活动，维护网络交易秩序，保障网络交易各方主体合法权益，促进数字经济持续健康发展，根据有关法律、行政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通过互联网等信息网络（以下简称通过网络）销售商品或者提供服务的经营活动以及市场监督管理部门对其进行监督管理，适用本办法。

在网络社交、网络直播等信息网络活动中销售商品或者提供服务的经营活动，适用本办法。

第三条　网络交易经营者从事经营活动，应当遵循自愿、平等、公平、诚信原则，遵守法律、法规、规章和商业道德、公序良俗，公平参与市场竞争，认真履行法定义务，积极承担主体责任，接受社会各界监督。

第四条　网络交易监督管理坚持鼓励创新、包容审慎、严守底线、线上线下一体化监管的原则。

第五条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负责组织指导全国网络交易监督管理工作。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的网络交易监督管理工作。

第六条　市场监督管理部门引导网络交易经营者、网络交易行业组织、消费者组织、消费者共同参与网络交易市场治理，推动完善多元参与、有效协同、规范有序的网络交易市场治理体系。

第二章　网络交易经营者

第一节　一般规定

第七条　本办法所称网络交易经营者，是指组织、开展网络交易活动的自然人、法人和非法人组织，包括网络交易平台经营者、平台内经营者、自建网站经营者以及通过其他网络服务开展网络交易活动的网络交易经营者。

本办法所称网络交易平台经营者，是指在网络交易活动中为交易双方或者多方提供网络经营场所、交易撮合、信息发布等服务，供交易双方或者多方独立开展网络交易活动的法人或者非法人组织。

本办法所称平台内经营者，是指通过网络交易平台开展网络交易活动的网络交易经营者。

网络社交、网络直播等网络服务提供者为经营者提供网络经营场所、商品浏览、订单生成、在线支付等网络交易平台服务的，应当依法履行网络交易平台经营者的义务。通过上述网络交易平台服务开展网络交易活动的经营者，应当依法履行平台内经营者的义务。

第八条　网络交易经营者不得违反法律、法规、国务院决定的规定，从事无证无照经营。除《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第十条规定的不需要进行登记的情形外，网络交易经营者应当依法办理市场主体登记。

个人通过网络从事保洁、洗涤、缝纫、理发、搬家、配制钥匙、管道疏通、家电家具修理修配等依法无须取得许可的便民劳务活动，依照《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第十条的规定不需要进行登记。

个人从事网络交易活动，年交易额累计不超过 10 万元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第十条的规定不需要进行登记。同一经营者在同一平台或者不同平台开设多家网店的，各网店交易额合并计算。个人从事的零星小额交易须依法取得行政许可的，应当依法办理市场主体登记。

第九条　仅通过网络开展经营活动的平台内经营者申请登记为个体工商户的，可以将网络经营场所登记为经营场所，将经常居住地登记为住所，其住所所在地的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市场监督管理部门为其登记机关。同一经营者有两个以上网络经营场所的，应当一并登记。

第十条　平台内经营者申请将网络经营场所登记为经营场所的，由其入驻的网络交易平台为其出具符合登记机关要求的网络经营场所相关材料。

第十一条　网络交易经营者销售的商品或者提供的服务应当符合保障人身、财产安全的要求和环境保护要求，不得销售或者提供法律、行政法规禁止交易，损害国家利益和社会公共利益，违背公序良俗的商品或者服务。

第十二条　网络交易经营者应当在其网站首页或者从事经营活动的主页面显著位置，持续公示经营者主体信息或者该信息的链接标识。鼓励网络交易经营者链接到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电子营业执照亮照系统，公示其营业执照信息。

已经办理市场主体登记的网络交易经营者应当如实公示下列营业执照信息以及与其经营业务有关的行政许可等信息，或者该信息的链接标识：

（一）企业应当公示其营业执照登载的统一社会信用代码、名称、企业类型、法定代表人（负责人）、住所、注册资本（出资额）等信息；

（二）个体工商户应当公示其营业执照登载的统一社会信用代码、名称、经营者姓名、经营场所、组成形式等信息；

（三）农民专业合作社、农民专业合作社联合社应当公示其营业执照登载的统一社会信用代码、名称、法定代表人、住所、成员出资总额等信息。

依照《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第十条规定不需要进行登记的经营者应当根据自身实际经营活动类型，如实公示以下自我声明以及实际经营地址、联系方式等信息，或者该信息的链接标识：

（一）“个人销售自产农副产品，依法不需要办理市场主体登记”；

（二）“个人销售家庭手工业产品，依法不需要办理市场主体登记”；

（三）“个人利用自己的技能从事依法无须取得许可的便民劳务活动，依法不需要办理市场主体登记”；

（四）“个人从事零星小额交易活动，依法不需要办理市场主体登记”。

网络交易经营者公示的信息发生变更的，应当在十个工作日内完成更新公示。

第十三条　网络交易经营者收集、使用消费者个人信息，应当遵循合法、正当、必要的原则，明示收集、使用信息的目的、方式和范围，并经消费者同意。网络交易经营者收集、使用消费者个人信息，应当公开其收集、使用规则，不得违反法律、法规的规定和双方的约定收集、使用信息。

网络交易经营者不得采用一次概括授权、默认授权、与其他授权捆绑、停止安装使用等方式，强迫或者变相强迫消费者同意收集、使用与经营活动无直接关系的信息。收集、使用个人生物特征、医疗健康、金融账户、个人行踪等敏感信息的，应当逐项取得消费者同意。

网络交易经营者及其工作人员应当对收集的个人信息严格保密，除依法配合监管执法活动外，未经被收集者授权同意，不得向包括关联方在内的任何第三方提供。

第十四条　网络交易经营者不得违反《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等规定，实施扰乱市场竞争秩序，损害其他经营者或者消费者合法权益的不正当竞争行为。

网络交易经营者不得以下列方式，作虚假或者引人误解的商业宣传，欺骗、误导消费者：

（一）虚构交易、编造用户评价；

（二）采用误导性展示等方式，将好评前置、差评后置，或者不显著区分不同商品或者服务的评价等；

（三）采用谎称现货、虚构预订、虚假抢购等方式进行虚假营销；

（四）虚构点击量、关注度等流量数据，以及虚构点赞、打赏等交易互动数据。

网络交易经营者不得实施混淆行为，引人误认为是他人商品、服务或者与他人存在特定联系。

网络交易经营者不得编造、传播虚假信息或者误导性信息，损害竞争对手的商业信誉、商品声誉。

第十五条　消费者评价中包含法律、行政法规、规章禁止发布或者传输的信息的，网络交易经营者可以依法予以技术处理。

第十六条　网络交易经营者未经消费者同意或者请求，不得向其发送商业性信息。

网络交易经营者发送商业性信息时，应当明示其真实身份和联系方式，并向消费者提供显著、简便、免费的拒绝继续接收的方式。消费者明确表示拒绝的，应当立即停止发送，不得更换名义后再次发送。

第十七条　网络交易经营者以直接捆绑或者提供多种可选项方式向消费者搭售商品或者服务的，应当以显著方式提醒消费者注意。提供多种可选项方式的，不得将搭售商品或者服务的任何选项设定为消费者默认同意，不得将消费者以往交易中选择的选项在后续独立交易中设定为消费者默认选择。

第十八条　网络交易经营者采取自动展期、自动续费等方式提供服务的，应当在消费者接受服务前和自动展期、自动续费等日期前五日，以显著方式提请消费者注意，由消费者自主选择；在服务期间内，应当为消费者提供显著、简便的随时取消或者变更的选项，并不得收取不合理费用。

第十九条　网络交易经营者应当全面、真实、准确、及时地披露商品或者服务信息，保障消费者的知情权和选择权。

第二十条　通过网络社交、网络直播等网络服务开展网络交易活动的网络交易经营者，应当以显著方式展示商品或者服务及其实际经营主体、售后服务等信息，或者上述信息的链接标识。

网络直播服务提供者对网络交易活动的直播视频保存时间自直播结束之日起不少于三年。

第二十一条　网络交易经营者向消费者提供商品或者服务使用格式条款、通知、声明等的，应当以显著方式提请消费者注意与消费者有重大利害关系的内容，并按照消费者的要求予以说明，不得作出含有下列内容的规定：

（一）免除或者部分免除网络交易经营者对其所提供的商品或者服务应当承担的修理、重作、更换、退货、补足商品数量、退还货款和服务费用、赔偿损失等责任；

（二）排除或者限制消费者提出修理、更换、退货、赔偿损失以及获得违约金和其他合理赔偿的权利；

（三）排除或者限制消费者依法投诉、举报、请求调解、申请仲裁、提起诉讼的权利；

（四）排除或者限制消费者依法变更或者解除合同的权利；

（五）规定网络交易经营者单方享有解释权或者最终解释权；

（六）其他对消费者不公平、不合理的规定。

第二十二条　网络交易经营者应当按照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及其授权的省级市场监督管理部门的要求，提供特定时段、特定品类、特定区域的商品或者服务的价格、销量、销售额等数据信息。

第二十三条　网络交易经营者自行终止从事网络交易活动的，应当提前三十日在其网站首页或者从事经营活动的主页面显著位置，持续公示终止网络交易活动公告等有关信息，并采取合理、必要、及时的措施保障消费者和相关经营者的合法权益。

第二节　网络交易平台经营者

第二十四条　网络交易平台经营者应当要求申请进入平台销售商品或者提供服务的经营者提交其身份、地址、联系方式、行政许可等真实信息，进行核验、登记，建立登记档案，并至少每六个月核验更新一次。

网络交易平台经营者应当对未办理市场主体登记的平台内经营者进行动态监测，对超过本办法第八条第三款规定额度的，及时提醒其依法办理市场主体登记。

第二十五条　网络交易平台经营者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向市场监督管理部门报送有关信息。

网络交易平台经营者应当分别于每年1月和7月向住所地省级市场监督管理部门报送平台内经营者的下列身份信息：

（一）已办理市场主体登记的平台内经营者的名称（姓名）、统一社会信用代码、实际经营地址、联系方式、网店名称以及网址链接等信息；

（二）未办理市场主体登记的平台内经营者的姓名、身份证件号码、实际经营地址、联系方式、网店名称以及网址链接、属于依法不需要办理市场主体登记的具体情形的自我声明等信息；其中，对超过本办法第八条第三款规定额度的平台内经营者进行特别标示。

鼓励网络交易平台经营者与市场监督管理部门建立开放数据接口等形式的自动化信息报送机制。

第二十六条　网络交易平台经营者应当为平台内经营者依法履行信息公示义务提供技术支持。平台内经营者公示的信息发生变更的，应当在三个工作日内将变更情况报送平台，平台应当在七个工作日内进行核验，完成更新公示。

第二十七条　网络交易平台经营者应当以显著方式区分标记已办理市场主体登记的经营者和未办理市场主体登记的经营者，确保消费者能够清晰辨认。

第二十八条　网络交易平台经营者修改平台服务协议和交易规则的，应当完整保存修改后的版本生效之日前三年的全部历史版本，并保证经营者和消费者能够便利、完整地阅览和下载。

第二十九条　网络交易平台经营者应当对平台内经营者及其发布的商品或者服务信息建立检查监控制度。网络交易平台经营者发现平台内的商品或者服务信息有违反市场监督管理法律、法规、规章，损害国家利益和社会公共利益，违背公序良俗的，应当依法采取必要的处置措施，保存有关记录，并向平台住所地县级以上市场监督管理部门报告。

第三十条　网络交易平台经营者依据法律、法规、规章的规定或者平台服务协议和交易规则对平台内经营者违法行为采取警示、暂停或者终止服务等处理措施的，应当自决定作出处理措施之日起一个工作日内予以公示，载明平台内经营者的网店名称、违法行为、处理措施等信息。警示、暂停服务等短期处理措施的相关信息应当持续公示至处理措施实施期满之日止。

第三十一条　网络交易平台经营者对平台内经营者身份信息的保存时间自其退出平台之日起不少于三年；对商品或者服务信息，支付记录、物流快递、退换货以及售后等交易信息的保存时间自交易完成之日起不少于三年。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三十二条　网络交易平台经营者不得违反《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第三十五条的规定，对平台内经营者在平台内的交易、交易价格以及与其他经营者的交易等进行不合理限制或者附加不合理条件，干涉平台内经营者的自主经营。具体包括：

（一）通过搜索降权、下架商品、限制经营、屏蔽店铺、提高服务收费等方式，禁止或者限制平台内经营者自主选择在多个平台开展经营活动，或者利用不正当手段限制其仅在特定平台开展经营活动；

（二）禁止或者限制平台内经营者自主选择快递物流等交易辅助服务提供者；

（三）其他干涉平台内经营者自主经营的行为。

第三章　监督管理

第三十三条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在日常管理和执法活动中加强协同配合。

网络交易平台经营者住所地省级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根据工作需要，及时将掌握的平台内经营者身份信息与其实际经营地的省级市场监督管理部门共享。

第三十四条　市场监督管理部门在依法开展监督检查、案件调查、事故处置、缺陷消费品召回、消费争议处理等监管执法活动时，可以要求网络交易平台经营者提供有关的平台内经营者身份信息，商品或者服务信息，支付记录、物流快递、退换货以及售后等交易信息。网络交易平台经营者应当提供，并在技术方面积极配合市场监督管理部门开展网络交易违法行为监测工作。

为网络交易经营者提供宣传推广、支付结算、物流快递、网络接入、服务器托管、虚拟主机、云服务、网站网页设计制作等服务的经营者（以下简称其他服务提供者），应当及时协助市场监督管理部门依法查处网络交易违法行为，提供其掌握的有关数据信息。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市场监督管理部门发现网络交易经营者有违法行为，依法要求网络交易平台经营者、其他服务提供者采取措施制止的，网络交易平台经营者、其他服务提供者应当予以配合。

第三十五条　市场监督管理部门对涉嫌违法的网络交易行为进行查处时，可以依法采取下列措施：

（一）对与涉嫌违法的网络交易行为有关的场所进行现场检查；

（二）查阅、复制与涉嫌违法的网络交易行为有关的合同、票据、账簿等有关资料；

（三）收集、调取、复制与涉嫌违法的网络交易行为有关的电子数据；

（四）询问涉嫌从事违法的网络交易行为的当事人；

（五）向与涉嫌违法的网络交易行为有关的自然人、法人和非法人组织调查了解有关情况；

（六）法律、法规规定可以采取的其他措施。

采取前款规定的措施，依法需要报经批准的，应当办理批准手续。

市场监督管理部门对网络交易违法行为的技术监测记录资料，可以作为实施行政处罚或者采取行政措施的电子数据证据。

第三十六条　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采取必要措施保护网络交易经营者提供的数据信息的安全，并对其中的个人信息、隐私和商业秘密严格保密。

第三十七条　市场监督管理部门依法对网络交易经营者实施信用监管，将网络交易经营者的注册登记、备案、行政许可、抽查检查结果、行政处罚、列入经营异常名录和严重违法失信企业名单等信息，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统一归集并公示。对存在严重违法失信行为的，依法实施联合惩戒。

前款规定的信息还可以通过市场监督管理部门官方网站、网络搜索引擎、经营者从事经营活动的主页面显著位置等途径公示。

第三十八条　网络交易经营者未依法履行法定责任和义务，扰乱或者可能扰乱网络交易秩序，影响消费者合法权益的，市场监督管理部门可以依职责对其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进行约谈，要求其采取措施进行整改。

第四章　法律责任

第三十九条　法律、行政法规对网络交易违法行为的处罚已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四十条　网络交易平台经营者违反本办法第十条，拒不为入驻的平台内经营者出具网络经营场所相关材料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一万元以上三万元以下罚款。

第四十一条　网络交易经营者违反本办法第十一条、第十三条、第十六条、第十八条，法律、行政法规有规定的，依照其规定；法律、行政法规没有规定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依职责责令限期改正，可以处五千元以上三万元以下罚款。

第四十二条　网络交易经营者违反本办法第十二条、第二十三条，未履行法定信息公示义务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第七十六条的规定进行处罚。对其中的网络交易平台经营者，依照《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第八十一条第一款的规定进行处罚。

第四十三条　网络交易经营者违反本办法第十四条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的相关规定进行处罚。

第四十四条　网络交易经营者违反本办法第十七条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第七十七条的规定进行处罚。

第四十五条　网络交易经营者违反本办法第二十条，法律、行政法规有规定的，依照其规定；法律、行政法规没有规定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一万元以下罚款。

第四十六条　网络交易经营者违反本办法第二十二条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五千元以上三万元以下罚款。

第四十七条　网络交易平台经营者违反本办法第二十四条第一款、第二十五条第二款、第三十一条，不履行法定核验、登记义务，有关信息报送义务，商品和服务信息、交易信息保存义务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第八十条的规定进行处罚。

第四十八条　网络交易平台经营者违反本办法第二十七条、第二十八条、第三十条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一万元以上三万元以下罚款。

第四十九条　网络交易平台经营者违反本办法第二十九条，法律、行政法规有规定的，依照其规定；法律、行政法规没有规定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依职责责令限期改正，可以处一万元以上三万元以下罚款。

第五十条　网络交易平台经营者违反本办法第三十二条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第八十二条的规定进行处罚。

第五十一条　网络交易经营者销售商品或者提供服务，不履行合同义务或者履行合同义务不符合约定，或者造成他人损害的，依法承担民事责任。

第五十二条　网络交易平台经营者知道或者应当知道平台内经营者销售的商品或者提供的服务不符合保障人身、财产安全的要求，或者有其他侵害消费者合法权益行为，未采取必要措施的，依法与该平台内经营者承担连带责任。

对关系消费者生命健康的商品或者服务，网络交易平台经营者对平台内经营者的资质资格未尽到审核义务，或者对消费者未尽到安全保障义务，造成消费者损害的，依法承担相应的责任。

第五十三条　对市场监督管理部门依法开展的监管执法活动，拒绝依照本办法规定提供有关材料、信息，或者提供虚假材料、信息，或者隐匿、销毁、转移证据，或者有其他拒绝、阻碍监管执法行为，法律、行政法规、其他市场监督管理部门规章有规定的，依照其规定；法律、行政法规、其他市场监督管理部门规章没有规定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可以处五千元以上三万元以下罚款。

第五十四条　市场监督管理部门的工作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或者泄露、出售或者非法向他人提供在履行职责中所知悉的个人信息、隐私和商业秘密的，依法追究法律责任。

第五十五条　违反本办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五章　附　则

第五十六条　本办法自 2021 年 5 月 1 日起施行。2014 年 1 月 26 日原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 60 号公布的《网络交易管理办法》同时废止。

제 5 장 개인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 제정 배경

- 2021 년 8 월 20 일, 중국 <개인정보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이 중국 제 13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0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21 년 11 월 1 일부터 정식으로 시행中
- 개인정보보호법은 EU 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이라 함)"의 일부 규정을 참고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중국에서 최초로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는 종합적 기본 법률로 평가받고 있음 [11]
- 비록 중국 <민법전>,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네트워크안전법> 등에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이 있었지만 선언적·원칙적 조항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독립된 법제가 부족하였다는 점, 최근 일부 대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례들이 발생한 점, 이렇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거래하여 상업적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마케팅에 이용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입법의 배경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법이 통과되었는데, 2017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네트워크안전법>과 202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하는 <데이터안전법>과 더불어 개인정보와 데이터 영역에서의 3 대 핵심 법률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음

[11] 다만 GDPR 이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과 달리 중국의 신법은 인터넷 플랫폼기업과 같은 민간기업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출발했다는 점, 데이터주권의 측면에서 중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중국적 특징이 발견됨

□ 입법취지

- 개인정보호법의 핵심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규제 강화를 목표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과 단체는 개인정보 수집에 앞서 사전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사전 동의를 구하더라도 데이터 수집은 최소한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는 확실하고 합리적 목적이 있을 때만 수집하도록 하였음
- 수집한 개인 정보에 대하여 그 개인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처리나 사용을 거부하는 개인에게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함
- 데이터 주권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여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기업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중국 내에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안전 평가를 통과하여야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함

□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적용대상의 역외 확대	- 신법의 적용대상은 중국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역외에서 중국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적용 가능함
개인정보처리 원칙	-개인정보 처리 시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 목적과 부합하는 처리, 공개적이고 투명한 원칙 준수, 개인정보 처리 규칙 명시 등이 필요
개인정보 사용의 사전 고지와 동의	-개인정보 사용 시 사전고지와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계약의 이행·체결에 필요한 경우, 법적 직무· 법적 의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 그 예외를 인정함

개인정보를 이용한 차별대우 금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 의사결정 방식(예:알고리즘)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에 있어서 개인에게 비합리적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개인정보이전권 [12]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그가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가 서로 다른 플랫폼 사이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였음
민감정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	- 차별을 당할 수 있거나 신체·재산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14 세 미만 미성년자의 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해당 미성년자 정보의 처리 시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취득하도록 함
사자의 개인정보	-사자(死者)의 근친속(近亲属)이 사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시 그 사용목적이 적법하고 정당한 이익의 취득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권리는 열람·복제·수정·삭제 등의 권리에 한정하고 사자의 의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음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跨境提供)	① 국가 네트워크 정보부처의 안전성 평가 통과 ②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인증 진행 ③ 정부부서가 제정한 표준계약에 따라 중국 역외 수령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개인정보보호 표준에 부합하여야 함 ④ 법률, 행정법규 혹은 국가네트워크정보부처가 규정한 기타 조건을 만족한 경우 등, 4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만족 시 가능
처벌	심각한 위반 시 ①시정명령, 위법소득 몰수 ②최대 5,000 만 위안 이하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 이하 과태료 부과 ③책임자에게는 10 만~100 만 위안 과태료 ④관련 업무 정지, 영업 중단, 영업 허가 취소

[12] 이를 개인정보이전권(个人信息可携带权)이라 칭함

□ 시사점

- 개인정보보호법은 향후 전자상거래 기업, 온라인판매 플랫폼 기업, 빅데이터 활용기업, IT 기업 등의 각종 4 차산업혁명 관련 기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식 시행으로 인하여 앞으로 데이터 및 개인정보에 관한 법집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보다 각별히 규제사항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제도 제정, 개인정보의 분류 관리, 암호화 등 안전기술조치 시행, 담당인원 배치와 교육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관련 내부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신법에 의하면 개인의 금융계좌, 개인 행적, 의료건강 관련 정보는 민감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이용이 불가피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있어서 위법소지가 있는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 인터넷 플랫폼에 직접 진출하였거나 제 3 자의 위탁업체에 대행을 맡긴 경우에도 소비자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온라인상의 고지사항 등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역외 적용 조항에 따라, 향후 중국 역외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외기업의 경우에도 동 법이 적용되고 법 위반시 법적책임을 지는 점을 주의하여야 함
-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개인정보를 중국 내에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안전 평가를 통과하여야 비로소 국외 이전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관련규정에 부합하는지 살펴 보아야 함

□ 출처

- 중문 원문 다운로드: 중국국가법률법규 DB (国家法律法规数据库)

https://flk.npc.gov.cn/detail2.html?ZmY4MDgxODE3YjY0NzJhMzAxN2I2NTZjYzIwNDAwNDQ%3D

□ **파일첨부**

≪중화인민공화국개인정보보호법≫ 전문 (한글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개인정보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 행위를 규정하며, 개인정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자 헌법에 근거하여 본 법률을 제정한다.

제 2 조 자연인의 개인정보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기관, 개인도 자연인의 개인정보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자연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자연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아래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본 법률을 적용한다.
(1) 국내 자연인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국내 자연인을 분석, 평가하는 행위
(3) 법률 및 행정법규 상 규정된 기타 사항

제 4 조 개인정보란 전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기록되고 이미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 관련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익명화 처리 이후의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처리에는 개인정보 수집, 보관, 사용, 가공, 이전, 제공, 공개, 삭제 등 행위가 포함된다.

제 5 조 개인정보 처리 시 합법성, 정당성, 필요성,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오도(误导), 사기, 협박 등 방식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제 6 조 개인정보 처리 시 목적이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처리 목적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고, 개인의 권익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은 처리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며,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아야 한다.

제 7 조 개인정보 처리 시 공개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처리 규칙을 공개하고, 처리 목적, 방식 및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의 품질(质量)을 보장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부정확함, 불완전함으로 인해 개인의 권익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9 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자신이 처리한 개인정보 보안을 보장해야 한다.

제 10 조 모든 기관, 개인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처리 또는 전송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매매,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을 위협하는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제 11 조 국가는 완비된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수립하고 개인정보권익 침해행위를 예방, 처벌하며 개인정보보호 홍보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 기업, 관련 사회조직, 공중이 개인정보 보호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우수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 12 조 국가는 개인정보보호 국제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며 기타 국가, 지역, 국제기구 간 개인정보보호 규칙 및 표준 등 상호 인증을 추진한다.

제 2 장 개인정보 처리 규칙

제 1 절 일반 규정

제 13 조 아래 사항 중 한 가지에 부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개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개인을 일방 당사자로 하는 계약 수립 또는 이행에 필요한 경우이거나, 법령에 따라 정해진 노동규장(劳动规章) 제도 및 법률에 따라 체결된 단체계약에 따른 인적자원관리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3) 법적 직무 또는 법적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돌발적인 공공보건사태에 대응하거나 응급한 상황에서 자연인의 생명건강 및 재산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5)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문 보도, 여론 모니터링 행위 등을 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6) 본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이 공개한 개인정보 또는 기타 이미 합법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7)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상황

본 법의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위의 제 2 호에서 제 7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제 14 조 개인정보 처리 동의는 개인이 충분히 상황을 파악한다는 전제 하에 스스로 원한다는 것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의 별도 동의 또는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처리 방식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유형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인으로부터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5 조 개인 동의에 근거하여 진행한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하여 개인은 그 동의를 철회할 권리를 가진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편리하고 빠른 철회 동의 방식을 제공해야한다.

개인 동의 철회는 철회 전에 개인이 이미 동의하여 진행한 개인정보 처리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6 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부동의 또는 개인정보 동의 철회를 이유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가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7 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전 분명한 방식과 명료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사실적이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아래 사항을 개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연락처
(2) 개인정보 처리 목적, 처리 방식, 처리하는 개인정보 유형, 보관 기간
(3) 개인이 본 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 및 절차
(4)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되어 고지하여야 할 기타 사항
위에 규정된 사항에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동 사항을 개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규칙을 제정하는 방식을 통해 위에 규정된 사항을 고지하는 경우, 처리 규칙은 공개되어야 하고 열람 및 보관이 편리해야 한다.

제 18 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에서 기밀 유지 또는 고지 불필요를 규정하였다면 위 조항(前**条**) 중 각 1 호에 규정된 사항을 개인에게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자연인의 생명 건강 및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즉시 개인에게 고지할 방법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긴급한 사항이 해소된 이후 지체 없이 이를 고지해야 한다.

제 19 조 법률, 행정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관기간은 처리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최단 시간이어야 한다.

제 20 조 둘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처리 방식을 함께 결정하는 경우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해야 한다. 단, 해당 약정은 개인이 그 중 임의의 개인정보처리자 1 인에게 본 법에 규정된 권리 행사를 요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공동으로 처리하며 개인정보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끼치는 경우 법에 근거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

제 21 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수탁 처리 목적, 기한, 처리 방식, 개인정보 유형, 보호조치 및 양측의 권리의무 등을 약정해야 하며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수탁자는 약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약정한 처리 목적, 처리 방식 등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위탁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무효이거나 철회 또는 중지된 경우,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하고,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수탁자는 타인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재위탁할 수 없다.

제 22 조 개인정보처리자가 합병, 분할, 해산,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개인에게 이전 받는 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연락처를 고지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기존의 처리 목적, 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본 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에게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23 조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처리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에게 제공받는 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연락처, 처리 목적, 처리 방식 및 개인정보 유형을 고지하고 개인으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공받는 자는 위에서 언급한 처리 목적, 처리 방식 및 개인 정보 유형 등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제공받는 자가 기존의 처리 목적, 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본 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에게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24 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동화 의사결정(自动化决策)을 실시하는 경우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처리 결과의 공평성, 공정성을 보장해야 하고,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자동화 의사결정 방식을 통하여 개인에게 정보 발송(信息推送), 상업적 마케팅을 하는 경우, 동시에 그 개인의 특징을 특정하지 않는 선택항목을 제시하거나 개인에게 편리한 거절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
자동화 의사 결정이 개인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는 경우, 개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개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 의사 결정 방식만을 통하여 내린 의사 결정을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제 25 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으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26 조 공공장소에 이미지(图像) 수집, 개인신분 식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공공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이어야 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분명한 안내 표식을 설치한다. 수집한 개인 이미지, 개인신분 특징 정보는 공공안전 보호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단, 개인으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27 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이 공개한 개인정보 또는 기타 이미 합법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명확히 거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인정보 공개 시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2 절 민감 개인정보 처리 규칙

제 28 조 민감 개인정보란 일단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되면 자연인의 인격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인신, 재산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말하며, 생물학적 식별, 종교 신앙, 특정 신분, 의료 건강, 금융 계좌, 행적 등 정보와 만 14 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특정 목적과 충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엄격한 보호조치를 취하면서 민감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29 조 민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으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민감 개인정보 처리 시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 30 조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본 법 제 17 조 제 1 관(款)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개인에게 민감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 및 개인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지해야 한다. 본 법 규정에 따라 개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1 조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 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 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규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32 조 법률, 행정법규에서 민감 개인정보 처리 시 관련 행정 허가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거나 따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 3 절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특별 규정

제 33 조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는 본 법을 적용한다. 본 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본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34 조 국가기관이 법적 직무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권한,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해야 하며 법적 직무에 필요한 범위 및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 35 조 국가기관이 법적 직무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본 법 규정에 근거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 법 제 18 조제 1 항 규정의 경우 또는 고지가 국가기관의 법적 직무 이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36 조 국가기관이 처리한 개인정보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境内)에 보관되어야 한다. 경외(境外)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경우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위험 평가 시 관련 부처에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37 조 법률, 법규가 권한을 부여한 공공사무 관리 직무를 가진 기구가 법정 책임을 담당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본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장 개인정보 국외(跨境) 제공 규칙

제 38 조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 상 필요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외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다음 조건 중 최소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1) 본 법률 제 40 조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처 기관의 안전성 평가 통과
(2)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처 규정에 근거하여 전문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 진행
(3)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처(网信部门)가 제정한 표준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
(4)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처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했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에 중화인민공화국 국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조건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을 따를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국외에서 개인정보를 받는 자(接收方)의 개인정보 처리 활동이 본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표준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9 조 개인정보처리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에게 해외에서 정보를 이전 받는 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연락처, 처리 목적, 처리 방식, 개인정보 유형을 고지하고, 그 개인에게 해외에서 정보를 이전 받는 자를 상대로 본 법에서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과 절차 등 사항을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40 조 핵심정보 인프라 운영자(关键信息基础设施运营者)와 개인정보 처리가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처에서 규정한 수량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수집하고 생성된 개인정보를 경내에 보관해야 한다. 이를 국외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처 기관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처 규정에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 41 조 중화인민공화국 주관 기관은 국외의 사법 또는 법집행 기구가 국내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 관련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 또는 평등호혜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주관 기관의 비준이 없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외국 사법 또는 법집행 기구에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 42 조 국외 기관,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의 개인정보 권익을 침해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안보, 공공이익을 위협하는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처는 이를 개인정보 제공 제한 또는 금지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공지하며 해당 기관 또는 개인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3 조 어떠한 국가 및 지역이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차별적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형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등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 장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관한 개인의 권리

제 44 조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알 권리와 결정권을 가지며 타인에 의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45 조 개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복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본 법 제 18 조제 1 항과 제 35 조에서 규정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복제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즉시 이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이 개인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처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이전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제 46 조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경정, 보완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경정,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즉시 경정, 보완해야 한다.

제 47 조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파기하지 않을 경우, 개인은 파기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1) 처리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거나, 실현할 수 없거나, 처리 목적 실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개인이 동의를 철회한 경우
(4)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거나 약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5)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된 기타 사항

법률, 행정법규상 규정된 보관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기술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저장 및 필요한 보안보호 조치 외의 처리를 중지해야 한다.

제 48 조 개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규칙에 대한 해석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 49 조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 자신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사망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열람, 복제, 경정, 삭제 등의 권리는 가까운 친족이 행사할 수 있다. 사망자가 생전에 별도로 준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50 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편리한 신청 접수 및 처리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한다. 개인의 권리 행사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의 권리 행사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개인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5 장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제 51 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 처리 방식, 개인정보 유형 및 개인권익에 대한 영향, 존재할 수 있는 안전성 위험 등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부합함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권한을 획득하지 않은 접근 및 개인정보 유출, 변조, 분실을 예방해야 한다.
(1) 내부 관리 제도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한다.
(2) 개인정보를 분류하여 관리한다.
(3) 암호화, 비식별화(去标识化) 등 상응하는 보안 기술 조치를 취한다.

(4) 개인정보 처리 운영 권한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종사자에 대한 보안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5) 개인정보 안전사건 응급방안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6)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치를 취한다.

제 52 조 개인정보 처리가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처에서 규정한 일정 수량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 처리 행위 및 보호 조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연락처 등을 공개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개인정보 보호 직무 담당 부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 53 조 본 법 제 3 조제 2 항에서 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외 개인정보처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전문 기관을 설립하거나 대표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무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관기관의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개인정보 보호 직무 담당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 54 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개인정보 처리가 법률, 행정법규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 55 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대해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처리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1) 민감 개인정보 처리
(2)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동 의사 결정
(3) 개인정보 처리 위탁, 제 3 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 공개
(4) 개인정보 국외 이전
(5)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개인정보 처리 행위

제 56 조 개인정보보호 영향 평가에는 다음의 내용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처리 목적, 처리 방식 등의 합법성, 정당성, 필요성
(2) 개인 권익에 대한 영향 및 위험도 수준
(3) 적용 보호조치의 합법성, 유효성 및 위험성 수준에 상응하는 정도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보고서 및 처리상황 기록은 최소 3 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 57 조 개인정보의 유출, 변조, 분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즉시 구제 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 보호 직무 담당 부처 및 개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통지 내용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출, 변조, 분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 유형, 원인 및 발생될 수 있는 피해
(2)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한 구제 조치 및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피해 완화 조치
(3) 개인정보처리자의 연락처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한 조치를 통해 정보 유출, 변조, 분실 등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직무 담당 부처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통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 58 조 중요한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제공하거나, 이용자 수량이 상당히 많거나 업무 유형이 복잡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래의 의무를 지켜야한다.
(1) 국가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적법한 제도체계를 확립하고, 주로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독립 기구를 설립하여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대해서 감독한다.
(2)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따라 플랫폼 내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규범과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플랫폼 규칙을 제정한다.
(3) 법률, 행정법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 내의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서비스를 중지한다.
(4) 개인정보보호 사회책임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배포하여 사회적 감독을 받는다.

제 59 조 개인정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수탁자는 본 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개인정보의 안전을 보장하고, 본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협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 장 개인정보 보호 직무 담당 부처

제 60 조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처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및 관리감독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국무원의 관련부서는 본 법률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현(县)급 이상 지방정부 관련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감독 직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위의 두 관(款)에서 규정한 부처를 통칭 개인정보 보호 직무 담당 부처라 한다.

제 61 조 개인정보 보호 직무 담당 부처는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이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홍보교육,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업무 지도 및 감독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민원, 신고 접수 및 처리
(3) 애플리케이션(应用程序) 등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발표
(4)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 행위 조사, 처리
(5)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직무사항

제 62 조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처는 유관 부처를 총괄 조정하여 본 법률에 근거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추진한다.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과 표준 제정
(2) 소형 개인정보 처리자, 민감 개인정보 및 안면인식, 인공지능 등 신기술, 신응용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개인정보 보호규칙과 표준 제정
(3)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신분인증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확산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신원인증을 위한 공공 서비스 구축 추진
(4) 개인정보 보호 사회화 서비스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유관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평가, 인증 서비스 지원
(5) 개인정보 보호 민원, 신고 업무 체제 개선

제 63 조 개인정보 보호 직무 담당 부처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수행 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당사자에게 질문하여 개인정보 처리 행위 관련 현황 조사
(2) 당사자의 개인정보 처리행위 관련 계약서, 기록, 장부 및 기타 자료 열람, 복사
(3)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 혐의가 있는 행위 조사
(4) 개인정보 처리 행위와 관련된 설비, 물품 검사.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있다는 증거가 증명되는 설비, 물품에 대해서 본 부서의 주요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 압류 또는 압수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 직무 담당 부처는 법에 근거하여 직무를 담당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조와 협력해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 64 조 개인정보 보호 직무 담당 부처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상당한 위험이 있거나 개인정보 보안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발견한 경우, 규정의 권한 및 절차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와 면담(约谈)을 진행할 수 있거나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문 기구에 위탁하여 그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규정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개정하여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직무 담당 부처는 직무 수행 중 개인정보 위법 처리의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즉시 공안기관에 송치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65 조 어떠한 조직, 개인이든지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직무 담당 부처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할 권리를 가진다. 민원, 신고를 접수한 부서는 법에 근거하여 이를 즉시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민원인,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직무 담당 부처는 민원, 신고 접수를 위한 연락 방식을 공표해야 한다.

제 7 장 법률적 책임

제 66 조 본 법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시 규정에 따른 필요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 직무 담당 부처는 시정을 명하고 위법하게 발생한 소득을 몰수하며 경고 조치를 취한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하여는 서비스를 일시정지 또는 중지 명령을 내린다. 시정하지 않을 시 1 백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주요 관리자와 담당자는 1 만 위안 이상 최대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위에서 규정한 위법 행위의 사안이 심각한 경우, 성(省)급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직무 담당 부처에서 시정을 명하고 위법하게 발생한 소득을 몰수하며 5 천만 위안 이하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관련 업무 정지 명령, 시정을 위한 영업 중단, 관할 관계 부처에 관련 영업 허가 취소 또는 허가 취소 통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주요 관리자와 담당자는 10 만 위안 이상 최대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해당 기업의 이사, 감사, 임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임무를 맡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 67 조 본 법에서 규정한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신용 문서에 기록하고 공시한다.

제 68 조 국가기관이 본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 또는 개인정보 보호 직무 담당 부처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주요 관리자와 담당자에게 법에 따른 처분을 내린다.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의 직원의 직무태만, 직권남용, 개인적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아직 범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 69 조 개인정보 처리 행위로 개인정보 권익이 침해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잘못이 없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위에서 규정한 손해배상책임은 이로 인해 개인이 받은 손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로 인해 얻은 수익에 따라 결정한다. 개인이 이로 인해 받은 손해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한다.

제 70 조 개인정보처리자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함으로써 다수 개인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인민 검찰청, 법률에 따라 규정된 소비자 조직 및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처에서 확정한 조직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제 71 조 본 법규정을 위반하여 보안 관리에 위배되는 경우 법에 근거하여 보안관리 처벌을 받게 되며,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 8 장 부 칙

제 72 조 자연인이 개인 또는 가족의 사무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 기관이 실시하는 통계, 문서 관리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 73 조 본 법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개인정보처리자란 자주적으로 처리 목적, 처리 방식 등 개인정보 처리사항을 결정하는 기관, 개인을 말한다.
(2) 자동화 의사 결정이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행위 습관, 관심사 또는 경제, 건강, 신용정보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동 분석, 평가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비식별화란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추가 정보의 도움 없이는 특정 자연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4) 익명화란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특정 자연인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며 다시 복원할 수 없는 과정을 말한다.

제 74 조 본 법률은 2021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개인정보보호법≫ 전문 (중문)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保护个人信息权益，规范个人信息处理活动，促进个人信息合理利用，根据宪法，制定本法。

第二条 自然人的个人信息受法律保护，任何组织、个人不得侵害自然人的个人信息权益。

第三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处理自然人个人信息的活动，适用本法。

在中华人民共和国境外处理中华人民共和国境内自然人个人信息的活动，有下列情形之一的，也适用本法：
（一）以向境内自然人提供产品或者服务为目的；
（二）分析、评估境内自然人的行为；
（三）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情形。

第四条 个人信息是以电子或者其他方式记录的与已识别或者可识别的自然人有关的各种信息，不包括匿名化处理后的信息。

个人信息的处理包括个人信息的收集、存储、使用、加工、传输、提供、公开、删除等。

第五条 处理个人信息应当遵循合法、正当、必要和诚信原则，不得通过误导、欺诈、胁迫等方式处理个人信息。

第六条 处理个人信息应当具有明确、合理的目的，并应当与处理目的直接相关，采取对个人权益影响最小的方式。

收集个人信息，应当限于实现处理目的的最小范围，不得过度收集个人信息。

第七条 处理个人信息应当遵循公开、透明原则，公开个人信息处理规则，明示处理的目的、方式和范围。

第八条 处理个人信息应当保证个人信息的质量，避免因个人信息不准确、不完整对个人权益造成不利影响。

第九条 个人信息处理者应当对其个人信息处理活动负责，并采取必要措施保障所处理的个人信息的安全。

第十条 任何组织、个人不得非法收集、使用、加工、传输他人个人信息，不得非法买卖、提供或者公开他人个人信息；不得从事危害国家安全、公共利益的个人信息处理活动。

第十一条 国家建立健全个人信息保护制度，预防和惩治侵害个人信息权益的行为，加强个人信息保护宣传教育，推动形成政府、企业、相关社会组织、公众共同参与个人信息保护的良好环境。

第十二条 国家积极参与个人信息保护国际规则的制定，促进个人信息保护方面的国际交流与合作，推动与其他国家、地区、国际组织之间的个人信息保护规则、标准等互认。

第二章 个人信息处理规则

第一节 一般规定

第十三条 符合下列情形之一的，个人信息处理者方可处理个人信息：

（一）取得个人的同意；
（二）为订立、履行个人作为一方当事人的合同所必需，或者按照依法制定的劳动规章制度和依法签订的集体合同实施人力资源管理所必需；
（三）为履行法定职责或者法定义务所必需；
（四）为应对突发公共卫生事件，或者紧急情况下为保护自然人的生命健康和财产安全所必需；
（五）为公共利益实施新闻报道、舆论监督等行为，在合理的范围内处理个人信息；
（六）依照本法规定在合理的范围内处理个人自行公开或者其他已经合法公开的个人信息；
（七）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情形。

依照本法其他有关规定，处理个人信息应当取得个人同意，但是有前款第二项至第七项规定情形的，不需取得个人同意。

第十四条 基于个人同意处理个人信息的，该同意应当由个人在充分知情的前提下自愿、明确作出。法律、行政法规规定处理个人信息应当取得个人单独同意或者书面同意的，从其规定。

个人信息的处理目的、处理方式和处理的个人信息种类发生变更的，应当重新取得个人同意。

第十五条 基于个人同意处理个人信息的，个人有权撤回其同意。个人信息处理者应当提供便捷的撤回同意的方式。

个人撤回同意，不影响撤回前基于个人同意已进行的个人信息处理活动的效力。

第十六条 个人信息处理者不得以个人不同意处理其个人信息或者撤回同意为由，拒绝提供产品或者服务；处理个人信息属于提供产品或者服务所必需的除外。

第十七条 个人信息处理者在处理个人信息前，应当以显著方式、清晰易懂的语言真实、准确、完整地向个人告知下列事项：

（一）个人信息处理者的名称或者姓名和联系方式；
（二）个人信息的处理目的、处理方式，处理的个人信息种类、保存期限；

（三）个人行使本法规定权利的方式和程序；
（四）法律、行政法规规定应当告知的其他事项。

前款规定事项发生变更的，应当将变更部分告知个人。

个人信息处理者通过制定个人信息处理规则的方式告知第一款规定事项的，处理规则应当公开，并且便于查阅和保存。

第十八条 个人信息处理者处理个人信息，有法律、行政法规规定应当保密或者不需要告知的情形的，可以不向个人告知前条第一款规定的事项。

紧急情况下为保护自然人的生命健康和财产安全无法及时向个人告知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在紧急情况消除后及时告知。

第十九条 除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外，个人信息的保存期限应当为实现处理目的所必要的最短时间。

第二十条 两个以上的个人信息处理者共同决定个人信息的处理目的和处理方式的，应当约定各自的权利和义务。但是，该约定不影响个人向其中任何一个个人信息处理者要求行使本法规定的权利。

个人信息处理者共同处理个人信息，侵害个人信息权益造成损害的，应当依法承担连带责任。

第二十一条 个人信息处理者委托处理个人信息的，应当与受托人约定委托处理的目的、期限、处理方式、个人信息的种类、保护措施以及双方的权利和义务等，并对受托人的个人信息处理活动进行监督。

受托人应当按照约定处理个人信息，不得超出约定的处理目的、处理方式等处理个人信息；委托合同不生效、无效、被撤销或者终止的，受托人应当将个人信息返还个人信息处理者或者予以删除，不得保留。

未经个人信息处理者同意，受托人不得转委托他人处理个人信息。

第二十二条 个人信息处理者因合并、分立、解散、被宣告破产等原因需要转移个人信息的，应当向个人告知接收方的名称或者姓名和联系方式。接收方应当继续履行个人信息处理者的义务。接收方变更原先的处理目的、处理方式的，应当依照本法规定重新取得个人同意。

第二十三条 个人信息处理者向其他个人信息处理者提供其处理的个人信息的，应当向个人告知接收方的名称或者姓名、联系方式、处理目的、处理方式和个人信息的种类，并取得个人的单独同意。接收方应当在上述处理目的、处理方式和个人信息的种类等范围内处理个人信息。接收方变更原先的处理目的、处理方式的，应当依照本法规定重新取得个人同意。

第二十四条 个人信息处理者利用个人信息进行自动化决策，应当保证决策的透明度和结果公平、公正，不得对个人在交易价格等交易条件上实行不合理的差别待遇。

通过自动化决策方式向个人进行信息推送、商业营销，应当同时提供不针对其个人特征的选项，或者向个人提供便捷的拒绝方式。

通过自动化决策方式作出对个人权益有重大影响的决定，个人有权要求个人信息处理者予以说明，并有权拒绝个人信息处理者仅通过自动化决策的方式作出决定。

第二十五条 个人信息处理者不得公开其处理的个人信息，取得个人单独同意的除外。

第二十六条 在公共场所安装图像采集、个人身份识别设备，应当为维护公共安全所必需，遵守国家有关规定，并设置显著的提示标识。所收集的个人图像、身份识别信息只能用于维护公共安全的目的，不得用于其他目的；取得个人单独同意的除外。

第二十七条 个人信息处理者可以在合理的范围内处理个人自行公开或者其他已经合法公开的个人信息；个人明确拒绝的除外。个人信息处理者处理已公开的个人信息，对个人权益有重大影响的，应当依照本法规定取得个人同意。

第二节 敏感个人信息的处理规则

第二十八条 敏感个人信息是一旦泄露或者非法使用，容易导致自然人的人格尊严受到侵害或者人身、财产安全受到危害的个人信息，包括生物识别、宗教信仰、特定身份、医疗健康、金融账户、行踪轨迹等信息，以及不满十四周岁未成年人的个人信息。

只有在具有特定的目的和充分的必要性，并采取严格保护措施的情形下，个人信息处理者方可处理敏感个人信息。

第二十九条 处理敏感个人信息应当取得个人的单独同意；法律、行政法规规定处理敏感个人信息应当取得书面同意的，从其规定。

第三十条 个人信息处理者处理敏感个人信息的，除本法第十七条第一款规定的事项外，还应当向个人告知处理敏感个人信息的必要性以及对个人权益的影响；依照本法规定可以不向个人告知的除外。

第三十一条 个人信息处理者处理不满十四周岁未成年人个人信息的，应当取得未成年人的父母或者其他监护人的同意。

个人信息处理者处理不满十四周岁未成年人个人信息的，应当制定专门的个人信息处理规则。

第三十二条 法律、行政法规对处理敏感个人信息规定应当取得相关行政许可或者作出其他限制的，从其规定。

第三节 国家机关处理个人信息的特别规定

第三十三条 国家机关处理个人信息的活动，适用本法；本节有特别规定的，适用本节规定。

第三十四条 国家机关为履行法定职责处理个人信息，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规定的权限、程序进行，不得超出履行法定职责所必需的范围和限度。

第三十五条 国家机关为履行法定职责处理个人信息，应当依照本法规定履行告知义务；有本法第十八条第一款规定的情形，或者告知将妨碍国家机关履行法定职责的除外。

第三十六条 国家机关处理的个人信息应当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存储；确需向境外提供的，应当进行安全评估。安全评估可以要求有关部门提供支持与协助。

第三十七条 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为履行法定职责处理个人信息，适用本法关于国家机关处理个人信息的规定。

第三章 个人信息跨境提供的规则

第三十八条 个人信息处理者因业务等需要，确需向中华人民共和国境外提供个人信息的，应当具备下列条件之一：

（一）依照本法第四十条的规定通过国家网信部门组织的安全评估；
（二）按照国家网信部门的规定经专业机构进行个人信息保护认证；
（三）按照国家网信部门制定的标准合同与境外接收方订立合同，约定双方的权利和义务；
（四）法律、行政法规或者国家网信部门规定的其他条件。

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协定对向中华人民共和国境外提供个人信息的条件等有规定的，可以按照其规定执行。

个人信息处理者应当采取必要措施，保障境外接收方处理个人信息的活动达到本法规定的个人信息保护标准。

第三十九条 个人信息处理者向中华人民共和国境外提供个人信息的，应当向个人告知境外接收方的名称或者姓名、联系方式、处理目的、处理方式、个人信息的种类以及个人向境外接收方行使本法规定权利的方式和程序等事项，并取得个人的单独同意。

第四十条 关键信息基础设施运营者和处理个人信息达到国家网信部门规定数量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将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收集和产生的个人信息存储在境内。确需向境外提供的，应当通过国家网信部门组织的安全评估；法律、行政法规和国家网信部门规定可以不进行安全评估的，从其规定。

第四十一条 中华人民共和国主管机关根据有关法律和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协定，或者按照平等互惠原则，处理外国司法或者执法机构关于提供存储于境内个人信息的请求。非经中华人民共和国主管机关批准，个人信息处理者不得向外国司法或者执法机构提供存储于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个人信息。

第四十二条 境外的组织、个人从事侵害中华人民共和国公民的个人信息权益，或者危害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公共利益的个人信息处理活动的，国家网信部门可以将其列入限制或者禁止个人信息提供清单，予以公告，并采取限制或者禁止向其提供个人信息等措施。

第四十三条 任何国家或者地区在个人信息保护方面对中华人民共和国采取歧视性的禁止、限制或者其他类似措施的，中华人民共和国可以根据实际情况对该国家或者地区对等采取措施。

第四章 个人在个人信息处理活动中的权利

第四十四条 个人对其个人信息的处理享有知情权、决定权，有权限制或者拒绝他人对其个人信息进行处理；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第四十五条 个人有权向个人信息处理者查阅、复制其个人信息；有本法第十八条第一款、第三十五条规定情形的除外。

个人请求查阅、复制其个人信息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及时提供。

个人请求将个人信息转移至其指定的个人信息处理者，符合国家网信部门规定条件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提供转移的途径。

第四十六条 个人发现其个人信息不准确或者不完整的，有权请求个人信息处理者更正、补充。

个人请求更正、补充其个人信息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对其个人信息予以核实，并及时更正、补充。

第四十七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主动删除个人信息；个人信息处理者未删除的，个人有权请求删除：

（一）处理目的已实现、无法实现或者为实现处理目的不再必要；
（二）个人信息处理者停止提供产品或者服务，或者保存期限已届满；
（三）个人撤回同意；
（四）个人信息处理者违反法律、行政法规或者违反约定处理个人信息；
（五）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情形。

法律、行政法规规定的保存期限未届满，或者删除个人信息从技术上难以实现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停止除存储和采取必要的安全保护措施之外的处理。

第四十八条 个人有权要求个人信息处理者对其个人信息处理规则进行解释说明。

第四十九条 自然人死亡的，其近亲属为了自身的合法、正当利益，可以对死者的相关个人信息行使本章规定的查阅、复制、更正、删除等权利；死者生前另有安排的除外。

第五十条 个人信息处理者应当建立便捷的个人行使权利的申请受理和处理机制。拒绝个人行使权利的请求的，应当说明理由。

个人信息处理者拒绝个人行使权利的请求的，个人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

第五章 个人信息处理者的义务

第五十一条 个人信息处理者应当根据个人信息的处理目的、处理方式、个人信息的种类以及对个人权益的影响、可能存在的安全风险等，采取下列措施确保个人信息处理活动符合法律、行政法规的规定，并防止未经授权的访问以及个人信息泄露、篡改、丢失：

（一）制定内部管理制度和操作规程；
（二）对个人信息实行分类管理；
（三）采取相应的加密、去标识化等安全技术措施；
（四）合理确定个人信息处理的操作权限，并定期对从业人员进行安全教育和培训；
（五）制定并组织实施个人信息安全事件应急预案；
（六）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措施。

第五十二条 处理个人信息达到国家网信部门规定数量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指定个人信息保护负责人，负责对个人信息处理活动以及采取的保护措施等进行监督。

个人信息处理者应当公开个人信息保护负责人的联系方式，并将个人信息保护负责人的姓名、联系方式等报送履行个人信息保护职责的部门。

第五十三条 本法第三条第二款规定的中华人民共和国境外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专门机构或者指定代表，负责处理个人信息保护相关事务，并将有关机构的名称或者代表的姓名、联系方式等报送履行个人信息保护职责的部门。

第五十四条 个人信息处理者应当定期对其处理个人信息遵守法律、行政法规的情况进行合规审计。

第五十五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事前进行个人信息保护影响评估，并对处理情况进行记录：

（一）处理敏感个人信息；
（二）利用个人信息进行自动化决策；
（三）委托处理个人信息、向其他个人信息处理者提供个人信息、公开个人信息；
（四）向境外提供个人信息；
（五）其他对个人权益有重大影响的个人信息处理活动。

第五十六条 个人信息保护影响评估应当包括下列内容：

（一）个人信息的处理目的、处理方式等是否合法、正当、必要；
（二）对个人权益的影响及安全风险；
（三）所采取的保护措施是否合法、有效并与风险程度相适应。

个人信息保护影响评估报告和处理情况记录应当至少保存三年。

第五十七条 发生或者可能发生个人信息泄露、篡改、丢失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立即采取补救措施，并通知履行个人信息保护职责的部门和个人。通知应当包括下列事项：

（一）发生或者可能发生个人信息泄露、篡改、丢失的信息种类、原因和可能造成的危害；
（二）个人信息处理者采取的补救措施和个人可以采取的减轻危害的措施；

（三）个人信息处理者的联系方式。

个人信息处理者采取措施能够有效避免信息泄露、篡改、丢失造成危害的，个人信息处理者可以不通知个人；履行个人信息保护职责的部门认为可能造成危害的，有权要求个人信息处理者通知个人。

第五十八条 提供重要互联网平台服务、用户数量巨大、业务类型复杂的个人信息处理者，应当履行下列义务：

（一）按照国家规定建立健全个人信息保护合规制度体系，成立主要由外部成员组成的独立机构对个人信息保护情况进行监督；
（二）遵循公开、公平、公正的原则，制定平台规则，明确平台内产品或者服务提供者处理个人信息的规范和保护个人信息的义务；
（三）对严重违反法律、行政法规处理个人信息的平台内的产品或者服务提供者，停止提供服务；
（四）定期发布个人信息保护社会责任报告，接受社会监督。

第五十九条 接受委托处理个人信息的受托人，应当依照本法和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采取必要措施保障所处理的个人信息的安全，并协助个人信息处理者履行本法规定的义务。

第六章 履行个人信息保护职责的部门

第六十条 国家网信部门负责统筹协调个人信息保护工作和相关监督管理工作。国务院有关部门依照本法和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个人信息保护和监督管理工作。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的个人信息保护和监督管理职责，按照国家有关规定确定。

前两款规定的部门统称为履行个人信息保护职责的部门。

第六十一条 履行个人信息保护职责的部门履行下列个人信息保护职责：

（一）开展个人信息保护宣传教育，指导、监督个人信息处理者开展个人信息保护工作；
（二）接受、处理与个人信息保护有关的投诉、举报；
（三）组织对应用程序等个人信息保护情况进行测评，并公布测评结果；
（四）调查、处理违法个人信息处理活动；
（五）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职责。

第六十二条 国家网信部门统筹协调有关部门依据本法推进下列个人信息保护工作：

（一）制定个人信息保护具体规则、标准；
（二）针对小型个人信息处理者、处理敏感个人信息以及人脸识别、人工智能等新技术、新应用，制定专门的个人信息保护规则、标准；
（三）支持研究开发和推广应用安全、方便的电子身份认证技术，推进网络身份认证公共服务建设；

（四）推进个人信息保护社会化服务体系建设，支持有关机构开展个人信息保护评估、认证服务；
（五）完善个人信息保护投诉、举报工作机制。

第六十三条 履行个人信息保护职责的部门履行个人信息保护职责，可以采取下列措施：

（一）询问有关当事人，调查与个人信息处理活动有关的情况;
（二）查阅、复制当事人与个人信息处理活动有关的合同、记录、账簿以及其他有关资料;
（三）实施现场检查，对涉嫌违法的个人信息处理活动进行调查;
（四）检查与个人信息处理活动有关的设备、物品;对有证据证明是用于违法个人信息处理活动的设备、物品，向本部门主要负责人书面报告并经批准，可以查封或者扣押。

履行个人信息保护职责的部门依法履行职责，当事人应当予以协助、配合，不得拒绝、阻挠。

第六十四条 履行个人信息保护职责的部门在履行职责中，发现个人信息处理活动存在较大风险或者发生个人信息安全事件的，可以按照规定的权限和程序对该个人信息处理者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进行约谈，或者要求个人信息处理者委托专业机构对其个人信息处理活动进行合规审计。个人信息处理者应当按照要求采取措施，进行整改，消除隐患。

履行个人信息保护职责的部门在履行职责中，发现违法处理个人信息涉嫌犯罪的，应当及时移送公安机关依法处理。

第六十五条 任何组织、个人有权对违法个人信息处理活动向履行个人信息保护职责的部门进行投诉、举报。收到投诉、举报的部门应当依法及时处理，并将处理结果告知投诉、举报人。

履行个人信息保护职责的部门应当公布接受投诉、举报的联系方式。

第七章 法律责任

第六十六条 违反本法规定处理个人信息，或者处理个人信息未履行本法规定的个人信息保护义务的，由履行个人信息保护职责的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对违法处理个人信息的应用程序，责令暂停或者终止提供服务；拒不改正的，并处一百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有前款规定的违法行为，情节严重的，由省级以上履行个人信息保护职责的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五千万元以下或者上一年度营业额百分之五以下罚款，并可以责令暂停相关业务或者停业整顿、通报有关主管部门吊销相关业务许可或者吊销营业执照；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罚款，并可以决定禁止其在一定期限内担任相关企业的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和个人信息保护负责人。

第六十七条 有本法规定的违法行为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记入信用档案，并予以公示。

第六十八条 国家机关不履行本法规定的个人信息保护义务的，由其上级机关或者履行个人信息保护职责的部门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履行个人信息保护职责的部门的工作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第六十九条 处理个人信息侵害个人信息权益造成损害，个人信息处理者不能证明自己没有过错的，应当承担损害赔偿等侵权责任。

前款规定的损害赔偿责任按照个人因此受到的损失或者个人信息处理者因此获得的利益确定;个人因此受到的损失和个人信息处理者因此获得的利益难以确定的，根据实际情况确定赔偿数额。

第七十条 个人信息处理者违反本法规定处理个人信息，侵害众多个人的权益的，人民检察院、法律规定的消费者组织和由国家网信部门确定的组织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

第七十一条 违反本法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八章 附 则

第七十二条 自然人因个人或者家庭事务处理个人信息的，不适用本法。

法律对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组织实施的统计、档案管理活动中的个人信息处理有规定的，适用其规定。

第七十三条 本法下列用语的含义：

（一）个人信息处理者，是指在个人信息处理活动中自主决定处理目的、处理方式的组织、个人。
（二）自动化决策，是指通过计算机程序自动分析、评估个人的行为习惯、兴趣爱好或者经济、健康、信用状况等，并进行决策的活动。
（三）去标识化，是指个人信息经过处理，使其在不借助额外信息的情况下无法识别特定自然人的过程。
（四）匿名化，是指个人信息经过处理无法识别特定自然人且不能复原的过程。

第七十四条 本法自 2021 年 11 月 1 日起施行。

제 6 장 네트워크안전법



네트워크안전법

□ 제정 배경

- <중화인민공화국네트워크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이하 '네트워크안전법'이라 함)은 네트워크 [13] 상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루는 과정의 행위를 법에 규정하여 인터넷상의 주권과 국가안전의 유지, 국민과 법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정됨
- <네트워크안전법>은 2016 년 11 월 7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 2017 년 6 월 1 일부터 사이버 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본 법률로 정식 발효되었고 총 7 장 79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네트워크 운영 안전, 개인정보보호, 불법 정보 단속, 네트워크 제한 조치, 법률 책임 등으로 구성됨
- 본 법은 네트워크 안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중국 최초의 법률로서 네트워크 안전을 국가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 안보정책의 수단으로 삼고 있음이 특징인데, 네트워크 공간상의 주권과 국가 안전·사회 공공이익을 수호하고 공민·법인·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의 보호, 경제사회 정보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됨

□ 입법취지

- 본 법의 입법해석 자료 [14]에서는 네트워크 공간에 대한 침입·공격 등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점, 빅데이터·사물인터넷·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과학기술 이용에 따른 네트워크 안전 환경이 필요하게 된 점, 개인정보의 수집·유출·거래 등으로부터 일반

[13] 여기서 '네트워크'란 컴퓨터 또는 기타 정보단말기 관련 설비로 구성되어 일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정보에 대한 수집, 저장, 전송, 교환, 처리를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14] 杨合庆主编,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释义, 中国民主法制出版社, pp 23-24, 2017

공민·법인·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불법 음란물 등으로부터 국가안전과 사회공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이 본 법의 입법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음

□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적용범위	- 중국 내에서 건설·운영·유지·사용되는 네트워크와 그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데이터를 구축, 운영, 유지하는 외자기업과 내자기업 모두 본 법의 규율을 받게 됨 - 원칙적으로 중국 내의 네트워크 활동에만 적용되지만, 중국 국외의 기관, 조직, 개인이 중국의 핵심정보 인프라시설에 대해 공격, 침입, 방해, 파괴 등 행위를 함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해당 기관, 조직, 개인에 대하여 재산동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두고 있음
적용대상	-본 법의 적용 대상은 중국 내 '네트워크 운영자(网络运营者)'와 '핵심정보 인프라 시설운영자(关键信息基础设施的运营者)' 로 구분됨 -네트워크 운영자는 네트워크의 소유자, 관리자 및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네트워크를 이용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제공자 [15]를 가리키며 구체적으로 기초통신 운영자, 네트워크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 주요 정보 시스템 사업자 또는 운영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유선전화·휴대전화 운영자, 정보 발표 및 메신저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포함하는 등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하여 커버함 -핵심정보 인프라시설 운영자는 공공통신 및 정보 서비스, 에너지, 운송, 수자원관리, 금융, 공공서비스, 전자정부 등 국가의 중요 산업과 영역에서 파괴, 기능 상실 또는 데이터 유출로 인해 국가의 안전 및 국민생활과

[15] 네트워크운영자에 해당되는 경우 중국에 서버를 두어야 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네트워크운영자로는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정보의 수집, 처리 등 업무를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기업, 개인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B2C 기업, 중국 현지 금융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통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됨

	공공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핵심정보 인프라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다 높은 보안의무가 부과됨 [16]
주무부서	- 중국 국가 인터넷정보부서(国家互联网信息公室)가 네트워크 안전 관련 감독관리업무를 총괄하고, 국무원 전기통신주관부서 및 공안부 등 기타 관련부서가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네트워크 안전에 관한 보호와 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네트워크 운영 안전	- 국가는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제도(网络安全等级保护制度)를 실시해야 하고, 네트워크 운영자는 안전등급 보호제도의 요구에 따라 안전보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네트워크 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안전결함 등 리스크 발생 시 즉시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네트워크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 네트워크 운영자는 네트워크 접속 절차를 처리하거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반드시 사용자에게 실명 정보를 요청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됨
핵심정보 인프라 시설의 운영 보안	-핵심정보 인프라시설의 운영자는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및 중요 데이터베이스 백업 등의 안전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보 인프라시설은 보안심사 및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함 - 중국 내 수집, 생산된 개인정보와 중요데이터는 중국 경내에 저장해야 하며 해외에 제공 필요 시 국가 네트워크 정보부서에서 안전 평가를 진행해야 함 - 네트워크 안정성 및 잠재적 리스크에 대하여 최소 연 1 회 이상 측정·평가를 진행해야 하고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시 국가안전심사 통과 의무,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해야 함
네트워크 정보 안전	- 네트워크 운영자는 개인정보 수집 사용 시 합법, 정당, 필요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를 획득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하여 네트워크

[16] 핵심정보 인프라시설 운영자에 해당되면 주요 데이터의 중국 내 저장이 의무화되고 데이터의 국외 이전 시 안전평가를 통하여 국가안전과 공공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만 그리고 개인 정보의 경우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이전이 가능함

	운영자는 엄격히 비밀을 유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구하여야 함 -본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란 전자 또는 기타 수단으로 기록되어 단독 또는 기타 정보와 결합하여 자연인 개인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뜻함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데, 네트워크 운영자가 규정 또는 약정을 어기고 개인정보 수집과 사용 시 그 개인은 해당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 정보의 오류 존재 시에도 정정 요구가 가능함
법적 책임	-개인정보 및 주요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련 주무부처 시정 명령, 불법소득 몰수, 50,000위안 이상 500,000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관련 업무 일시 중단 명령, 영업 중단, 웹사이트 폐쇄, 관련 서비스 인허가 취소 또는 영업집조 취소 등의 책임이 부과됨

□ 시사점

-네트워크안전법은 입법 당시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네트워크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하나의 법으로 체계화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었는데, 최근 중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신설(2021 년 11 월 7 일 시행)되었기에 본 법과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도 많아 동법의 실질적 목적은 질서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통한 정보 주권의 확립 목적이 더욱 크게 된 것이 현실임

-한편, 본 법은 네트워크 보호를 이유로 하여 사이버 공격, 유해정보 확산 등으로부터 국가안보와 사회공익을 수호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임

- 종래에는 처벌 조항이 미비하여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였지만, 본 법은 구체적인 처벌 조항을 적시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경우 강력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우 데이터 보관, 보안규정 준수 등에 있어서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청됨

-만약 중국 내 외국 기업이 데이터를 국외로 전송할 경우, 중국 국가네트워크정보기관의 보안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보안 평가 과정에서 중국 정부 당국은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사의 지적재산권 관련 비밀 데이터에 손쉬운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되어 중국 내 회사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중국 내 모든 기업은 시스템이나 업무별로 보안등급[17](1 등급-5 등급)을 받아야 하며, 등급이 올라갈수록 보안수준이 높아지는데, 3 등급 이상부터는 매년 등급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등 심사비용과 인력이 필요하고 보안등급 심사를 받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경우 시정명령,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을 당할 수도 있기에 주의를 필요로 함
-본 법 시행 후 기존의 정보시스템 범위의 규정인 보안등급 1.0 표준에서 2019 년 12 월 1 일부로 네트워크, 클라우드, 빅데이터 APP 까지 범위를 확대한 '보안등급 2.0 표준'을 발효하고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중국의 인터넷 검열망을 우회하여 중국 정부가 차단한 해외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예:VPN 이용)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출처**

-중문 원문 다운로드: 중국법제정보망(中华人民共和国司法部
中国法制信息网,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http://www.moj.gov.cn/Department/content/2016-11/23/592_201322.html

□ **파일첨부**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 전문 (한글본)

[시행 2017 년 6 월 1 일]
[공포 2016 년 11 월 7 일]

제 1 장 총칙

제 1 조 네트워크 보안을 보장하고 네트워크 공간주권과 국가안보,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면서 경제사회 정보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17] 네트워크 보안 등급보호제도는 2007년 <정보보안등급보호관리방법>에 근거하여 정보 시스템의 보안보호 등급에 따라 5등급으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유지와 사용 및 네트워크 보안의 감독 관리는 본 법을 적용한다.

제 3 조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과 정보화 발전을 동등하게 중요시하고 적극적 이용, 과학적 발전, 법에 의거한 관리, 안전 확보 방침을 준수하며,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상호연결소통을 추진하고, 네트워크 기술혁신과 응용을 장려하며, 네트워크 보안인력 배양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보안 보장체계를 정착시켜 네트워크 안전보호능력을 향상시킨다.

제 4 조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 전략을 부단히 완비하고, 네트워크 보안의 기본적인 요구와 주요 목표를 명확히 하며, 중점영역의 네트워크 보안 정책, 업무 임무와 조치를 제시한다.

제 5 조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외의 네트워크 보안 위험과 위협을 감시, 방어,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핵심 정보기초시설이 공격·침입·간섭·파괴당하지 않도록 하며, 네트워크 불법 범죄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처벌하여 네트워크 공간안전과 질서를 유지한다.

제 6 조 국가는 신의성실하며 건전하고 문명한 네트워크 행위를 선도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전파를 촉진하며, 조치를 취하여 전(全) 사회의 네트워크 보안 의식과 수준을 제고하여 사회 전체가 네트워크 보안 촉진에 공동 참여하는 양호한 환경을 형성한다.

제 7 조 국가는 네트워크 공간 관리, 네트워크 기술의 연구개발과 표준 제정, 네트워크 위법 범죄행위 단속 등의 방면에서 국제교류와 협력을 적극 전개하여 평화, 안전, 개방, 협력의 네트워크 공간 구축과 다각적(多边), 민주적, 투명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 8 조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처는 책임지고 네트워크 보안 업무와 관련 감독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율하는 책임을 진다. 국무원 전신(电信) 주관 부처, 공안기관과 기타 관련 부처는 본 법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자 직책 범위 내에서 네트워크 안전보호와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县级)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처의 네트워크 안전보호와 감독관리 직책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 9 조 네트워크 운영자는 경영과 서비스 활동 시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를 지키고, 사회 공중도덕, 상업도덕, 성실신용을 준수하며, 네트워크 보안 의무를 이행하고, 정부와 사회의 감독을 받으며 사회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

제 10 조 네트워크의 구축, 운영 또는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공급은 법률, 법규의 규정과 국가표준의 강제성 요구에 의거하여 기술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네트워크 보안, 안정적 운행을 보장하고 네트워크 보안 사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불법

범죄활동을 방지하여 네트워크 데이터의 완정성(完整性), 비밀유지성과 가용성을 유지해야한다.

제 11 조 네트워크 관련 업계의 기관은 정관 규정에 따라 업계 자율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보안행위 규범을 제정하며 회원이 법에 의거하여 네트워크 안전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고 네트워크 안전 보호 수준을 높여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제 12 조 국가는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법에 의거한 네트워크 사용 권리를 보호하고 네트워크 접속(接入)의 보급을 촉진하며 네트워크 서비스 수준을 높여 사회에 안전하고 편리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정보가 법에 의거하여 질서 있고 자유롭게 유동(流动)되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개인과 조직이든지 네트워크 사용은 헌법과 법률, 공공질서를 준수해야 하고 사회 공중도덕을 존중하고 네트워크 보안에 해를 가해서는 아니되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국가안보 위협,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찬양, 사회주의제도 전복, 국가분열 찬양, 국가통일 파괴, 민족적 증오와 민족 질시 찬양, 폭력 전파, 음란 색정 정보, 날조, 거짓 정보 전파로 경제 질서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타인의 명예, 프라이버시, 지적 재산권과 기타 합법 권익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제 13 조 국가는 미성년의 건강한 성장에 유리한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를 연구개발 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미성년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활동을 법에 따라 처벌하며, 미성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한다.

제 14 조 어떠한 개인과 조직이든 네트워크 보안에 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네트워크 정보 부처, 전신(电信), 공안 등 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적시에 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본 기관의 직책에 속하지 않을 경우 적시에 처리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시켜야 한다.

관계기관은 신고인의 관련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하고 신고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2 장 네트워크 지지 및 촉진

제 15 조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 표준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한다. 국무원의 표준화 행정 주무부처와 국무원의 기타 유관 부처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된 네트워크 보안 관리 및 네트워크 제품, 서비스와 운영 안전의 국가표준, 업계표준을 제정하고 적시에 수정한다.

국가는 기업·연구기관·대학교·네트워크 관련 업계 조직 등이 네트워크 운행의 안전한 국가 표준, 업계 표준의 제정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 16 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투입을 확대하여 중점 네트워크 보안 기술 산업과 프로젝트를 육성하고, 네트워크 보안 기술의 연구개발, 응용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보급을 지원하며, 네트워크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연구기관, 대학교와 기업의 국가 네트워크 보안 기술혁신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한다.

제 17 조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 사회화 서비스 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유관 기업과 기구가 네트워크 보안 인증, 검사, 위험평가 등 보안 서비스를 전개하도록 장려한다.

제 18 조 국가는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보호와 이용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고, 공공 데이터 자원의 개방을 촉진하며, 기술혁신과 경제사회발전을 추진한다.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 관리 방식의 혁신, 네트워크 신기술 운용, 네트워크 보안 보호 수준 향상을 지원한다.

제 19 조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기관은 일상화된 네트워크 보안 홍보교육을 진행하면서 관련 업체가 네트워크 보안 홍보교육을 잘 하도록 지도 및 독촉해야 한다.

대중적 전파 매체는 목적성을 갖고 사회를 상대로 네트워크 보안 홍보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제 20 조 국가는 기업과 대학교, 직업학교 등 교육양성기관의 네트워크 보안 관련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네트워크 보안 인력을 육성하여 네트워크 보안 인력의 교류를 촉진한다.

제 3 장 네트워크 운영 안전

제 1 절 일반 규정

제 21 조 국가는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제도를 시행한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 제도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안보호의무를 이행하여 네트워크가 교란, 파괴를 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방문을 차단하도록 보장하여 네트워크 데이터의 유출 또는 도난, 변조를 방지한다.
(1) 내부의 보안 관리제도와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네트워크 보안 책임자를 확정하여 네트워크 안전보호책임을 이행한다.
(2) 컴퓨터 바이러스와 네트워크 공격, 네트워크 침입 등 네트워크 보안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기술조치를 취한다.
(3) 네트워크 운행 상태와 네트워크 안전 사건의 기술 조치를 검사 및 기록하고, 네트워크 일지를 최소 6 개월간 보존한다.

(4) 데이터 분류, 중요한 데이터 백업과 비밀번호설정 조치를 취한다.
(5)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의무.

제 22 조 네트워크 제품, 서비스는 관련된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네트워크 제품, 서비스 공급자는 악성 프로세스를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공급자의 네트워크 제품, 서비스의 보안 결함, 취약성 등 리스크의 존재성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보완조치를 취하고,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유관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네트워크 제품, 서비스 공급자는 그 제품,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인 보안 유지를 제공해야 한다. 규정 기간 또는 당사자와 약정한 기간 내에는 보안 유지 제공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네트워크 제품, 서비스가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가지려면, 그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이를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관한 본 법과 유관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 23 조 네트워크 핵심 장비와 네트워크 보안 전용제품은 국가표준, 업계표준의 강제성 기준에 따라 자격이 있는 기관의 안전인증 통과 또는 안전검사 기준에 부합된 후에야 판매 또는 제공이 가능하다. 국가 네트워크정보 부처는 국무원의 관련부처와 함께 네트워크 핵심 장비와 네트워크 보안 전용 제품의 목록을 제정 및 발표하고 안전인증과 안전검사 결과의 상호 인증을 추진하여 중복 인증 및 검사를 방지한다.

제 24 조 네트워크 운영자는 이용자를 위해 네트워크 접속, 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선전화, 휴대전화 등의 통신망 가입수속을 처리하거나, 또는 이용자를 위해 정보공개, 메신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확인할 경우 이용자로 하여금 진실된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용자가 진실된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네트워크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국가는 네트워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신분 전략(身份战略)을 실시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신분 인증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서로 다른 전자신분 인증 간의 상호 인증을 추진한다.

제 25 조 네트워크 운영자는 네트워크 보안 사건의 비상 매뉴얼을 제정하여 적시에 시스템의 취약성, 컴퓨터 바이러스, 네트워크 공격, 네트워크 침입 등 보안 리스크에 대처한다. 네트워크 보안에 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비상 매뉴얼을 가동하여 상응한 보완조치를 취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주무부처에 보고한다.

제 26 조 네트워크 보안 인증·검사·위험평가 등의 활동 전개, 시스템의 취약성·컴퓨터 바이러스·네트워크 공격·네트워크 침입 등의 네트워크 보안 정보를 사회에 발표할 때 국가 유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7 조 어떠한 개인과 조직도 타인의 네트워크 침입, 타인 네트워크의 정상 기능 방해, 네트워크 데이터 절취 등 네트워크 보안에 해를 가하는 활동을 해서는 아니되며, 네트워크 침입, 네트워크 정상 기능 및 보호조치 방해, 네트워크 데이터의 절취 등 네트워크 보안에 해를 가하는 행동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 도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타인이 네트워크 보안에 해를 가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지원, 광고 홍보, 지불결제 등의 도움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 28 조 네트워크 운영자는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구가 법에 따라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범죄활동을 조사하도록 기술 지원과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 29 조 국가는 네트워크 운영자 간에 네트워크 보안정보의 수집, 분석, 통보와 비상 대응 등 분야의 협력을 진행하면서 네트워크 운영자의 안전보장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원한다.

관련 업계 조직은 해당 업계의 네트워크 안전보호규범과 협력 매커니즘을 정착시켜 네트워크 보안 리스크에 대한 분석평가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리스크를 알리고 회원의 네트워크 보안 리스크 대응을 지원 및 협조한다.

제 30 조 네트워크 정보 부처와 유관 부처는 네트워크 보안 보호 직책 이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네트워크 안전 유지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2 절 핵심 정보 인프라의 운영 안전

제 31 조 국가는 공공통신과 정보서비스·에너지·교통·수리·금융·공공서비스·전자정무(电子政务) 등 중요 산업과 영역 및 기타 일단 파괴·기능 상실·데이터유출이 발생하면 국가 안전,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공공이익에 중대한 손상을 줄 수 있는 핵심 정보 인프라에 대하여, 네트워크 안전 등급 보호제도에 기초하여 중점 보호를 실행한다. 핵심 정보 인프라 설비의 구체적인 범위와 안전보호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국가는 핵심 정보 인프라 설비 이외의 네트워크 운영자가 핵심 정보 인프라 설비 보호체계에 자원하여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 32 조 국무원이 규정한 책임 분담에 따라,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보안 보호 업무 부문은 본 업계(本行业)와 본 영역(本领域)의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보안 계획을 편성, 조직, 실시하고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운행 보안 보호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한다.

제 33 조 핵심 정보 인프라의 구축은 업무의 안정성과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시에 안전기술조치를 계획, 구축, 사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 34 조 본 법 제 21 조의 규정 외에 핵심정보 인프라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안전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전문 안전관리기관과 안전관리 책임자를 설치하고 동 책임자와 핵심업무 담당자에 대해 안전배경 심사를 진행한다.
(2) 종사자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교육, 기술교육과 기능 평가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3) 주요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재난대비백업을 진행한다.
(4) 네트워크 보안 사건의 비상 매뉴얼을 제정하고 정기 훈련을 진행한다.
(5) 법률, 행정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의무.

제 35 조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의 네트워크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국가네트워크 정보 부처가 국무원의 관련 부처와 함께 구성한 국가 보안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 36 조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의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구매는 공급자와 보안 비밀유지 협의를 체결하고 보안과 비밀유지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37 조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운영 중 수집하고 생성된 개인정보와 중요 업무 데이터를 반드시 경내에 저장해야한다. 업무의 필요에 의해 해외에 제공해야 할 경우 국가네트워크 정보부처가 국무원의 관련 부처와 함께 제정한 방법에 따라 보안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 38 조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는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네트워크 안전성과 존재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 매년 최소한 한 차례의 검사와 평가를 진행하여 검사평가 상황과 개선 조치에 대해 네트워크 보안 보고를 제출하고 관련 핵심 정보 인프라 안전보호업무 책임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39 조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처는 관련 부처와 총괄적으로 협력하여, 핵심 정보 인프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전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핵심 정보 인프라 보안 리스크에 대해 추출(抽查)검사를 진행하고 개선조치를 제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검사테스트 기관에 의뢰하여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보안 리스크에 대한 테스트 평가를 진행한다.
(2)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의 네트워크 보안 비상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네트워크 보안 사태 대응 수준과 협업 및 협력 능력을 향상시킨다.
(3) 관련 기관,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기관 등 간의 네트워크 보안 정보 공유를 촉진한다.
(4) 네트워크 보안 사태의 비상처리와 회복 등에 대해 기술지원과 협조를 제공한다.

제 4 장 네트워크 정보보안

제 40 조 네트워크 운영자는 수집한 이용자 정보에 대하여 반드시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이용자 정보보호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제 41 조 네트워크 운영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은 합법, 정당, 필요의 원칙을 준수하고 정보 수집과 사용의 목적, 방식과 범위를 명시하고 수집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그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아니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쌍방의 약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이용자와의 약정에 따라 저장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한다.

제 42 조 네트워크 운영자는 수집한 개인 정보를 유출, 변조, 훼손해서는 안된다. 수집을 받는 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타인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복원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기술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확실히 보장하고 그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유출, 훼손, 분실을 방지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훼손, 분실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조치를 취해, 규정에 따라 적시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 43 조 개인은 네트워크 운영자가 법률, 행정법규 규정 또는 쌍방의 약정을 위반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네트워크 운영자가 수집 및 사용한 개인 본인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조치를 취해 삭제하거나 정정해야 한다.

제 44 조 어떠한 개인과 조직도 개인정보를 훔치거나 기타 불법방식으로 취득해서는 아니되며,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도 아니된다.

제 45 조 법에 의해 네트워크 안전감독 관리직책 책임이 있는 부처와 직원은 직책이행 과정에서 알게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와 상업비밀을 엄격히 유지하여야 하고 유출, 판매 또는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제 46 조 어떤 개인과 조직이라도 그 네트워크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사기, 범죄 방법 전수, 금지물품, 통제물품 제작 또는 판매 등 불법 범죄활동을 실시하는 사이트, 통신 그룹을 개설해서는 안되며,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기, 금지물품, 통제물품 제작 또는 판매 그리고 기타 불법 범죄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 47 조 네트워크 운영자는 그 이용자가 발표한 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법률, 행정법규에서 발표 또는 전송을 금지하는 정보일 경우 즉시 전송을 중단하고 제거 등

처리조치를 취하여 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유관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 48 조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라도 발송하는 전자정보, 제공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법률, 행정법규가 발표 또는 전송을 금지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전자정보 발송 서비스 공급자와 응용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서비스 공급자는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용자의 상기 규정 행위가 있음을 인지했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고 제거 등 처리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한 후 유관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 49 조 네트워크 운영자는 네트워크 정보 보안의 신고, 고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신고, 고발 방식 등 정보를 공지하여 적시에 관련 네트워크 정보 보안의 신고와 고발을 수리 및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네트워크 정보 부처와 유관 부처가 법에 의하여 감독 검사를 할 때, 협력하여야 한다.

제 50 조 국가네트워크 정보부처와 관련 부처는 법에 의거하여 네트워크 보안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고 법률, 행정법규에서 발표 또는 전송을 금지하는 정보를 발견할 경우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전송 중단을 요구하고 제거 등 처리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상기 정보의 진원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역외일 경우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기술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정보 유포를 차단시켜야 한다.

제 5 장 모니터링 경보와 비상 대응

제 51 조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 모니터링 경보와 정보 통보(通报) 제도를 구축한다.
국가네트워크 정보 부처는 관련 부처를 통일적으로 조정하여 네트워크 보안 정보 수집, 분석과 통보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고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의 모니터링 경보 정보를 통일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제 52 조 핵심 정보 인프라의 안전보호업무 담당기관은 본 업계, 본 분야의 네트워크 보안 모니터링 경보와 정보 통보 제도를 구축하고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 모니터링 경보 정보를 발송 및 보고한다.

제 53 조 국가네트워크 정보 부처는 관련 부처를 조율하여 네트워크 보안 비상업무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네트워크 보안 사태 비상 매뉴얼을 제정하여 정기 연습을 수행한다.

핵심 정보 인프라의 안전보호업무 담당기관은 본 업계, 본 분야의 네트워크 보안사건 비상 매뉴얼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네트워크 보안 사태 비상 매뉴얼은 사건 발생 후의 파손 정도, 영향 범위 등 요소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 사건에 대해 등급을 분류하고 상응하는 비상 대응 조치를 규정해야 한다.

제 54 조 네트워크 보안사건 발생의 위험이 증대할 때,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유관 부처는 규정의 권한과 순서에 따라, 네트워크 안전 위험의 특징 및 가능한 피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관련 부처, 기관과 인원이 관련 정보는 적시에 수집 및 보고하고 네트워크 보안 사건의 발생, 발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한다.
(2) 관련 부처, 기관과 전문 담당자를 구성하여 네트워크 보안사건 정보에 대해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하고 사건 발생의 가능성, 영향범위와 피해 정도를 예측한다.
(3) 사회에 네트워크 안전 위험 경고를 발표하고, 피해를 방지하고 줄이는 조치를 발표한다.

제 55 조 네트워크 보안 사건이 발생하면 네트워크 보안사건 비상 매뉴얼을 즉시 가동하여 네트워크 보안 사건에 대해 조사와 평가를 진행하고 네트워크 운영자가 기술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피해 확산을 막으며 적시에 사회에 대중과 관련된 경보정보를 발표한다.

제 56 조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유관부처는 네트워크 안전 감독 관리 직책을 이행하는 중, 네트워크에 비교적 큰 안전 위험 혹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 규정의 권한과 순서에 따라 네트워크 운영자의 법정 대표 혹은 주요 책임자 에게 약속 면담을 할 수 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개선을 진행하며,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 57 조 네트워크 보안 사건으로 인해 돌발 사태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태 대응법>,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8 조 국가 안보와 사회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중대하고 돌발적인 사회 안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국무원의 결정 혹은 비준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네트워크 통신에 대하여 제한 등의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6 장 법률 책임

제 59 조 네트워크 운영자가 본 법 제 21 조, 제 25 조에서 규정한 네트워크 안전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주무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준다. 시정을 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네트워크 보안에 피해를 주는 등 결과를 초래할 경우 10,000 위안 이상 1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에게는 5,000 위안 이상 5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가 본 법 제 33 조, 34 조, 제 36 조, 제 38 조에서 규정한 네트워크 안전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주무부처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준다. 시정을 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네트워크 보안에 피해를 주는 등 결과를 초래할 경우 100,000 위안 이상 1,0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에게는 10,000 위안 이상 1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0 조 본 법 제 22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제 48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에 해당되면 관련 주무부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준다. 시정하지 않고 이를 거부하거나 네트워크 보안에 피해를 주는 등 결과를 초래할 경우 50,000 위안 이상 5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에게는 10,000 위안 이상 1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2) 제품, 서비스에 존재하는 보안 결함, 취약성 등 리스크에 대해 적시에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적시에 고지하지 않거나 유관 부처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제품,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유지를 일방적으로 중지했을 경우.

제 61 조 네트워크 운영자가 본 법 제 24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고 이용자에게 진실된 신원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또는 진실된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관련 주무부처에서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을 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그 정황이 심각할 경우 50,000 위안 이상 5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주무부처에서 관련 업무 일시정지, 영업정지, 웹사이트 폐쇄, 관련 업무의 인허가 취소 또는 영업집조 말소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서는 10,000 위안 이상 1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2 조 본 법 제 26 조 규정을 위반하여, 네트워크 보안 인증·검사 ·위험평가 등 활동을 전개하거나 사회를 향하여 시스템 취약성·컴퓨터 바이러스·네트워크 공격·네트워크 침입 등 네트워크 보안 정보를 공개한 경우, 유관 주관 부문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준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그 정황이 심각한 경우, 10,000 위 안 이상 1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유관 주관 부문이 관련 업무 일시정지, 영업정지, 웹사이트 폐쇄, 관련 업무 인허가 취소 또는 영업집조 말소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 대해서 5,000 위안 이상 5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63 조 본 법 제 27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네트워크 보안에 해로운 활동에 종사하거나 네트워크 보안에 해로운 활동에 종사하는데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나 도구를 제공하거나 타인이 네트워크 보안에 해로운 활동에 종사하는데 기술지원, 광고활동, 자금결제 등 도움을 제공한 경우,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공안기관은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5 일 이하의 구류로 처벌하고 동시에 50,000 위안 이상 5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5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류를 처벌하고 동시에 100,000 위안 이상 1,000,000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업체(单位)가 상기 규정의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공안 기관은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100,000 위안 이상 1,000,000 위안 벌금을 부과하며, 그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 대해서 상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본 법 제 27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관리 처벌을 받는 자는 5 년 내에 네트워크 보안 관리와 네트워크사업 관련 직위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인원은 네트워크 보안 관리와 네트워크 사업 관련 직위의 업무에 영구적으로 종사할 수 없다.

제 64 조 네트워크 운영자가 본 법의 제 22 조 제 3 항, 제 41 조에서 제 43 조 규정을 위반하여,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인 개인정보를 침해했을 경우, 관련 주무 부처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위에 따라 경고, 불법소득 몰수, 불법소득의 1 배 이상 10 배 이하 벌금 부과 등 처벌을 단독으로 또는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고, 불법 소득이 없을 경우 1,0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 대해서 10,000 위안 이상 100,000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심각할 경우 관련 업무 일시 중단 명령, 영업정지, 웹사이트 폐쇄, 관련 업무의 인허가 취소 또는 영업집조 취소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본 법의 제 44 조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정보를 훔치거나 다른 방식으로 불법 취득, 판매 또는 불법으로 그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했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은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소득 의 1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소득이 없을 경우 1,0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5 조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가 본 법 제 35 조 규정을 위반하고 안전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네트워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주무부처에서 사용 중단 명령을 내리고 구매 금액의 1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 대해서는 10,000 위안 이상 1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6 조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가 본 법 제 37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해외에서 네트워크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해외에 네트워크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관련 주무부처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주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50,000 위안 이상 5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업무 일시 중단 명령, 영업정지, 웹사이트 폐쇄, 관련 업무의 인허가 취소 또는 영업집조 취소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 대해서 10,000 위안 이상 100,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7 조 본 법 제 46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 범죄활동 실시에 사용하는 사이트, 통신그룹을 개설 하거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불법 범죄활동 실시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시,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안기관은 5 일 이하의 구류를 처벌하고 10,000 위안 이상 1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정황이 비교적 심각한 경우, 5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류를 처벌하고 50,000 위안 이상 5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불법 범죄활동 실시에 이용된 사이트, 통신그룹은 폐쇄 한다.

업체(单位)가 위 조항의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은 100,000 위안 이상 5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 대해서 위 조항의 규정에 근거해 처벌한다.

제 68 조 네트워크 운영자가 본 법 제 47 조 규정을 위반하여 법률, 행정법규에서 발표 또는 전송을 금지한 정보에 대해 전송 중단, 제거 등 처리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주무부처에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주며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시정을 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경위가 심각할 경우 100,000 위안 이상 5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업무 일시 중단, 영업정지, 웹사이트 폐쇄, 관련 업무의 인허가 취소, 영업집조 말소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 대해서 10,000 위안 이상 1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자정보 발송 서비스 공급자, 응용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서비스 공급자가 본 법 제 48 조 제 2 항 규정의 보안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기 조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69 조 네트워크 운영자가 본 법 규정을 어기고 다음과 같은 행위에 해당되면 관련 주무부처에서 시정 명령을 내린다. 시정을 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경위가 심각할 경우 50,000 위안 이상 5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 대해서 10,000 위안 이상 1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유관 부문의 요구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가 공개 또는 전송을 금지한 정보에 대해서 전송 중지, 제거 등 처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2) 유관 부문이 법에 의해 시행하는 감독검사를 거부, 방해했을 경우.
(3) 공안기관, 국가 안전기관에게 기술지원과 협조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제 70 조 본 법 제 20 조 제 2 항과 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공개 또는 전송을 금지한 정보를 공개 또는 전송한 경우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71 조 본 법이 규정한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신용 기록에 기입하고 공시한다.

제 72 조 국가기관 정무 사이트 운영자가 본 법에서 규정한 네트워크 안전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의 상급 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시정명령을 내린다.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 대해서 법에 의해 처분을 내린다.

제 73 조 네트워크 부문과 유관 부문이 본 법 제 30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네트워크 보안 직책 이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기타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 대해서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네트워크 부문과 유관부문의 업무인원이 직무소홀, 직권남용, 개인적 목적의 부정행위를 범했지만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제 74 조 본 법 규정을 어기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법에 의해 민사책임을 진다.

본 법 규정을 어기고,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 75 조 경외의 기구, 조직,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핵심정보인프라를 공격, 침입, 방해, 파괴하는 등 위해를 가하는 활동에 종사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법률 책임을 추궁한다. 동시에 국무원 공안부문과 유관 부문은 해당기구, 조직, 개인에 대해서 재산동결 또는 기타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 장 부칙

제 76 조 본 법의 하기 전문용어의 함의:
(1) 네트워크란 컴퓨터 또는 기타 정보 단말기 및 관련 장비로 구성된 일정한 규칙과 프로세스에 따라 정보에 대한 수집, 저장, 전송, 교환, 처리를 진행하는 네트워크를 지칭한다.
(2) 네트워크 보안이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침입, 방해, 파괴와 불법 사용 및 의외의 사고를 방지하고 네트워크가 안정된 운영 상태를 유지하고 네트워크 데이터의 완결성, 비밀유지 성, 유용성 능력 보장을 지칭한다.
(3) 네트워크 운영자란 네트워크의 소유자, 관리자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를 지칭한다.
(4) 네트워크 데이터란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 저장, 전송, 처리와 생성되는 각종 전자 데이터를 지칭한다.
(5) 개인정보란 전자 또는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는 단독 또는 기타 정보와 결합하여 자연인의 개인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지칭하는데, 이름, 출생일, 신분증번호, 개인생물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다.

제 77 조 국가 기밀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 처리하는 네트워크의 운영 안전보호는 본 법을 준수하는 것 외에 비밀유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78 조 군사 네트워크와 정보보안 보호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제정한다.

제 79 조 본 법은 2017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 전문 (중문)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保障网络安全，维护网络空间主权和国家安全、社会公共利益，保护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促进经济社会信息化健康发展，制定本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建设、运营、维护和使用网络，以及网络安全的监督管理，适用本法。

第三条 国家坚持网络安全与信息化发展并重，遵循积极利用、科学发展、依法管理、确保安全的方针，推进网络基础设施建设和互联互通，鼓励网络技术创新和应用，支持培养网络安全人才，建立健全网络安全保障体系，提高网络安全保护能力。

第四条 国家制定并不断完善网络安全战略，明确保障网络安全的基本要求和主要目标，提出重点领域的网络安全政策、工作任务和措施。

第五条 国家采取措施，监测、防御、处置来源于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的网络安全风险和威胁，保护关键信息基础设施免受攻击、侵入、干扰和破坏，依法惩治网络违法犯罪活动，维护网络空间安全和秩序。

第六条 国家倡导诚实守信、健康文明的网络行为，推动传播社会主义核心价值观，采取措施提高全社会的网络安全意识和水平，形成全社会共同参与促进网络安全的良好环境。

第七条 国家积极开展网络空间治理、网络技术研发和标准制定、打击网络违法犯罪等方面的国际交流与合作，推动构建和平、安全、开放、合作的网络空间，建立多边、民主、透明的网络治理体系。

第八条 国家网信部门负责统筹协调网络安全工作和相关监督管理工作。国务院电信主管部门、公安部门和其他有关机关依照本法和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网络安全保护和监督管理工作。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的网络安全保护和监督管理职责，按照国家有关规定确定。

第九条 网络运营者开展经营和服务活动，必须遵守法律、行政法规，尊重社会公德，遵守商业道德，诚实信用，履行网络安全保护义务，接受政府和社会的监督，承担社会责任。

第十条 建设、运营网络或者通过网络提供服务，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和国家标准的强制性要求，采取技术措施和其他必要措施，保障网络安全、稳定运行，有效应对网络安全事件，防范网络违法犯罪活动，维护网络数据的完整性、保密性和可用性。

第十一条 网络相关行业组织按照章程，加强行业自律，制定网络安全行为规范，指导会员加强网络安全保护，提高网络安全保护水平，促进行业健康发展。

第十二条 国家保护公民、法人和其他组织依法使用网络的权利，促进网络接入普及，提升网络服务水平，为社会提供安全、便利的网络服务，保障网络信息依法有序自由流动。

任何个人和组织使用网络应当遵守宪法法律，遵守公共秩序，尊重社会公德，不得危害网络安全，不得利用网络从事危害国家安全、荣誉和利益，煽动颠覆国家政权、推翻社会主义制度，煽动分裂国家、破坏国家统一，宣扬恐怖主义、极端主义，宣扬民族仇恨、民族歧视，传播暴力、淫秽色情信息，编造、传播虚假信息扰乱经济秩序和社会秩序，以及侵害他人名誉、隐私、知识产权和其他合法权益等活动。

第十三条 国家支持研究开发有利于未成年人健康成长的网络产品和服务，依法惩治利用网络从事危害未成年人身心健康的活动，为未成年人提供安全、健康的网络环境。

第十四条 任何个人和组织有权对危害网络安全的行为向网信、电信、公安等部门举报。收到举报的部门应当及时依法作出处理；不属于本部门职责的，应当及时移送有权处理的部门。

有关部门应当对举报人的相关信息予以保密，保护举报人的合法权益。

第二章 网络安全支持与促进

第十五条 国家建立和完善网络安全标准体系。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和国务院其他有关部门根据各自的职责，组织制定并适时修订有关网络安全管理以及网络产品、服务和运行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

国家支持企业、研究机构、高等学校、网络相关行业组织参与网络安全国家标准、行业标准的制定。

第十六条 国务院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统筹规划，加大投入，扶持重点网络安全技术产业和项目，支持网络安全技术的研究开发和应用，推广安全可信的网络产品和服务，保护网络技术知识产权，支持企业、研究机构和高等学校等参与国家网络安全技术创新项目。

第十七条 国家推进网络安全社会化服务体系建设，鼓励有关企业、机构开展网络安全认证、检测和风险评估等安全服务。

第十八条 国家鼓励开发网络数据安全保护和利用技术，促进公共数据资源开放，推动技术创新和经济社会发展。

国家支持创新网络安全管理方式，运用网络新技术，提升网络安全保护水平。

第十九条 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组织开展经常性的网络安全宣传教育，并指导、督促有关单位做好网络安全宣传教育工作。

大众传播媒介应当有针对性地面向社会进行网络安全宣传教育。

第二十条 国家支持企业和高等学校、职业学校等教育培训机构开展网络安全相关教育与培训，采取多种方式培养网络安全人才，促进网络安全人才交流。

第三章 网络运行安全

第一节 一般规定

第二十一条 国家实行网络安全等级保护制度。网络运营者应当按照网络安全等级保护制度的要求，履行下列安全保护义务，保障网络免受干扰、破坏或者未经授权的访问，防止网络数据泄露或者被窃取、篡改：

（一）制定内部安全管理制度和操作规程，确定网络安全负责人，落实网络安全保护责任；
（二）采取防范计算机病毒和网络攻击、网络侵入等危害网络安全行为的技术措施；
（三）采取监测、记录网络运行状态、网络安全事件的技术措施，并按照规定留存相关的网络日志不少于六个月；
（四）采取数据分类、重要数据备份和加密等措施；
（五）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义务。

第二十二条 网络产品、服务应当符合相关国家标准的强制性要求。网络产品、服务的提供者不得设置恶意程序；发现其网络产品、服务存在安全缺陷、漏洞等风险时，应当立即采取补救措施，按照规定及时告知用户并向有关主管部门报告。

网络产品、服务的提供者应当为其产品、服务持续提供安全维护；在规定或者当事人约定的期限内，不得终止提供安全维护。

网络产品、服务具有收集用户信息功能的，其提供者应当向用户明示并取得同意；涉及用户个人信息的，还应当遵守本法和有关法律、行政法规关于个人信息保护的规定。

第二十三条 网络关键设备和网络安全专用产品应当按照相关国家标准的强制性要求，由具备资格的机构安全认证合格或者安全检测符合要求后，方可销售或者提供。国家网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公布网络关键设备和网络安全专用产品目录，并推动安全认证和安全检测结果互认，避免重复认证、检测。

第二十四条 网络运营者为用户办理网络接入、域名注册服务，办理固定电话、移动电话等入网手续，或者为用户提供信息发布、即时通讯等服务，在与用户签订协议或者确认提供服务时，

应当要求用户提供真实身份信息。用户不提供真实身份信息的，网络运营者不得为其提供相关服务。

国家实施网络可信身份战略，支持研究开发安全、方便的电子身份认证技术，推动不同电子身份认证之间的互认。

第二十五条 网络运营者应当制定网络安全事件应急预案，及时处置系统漏洞、计算机病毒、网络攻击、网络侵入等安全风险；在发生危害网络安全的事件时，立即启动应急预案，采取相应的补救措施，并按照规定向有关主管部门报告。

第二十六条 开展网络安全认证、检测、风险评估等活动，向社会发布系统漏洞、计算机病毒、网络攻击、网络侵入等网络安全信息，应当遵守国家有关规定。

第二十七条 任何个人和组织不得从事非法侵入他人网络、干扰他人网络正常功能、窃取网络数据等危害网络安全的活动；不得提供专门用于从事侵入网络、干扰网络正常功能及防护措施、窃取网络数据等危害网络安全活动的程序、工具；明知他人从事危害网络安全的活动的，不得为其提供技术支持、广告推广、支付结算等帮助。

第二十八条 网络运营者应当为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依法维护国家安全和侦查犯罪的活动提供技术支持和协助。

第二十九条 国家支持网络运营者之间在网络安全信息收集、分析、通报和应急处置等方面进行合作，提高网络运营者的安全保障能力。

有关行业组织建立健全本行业的网络安全保护规范和协作机制，加强对网络安全风险的分析评估，定期向会员进行风险警示，支持、协助会员应对网络安全风险。

第三十条 网信部门和有关部门在履行网络安全保护职责中获取的信息，只能用于维护网络安全的需要，不得用于其他用途。

第二节 关键信息基础设施的运行安全

第三十一条 国家对公共通信和信息服务、能源、交通、水利、金融、公共服务、电子政务等重要行业和领域，以及其他一旦遭到破坏、丧失功能或者数据泄露，可能严重危害国家安全、国计民生、公共利益的关键信息基础设施，在网络安全等级保护制度的基础上，实行重点保护。关键信息基础设施的具体范围和安全保护办法由国务院制定。

国家鼓励关键信息基础设施以外的网络运营者自愿参与关键信息基础设施保护体系。

第三十二条 按照国务院规定的职责分工，负责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工作的部门分别编制并组织实施本行业、本领域的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规划，指导和监督关键信息基础设施运行安全保护工作。

第三十三条 建设关键信息基础设施应当确保其具有支持业务稳定、持续运行的性能，并保证安全技术措施同步规划、同步建设、同步使用。

第三十四条 除本法第二十一条的规定外，关键信息基础设施的运营者还应当履行下列安全保护义务：

（一）设置专门安全管理机构和安全管理负责人，并对该负责人和关键岗位的人员进行安全背景审查；
（二）定期对从业人员进行网络安全教育、技术培训和技能考核；
（三）对重要系统和数据库进行容灾备份；
（四）制定网络安全事件应急预案，并定期进行演练；
（五）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义务。

第三十五条 关键信息基础设施的运营者采购网络产品和服务，可能影响国家安全的，应当通过国家网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组织的国家安全审查。

第三十六条 关键信息基础设施的运营者采购网络产品和服务，应当按照规定与提供者签订安全保密协议，明确安全和保密义务与责任。

第三十七条 关键信息基础设施的运营者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运营中收集和产生的个人信息和重要数据应当在境内存储。因业务需要，确需向境外提供的，应当按照国家网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的办法进行安全评估；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三十八条 关键信息基础设施的运营者应当自行或者委托网络安全服务机构对其网络的安全性和可能存在的风险每年至少进行一次检测评估，并将检测评估情况和改进措施报送相关负责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工作的部门。

第三十九条 国家网信部门应当统筹协调有关部门对关键信息基础设施的安全保护采取下列措施：

（一）对关键信息基础设施的安全风险进行抽查检测，提出改进措施，必要时可以委托网络安全服务机构对网络存在的安全风险进行检测评估；
（二）定期组织关键信息基础设施的运营者进行网络安全应急演练，提高应对网络安全事件的水平和协同配合能力；
（三）促进有关部门、关键信息基础设施的运营者以及有关研究机构、网络安全服务机构等之间的网络安全信息共享；
（四）对网络安全事件的应急处置与网络功能的恢复等，提供技术支持和协助。

第四章 网络信息安全

第四十条 网络运营者应当对其收集的用户信息严格保密，并建立健全用户信息保护制度。

第四十一条 网络运营者收集、使用个人信息，应当遵循合法、正当、必要的原则，公开收集、使用规则，明示收集、使用信息的目的、方式和范围，并经被收集者同意。

网络运营者不得收集与其提供的服务无关的个人信息，不得违反法律、行政法规的规定和双方的约定收集、使用个人信息，并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和与用户的约定，处理其保存的个人信息。

第四十二条 网络运营者不得泄露、篡改、毁损其收集的个人信息；未经被收集者同意，不得向他人提供个人信息。但是，经过处理无法识别特定个人且不能复原的除外。

网络运营者应当采取技术措施和其他必要措施，确保其收集的个人信息安全，防止信息泄露、毁损、丢失。在发生或者可能发生个人信息泄露、毁损、丢失的情况时，应当立即采取补救措施，按照规定及时告知用户并向有关主管部门报告。

第四十三条 个人发现网络运营者违反法律、行政法规的规定或者双方的约定收集、使用其个人信息的，有权要求网络运营者删除其个人信息；发现网络运营者收集、存储的其个人信息有错误的，有权要求网络运营者予以更正。网络运营者应当采取措施予以删除或者更正。

第四十四条 任何个人和组织不得窃取或者以其他非法方式获取个人信息，不得非法出售或者非法向他人提供个人信息。

第四十五条 依法负有网络安全监督管理职责的部门及其工作人员，必须对在履行职责中知悉的个人信息、隐私和商业秘密严格保密，不得泄露、出售或者非法向他人提供。

第四十六条 任何个人和组织应当对其使用网络的行为负责，不得设立用于实施诈骗，传授犯罪方法，制作或者销售违禁物品、管制物品等违法犯罪活动的网站、通讯群组，不得利用网络发布涉及实施诈骗，制作或者销售违禁物品、管制物品以及其他违法犯罪活动的信息。

第四十七条 网络运营者应当加强对其用户发布的信息的管理，发现法律、行政法规禁止发布或者传输的信息的，应当立即停止传输该信息，采取消除等处置措施，防止信息扩散，保存有关记录，并向有关主管部门报告。

第四十八条 任何个人和组织发送的电子信息、提供的应用软件，不得设置恶意程序，不得含有法律、行政法规禁止发布或者传输的信息。

电子信息发送服务提供者和应用软件下载服务提供者，应当履行安全管理义务，知道其用户有前款规定行为的，应当停止提供服务，采取消除等处置措施，保存有关记录，并向有关主管部门报告。

第四十九条 网络运营者应当建立网络信息安全投诉、举报制度，公布投诉、举报方式等信息，及时受理并处理有关网络信息安全的投诉和举报。

网络运营者对网信部门和有关部门依法实施的监督检查，应当予以配合。

第五十条 国家网信部门和有关部门依法履行网络信息安全监督管理职责，发现法律、行政法规禁止发布或者传输的信息的，应当要求网络运营者停止传输，采取消除等处置措施，保存有关记录；对来源于中华人民共和国境外的上述信息，应当通知有关机构采取技术措施和其他必要措施阻断传播。

第五章 监测预警与应急处置

第五十一条 国家建立网络安全监测预警和信息通报制度。国家网信部门应当统筹协调有关部门加强网络安全信息收集、分析和通报工作，按照规定统一发布网络安全监测预警信息。

第五十二条 负责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工作的部门，应当建立健全本行业、本领域的网络安全监测预警和信息通报制度，并按照规定报送网络安全监测预警信息。

第五十三条 国家网信部门协调有关部门建立健全网络安全风险评估和应急工作机制，制定网络安全事件应急预案，并定期组织演练。

负责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工作的部门应当制定本行业、本领域的网络安全事件应急预案，并定期组织演练。

网络安全事件应急预案应当按照事件发生后的危害程度、影响范围等因素对网络安全事件进行分级，并规定相应的应急处置措施。

第五十四条 网络安全事件发生的风险增大时，省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按照规定的权限和程序，并根据网络安全风险的特点和可能造成的危害，采取下列措施：

（一）要求有关部门、机构和人员及时收集、报告有关信息，加强对网络安全风险的监测；
（二）组织有关部门、机构和专业人员，对网络安全风险信息进行分析评估，预测事件发生的可能性、影响范围和危害程度；
（三）向社会发布网络安全风险预警，发布避免、减轻危害的措施。

第五十五条 发生网络安全事件，应当立即启动网络安全事件应急预案，对网络安全事件进行调查和评估，要求网络运营者采取技术措施和其他必要措施，消除安全隐患，防止危害扩大，并及时向社会发布与公众有关的警示信息。

第五十六条 省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在履行网络安全监督管理职责中，发现网络存在较大安全风险或者发生安全事件的，可以按照规定的权限和程序对该网络的运营者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进行约谈。网络运营者应当按照要求采取措施，进行整改，消除隐患。

第五十七条 因网络安全事件，发生突发事件或者生产安全事故的，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等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置。

第五十八条 因维护国家安全和社会公共秩序，处置重大突发社会安全事件的需要，经国务院决定或者批准，可以在特定区域对网络通信采取限制等临时措施。

第六章 法律责任

第五十九条 网络运营者不履行本法第二十一条、第二十五条规定的网络安全保护义务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或者导致危害网络安全等后果的，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处五千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

关键信息基础设施的运营者不履行本法第三十三条、第三十四条、第三十六条、第三十八条规定的网络安全保护义务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或者导致危害网络安全等后果的，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第六十条 违反本法第二十二条第一款、第二款和第四十八条第一款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或者导致危害网络安全等后果的，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一）设置恶意程序的；
（二）对其产品、服务存在的安全缺陷、漏洞等风险未立即采取补救措施，或者未按照规定及时告知用户并向有关主管部门报告的；
（三）擅自终止为其产品、服务提供安全维护的。

第六十一条 网络运营者违反本法第二十四条第一款规定，未要求用户提供真实身份信息，或者对不提供真实身份信息的用户提供相关服务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并可以由有关主管部门责令暂停相关业务、停业整顿、关闭网站、吊销相关业务许可证或者吊销营业执照，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第六十二条 违反本法第二十六条规定，开展网络安全认证、检测、风险评估等活动，或者向社会发布系统漏洞、计算机病毒、网络攻击、网络侵入等网络安全信息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并可以由有关主管部门责令暂停相关业务、停业整顿、关闭网站、吊销相关业务许可证或者吊销营业执照，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千元以上五万元以下罚款。

第六十三条 违反本法第二十七条规定，从事危害网络安全的活动，或者提供专门用于从事危害网络安全活动的程序、工具，或者为他人从事危害网络安全的活动提供技术支持、广告推广、支付结算等帮助，尚不构成犯罪的，由公安机关没收违法所得，处五日以下拘留，可以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情节较重的，处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可以并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罚款。

单位有前款行为的，由公安机关没收违法所得，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罚款，并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款规定处罚。

违反本法第二十七条规定，受到治安管理处罚的人员，五年内不得从事网络安全管理和网络运营关键岗位的工作；受到刑事处罚的人员，终身不得从事网络安全管理和网络运营关键岗位的工作。

第六十四条 网络运营者、网络产品或者服务的提供者违反本法第二十二条第三款、第四十一条至第四十三条规定，侵害个人信息依法得到保护的权利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可以根据情节单处或者并处警告、没收违法所得、处违法所得一倍以上十倍以下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一百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

罚款；情节严重的，并可以责令暂停相关业务、停业整顿、关闭网站、吊销相关业务许可证或者吊销营业执照。

违反本法第四十四条规定，窃取或者以其他非法方式获取、非法出售或者非法向他人提供个人信息，尚不构成犯罪的，由公安机关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一倍以上十倍以下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一百万元以下罚款。

第六十五条 关键信息基础设施的运营者违反本法第三十五条规定，使用未经安全审查或者安全审查未通过的网络产品或者服务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停止使用，处采购金额一倍以上十倍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第六十六条 关键信息基础设施的运营者违反本法第三十七条规定，在境外存储网络数据，或者向境外提供网络数据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并可以责令暂停相关业务、停业整顿、关闭网站、吊销相关业务许可证或者吊销营业执照；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第六十七条 违反本法第四十六条规定，设立用于实施违法犯罪活动的网站、通讯群组，或者利用网络发布涉及实施违法犯罪活动的信息，尚不构成犯罪的，由公安机关处五日以下拘留，可以并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情节较重的，处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可以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关闭用于实施违法犯罪活动的网站、通讯群组。

单位有前款行为的，由公安机关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并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款规定处罚。

第六十八条 网络运营者违反本法第四十七条规定，对法律、行政法规禁止发布或者传输的信息未停止传输、采取消除等处置措施、保存有关记录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拒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并可以责令暂停相关业务、停业整顿、关闭网站、吊销相关业务许可证或者吊销营业执照，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电子信息发送服务提供者、应用软件下载服务提供者，不履行本法第四十八条第二款规定的安全管理义务的，依照前款规定处罚。

第六十九条 网络运营者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一）不按照有关部门的要求对法律、行政法规禁止发布或者传输的信息，采取停止传输、消除等处置措施的；
（二）拒绝、阻碍有关部门依法实施的监督检查的；
（三）拒不向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提供技术支持和协助的。

第七十条 发布或者传输本法第十二条第二款和其他法律、行政法规禁止发布或者传输的信息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罚。

第七十一条 有本法规定的违法行为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记入信用档案，并予以公示。

第七十二条 国家机关政务网络的运营者不履行本法规定的网络安全保护义务的，由其上级机关或者有关机关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第七十三条 网信部门和有关部门违反本法第三十条规定，将在履行网络安全保护职责中获取的信息用于其他用途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网信部门和有关部门的工作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第七十四条 违反本法规定，给他人造成损害的，依法承担民事责任。

违反本法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七十五条 境外的机构、组织、个人从事攻击、侵入、干扰、破坏等危害中华人民共和国的关键信息基础设施的活动，造成严重后果的，依法追究法律责任；国务院公安部门和有关部门并可以决定对该机构、组织、个人采取冻结财产或者其他必要的制裁措施。

第七章 附 则

第七十六条 本法下列用语的含义：

（一）网络，是指由计算机或者其他信息终端及相关设备组成的按照一定的规则和程序对信息进行收集、存储、传输、交换、处理的系统。

（二）网络安全，是指通过采取必要措施，防范对网络的攻击、侵入、干扰、破坏和非法使用以及意外事故，使网络处于稳定可靠运行的状态，以及保障网络数据的完整性、保密性、可用性的能力。

（三）网络运营者，是指网络的所有者、管理者和网络服务提供者。

（四）网络数据，是指通过网络收集、存储、传输、处理和产生的各种电子数据。

（五）个人信息，是指以电子或者其他方式记录的能够单独或者与其他信息结合识别自然人个人身份的各种信息，包括但不限于自然人的姓名、出生日期、身份证件号码、个人生物识别信息、住址、电话号码等。

第七十七条 存储、处理涉及国家秘密信息的网络的运行安全保护，除应当遵守本法外，还应当遵守保密法律、行政法规的规定。

第七十八条 军事网络的安全保护，由中央军事委员会另行规定。

第七十九条 本法自 2017 年 6 月 1 日起施行。

제 7 장 데이터안전법

데이터안전법

□ 제정 배경

- 중국인민대표대회는 2020 년 6 월 28 일 <데이터안전법(초안)>을 처음으로 심의한 후, 총 3 차에 걸친 심의안을 논의한 끝에 <데이터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이하 '데이터안전법'이라 함)을 최종 확정하고 공포하여 202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데이터안전법>은 데이터안전 및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본법률로서 총 7 장 55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데이터 등급 분류 보호제도를 데이터 안전의 기본 핵심제도로 하여 등급분류를 통한 데이터 보호를 강조하고 데이터 해외 이전에 대한 안전관리, 업계규범제정, 데이터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국가기관의 직책과 협조체제 강조, 중요 데이터에 대한 보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입법취지

-본 법은 <네트워크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중국 데이터·정보 보호 관련 3 대 법규의 하나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 재산적 이익 보호에 중점을 둔 것에 반하여 본 법은 국가안보와 사회적 공익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둔 점, <네트워크안전법>이 사이버 영역에 대한 안전보호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본 법은 사이버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유형의 '데이터(数据)'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적용대상이 넓은 점이 특색임
- 본 법은 데이터를 국가 안전의 측면에서 관리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어 중국 정부의 데이터의 감독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데이터 처리활동의 규범화, 데이터안전의 보장, 데이터 개발 및

이용 촉진,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 보장, 국가 주권 및 안전과 발전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적용범위	- 중국 경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처리 및 해외에서 진행하는 데이터처리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전, 공공이익 또는 중국의 개인,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본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적용범위를 역외로 확대
용어 정의	- '데이터'란 전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루어진 정보에 대한 모든 기록을 가리킴 -'데이터 처리'란 데이터의 수집, 저장, 사용, 가공, 전송, 제공, 공개 등을 지칭 -'데이터 안전'이라 함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합법적으로 이용되는 상태를 확보하며 지속적인 안전상태를 보장하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을 지칭함 -'국가핵심데이터'는 국가안전 및 국민경제의 근간, 중요한 민생, 중대한 공공이익과 관련된 데이터를 말함
데이터 분류 등급	- 국가는 데이터 중요도 및 데이터의 불법 이용 시 초래할 수 있는 위해 정도에 근거하여 데이터에 대한 등급 분류 보호를 실시하여야 함 - 일반데이터, 중요데이터, 핵심데이터 등으로 분류하여 중요데이터 및 핵심데이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고강도의 보호조치를 시행함
데이터 안전 심사 제도	-국가는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안전심사를 진행해야 함
중요 데이터 리스크 평가 제도	-'중요 데이터 처리자(重要数据的处理者)'는 데이터 처리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위험 리스크 평가를 진행하고 유관 주관부서에 리스크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중요 데이터의 정의에 대해서는 하위 규범에서 확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데이터 안전 보호의무	-조직과 개인은 데이터 처리 진행 중 데이터 안전보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데이터 안전관리제도 수립, 데이터 안전교육, 리스크 모니터링,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주관부서에 대한 보고, 데이터 획득의 합법성·정당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함
해외 사법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공 협조	-해외 사법기관 또는 집행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 시 중국 내 회사 또는 개인은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만 해외 사법기관 또는 집행기관에 중국 역내에 저장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 해외 국가의 법률상 중국 사법기관 또는 집행기관의 데이터 요청에 제한을 두고 있다면 중국 주관부서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해외 국가의 데이터 이용 차별성 조치에 대한 보복조치	- 어떠한 국가 또는 지역(정부)가 데이터와 데이터 개발 이용 기술 관련 투자 및 무역 방면에서 중국에 대해 차별적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 또는 지역(정부)에 대해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데이터 사용 및 데이터 개발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투자 및 무역에 대한 외국의 제한조치에 대응한 보복조치 가능성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자국 기업의 경제·무역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데이터 보호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법위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허가 취소, 벌금 등을 부과하는데, 직접적인 책임자는 최고 500 만 위안의 벌금, 국가 주권·안전과 발전이익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최고 1 천만 위안의 벌금에 처함

□ 시사점

- <데이터안전법> 시행에 발맞추어 동 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데이터를 중국 내 또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는 경우 그러한 데이터의 처리가 중국 <데이터안전법> 및 관련 규정 또는 규칙에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법규에 부합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중국에서 데이터안전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데이터안전법에 따라 준법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의 수집, 전송, 저장 등 전면적인 안전시스템을 확보해야 함

- 따라서 해당 기업은 관련된 산업의 데이터 관리 동향을 유의하면서 기업 내 데이터 안전 관련 전문인력 배치, 데이터를 유형별, 등급별로 분류 및 관리하는 조치, 내부 데이터 안전보호 관리시스템 점검 및 보완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출처**

- 중문 원문 다운로드: 국가법률법규 DB (国家法律法规数据库)
https://flk.npc.gov.cn/detail2.html?ZmY4MDgxODE3OWY1ZTA4MDAxNzlmODg1YzdlNzAzOTI%3D

□ **파일첨부**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전문(한글본)

제 1 장 총칙

제 1 조 데이터 처리활동을 규범화 하고,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하며, 데이터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개인,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의 주권, 안보 및 발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데이터 처리활동 및 그 보안 감독관리를 전개하는 경우, 본 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서 데이터 처리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안보, 공공이익 또는 공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경우, 법에 따라 법률 책임을 추궁한다.

제 3 조 본 법이 말하는 데이터란 정보에 대한 전자 또는 기타 형식의 모든 기록을 가리킨다.
데이터 처리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가공, 전송, 제공, 거래, 공개 등을 포함한다.
데이터보안이란, 필요한 조치를 통해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합법적으로 이용되는 상태에 있도록 확보하고, 지속적 안전 상태를 보장하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 4 조 데이터보안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 전체의 안보관을 견지하고, 데이터보안 관리 체계를 수립하며, 데이터보안 보장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5 조 중앙의 국가안보 지도기관은 데이터보안 업무의 의사결정과 의사조정을 담당하고, 국가 데이터보안의 전략 및 관련 중대 방침정책을 연구제정하고 지도실시하며, 국가 데이터보안의 중대 사항과 중요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국가 데이터보안 업무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제 6 조 각 지역, 각 부문은 해당 지역, 해당 부문의 업무 중에 수집하고 생산된 데이터 및 데이터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업, 통신, 교통, 금융, 자연자원, 위생건강, 교육, 과학기술 등 업종 주관부문은 본 업계와 본 영역의 데이터보안 관리감독 책임을 담당한다. 공안기관, 국가보안기관 등은 본 법과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데이터보안 관리감독의 직책을 담당한다.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문은 본 법과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 데이터보안과 유관 관리감독 업무의 총괄 조정을 담당한다.

제 7 조 국가는 개인, 조직의 데이터 관련 권익을 보호하고, 데이터가 법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장려하며, 데이터가 법에 따라 질서 있고 자유롭게 유동하도록 보장하고, 데이터를 핵심 요소로 하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

제 8 조 데이터 처리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의 공중도덕과 윤리를 존중하며, 상업도덕과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며, 데이터보안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여야 하며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을 해하거나 공민,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제 9 조 국가는 데이터보안 지식의 홍보보급을 지원하고, 사회 전반의 데이터보안 보호 의식과 수준을 높이며, 유관 부문, 업계조직, 연구기구, 기업, 개인 등이 데이터보안 보호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하며 사회 전반이 공동으로 데이터보안을 유지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양호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 10 조 관련 업계 조직은 정관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데이터보안 행위규범과 단체 표준을 제정하고, 업계 자율을 강화하며, 회원의 데이터보안 보호를 강화하고, 데이터보안 보호 수준을 높이도록 지도하며,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제 11 조 국가는 적극적으로 데이터보안 관리, 데이터 개발이용 등 분야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고, 데이터보안과 관련된 국제 규칙과 표준의 제정에 참여하며, 데이터 국외 이전의 안전과 자유로운 유동을 촉진한다.

제 12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관련 주관부문에 고발, 신고할 권리가 있다. 고발, 신고를 접수한 부문은 적시에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유관 주관부문은 고발, 신고인의 관련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고발, 신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 2 장 데이터보안과 발전

제 13 조 국가는 발전과 보안을 총괄하고, 데이터의 개발이용과 산업발전으로 데이터보안을 촉진하며, 데이터보안으로 데이터의 개발이용과 산업발전을 보장한다.

제 14 조 국가는 빅데이터 전략을 실시하고, 데이터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며, 데이터가 각 업종, 각 분야에서 혁신적으로 응용되도록 장려 및 지원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는 디지털 경제발전계획을 본급(本级)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며 필요에 근거해 디지털 경제발전계획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 15 조 국가는 데이터의 개발이용을 지원하여 공공서비스의 스마트화(智能化) 수준을 높인다. 스마트화 공공서비스 제공은 노인과 장애인의 수요를 고려하여야 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장애를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제 16 조 국가는 데이터 개발이용 및 데이터보안 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데이터 개발이용과 데이터보안 등 분야의 기술 보급과 비즈니스 혁신을 장려하며, 데이터 개발이용과 데이터보안 제품, 산업체계를 육성, 발전시킨다.

제 17 조 국가는 데이터 개발이용 기술과 데이터보안 표준체계 건설을 추진한다. 국무원의 표준화 행정 주관부문과 국무원의 유관 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데이터 개발이용 기술, 제품, 데이터보안에 관한 표준을 조직 제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개정한다. 국가는 기업, 사회단체 및 교육, 과학연구 기관 등이 표준 제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제 18 조 국가는 데이터보안의 테스트 평가, 인증 등의 서비스 발전을 촉진하고, 데이터보안의 테스트 평가, 인증 등 전문기관이 법률에 따라 서비스 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다. 국가는 유관 부문, 업계조직, 기업, 교육과 연구기관, 유관 전문기관 등이 데이터보안의 위험성 평가, 방비, 처리 등 방면에서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제 19 조 국가는 완전한 데이터 거래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데이터 거래 행위를 규범화하며, 데이터 거래 시장을 육성한다.

제 20 조 국가는 교육, 과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데이터 개발이용 기술 및 데이터보안 관련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방식을 취하여 데이터 개발이용 기술과 데이터보안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인재 교류를 촉진한다.

제 3 장 데이터보안 제도

제 21 조 국가는 디지털 분류, 분급 보호 제도를 수립하고 데이터의 경제사회 발전에서의 중요 정도 그리고 일단 변조, 파괴, 유출, 불법 취득, 불법 이용 시 국가안보, 공공이익이나 개인,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초래하는 위해 정도에 근거하여, 데이터에 대한 분급, 분류 보호를 시행한다. 국가 데이터보안 업무 조정 메커니즘은 유관 부문이 중요데이터 목록을 제정하고, 중요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총괄 조정한다. 국가안보, 국민경제 명맥, 중요 민생, 중대 공공이익 등에 관계되는 데이터는 국가 핵심 데이터에 속하고, 더욱 엄격한 관리 제도를 실행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디지털 분류, 분급 보호제도에 따라, 해당 지역, 해당 부문 및 관련 업계, 영역의 중요데이터의 구체적 목록을 정하여, 목록에 기입된 데이터에 대하여 중점 보호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22 조 국가는 중앙집권적이고 통일적이며 고효율적이고 권위적인 데이터 보안 위험성 평가, 보고, 정보공유, 모니터링 조기경보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국가 데이터보안 업무 조정 메커니즘은 유관 부문이 데이터보안 위험성 정보의 취득, 분석, 판독, 경보 업무를 강화하도록 총괄 조정한다.

제 23 조 국가는 데이터보안 응급처치 시스템을 수립한다. 데이터보안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유관 주관부문은 법에 따라 응급 대비책을 발동하고, 상응하는 응급처치 조치를 취하여 보안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며 대중과 관련된 경보 정보를 적시에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 24 조 국가는 데이터보안 심사 제도를 구축하고,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처리활동에 대하여 보안 심사를 진행한다. 법에 따라 내린 보안 심사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이 된다.

제 25 조 국가는 국가의 안보와 이익 수호 및 국제의무 이행과 관련되며 통제 품목에 속하는 데이터에 대하여 법에 따라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

제 26 조 어떤 국가나 지역이 데이터 및 데이터 개발이용 기술 등과 관련된 투자, 무역 방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차별적 금지, 제한 및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 대하여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 장 데이터보안 보호 의무

제 27 조 데이터 처리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 과정의 데이터보안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데이터보안 교육 훈련을 조직하고 실시하며, 상응한 기술적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데이터보안을 보장하여야 한다.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데이터 처리활동을 전개할 경우, 네트워크 보안 등급보호 제도의 기초에서 상술한 데이터보안 보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중요데이터의 취급자는 데이터보안 책임자와 관리 기관을 만들어, 데이터보안 보호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28 조 데이터 처리활동을 전개하고 데이터 신기술을 연구개발할 경우, 경제사회발전 촉진과 국민복지 증진에 유리하여야 하고, 사회 공중도덕과 윤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 29 조 데이터 처리활동을 전개할 경우, 위험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데이터보안 결함, 취약점 등 위험성을 발견할 경우,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데이터 보안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처리 조치를 취하고, 규정에 따라 적시에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유관 주관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0 조 중요데이터의 취급자는 규정에 따라 그 데이터 처리활동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유관 주관부문에 위험성 평가 보고를 보내야 한다. 위험성 평가 보고는 중요데이터의 종류, 수량, 데이터 처리활동 상황, 직면한 데이터보안 위험성 및 그 대응 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31 조 핵심정보인프라 운영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운영 중에 수집 및 생산한 중요데이터의 국외전송 보안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기타 데이터 처리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수집 및 생산한 중요데이터의 국외전송 보안 관리 방법은 국가 네트워크 정보 부문이 국무원 유관 부문과 함께 제정한다.

제 32 조 어떠한 조직, 개인도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을 채택하여야 하며 절도나 기타 불법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획득해서는 안된다. 법률,

행정법규가 데이터의 수집, 이용 목적,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수집, 사용하여야 한다.

제 33 조 데이터 거래 중개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출처를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거래 쌍방의 신원을 심사하며, 심사, 거래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 34 조 법률, 행정법규에서 데이터 처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행정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 35 조 공안기관, 국가안보기관이 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보호하거나 범죄수사를 수행할 필요로 인해 데이터를 수거할 경우,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 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관련 조직, 개인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 36 조 중화인민공화국 주관 기관은 유관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 조약, 협정에 근거하여 또는 평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사법 또는 법집행 기관의 데이터 제공에 관한 요청을 처리한다. 국내의 조직,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외국의 사법 또는 법집행 기관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저장된 데이터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 5 장 정무(政务) 데이터보안과 개방

제 37 조 국가는 전자정무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정무 데이터의 과학성, 정확성, 시효성(时效性)을 높이고,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한 경제사회발전의 능력을 높인다.

제 38 조 국가기관이 법이 정한 직무수행의 필요를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 사용할 경우 법이 정한 직무수행의 범위 내에서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직무수행 중에 얻은 개인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상업비밀, 비밀유지 비즈니스정보 등의 데이터에 대하여 법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유출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제 39 조 국가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보안 관리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고, 데이터보안 보호 책임을 이행하며, 정무 데이터보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40 조 국가기관이 전자정무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정무 데이터의 저장, 가공 등을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 수탁자가 상응하는 데이터보안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과 계약 약정에 따라 데이터보안 보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정무 데이터를 독단적으로 보존, 사용, 유출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제 41 조 국가기관은 공정, 공평, 국민 편리(便民)의 원칙에 따라, 정무 데이터를 적시에 정확하게 개방하여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제 42 조 국가는 정무 데이터의 개방 목록을 작성하고, 통일적 규범, 상호연결 소통(互联互通), 보안 통제가능의 정무 데이터 개방 플랫폼을 구축하며, 정무 데이터의 개방 이용을 추진한다.

제 43 조 법률, 법규의 수권에 의하여 공공사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이 법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 처리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6 장 법률 책임

제 44 조 유관 주관부문이 데이터보안 감독관리 업무 수행 중에, 데이터 처리활동에 비교적 큰 보안 위험성이 존재함을 발견한 경우,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유관 조직, 개인에 대한 약속면담을 진행하고 유관 조직, 개인이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개선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45 조 데이터 처리활동을 전개하는 조직, 개인이 본 법 제 27 조, 제 29 조, 제 30 조가 규정한 데이터보안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관 주관부문은 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5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직접 책임의 주관 인원에게 1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정을 거부하거나 대량의 데이터 유출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50 만 위안 이상 2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관련 업무 일시정지, 업무정지정, 관련 업무 허가증 말소 또는 영업허가증 말소를 명령할 수 있으며, 직접 담당의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 인원에게 5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 핵심 데이터 관리 제도를 위반하여, 국가주권, 안보 및 발전이익을 해칠 경우, 유관 주관부문은 200 만 위안 이상 1,0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황에 근거해 관련 업무 일시정지, 업무정지, 관련 업무 허가증 말소 또는 영업허가증 말소를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6 조 본 법 제 31 조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 중요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유관 부문이 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1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직접 책임의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 인원에 대하여 1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100 만 위안 이상 1,0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관련 업무 일지정지, 업무정지, 관련 업무허가증 말소 또는 영업허가증 말소를 명령할 수 있으며, 직접 책임의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 인원에 대하여 1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7 조 데이터 거래 중개서비스 기관이 본 법 제 33 조가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관 주관부문이 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10 만 위안 이하인 경우, 1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관련 업무 일시정지, 업무정지, 관련 업무 허가증 말소 또는 영업 허가증 말소를 명령할 수 있다. 직접 책임의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 인원에 대하여 1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8 조 본 법의 제 35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데이터 수거를 거부하고 비협조적인 경우, 유관 주관부문이 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5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직접 책임의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 인원에 대하여 1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 제 36 조 규정을 위반하여, 주관 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외국의 사법 또는 법집행 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유관 주관 부문은 경고를 주고, 1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직접 책임의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 인원에 대하여 1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100 만 위안 이상 5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관련 업무 일시정지, 업무정지, 관련 업무 허가증 말소 또는 영업허가증 말소를 명령할 수 있으며, 직접 책임의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 인원에 대하여 5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49 조 국가 기관이 본 법이 규정한 데이터보안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책임의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 인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 50 조 데이터보안 감독관리 책임을 이행하는 국가 업무 인원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개인적 목적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 51 조 데이터를 절도하거나 기타 불법적 방식으로 데이터를 획득하여, 데이터 처리활동을 전개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거나 개인,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해칠 경우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52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부담한다.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 7 장 부칙

제 53 조 국가기밀에 관련된 데이터 처리활동을 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밀수호법≫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통계, 서류 업무 중 데이터 처리활동을 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데이터 처리활동을 전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54 조 군사 데이터보안 보호의 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가 본 법에 의거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 55 조 본 법은 202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전문(중문)

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规范数据处理活动，保障数据安全，促进数据开发利用，保护个人、组织的合法权益，维护国家主权、安全和发展利益，制定本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开展数据处理活动及其安全监管，适用本法。

在中华人民共和国境外开展数据处理活动，损害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公共利益或者公民、组织合法权益的，依法追究法律责任。

第三条 本法所称数据，是指任何以电子或者其他方式对信息的记录。

数据处理，包括数据的收集、存储、使用、加工、传输、提供、公开等。

数据安全，是指通过采取必要措施，确保数据处于有效保护和合法利用的状态，以及具备保障持续安全状态的能力。

第四条 维护数据安全，应当坚持总体国家安全观，建立健全数据安全治理体系，提高数据安全保障能力。

第五条 中央国家安全领导机构负责国家数据安全工作的决策和议事协调，研究制定、指导实施国家数据安全战略和有关重大方针政策，统筹协调国家数据安全的重大事项和重要工作，建立国家数据安全工作协调机制。

第六条 各地区、各部门对本地区、本部门工作中收集和产生的数据及数据安全负责。

工业、电信、交通、金融、自然资源、卫生健康、教育、科技等主管部门承担本行业、本领域数据安全监管职责。

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等依照本法和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在各自职责范围内承担数据安全监管职责。

国家网信部门依照本法和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负责统筹协调网络数据安全和相关监管工作。

第七条 国家保护个人、组织与数据有关的权益，鼓励数据依法合理有效利用，保障数据依法有序自由流动，促进以数据为关键要素的数字经济发展。

第八条 开展数据处理活动，应当遵守法律、法规，尊重社会公德和伦理，遵守商业道德和职业道德，诚实守信，履行数据安全保护义务，承担社会责任，不得危害国家安全、公共利益，不得损害个人、组织的合法权益。

第九条 国家支持开展数据安全知识宣传普及，提高全社会的数据安全保护意识和水平，推动有关部门、行业组织、科研机构、企业、个人等共同参与数据安全保护工作，形成全社会共同维护数据安全和促进发展的良好环境。

第十条 相关行业组织按照章程，依法制定数据安全行为规范和团体标准，加强行业自律，指导会员加强数据安全保护，提高数据安全保护水平，促进行业健康发展。

第十一条 国家积极开展数据安全治理、数据开发利用等领域的国际交流与合作，参与数据安全相关国际规则和标准的制定，促进数据跨境安全、自由流动。

第十二条 任何个人、组织都有权对违反本法规定的行为向有关主管部门投诉、举报。收到投诉、举报的部门应当及时依法处理。

有关主管部门应当对投诉、举报人的相关信息予以保密，保护投诉、举报人的合法权益。

第二章　数据安全与发展

第十三条 国家统筹发展和安全，坚持以数据开发利用和产业发展促进数据安全，以数据安全保障数据开发利用和产业发展。

第十四条 国家实施大数据战略，推进数据基础设施建设，鼓励和支持数据在各行业、各领域的创新应用。

省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数字经济发展纳入本级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并根据需要制定数字经济发展规划。

第十五条 国家支持开发利用数据提升公共服务的智能化水平。提供智能化公共服务，应当充分考虑老年人、残疾人的需求，避免对老年人、残疾人的日常生活造成障碍。

第十六条 国家支持数据开发利用和数据安全技术研究，鼓励数据开发利用和数据安全等领域的技术推广和商业创新，培育、发展数据开发利用和数据安全产品、产业体系。

第十七条 国家推进数据开发利用技术和数据安全标准体系建设。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和国务院有关部门根据各自的职责，组织制定并适时修订有关数据开发利用技术、产品和数据安全相关标准。国家支持企业、社会团体和教育、科研机构等参与标准制定。

第十八条 国家促进数据安全检测评估、认证等服务的发展，支持数据安全检测评估、认证等专业机构依法开展服务活动。

国家支持有关部门、行业组织、企业、教育和科研机构、有关专业机构等在数据安全风险评估、防范、处置等方面开展协作。

第十九条 国家建立健全数据交易管理制度，规范数据交易行为，培育数据交易市场。

第二十条 国家支持教育、科研机构和企业等开展数据开发利用技术和数据安全相关教育和培训，采取多种方式培养数据开发利用技术和数据安全专业人才，促进人才交流。

第三章　数据安全制度

第二十一条 国家建立数据分类分级保护制度，根据数据在经济社会发展中的重要程度，以及一旦遭到篡改、破坏、泄露或者非法获取、非法利用，对国家安全、公共利益或者个人、组织合法权

益造成的危害程度，对数据实行分类分级保护。国家数据安全工作协调机制统筹协调有关部门制定重要数据目录，加强对重要数据的保护。

关系国家安全、国民经济命脉、重要民生、重大公共利益等数据属于国家核心数据，实行更加严格的管理制度。

各地区、各部门应当按照数据分类分级保护制度，确定本地区、本部门以及相关行业、领域的重要数据具体目录，对列入目录的数据进行重点保护。

第二十二条 国家建立集中统一、高效权威的数据安全风险评估、报告、信息共享、监测预警机制。国家数据安全工作协调机制统筹协调有关部门加强数据安全风险信息的获取、分析、研判、预警工作。

第二十三条 国家建立数据安全应急处置机制。发生数据安全事件，有关主管部门应当依法启动应急预案，采取相应的应急处置措施，防止危害扩大，消除安全隐患，并及时向社会发布与公众有关的警示信息。

第二十四条 国家建立数据安全审查制度，对影响或者可能影响国家安全的数据处理活动进行国家安全审查。

依法作出的安全审查决定为最终决定。

第二十五条 国家对与维护国家安全和利益、履行国际义务相关的属于管制物项的数据依法实施出口管制。

第二十六条 任何国家或者地区在与数据和数据开发利用技术等有关的投资、贸易等方面对中华人民共和国采取歧视性的禁止、限制或者其他类似措施的，中华人民共和国可以根据实际情况对该国家或者地区对等采取措施。

第四章　数据安全保护义务

第二十七条 开展数据处理活动应当依照法律、法规的规定，建立健全全流程数据安全管理制度，组织开展数据安全教育培训，采取相应的技术措施和其他必要措施，保障数据安全。利用互联网等信息网络开展数据处理活动，应当在网络安全等级保护制度的基础上，履行上述数据安全保护义务。

重要数据的处理者应当明确数据安全负责人和管理机构，落实数据安全保护责任。

第二十八条 开展数据处理活动以及研究开发数据新技术，应当有利于促进经济社会发展，增进人民福祉，符合社会公德和伦理。

第二十九条 开展数据处理活动应当加强风险监测，发现数据安全缺陷、漏洞等风险时，应当立即采取补救措施；发生数据安全事件时，应当立即采取处置措施，按照规定及时告知用户并向有关主管部门报告。

第三十条 重要数据的处理者应当按照规定对其数据处理活动定期开展风险评估，并向有关主管部门报送风险评估报告。

风险评估报告应当包括处理的重要数据的种类、数量，开展数据处理活动的情况，面临的数据安全风险及其应对措施等。

第三十一条 关键信息基础设施的运营者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运营中收集和产生的重要数据的出境安全管理，适用《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的规定；其他数据处理者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运营中收集和产生的重要数据的出境安全管理办法，由国家网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第三十二条 任何组织、个人收集数据，应当采取合法、正当的方式，不得窃取或者以其他非法方式获取数据。

法律、行政法规对收集、使用数据的目的、范围有规定的，应当在法律、行政法规规定的目的和范围内收集、使用数据。

第三十三条 从事数据交易中介服务的机构提供服务，应当要求数据提供方说明数据来源，审核交易双方的身份，并留存审核、交易记录。

第三十四条 法律、行政法规规定提供数据处理相关服务应当取得行政许可的，服务提供者应当依法取得许可。

第三十五条 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因依法维护国家安全或者侦查犯罪的需要调取数据，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经过严格的批准手续，依法进行，有关组织、个人应当予以配合。

第三十六条 中华人民共和国主管机关根据有关法律和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协定，或者按照平等互惠原则，处理外国司法或者执法机构关于提供数据的请求。非经中华人民共和国主管机关批准，境内的组织、个人不得向外国司法或者执法机构提供存储于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数据。

第五章　政务数据安全与开放

第三十七条 国家大力推进电子政务建设，提高政务数据的科学性、准确性、时效性，提升运用数据服务经济社会发展的能力。

第三十八条 国家机关为履行法定职责的需要收集、使用数据，应当在其履行法定职责的范围内依照法律、行政法规规定的条件和程序进行；对在履行职责中知悉的个人隐私、个人信息、商业秘密、保密商务信息等数据应当依法予以保密，不得泄露或者非法向他人提供。

第三十九条 国家机关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建立健全数据安全管理制度，落实数据安全保护责任，保障政务数据安全。

第四十条 国家机关委托他人建设、维护电子政务系统，存储、加工政务数据，应当经过严格的批准程序，并应当监督受托方履行相应的数据安全保护义务。受托方应当依照法律、法规的规定和合同约定履行数据安全保护义务，不得擅自留存、使用、泄露或者向他人提供政务数据。

第四十一条 国家机关应当遵循公正、公平、便民的原则，按照规定及时、准确地公开政务数据。依法不予公开的除外。

第四十二条 国家制定政务数据开放目录，构建统一规范、互联互通、安全可控的政务数据开放平台，推动政务数据开放利用。

第四十三条 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为履行法定职责开展数据处理活动，适用本章规定。

第六章　法律责任

第四十四条 有关主管部门在履行数据安全监管职责中，发现数据处理活动存在较大安全风险的，可以按照规定的权限和程序对有关组织、个人进行约谈，并要求有关组织、个人采取措施进行整改，消除隐患。

第四十五条 开展数据处理活动的组织、个人不履行本法第二十七条、第二十九条、第三十条规定的数据安全保护义务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可以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可以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拒不改正或者造成大量数据泄露等严重后果的，处五十万元以上二百万元以下罚款，并可以责令暂停相关业务、停业整顿、吊销相关业务许可证或者吊销营业执照，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款。

违反国家核心数据管理制度，危害国家主权、安全和发展利益的，由有关主管部门处二百万元以上一千万元以下罚款，并根据情况责令暂停相关业务、停业整顿、吊销相关业务许可证或者吊销营业执照；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四十六条 违反本法第三十一条规定，向境外提供重要数据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可以并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可以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处一百万元以上一千万元以下罚款，并可以责令暂停相关业务、停业整顿、吊销相关业务许可证或者吊销营业执照，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罚款。

第四十七条 从事数据交易中介服务的机构未履行本法第三十三条规定的义务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处违法所得一倍以上十倍以下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十万元的，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罚款，并可以责令暂停相关业务、停业整顿、吊销相关业务许可证或者吊销营业执照；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第四十八条 违反本法第三十五条规定，拒不配合数据调取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

违反本法第三十六条规定，未经主管机关批准向外国司法或者执法机构提供数据的，由有关主管部门给予警告，可以并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可以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罚款；造成严重后果的，处一百万元以上五百万元以下罚款，并可以责令暂停相关业务、停业整顿、吊销相关业务许可证或者吊销营业执照，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

第四十九条 国家机关不履行本法规定的数据安全保护义务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第五十条 履行数据安全监管职责的国家工作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

第五十一条 窃取或者以其他非法方式获取数据，开展数据处理活动排除、限制竞争，或者损害个人、组织合法权益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罚。

第五十二条 违反本法规定，给他人造成损害的，依法承担民事责任。

违反本法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七章　附则

第五十三条 开展涉及国家秘密的数据处理活动，适用《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等法律、行政法规的规定。

在统计、档案工作中开展数据处理活动，开展涉及个人信息的数据处理活动，还应当遵守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

第五十四条 军事数据安全保护的办法，由中央军事委员会依据本法另行制定。

第五十五条 本法自 2021 年 9 月 1 日起施行。

제 8 장 특허법

특허법 개정



□ 개정 배경

-중국은 1985 년 <특허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18] (이하 '특허법'이라 함)을 제정한 이래로 3 차례의 개정이 있었고 이번 4 차 개정은 2020 년 10 월 17 일에 개최된 제 13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2 차 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 2021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개정 특허법은 총 8 장 82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권자의 입증책임부담의 완화,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평가되며 부분디자인권 보호, 의약품 특허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의 실시와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 입법취지

- 중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취약한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허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을 보완하여 선진국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를 한 것이 특색임

- 개정법에서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특허 피해자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부분) 디자인보호제도 강화 등을 도입하여 특허권자의 권익보호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대내외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보임

[18]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관련하여 개별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법>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모두 규율하고 있다.

□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 개정 내용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고의적이며 중대한 특허권 침해의 경우 불법이익의 최고 5 배 이하까지 배상 가능, 침해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법정 손해배상액을 종전 '1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 에서 '3 만 위안 이상 500 만 위안 이하' 로 증액, 입증책임 부담의 완화, 소송제기 전의 보존조치 시행, 특허권 침해소송 시효를 3 년(종전 2 년)으로 연장함 -의약품 특허분쟁의 조기 해결제도(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하여 의약품 출시 심사과정에서 허가신청인, 특허권자, 이해관계인 등 간의 분쟁발생 시 행정심판 제기, 인민법원 제소, 감독관리부서의 허가심사중단 등 심사단계에서 조기해결 메커니즘을 도입함 -특허권자의 신의성실 원칙 준수 규정 신설하여 특허 출원과 특허권 행사에서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지 않도록 특허권 남용 금지를 명문화하였으며 특허권 남용, 경쟁제한 또는 배제 등의 독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반독점법' 으로 처리
특허 실시·활용 촉진	-직무발명을 통한 특허의 실시·활용 촉진의 목적으로 직무발명자에게 지분권·선물옵션·배당 등의 방식으로 발명자의 혁신에 대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의약품 특허기간 보상제도 신설하여 특허권자가 신약 출시 허가 관련하여 심사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최장 5 년 이내)를 신설
디자인 보호 강화	-부분디자인제도 도입하여 디자인의 정의에서 제품 전체 뿐만 아니라 일부분의 형상, 도안, 또는 그 결합 등 제품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도 포함하여 보호한다고 하여 제품의 일부분만으로 디자인권 등록 가능하게 됨

	-디자인 보호기간을 종전의 10 년에서 15 년으로 연장 확대하고 이는 2021 년 6 월 1 일 이후 출원건부터 적용 -개정신법에서는 디자인(外观设计专利)에도 국내우선권제도 도입하여 디자인의 중국 내 최초 출원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동일한 주제로 한국에 출원했던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종래 발명특허와 실용신안특허에 대해서만 국내우선권을 인정했던 국내우선권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 시사점

-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등록 받은 부분디자인을 중국에 출원하는 경우 종전에는 제품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디자인만으로 실효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부분디자인 제도의 도입으로 선진국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게 된 점, 그동안 특허침해의 배상액이 충분하지 못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고의적 침해에 대한 배상액이 증가한 점, 의약품 개발 및 관련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신약 출시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이 된 점 등 특허권자의 권익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늘어났다고 높게 평가됨
- 반면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한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개정된 제도와 절차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

□ 출처

- 중문 원문 다운로드: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http://www.npc.gov.cn/npc/c30834/202011/82354d98e70947c09dbc5e4eeb78bdf3.shtml

□ 신구조문 대조표

중국 (구)특허법과 개정 특허법 조문 대조표

(구)특허법	개정 특허법
제 2 조 ① 본 법에서 발명창조라 함은 발명・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말한다. ② 발명이란 제품・방법 또는 그 개량에 의하여 도출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③ 실용신안이란, 제품의 형상・구조 또는 그 결합에 의하여 도출된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④ 디자인이란 제품의 형상・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도안의 결합에 의하여 만들어진 풍부한 미감이 있고 공업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를 말한다.	제 2 조 (부분디자인권 신설) ① 본 법에서 발명창조라 함은 발명・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말한다. ② 발명이란 제품・방법 또는 그 개량에 대하여 제안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③ 실용신안이란 제품의 형상・구조 또는 그 결합에 의하여 도출된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④ 디자인이란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형상・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도안의 결합에 의하여 만들어진 풍부한 미감이 있고 공업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를 말한다.
제 6 조 ①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이다. 직무발명창조의 특허출원 권리는 해당 단위에 속한다.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해당 단위가 특허권자이다. ② 비직무발명창조는, 특허출원 권리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 속한다;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해당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특허권자이다. ③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단위와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체결한 계약이 있고, 특허출원 권리와 특허권의 귀속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제 6 조(직무발명 특허권의 활용촉진) ①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이다. 직무발명창조의 특허출원 권리는 해당 단위에 속하고,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해 당 단위가 특허권자이다. 해당 단위는 그 직무발명창조의 특허출원 권리와 특허권을 법에 의하여 처분하여, 관련 발명창조의 실시와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② 비직무발명창조는 특허출원 권리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 속한다;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해당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특허권자이다. ③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단위와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체결한 계약이 있고, 특허출원 권리와 특허권의 귀속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제 16 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직무발명창조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장려를 해야 한다. 발명창조특허를 실시한 후에 응용확산의 범위 및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근거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15 조(국가의 특허권자에 대한 장려의무) ①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직무발명창조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장려를 해야 한다. 발명창조특허를 실시한 후에 응용확산의 범위 및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근거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가 재산권을 통한 격려를 시행하고 지분권·선물옵션·배당 등의 방식을 취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혁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공유하도록 장려한다.
	제 20 조 (신설) ① 특허출원과 특허권 행사는 성실신용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허권을 남용하여 공공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② 특허권을 남용하고,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여, 독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1 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 및 특허복심위원회는 객관・공정・정확・즉시의 요구에 따 법에 의하여 관련 특허의 출원 및 청구를 처리해야 한다.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완전・정확・ 즉시 특허정보를 전파하고 정기적으로 특허공보를 출판해야 한다. ③ 특허출원의 공개 또는 공고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직원 및 관련 근무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유지책임이 있다.	제 21 조(특허정보의 이용촉진)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객관・공정・정확・즉시의 요구에 따라 법에 의하여 관련 특허의 출원 및 청구를 처리해야 한다.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정보 공공서비스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완전・정 확・즉시 특허정보를 전파하며, 특허 기 초 데이터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특허 공보를 출판하여, 특허정보의 전파와 이 용을 촉진해야 한다. ③ 특허출원의 공개 또는 공고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직원 및 관련 근무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유지책임이 있다.
제 24 조 특허출원된 발명창조가 출원일 이전 6 개월 내에, 아래에 열거한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특허출원된 발명창조가 출원일 이전 6 개월 내에, 아래에 열거한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또는 승인한 국제전람회에 최초로 전시한 경우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 최초로 발표한 경우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국가에 긴급상황 또는 비상사태 출현 시, 공공이익의 목적을 위해 최초로 공개 한 경우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또는 승인한 국제전람회에 최초로 전시한 경우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 최초로 발표한 경우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제 29 조 ①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제 1 차로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2 개월 내에 또는 디자인을 외국에 제 1 차로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6 개월 내에, 중국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출원하는 경우, 해당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승인한 우선권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②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중국에 제 1 차로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2 개월 내에, 다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 을 향유할 수 있다.	제 29 조(디자인권의 국내우선권 신설) ①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제 1 차로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2 개월 내에 또는 디자인을 외국에 제 1 차로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6 개월 내에, 중국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출원하는 경우, 해당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승인한 우선권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②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중국에 제 1 차로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2 개월 내에 또는 디자인을 중국에 제 1 차로 특허를 출원한 날로부터 6 개월 내에, 다시 국 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제 30 조 출원인이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 시 서면성명을 제출해야 하고, 3 개월 내에 제 1 차로 제출된 특허출원서류의 부본 을 제출해야 한다. 서면성명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간이 경과하여도 특허출원서류 부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30 조(내용개정) ① 출원인이 발명・실용신안특허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 시 서면성명을 제출해야 하고, 제 1 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16 개월 내에, 제 1 차로 제출된 특허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② 출원인이 디자인특허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 시 서면성명을 제출해야 하고, 3 개월 내에 제 1 차로 제출된 특허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 출원인이 서면성명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간이 경과하여도 특허출원서류 부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41 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복심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허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출원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 개월 내에, 특허복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복심위원회는 복심 후, 결정을 하고,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한다. ② 특허출원인이 특허복심위원회의 복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 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 41 조(내용개정) ① 특허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출원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 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복심 후, 결정을 하고,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한다. ② 특허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복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 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 42 조 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 년, 실용신안 특허권과 디자인특허권의 존속기간은 10 년으로 하며, 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한 다.	제 42 조(의약권특허기간 보상제도 등) ① 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 년, 실용신안특허권의 존속기간은 10 년, 디자인특허권의 존속기간은 15 년으로 하며, 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한다. ②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만 4 년, 실질심사 청구일로부터 만 3 년 후에 발명특허권이 수여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발명특허의 권리수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지연에 대하여 특허권 존속기간의 보상을 부여하나, 출원인이 초래한 불합리한 지연은 제외된다. ③ 신약의 시장판매를 위한 심사평가·심사비준에 들어간 시간을 보상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시장판매 허가를 획득한 신약 관련 발명특허에 대해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을 부여한다. 보상기간은 5 년을 초과하지 않고, 신약의 시장판매 비준 이후 전체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은 14 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 48 조 (신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지방인민정부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조치를 취하여, 특허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특허 실시와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 50 조 (신설) ①특허권자가 자원하여 서면방식으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어떤 단위 또는개인에게든지 그 특허를 실시하도록 허가하기를 원한다는 성명을 제출하고,

	허가사용료지불방식·기준을 명확히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공고하고, 개방허가를 시행한다. 실용신안, 디자인특허에 대한 개방허가 성명을 제출하는 경우,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허권자가 개방허가 성명을 철회하는 경우, 서면방식으로 제출해야 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공고한다. 개방허가 성명이 공고로 철회되는 경우, 이전에 부여된 개방허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51 조 (신설) ① 어떤 단위나 개인이 개방허가된 특허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 서면방식으로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공고된 허가사용료 지불 방식·기준에 따라 허가사용료를 지불한 후에, 특허실시허가를 획득한다. ② 개방허가 실시기간, 특허권자가 납부하는 특허 연차등록료에 대하여 상응하게 감면한다. ③ 개방허가를 실시하는 특허권자는 피허가자와 허가사용료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 후에 보통허가를 할 수 있으나, 해당 특허에 대해 독점 또는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제 52 조 (신설) 당사자는 개방허가 실시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된 경우, 당사자의 협상으로 해결 한다.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성립 되지 않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조정의 진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 61 조 ① 특허권 침해분쟁이 신제품 제조방법과 관련된 발명특허인 경우,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그 제품의 제조방법이 특허방법과 동일하지 않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② 특허권 침해분쟁이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과 관련된 경우, 인민법원 또는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관련 실용신안 또는	제 66 조(특허권 평가보고서 등) ① 특허권 침해분쟁이 신제품 제조방법과 관련된 발명특허인 경우,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그 제품의 제조방법이 특허방법과 동일하지 않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② 특허권 침해분쟁이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과 관련된 경우, 인민법원 또는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디자인에 대하여 검색・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작성한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고, 특허권 침해분쟁을 심리・처리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에게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관련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하여 검색・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작성한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고, 특허권 침해분쟁을 심리・처리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특허권자・이해관계자 또는 고발된 침해자도 주동적으로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 64 조 ①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이미 취득한 증거에 근거하여 특허위조 혐의행위에 대하여 조사・처리할 때에는 관련 당사자 심문,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상황의 조사, 당사자의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장소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계약・영수증・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조사・열람 및 복사, 위법혐의행위와 관련된 제품의 검사할 수 있으며, 특허위조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사・봉인 또는 압류를 할 수 있다. ②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법에 의하여 전항 규정의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사자는 협조・협력해야 하고, 거절・방해해서는 안된다.	제 69 조(내용개정) ① 특허 법집행 담당부서가 이미 취득한 증거에 근거하여 특허위조 혐의행위에 대하여 조사・처리할 때에는, 아래 열거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관련 당사자 심문,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상황의 조사,당사자의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장소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계약・영수 증・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조사・열람 및 복사,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제품의 검사 특허위조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사・봉인 또는 압류를 할 수 있다. ②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하는 경우, 전항의 제 1, 2, 4 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특허 법집행 담당부서・특허업무 관리부서가 법에 의하여 전 2 개항 규정의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사자는 협조・협력해야 하고, 거절・방해해서는 안된다.
	제 70 조 (특허권 분쟁 간이 해결규정 신설)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지방 인민정부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하고,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그의 동일한 특허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하여 병합처리를 할 수 있다. 지역경계를 넘어 그의 동일한

	특허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하여 상급 인민정부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제 65 조 ① 특허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 해당 특허허가사용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적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② 권리자의 손실·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특허허가사용료 모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침해행위의 성질 및 상황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1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 의 배상을 확정할 수 있다.	제 71 조(징벌적 배상제도) ① 특허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 또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 해당 특허허가사용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상황이 심각한 경우, 위의 방법으로 확정된 액수의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② 권리자의 손실·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특허허가사용료 모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침해행위의 성질 및 상황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3 만 위안 이상 500 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확정할 수 있다. ③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적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인민법원은 배상액 확정을 위하여, 권리자가 입증책임을 다하고,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자료가 주로 침해자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침해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장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판정할 수 있다.
제 66 조 ①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타인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곧 실시하려고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고, 이를 즉시에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의 합법적인 권익에 보충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정지를 명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72 조(재산보전명령)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타인이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그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곧 실시하려고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고 이를 즉시에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의 합법적인 권익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② 신청인은 신청 시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③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48 시간 내에 재정을 해야 하며 특수상황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48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 행위의 정지를 명한 경우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재정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 한차례 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복의기간에 재정의 집행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④ 신청인은 인민법원이 관련 행위의 정지를 명하는 조치를 채택한 날로부터 15 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련 행위의 정지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재산보존, 일정 행위의 실시 또는 일정 행위의 실시 금지명령 조치의 채택을 신청할 수 있다. (②~⑤ 삭제)
제 67 조 ① 특허권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증거가 멸실 또는 이후에 취득하기 곤란한 상황 하에서,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채택할 경우 신청인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③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48 시간 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보전조치를 채택한 경우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인민법원의 증거보전조치를 채택한 날로부터 15 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 73 조(내용개정) 특허권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증거가 멸실 또는 이후에 취득하기 곤란한 상황 하에서,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②~④ 삭제)
제 68 조 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시효는 2 년이고,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침해 행위를 안 날 또는 당연히 알 수 있게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②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특허권이 수여되기 전까지 해당 발명을 사용하고 적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자가 사용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시효는 2 년이고, 특허권자가 타인이 그 발명을 사용한 것을 안 날 또는 당연히 알 수 있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나, 다만, 특허권자가	제 74 조(내용 개정) 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시효는 3 년이고,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침해 행위 및 침해자를 안 날 또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②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특허권이 수여되기 전까지 해당 발명을 사용하고 적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자가 사용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시효는 3 년이고, 특허권자가 타인이 그 발명을 사용한 것을 안 날 또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하나,

특허권 수여일 전 에 이미 알았거나 당연히 알 수 있었던 경우, 특허권 수여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특허권자가 특허권 수여일 전에 이미 알았거나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경우, 특허권 수여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76 조 (신설) ① 의약품의 시장판매 심사평가·심사비준 과정 중에, 의약품의 시장판매 허가신청인이 관련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와, 등록 신청된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등록 신청된 의약품과 관련된 기술방안이 타인의 의약품 특허권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 국무원 의약품 감독관리부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 인민법원의 효력이 발생된 재정판결(裁判)에 근거하여 관련 의약품의 시장판매 비준의 임시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의약품의 시장판매 허가 신청인은 관련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등록 신청된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분쟁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행정재결(行政裁决)을 신청할 수도 있다. ③ 국무원 의약품 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와 함께 의약품 시장판매허가 심사비준과 의약품 시장판매 허가신청 단계의 특허분쟁 해결의 구체적인 연계방법을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동의 후 시행한다.
2008 년 12 월 27 일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통과, 2009 년 10 월 1 일 시행	2020 년 10 월 17 일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통과, 2021 년 6 월 1 일 시행

□ **파일 첨부**

개정 특허법 전문 (한글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발명창조를 장려하며 발명창조의 응용을 추진하고, 혁신능력을 제고하며, 과학기술진보 및 경제사회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법에서 발명창조라 함은 발명・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말한다.
발명이란 제품・방법 또는 그 개량에 대하여 제안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실용신안이란 제품의 형상・구조 또는 그 결합에 의하여 도출된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디자인이란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형상・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도안의 결합에 의하여 만들어진 풍부한 미감이 있고 공업응용(工业应用)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를 말한다.

제 3 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국의 특허업무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특허출원을 통일적으로 접수 및 심사하며, 법에 의하여 특허권을 수여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특허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 4 조
특허출원한 발명창조가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과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5 조
법률・사회공중도덕에 위반되거나 공공이익을 방해하는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원(遗传资源)을 획득 또는 이용하고, 해당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본 단위(本单位)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이다. 직무발명창조의 특허출원 권리는 해당 단위(单位)에 속하고,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해당 단위가 특허권자이다. 해당 단위는 그 직무발명창조의 특허출원 권리와 특허권을 법에 의하여 처분하여 관련 발명창조의 실시와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비직무발명창조는 특허출원권리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 속한다.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해당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物质技术条件)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단위와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체결한 계약이 있고, 특허출원 권리와 특허권의 귀속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제 7 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비직무발명창조의 특허출원에 대해서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제한할 수 없다.

제 8 조
둘 이상의 단위 또는 개인이 협력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나 하나의 단위 또는 개인이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의 위탁을 받아 완성한 발명창조는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출원 권리는 완성 또는 공동 완성한 단위 또는 개인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출원한 단위 또는 개인이 특허권자가 된다.

제 9 조
동일한 발명창조는 하나의 특허권만 수여한다. 다만, 동일 출원인이 동일한 날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실용신안특허와 발명특허를 출원하여, 먼저 취득한 실용신안특허권이 아직 종료하지 않았고, 출원인이 해당 실용신안특허권의 포기를 성명할 경우, 발명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출원인이 각자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특허출원하는 경우, 특허권은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 10 조
특허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에게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등기해야 하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공고해야 한다.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양도는 등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11 조
발명 및 실용신안특허권이 수여된 후에는 본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해당 특허제품을 제조・사용・판매의 청약・판매・수입하거나, 또는 그 특허방법의 사용 및 해당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된 제품을 사용・판매의 청약・판매・수입을 해서는 아니 된다.
디자인특허권이 수여된 후,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그 디자인특허제품을 제조・판매의 청약・판매・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타인의 특허를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자와 실시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피허가인은 계약규정이외의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특허의 실시를 허가할 권리가 없다.

제 13 조 발명특허가 출원공개된 후, 출원인은 그 발명을 실시하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적당한 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4 조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공유자가 권리행사에 대하여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없는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보통허가방식으로 타인에게 해당 특허의 실시를 허가할 수 있다. 타인에게 해당 특허의 실시를 허가한 경우, 취득한 사용료는 공유자간에 분배해야 한다.

전항 규정의 상황을 제외하고, 공유의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행사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5 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직무발명 창조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를 장려(奖励)해야 한다. 발명창조특허를 실시한 후에는 그 확대된 응용의 범위 및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근거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는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에게 재산권을 통한 격려를 시행하고, 지분권·선물옵션·배당 등의 방식을 취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혁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공유하도록 장려한다.

제 16 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는 특허문서 중에 자기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임을 명기할 권리가 있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제품 또는 해당 제품의 포장에 특허를 표기할 권리가 있다.

제 17 조
중국에 상시적인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 소속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본 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 18 조
중국에 상시적인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출원을 하거나 기타 특허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허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특허출원을 하거나 기타 특허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허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특허대리기관은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피대리인의 위탁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기타 특허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피대리인의 발명창조 내용에 대하여 특허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 유지의 책임이 있다. 특허대리기관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 19 조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경우, 사전 보고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비밀유지심사를 거쳐야 한다. 비밀유지심사의 절차・기한 등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은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특허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출원인이 특허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본 법 및 국무원 관련 규정에 의하여 특허국제출원을 처리한다.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 특허를 출원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중국에 특허를 출원한 경우,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 20 조 (신설)
특허출원과 특허권 행사는 성실신용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허권을 남용하여 공공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특허권을 남용하고,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여 독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1 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객관・공정・정확・즉시의 요구에 따라, 법에 의하여 관련 특허의 출원 및 청구를 처리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정보 공 공서비스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완전・정확・즉시 특허정보를 전파하며, 특허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특허 공보를 출판하여, 특허정보의 전파와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특허출원의 공개 또는 공고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직원 및 관련 근무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유지책임이 있다.

제 2 장 특허권의 수여조건

제 22 조
특허권이 수여되는 발명과 실용신안은 신규성・창조성 및 실용성을 구비해야 한다.

신규성이란 해당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하지 않았고, 출원일 이후 공개된 특허출원서류 또는 공고된 특허서류 중에 기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창조성이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해당 발명이 특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를 구비하고 있고, 해당 실용신안이 실질적 특징과 진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실용성이란, 해당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제조 또는 사용될 수 있고 적극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본 법의 기존(现有) 기술이란, 출원일 이전 국내외에서 공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말한다.

제 23 조

특허권이 수여되는 디자인은 기존 설계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동일한 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하지 않았고, 출원일 이후에 공고된 특허서류 중에 기재되지 않았어야 한다.

특허권이 수여되는 디자인은 기존 설계 또는 기존 설계의 특징적 조합과 상호 비교하여 명백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

특허권이 수여되는 디자인은 타인이 출원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서로 충돌해서는 안 된다.
본 법의 기존 설계란 출원일 이전 국내외에서 공중에게 알려진 설계를 말한다.

제 24 조
특허출원된 발명창조가 출원일 이전 6 개월 내에, 아래에 열거한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국가에 긴급상황 또는 비상사태 출현 시, 공공이익의 목적을 위해 최초로 공개한 경우
(2)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또는 승인한 국제전람회에 최초로 전시한 경우
(3)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 최초로 발표한 경우
(4)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제 25 조
아래에 열거된 각호에 대하여,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1)과학발견
(2)지적 활동의 규칙과 방법
(3)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
(4)동물 및 식물의 품종
(5)원자핵 변환방법 및 원자핵 변환방법을 이용하여 획득한 물질
(6) 평면인쇄물의 모양・색채 또는 양자의 결합에 대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주로 표시 기능을 하는 설계

전 항 제 4 호에 열거한 제품의 생산방법에 대해서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제 3 장 특허출원

제 26 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청구서・설명서 및 그 요약과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청구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출원인 성명 또는 명칭・주소 및 기타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명확・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고,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요약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요점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에 근거해야 하고 명확・간단 명료하게 특허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된 발명창조는 출원인이 특허출원서류에 해당 유전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최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한다. 출원인이 최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27 조
디자인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청구서・해당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및 해당 디자인에 대한 간단명료한 설명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출원인이 제출한 관련 도면 또는 사진은 특허보호를 요구하는 물품의 디자인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제 28 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출원서류를 접수한 날을 출원일로 한다. 출원서류가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발송 소인일을 출원일로 한다.

제 29 조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제 1 차로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2 개월 내에 또는 디자인을 외국에 제 1 차로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6 개월 내에 중국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출원하는 경우, 해당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승인한 우선권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중국에 제 1 차로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2 개월 내에 또는 디자인을 중국에 제 1 차로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6 개월 내에, 다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제 30 조
출원인이 발명・실용신안특허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 시 서면성명을 제출해야 하고, 제 1 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16 개월 내에, 제 1 차로 제출된 특허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출원인이 디자인특허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 시 서면성명을 제출해야 하고, 3 개월 내에 제 1 차로 제출된 특허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출원인이 서면성명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간이 경과하여도 특허출원서류 부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31 조
1 건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한정해야 한다.
하나의 총괄적인 발명구상(发明构思)에 속하는 2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1 건의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건의 디자인특허출원은 하나의 디자인에 한정해야 한다. 동일 제품의 2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 또는 동일한 유형의 제품이고 하나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 제품의 2 이상의 디자인은, 1 건의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 32 조
출원인은 특허권이 수여되기 전에 언제든지 그 특허출원을 취하할 수 있다.

제 33 조
출원인은 그 특허출원 서류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으나, 발명과 실용신안특허출원 서류에 대한 보정은 원(原) 설명서 및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디자인특허출원 서류에 대한 보정은 원(原)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 4 장 특허출원의 심사와 비준

제 34 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출원을 접수한 후, 초보심사를 거쳐 본 법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만 18 개월에 즉시 공개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의 청구에 근거하여 그 출원을 조기에 공개할 수 있다.

제 35 조
발명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3 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이 수시로 제출한 청구에 근거하여, 그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을 경과하여 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 36 조
발명특허의 출원인이 실질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출원일 이전의 그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발명특허가 이미 외국에 출원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그 출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색한 자료 또는 심사결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7 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지정기한 내에 의견진술을 요구하거나 그 출원에 대하여 보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을 경과하여 답변이 없는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8 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의 의견진술 또는 보정 후에도 발명특허출원이 여전히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절해야 한다.

제 39 조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권 수여를 결정하고, 발명특허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기 및 공고한다.
발명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40 조
실용신안과 디자인특허출원은 초보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용신안특허권 또는 디자인특허권 수여를 결정하고 상응한 특허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기 및 공고한다. 실용신안특허권과 디자인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41 조
특허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출원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복심 후, 결정을 하고,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한다.

특허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복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 5 장 특허권의 기간・종료 및 무효

제 42 조
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 년, 실용신안특허권의 존속기간은 10 년, 디자인특허권의 존속기간은 15 년으로 하며, 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한다.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만 4 년, 실질 심사 청구일로부터 만 3 년 후에 발명특허권이 수여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발명특허의 권리수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지연에 대하여 특허권 존속기간의 보상을 부여하나, 출원인이 초래한 불합리한 지연은 제외된다.

신약의 시장판매를 위한 심사평가・심사비준에 들어간 시간을 보상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시장판매 허가를 획득한 신약 관련 발명특허에 대해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을 부여한다. 보상 기간은 5 년을 초과하지 않고, 신약의 시장판매 비준 이후 전체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은 14 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 43 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수여받은 해당 연도부터 연차 요금(年费)을 납부해야 한다.

제 44 조
아래 열거된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은 존속기간 만료 전에 종료한다.
(1)규정에 의한 연차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특허권자가 서면으로 특허권 포기를 성명한 경우

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 전에 종료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등기 및 공고한다.

제 45 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권 수여를 공고한 날로부터,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해당 특허권의 수여가 본 법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해당 특허권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제 46 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의 무효선고 청구에 대하여 즉시 심사와 결정을 하고, 청구인과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권 무효선고의 결정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등기 및 공고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특허권 무효 또는 유지선고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무효선고 청구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 3 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47 조
무효선고된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특허권 무효선고의 결정은, 특허권 무효선고 전에 인민법원이 결정하여 이미 집행된 특허권 침해의 판결・조정서, 이미 이행 또는 강제집행된 특허권침해분쟁의 처리결정 및 이미 이행된 특허실시허가계약과 특허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소급력을 갖지 않는다. 다만, 특허권자가 악의로 타인에게 초래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침해 배상액・특허사용료, 특허권 양도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명백히 공정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 6 장 특허실시의 특별허가

제 48 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지방인민정부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조치를 취하여, 특허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특허 실시와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 49 조
국유기업 사업단위의 발명특허가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대하여 중대한 의의(意义)가 있는 경우,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 비준의 범위 내에서 응용의 확대를 결정하고, 지정한 단위(单位)에 실시를 허락하며, 실시하는 단위가 국가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 50 조
특허권자가 자원하여 서면방식으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이 그 특허를 실시하도록 허가하기를 원한다는 성명을 제출하고, 허가사용료 지불방식・기준을

명확히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공고하고, 개방허가를 시행한다. 실용신안, 디자인특허에 대한 개방허가 성명을 제출하는 경우,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개방허가 성명을 철회하는 경우, 서면방식으로 제출해야 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공고한다. 개방허가 성명이 공고로 철회되는 경우, 이전에 부여된 개방허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51 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 개방허가된 특허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 서면방식으로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공고된 허가사용료 지불방식・기준에 따라 허가사용료를 지불한 후에, 특허실시허가를 획득한다.

개방허가 실시기간, 특허권자가 납부하는 특허 연차 비용에 대하여 상응하게 감면한다.

개방허가를 실시하는 특허권자는 피허가자와 허가사용료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 후에 보통허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해당 특허에 대해 독점 또는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제 52 조
당사자는 개방허가 실시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된 경우, 당사자의 협상으로 해결 한다.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성립 되지 않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조정의 진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 53 조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시조건을 구비한 단위 또는 개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1)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수여 받은 날로부터 만 3 년, 특허출원일로부터 만 4 년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특허권을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충분하게 실시하지 않는 경우
(2)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행위가 법에 의하여 독점행위로 인정되고, 그 행위가 경쟁에 의해 초래한 불리한 영향을 해소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

제 54 조
국가에 긴급상황 또는 비상사태 출현 시, 또는 공공이익의 목적을 위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 55 조
공공건강의 목적을 위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의약품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제조하여 그것을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 규정에 부합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수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 56 조
특허권을 취득한 하나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이전에 이미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비하여 현저한 경제적 의의의 중대한 기술진보가 있고, 그 실시가 전(前) 발명 또는 실용신안 실시에 의존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후(后) 특허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전(前)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의 강제허가가 부여된 상황 하에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前) 특허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후(后)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 57 조
강제허가와 관련된 발명창조가 반도체기술인 경우, 그 실시는 공공이익의 목적 및 본 법 제 53 조제 2 호에 규정된 상황에 한정된다.

제 58 조
본 법 제 53 조제 2 호 또는 제 55 조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강제허가를 제외하고, 강제허가의 실시는 주로 국내시장의 공급을 위해서 해야 한다.

제 59 조
본 법 제 53 조제 1 호 또는 제 56 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허가를 신청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증거를 제출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실시의 허가를 청구하였으나, 합리적인 시간 내에 허가를 획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제 60 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강제허가 실시를 부여하는 결정을 한 경우, 즉시 특허권자에 통지하고 등기 및 공고해야 한다.

강제허가 실시를 부여하는 결정은 강제허가의 이유에 근거하여 실시범위 및 시간을 규정해야 한다. 강제허가의 이유가 해소되고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심사를 거친 후 실시의 강제허가를 종료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제 61 조
강제허가 실시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은 독점적 실시권을 향유할 수 없고, 타인에게 실시를 허락할 권한이 없다.

제 62 조
강제허가 실시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또는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액수는 쌍방이 협상하여 정한다. 쌍방이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재결(裁**决**)한다.

제 63 조
특허권자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강제허가 실시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거나, 특허권자와 강제허가 실시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강제허가 실시 사용료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 7 장 특허권의 보호

제 64 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의 보호범위는 그 권리요구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설명서 및 첨부 도면은 권리요구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디자인특허권의 보호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하고, 간단명료한 설명은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해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제 65 조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한 경우, 즉 특허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처리 시,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될 경우,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의 즉시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내에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침해자가 기한 내에 소를 제기하지도 아니하고 침해행위를 정지하지도 않는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를 진행하는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의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 66 조
특허권 침해분쟁이 신제품 제조방법과 관련된 발명특허인 경우,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그 제품의 제조방법이 특허방법과 동일하지 않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특허권 침해분쟁이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과 관련된 경우, 인민법원 또는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관련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하여 검색・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작성한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고, 특허권 침해분쟁을 심리・처리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특허권자・이해관계자 또는 고발된 침해자도 적극적으로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 67 조
특허권 침해분쟁 중, 고발된 침해자가 그 실시한 기술 또는 설계가 기존 기술 또는 기존 설계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 68 조
특허위조의 경우, 법에 의하여 민사책임을 지는 이외에,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공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4 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20 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특허위조의 경우 법에 의하여 민사책임을 지는 이외에, 특허법집행 담당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공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5 만 위안 이하인 경우, 25 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9 조

특허 법집행 담당부서가 이미 취득한 증거에 근거하여, 특허위조 혐의행위에 대하여 조사・처리할 때에는 아래 열거 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1)관련 당사자 심문,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상황의 조사
(2)당사자의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장소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3)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계약・영수증・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조사・열람 및 복사
(4)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제품의 검사
(5)특허위조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사・봉인 또는 압류를 할 수 있음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침해 분쟁을 처리하는 경우, 전항의 제 1, 2, 4 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허 법집행 담당부서・특허업무 관리부서가 법에 의하여 전 2 개항 규정의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사자는 협조・ 협력해야 하고, 거절・방해해서는 안된다.

제 70 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할 수 있다.

지방 인민정부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하고,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그의 동일한 특허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하여 병합처리를 할 수 있다. 지역경계를 넘어 그의 동일한 특허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하여 상급 인민정부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제 71 조
특허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 또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에 따라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 해당 특허허가사용료의 배수를 참고 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상황이 심각한 경우, 위의 방법으로 확정된 액수의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특허허가사용료 모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침해행위의 성질 및 상황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3 만 위안 이상 500 만 위안 이하 의 배상을 확정할 수 있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적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은 배상액 확정을 위하여, 권리자가 입증책임을 다하고,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자료가 주로 침해자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침해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장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판정할 수 있다.

제 72 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타인이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그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곧 실시하려고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고, 이를 즉시에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의 합법적 권익에 보충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재산보존, 일정 행위의 실시 또는 일정 행위 실시 금지명령의 조치 채택을 신청할 수 있다.(②~⑤ 삭제)

제 73 조
특허권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증거가 멸실 또는 이후에 취득하기 곤란한 상황 하에서,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②~④ 삭제)

제 74 조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시효는 3 년이고,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침해 행위 및 침해자를 안 날 또는 당연히 알 아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특허권이 수여되기 전까지 해당 발명을 사용하고 적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자가 사용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시효는 3 년이고, 특허권자가 타인이 그 발명을 사용한 것을 안 날 또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하나, 다만, 특허권자가 특허권 수여일 전에 이미 알았거나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경우, 특허권 수여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75 조
아래에 열거된 사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1)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을 특허권자 또는 그가 허가한 단위・개인이 판매한 후, 해당 제품을 사용・판매의 청약・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2)특허출원일 전에 이미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였거나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미 제조・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단지 원래의 범위 내에서 계속 제조・사용하는 경우
(3)일시적으로 중국영토・영해・영공을 통과하는 외국의 운송도구가 그 소속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운송도구 자체의 수요를 위하여 그 장치 및 설비 중에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4)전문적으로 과학연구 및 실험을 위하여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5)행정심사비준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허 의약품 또는 특허 의료기기를 제조・사용・수입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하여 특허 의약품 또는 특허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

제 76 조
의약품의 시장판매 심사평가·심사비준 과정 중에, 의약품의 시장판매 허가 신청인이 관련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와, 등록 신청된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등록 신청된 의약품과 관련된 기술방안이 타인의 의약품 특허권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 국무원 의약품 감독관리부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 인민법원의 효력이 발생된 재정판결(裁判)에 근거하여 관련 의약품의 시장판매 비준의 임시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의약품의 시장판매 허가 신청인은 관련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등록 신청된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분쟁에 대 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행정재결(行政裁决)을 신청할 수도 있다.

국무원 의약품 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와 함께 의약품 시장판매 허가 심사비준과 의약품 시장판매 허가신청 단계의 특허분쟁 해결의 구체적인 연계방법을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동의 후 시행한다.

제 77 조
생산 경영의 목적으로 사용, 판매의 청약 또는 판매를 하였는데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인 것을 몰랐던 경우 해당 제품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할 수 있다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78 조
본 법 제 19 조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 특허출원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 소속 단위 또는 상급 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9 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사회에 특허제품을 추천하는 등의 경영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의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영향을 해소하며, 위법수입이 있을 경우 몰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처분을 한다.

제 80 조
특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직원 및 기타 유관 국가기관 직원이 직무소홀・직권남용・사리사욕을 추구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 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의하여 처분을 한다.

제 8 장 부칙

제 81 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출원하거나 기타 절차를 처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 82 조
본 법은 1985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특허법 전문 (중문)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保护专利权人的合法权益，鼓励发明创造，推动发明创造的应用，提高创新能力，促进科学技术进步和经济社会发展，制定本法。

第二条　本法所称的发明创造是指发明、实用新型和外观设计。
发明，是指对产品、方法或者其改进所提出的新的技术方案。
实用新型，是指对产品的形状、构造或者其结合所提出的适于实用的新的技术方案。
外观设计，是指对产品的整体或者局部的形状、图案或者其结合以及色彩与形状、图案的结合所作出的富有美感并适于工业应用的新设计。

第三条　国务院专利行政部门负责管理全国的专利工作；统一受理和审查专利申请，依法授予专利权。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的专利管理工作。

第四条　申请专利的发明创造涉及国家安全或者重大利益需要保密的，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

第五条　对违反法律、社会公德或者妨害公共利益的发明创造，不授予专利权。
对违反法律、行政法规的规定获取或者利用遗传资源，并依赖该遗传资源完成的发明创造，不授予专利权。

第六条　执行本单位的任务或者主要是利用本单位的物质技术条件所完成的发明创造为职务发明创造。职务发明创造申请专利的权利属于该单位，申请被批准后，该单位为专利权人。该单位可以依法处置其职务发明创造申请专利的权利和专利权，促进相关发明创造的实施和运用。
非职务发明创造，申请专利的权利属于发明人或者设计人；申请被批准后，该发明人或者设计人为专利权人。
利用本单位的物质技术条件所完成的发明创造，单位与发明人或者设计人订有合同，对申请专利的权利和专利权的归属作出约定的，从其约定。

第七条　对发明人或者设计人的非职务发明创造专利申请，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压制。

第八条　两个以上单位或者个人合作完成的发明创造、一个单位或者个人接受其他单位或者个人委托所完成的发明创造，除另有协议的以外，申请专利的权利属于完成或者共同完成的单位或者个人；申请被批准后，申请的单位或者个人为专利权人。

第九条　同样的发明创造只能授予一项专利权。但是，同一申请人同日对同样的发明创造既申请实用新型专利又申请发明专利，先获得的实用新型专利权尚未终止，且申请人声明放弃该实用新型专利权的，可以授予发明专利权。
两个以上的申请人分别就同样的发明创造申请专利的，专利权授予最先申请的人。

第十条　专利申请权和专利权可以转让。
中国单位或者个人向外国人、外国企业或者外国其他组织转让专利申请权或者专利权的，应当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办理手续。
转让专利申请权或者专利权的，当事人应当订立书面合同，并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登记，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予以公告。专利申请权或者专利权的转让自登记之日起生效。

第十一条　发明和实用新型专利权被授予后，除本法另有规定的以外，任何单位或者个人未经专利权人许可，都不得实施其专利，即不得为生产经营目的制造、使用、许诺销售、销售、进口其专利产品，或者使用其专利方法以及使用、许诺销售、销售、进口依照该专利方法直接获得的产品。
外观设计专利权被授予后，任何单位或者个人未经专利权人许可，都不得实施其专利，即不得为生产经营目的制造、许诺销售、销售、进口其外观设计专利产品。

第十二条　任何单位或者个人实施他人专利的，应当与专利权人订立实施许可合同，向专利权人支付专利使用费。被许可人无权允许合同规定以外的任何单位或者个人实施该专利。

第十三条　发明专利申请公布后，申请人可以要求实施其发明的单位或者个人支付适当的费用。

第十四条　专利申请权或者专利权的共有人对权利的行使有约定的，从其约定。没有约定的，共有人可以单独实施或者以普通许可方式许可他人实施该专利；许可他人实施该专利的，收取的使用费应当在共有人之间分配。
除前款规定的情形外，行使共有的专利申请权或者专利权应当取得全体共有人的同意。

第十五条　被授予专利权的单位应当对职务发明创造的发明人或者设计人给予奖励；发明创造专利实施后，根据其推广应用的范围和取得的经济效益，对发明人或者设计人给予合理的报酬。
国家鼓励被授予专利权的单位实行产权激励，采取股权、期权、分红等方式，使发明人或者设计人合理分享创新收益。

第十六条　发明人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
专利权人有权在其专利产品或者该产品的包装上标明专利标识。

第十七条　在中国没有经常居所或者营业所的外国人、外国企业或者外国其他组织在中国申请专利的，依照其所属国同中国签订的协议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或者依照互惠原则，根据本法办理。

第十八条　在中国没有经常居所或者营业所的外国人、外国企业或者外国其他组织在中国申请专利和办理其他专利事务的，应当委托依法设立的专利代理机构办理。
中国单位或者个人在国内申请专利和办理其他专利事务的，可以委托依法设立的专利代理机构办理。
专利代理机构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按照被代理人的委托办理专利申请或者其他专利事务；对被代理人发明创造的内容，除专利申请已经公布或者公告的以外，负有保密责任。专利代理机构的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规定。

第十九条　任何单位或者个人将在中国完成的发明或者实用新型向外国申请专利的，应当事先报经国务院专利行政部门进行保密审查。保密审查的程序、期限等按照国务院的规定执行。
中国单位或者个人可以根据中华人民共和国参加的有关国际条约提出专利国际申请。申请人提出专利国际申请的，应当遵守前款规定。
国务院专利行政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参加的有关国际条约、本法和国务院有关规定处理专利国际申请。

对违反本条第一款规定向外国申请专利的发明或者实用新型，在中国申请专利的，不授予专利权。

第二十条　申请专利和行使专利权应当遵循诚实信用原则。不得滥用专利权损害公共利益或者他人合法权益。
滥用专利权，排除或者限制竞争，构成垄断行为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处理。

第二十一条　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按照客观、公正、准确、及时的要求，依法处理有关专利的申请和请求。
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加强专利信息公共服务体系建设，完整、准确、及时发布专利信息，提供专利基础数据，定期出版专利公报，促进专利信息传播与利用。
在专利申请公布或者公告前，国务院专利行政部门的工作人员及有关人员对其内容负有保密责任。

第二章　授予专利权的条件

第二十二条　授予专利权的发明和实用新型，应当具备新颖性、创造性和实用性。
新颖性，是指该发明或者实用新型不属于现有技术；也没有任何单位或者个人就同样的发明或者实用新型在申请日以前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出过申请，并记载在申请日以后公布的专利申请文件或者公告的专利文件中。
创造性，是指与现有技术相比，该发明具有突出的实质性特点和显著的进步，该实用新型具有实质性特点和进步。
实用性，是指该发明或者实用新型能够制造或者使用，并且能够产生积极效果。
本法所称现有技术，是指申请日以前在国内外为公众所知的技术。

第二十三条　授予专利权的外观设计，应当不属于现有设计；也没有任何单位或者个人就同样的外观设计在申请日以前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出过申请，并记载在申请日以后公告的专利文件中。
授予专利权的外观设计与现有设计或者现有设计特征的组合相比，应当具有明显区别。
授予专利权的外观设计不得与他人在申请日以前已经取得的合法权利相冲突。
本法所称现有设计，是指申请日以前在国内外为公众所知的设计。
第二十四条　申请专利的发明创造在申请日以前六个月内，有下列情形之一的，不丧失新颖性：
（一）在国家出现紧急状态或者非常情况时，为公共利益目的首次公开的；
（二）在中国政府主办或者承认的国际展览会上首次展出的；
（三）在规定的学术会议或者技术会议上首次发表的；
（四）他人未经申请人同意而泄露其内容的。

第二十五条　对下列各项，不授予专利权：
（一）科学发现；
（二）智力活动的规则和方法；
（三）疾病的诊断和治疗方法；
（四）动物和植物品种；
（五）原子核变换方法以及用原子核变换方法获得的物质；
（六）对平面印刷品的图案、色彩或者二者的结合作出的主要起标识作用的设计。

对前款第（四）项所列产品的生产方法，可以依照本法规定授予专利权。

第三章　专利的申请

第二十六条　申请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的，应当提交请求书、说明书及其摘要和权利要求书等文件。
请求书应当写明发明或者实用新型的名称，发明人的姓名，申请人姓名或者名称、地址，以及其他事项。
说明书应当对发明或者实用新型作出清楚、完整的说明，以所属技术领域的技术人员能够实现为准；必要的时候，应当有附图。摘要应当简要说明发明或者实用新型的技术要点。
权利要求书应当以说明书为依据，清楚、简要地限定要求专利保护的范围。
依赖遗传资源完成的发明创造，申请人应当在专利申请文件中说明该遗传资源的直接来源和原始来源；申请人无法说明原始来源的，应当陈述理由。

第二十七条　申请外观设计专利的，应当提交请求书、该外观设计的图片或者照片以及对该外观设计的简要说明等文件。
申请人提交的有关图片或者照片应当清楚地显示要求专利保护的产品的外观设计。

第二十八条　国务院专利行政部门收到专利申请文件之日为申请日。如果申请文件是邮寄的，以寄出的邮戳日为申请日。

第二十九条　申请人自发明或者实用新型在外国第一次提出专利申请之日起十二个月内，或者自外观设计在外国第一次提出专利申请之日起六个月内，又在中国就相同主题提出专利申请的，依照该外国同中国签订的协议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或者依照相互承认优先权的原则，可以享有优先权。
申请人自发明或者实用新型在中国第一次提出专利申请之日起十二个月内，或者自外观设计在中国第一次提出专利申请之日起六个月内，又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就相同主题提出专利申请的，可以享有优先权。

第三十条　申请人要求发明、实用新型专利优先权的，应当在申请的时候提出书面声明，并且在第一次提出申请之日起十六个月内，提交第一次提出的专利申请文件的副本。
申请人要求外观设计专利优先权的，应当在申请的时候提出书面声明，并且在三个月内提交第一次提出的专利申请文件的副本。
申请人未提出书面声明或者逾期未提交专利申请文件副本的，视为未要求优先权。

第三十一条　一件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申请应当限于一项发明或者实用新型。属于一个总的发明构思的两项以上的发明或者实用新型，可以作为一件申请提出。
一件外观设计专利申请应当限于一项外观设计。同一产品两项以上的相似外观设计，或者用于同一类别并且成套出售或者使用的产品的两项以上外观设计，可以作为一件申请提出。

第三十二条　申请人可以在被授予专利权之前随时撤回其专利申请。

第三十三条　申请人可以对其专利申请文件进行修改，但是，对发明和实用新型专利申请文件的修改不得超出原说明书和权利要求书记载的范围，对外观设计专利申请文件的修改不得超出原图片或者照片表示的范围。

第四章　专利申请的审查和批准

第三十四条　国务院专利行政部门收到发明专利申请后，经初步审查认为符合本法要求的，自申请日起满十八个月，即行公布。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根据申请人的请求早日公布其申请。

第三十五条　发明专利申请自申请日起三年内，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根据申请人随时提出的请求，对其申请进行实质审查；申请人无正当理由逾期不请求实质审查的，该申请即被视为撤回。
国务院专利行政部门认为必要的时候，可以自行对发明专利申请进行实质审查。

第三十六条　发明专利的申请人请求实质审查的时候，应当提交在申请日前与其发明有关的参考资料。
发明专利已经在外国提出过申请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要求申请人在指定期限内提交该国为审查其申请进行检索的资料或者审查结果的资料；无正当理由逾期不提交的，该申请即被视为撤回。

第三十七条　国务院专利行政部门对发明专利申请进行实质审查后，认为不符合本法规定的，应当通知申请人，要求其在指定的期限内陈述意见，或者对其申请进行修改；无正当理由逾期不答复的，该申请即被视为撤回。

第三十八条　发明专利申请经申请人陈述意见或者进行修改后，国务院专利行政部门仍然认为不符合本法规定的，应当予以驳回。

第三十九条　发明专利申请经实质审查没有发现驳回理由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作出授予发明专利权的决定，发给发明专利证书，同时予以登记和公告。发明专利权自公告之日起生效。

第四十条　实用新型和外观设计专利申请经初步审查没有发现驳回理由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作出授予实用新型专利权或者外观设计专利权的决定，发给相应的专利证书，同时予以登记和公告。实用新型专利权和外观设计专利权自公告之日起生效。

第四十一条　专利申请人对国务院专利行政部门驳回申请的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个月内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请求复审。国务院专利行政部门复审后，作出决定，并通知专利申请人。
专利申请人对国务院专利行政部门的复审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个月内向人民法院起诉。

第五章　专利权的期限、终止和无效

第四十二条　发明专利权的期限为二十年，实用新型专利权的期限为十年，外观设计专利权的期限为十五年，均自申请日起计算。
自发明专利申请日起满四年，且自实质审查请求之日起满三年后授予发明专利权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专利权人的请求，就发明专利在授权过程中的不合理延迟给予专利权期限补偿，但由申请人引起的不合理延迟除外。

为补偿新药上市审评审批占用的时间，对在中国获得上市许可的新药相关发明专利，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专利权人的请求给予专利权期限补偿。补偿期限不超过五年，新药批准上市后总有效专利权期限不超过十四年。

第四十三条　专利权人应当自被授予专利权的当年开始缴纳年费。

第四十四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专利权在期限届满前终止：
（一）没有按照规定缴纳年费的；
（二）专利权人以书面声明放弃其专利权的。
专利权在期限届满前终止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登记和公告。

第四十五条　自国务院专利行政部门公告授予专利权之日起，任何单位或者个人认为该专利权的授予不符合本法有关规定的，可以请求国务院专利行政部门宣告该专利权无效。

第四十六条　国务院专利行政部门对宣告专利权无效的请求应当及时审查和作出决定，并通知请求人和专利权人。宣告专利权无效的决定，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登记和公告。
对国务院专利行政部门宣告专利权无效或者维持专利权的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个月内向人民法院起诉。人民法院应当通知无效宣告请求程序的对方当事人作为第三人参加诉讼。

第四十七条　宣告无效的专利权视为自始即不存在。
宣告专利权无效的决定，对在宣告专利权无效前人民法院作出并已执行的专利侵权的判决、调解书，已经履行或者强制执行的专利侵权纠纷处理决定，以及已经履行的专利实施许可合同和专利权转让合同，不具有追溯力。但是因专利权人的恶意给他人造成的损失，应当给予赔偿。
依照前款规定不返还专利侵权赔偿金、专利使用费、专利权转让费，明显违反公平原则的，应当全部或者部分返还。

第六章　专利实施的特别许可

第四十八条　国务院专利行政部门、地方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当会同同级相关部门采取措施，加强专利公共服务，促进专利实施和运用。

第四十九条　国有企业事业单位的发明专利，对国家利益或者公共利益具有重大意义的，国务院有关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报经国务院批准，可以决定在批准的范围内推广应用，允许指定的单位实施，由实施单位按照国家规定向专利权人支付使用费。

第五十条　专利权人自愿以书面方式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声明愿意许可任何单位或者个人实施其专利，并明确许可使用费支付方式、标准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予以公告，实行开放许可。就实用新型、外观设计专利提出开放许可声明的，应当提供专利权评价报告。
专利权人撤回开放许可声明的，应当以书面方式提出，并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予以公告。开放许可声明被公告撤回的，不影响在先给予的开放许可的效力。

第五十一条　任何单位或者个人有意愿实施开放许可的专利的，以书面方式通知专利权人，并依照公告的许可使用费支付方式、标准支付许可使用费后，即获得专利实施许可。
开放许可实施期间，对专利权人缴纳专利年费相应给予减免。

实行开放许可的专利权人可以与被许可人就许可使用费进行协商后给予普通许可，但不得就该专利给予独占或者排他许可。

第五十二条　当事人就实施开放许可发生纠纷的，由当事人协商解决；不愿协商或者协商不成的，可以请求国务院专利行政部门进行调解，也可以向人民法院起诉。

第五十三条　有下列情形之一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根据具备实施条件的单位或者个人的申请，可以给予实施发明专利或者实用新型专利的强制许可：
（一）专利权人自专利权被授予之日起满三年，且自提出专利申请之日起满四年，无正当理由未实施或者未充分实施其专利的；
（二）专利权人行使专利权的行为被依法认定为垄断行为，为消除或者减少该行为对竞争产生的不利影响的。

第五十四条　在国家出现紧急状态或者非常情况时，或者为了公共利益的目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给予实施发明专利或者实用新型专利的强制许可。

第五十五条　为了公共健康目的，对取得专利权的药品，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给予制造并将其出口到符合中华人民共和国参加的有关国际条约规定的国家或者地区的强制许可。

第五十六条　一项取得专利权的发明或者实用新型比前已经取得专利权的发明或者实用新型具有显著经济意义的重大技术进步，其实施又有赖于前一发明或者实用新型的实施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根据后一专利权人的申请，可以给予实施前一发明或者实用新型的强制许可。
在依照前款规定给予实施强制许可的情形下，国务院专利行政部门根据前一专利权人的申请，也可以给予实施后一发明或者实用新型的强制许可。

第五十七条　强制许可涉及的发明创造为半导体技术的，其实施限于公共利益的目的和本法第五十三条第（二）项规定的情形。

第五十八条　除依照本法第五十三条第（二）项、第五十五条规定给予的强制许可外，强制许可的实施应当主要为了供应国内市场。

第五十九条　依照本法第五十三条第（一）项、第五十六条规定申请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应当提供证据，证明其以合理的条件请求专利权人许可其实施专利，但未能在合理的时间内获得许可。

第六十条　国务院专利行政部门作出的给予实施强制许可的决定，应当及时通知专利权人，并予以登记和公告。
给予实施强制许可的决定，应当根据强制许可的理由规定实施的范围和时间。强制许可的理由消除并不再发生时，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根据专利权人的请求，经审查后作出终止实施强制许可的决定。

第六十一条　取得实施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不享有独占的实施权，并且无权允许他人实施。

第六十二条　取得实施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应当付给专利权人合理的使用费，或者依照中华人民共和国参加的有关国际条约的规定处理使用费问题。付给使用费的，其数额由双方协商；双方不能达成协议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裁决。

第六十三条　专利权人对国务院专利行政部门关于实施强制许可的决定不服的，专利权人和取得实施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对国务院专利行政部门关于实施强制许可的使用费的裁决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个月内向人民法院起诉。

第七章　专利权的保护

第六十四条　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权的保护范围以其权利要求的内容为准，说明书及附图可以用于解释权利要求的内容。
外观设计专利权的保护范围以表示在图片或者照片中的该产品的外观设计为准，简要说明可以用于解释图片或者照片所表示的该产品的外观设计。

第六十五条　未经专利权人许可，实施其专利，即侵犯其专利权，引起纠纷的，由当事人协商解决；不愿协商或者协商不成的，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可以向人民法院起诉，也可以请求管理专利工作的部门处理。管理专利工作的部门处理时，认定侵权行为成立的，可以责令侵权人立即停止侵权行为，当事人不服的，可以自收到处理通知之日起十五日内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向人民法院起诉；侵权人期满不起诉又不停止侵权行为的，管理专利工作的部门可以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进行处理的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当事人的请求，可以就侵犯专利权的赔偿数额进行调解；调解不成的，当事人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向人民法院起诉。

第六十六条　专利侵权纠纷涉及新产品制造方法的发明专利的，制造同样产品的单位或者个人应当提供其产品制造方法不同于专利方法的证明。
专利侵权纠纷涉及实用新型专利或者外观设计专利的，人民法院或者管理专利工作的部门可以要求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出具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对相关实用新型或者外观设计进行检索、分析和评价后作出的专利权评价报告，作为审理、处理专利侵权纠纷的证据；专利权人、利害关系人或者被控侵权人也可以主动出具专利权评价报告。

第六十七条　在专利侵权纠纷中，被控侵权人有证据证明其实施的技术或者设计属于现有技术或者现有设计的，不构成侵犯专利权。

第六十八条　假冒专利的，除依法承担民事责任外，由负责专利执法的部门责令改正并予公告，没收违法所得，可以处违法所得五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在五万元以下的，可以处二十五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六十九条　负责专利执法的部门根据已经取得的证据，对涉嫌假冒专利行为进行查处时，有权采取下列措施：
（一）询问有关当事人，调查与涉嫌违法行为有关的情况；
（二）对当事人涉嫌违法行为的场所实施现场检查；
（三）查阅、复制与涉嫌违法行为有关的合同、发票、账簿以及其他有关资料；
（四）检查与涉嫌违法行为有关的产品；
（五）对有证据证明是假冒专利的产品，可以查封或者扣押。

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的请求处理专利侵权纠纷时，可以采取前款第（一）项、第（二）项、第（四）项所列措施。
负责专利执法的部门、管理专利工作的部门依法行使前两款规定的职权时，当事人应当予以协助、配合，不得拒绝、阻挠。

第七十条　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应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的请求处理在全国有重大影响的专利侵权纠纷。
地方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请求处理专利侵权纠纷，对在本行政区域内侵犯其同一专利权的案件可以合并处理；对跨区域侵犯其同一专利权的案件可以请求上级地方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处理。

第七十一条　侵犯专利权的赔偿数额按照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或者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确定；权利人的损失或者侵权人获得的利益难以确定的，参照该专利许可使用费的倍数合理确定。对故意侵犯专利权，情节严重的，可以在按照上述方法确定数额的一倍以上五倍以下确定赔偿数额。
权利人的损失、侵权人获得的利益和专利许可使用费均难以确定的，人民法院可以根据专利权的类型、侵权行为的性质和情节等因素，确定给予三万元以上五百万元以下的赔偿。
赔偿数额还应当包括权利人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
人民法院为确定赔偿数额，在权利人已经尽力举证，而与侵权行为相关的账簿、资料主要由侵权人掌握的情况下，可以责令侵权人提供与侵权行为相关的账簿、资料；侵权人不提供或者提供虚假的账簿、资料的，人民法院可以参考权利人的主张和提供的证据判定赔偿数额。

第七十二条　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有证据证明他人正在实施或者即将实施侵犯专利权、妨碍其实现权利的行为，如不及时制止将会使其合法权益受到难以弥补的损害的，可以在起诉前依法向人民法院申请采取财产保全、责令作出一定行为或者禁止作出一定行为的措施。

第七十三条　为了制止专利侵权行为，在证据可能灭失或者以后难以取得的情况下，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可以在起诉前依法向人民法院申请保全证据。

第七十四条　侵犯专利权的诉讼时效为三年，自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知道或者应当知道侵权行为以及侵权人之日起计算。
发明专利申请公布后至专利权授予前使用该发明未支付适当使用费的，专利权人要求支付使用费的诉讼时效为三年，自专利权人知道或者应当知道他人使用其发明之日起计算，但是，专利权人于专利权授予之日前即已知道或者应当知道的，自专利权授予之日起计算。

第七十五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不视为侵犯专利权：
（一）专利产品或者依照专利方法直接获得的产品，由专利权人或者经其许可的单位、个人售出后，使用、许诺销售、销售、进口该产品的；
（二）在专利申请日前已经制造相同产品、使用相同方法或者已经作好制造、使用的必要准备，并且仅在原有范围内继续制造、使用的；
（三）临时通过中国领陆、领水、领空的外国运输工具，依照其所属国同中国签订的协议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或者依照互惠原则，为运输工具自身需要而在其装置和设备中使用有关专利的；
（四）专为科学研究和实验而使用有关专利的；

（五）为提供行政审批所需要的信息，制造、使用、进口专利药品或者专利医疗器械的，以及专门为其制造、进口专利药品或者专利医疗器械的。

第七十六条　药品上市审评审批过程中，药品上市许可申请人与有关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因申请注册的药品相关的专利权产生纠纷的，相关当事人可以向人民法院起诉，请求就申请注册的药品相关技术方案是否落入他人药品专利权保护范围作出判决。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在规定的期限内，可以根据人民法院生效裁判作出是否暂停批准相关药品上市的决定。

药品上市许可申请人与有关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也可以就申请注册的药品相关的专利权纠纷，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请求行政裁决。

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专利行政部门制定药品上市许可审批与药品上市许可申请阶段专利权纠纷解决的具体衔接办法，报国务院同意后实施。

第七十七条　为生产经营目的使用、许诺销售或者销售不知道是未经专利权人许可而制造并售出的专利侵权产品，能证明该产品合法来源的，不承担赔偿责任。

第七十八条　违反本法第十九条规定向外国申请专利，泄露国家秘密的，由所在单位或者上级主管机关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七十九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不得参与向社会推荐专利产品等经营活动。

管理专利工作的部门违反前款规定的，由其上级机关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消除影响，有违法收入的予以没收；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第八十条　从事专利管理工作的国家机关工作人员以及其他有关国家机关工作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第八章　附　　则

第八十一条　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申请专利和办理其他手续，应当按照规定缴纳费用。

第八十二条　本法自 1985 年 4 月 1 日起施行。

제 9 장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



□ 개정 배경

- 2020 년 11 월 11 일, 중국 제 13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0 년 11 월 11 일 <저작권법>(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이하 '저작권법'이라 함)에 대한 3 차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021 년 6 월 1 일부터 정식으로 시행 중이며 총 6 장 67 조로 구성됨
- 중국 경제 및 산업발전, 기술 진보에 따라 종전의 규정으로는 권리자 및 저작물 보호에 미흡하다는 반성적 고려 하에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10 년 만에 개정하기에 이름

□ 입법취지

- 경제 및 기술 진보에 따른 저작물의 보호 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하고,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인터넷의 활용 및 발전으로 인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그 입법취지로 함

□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저작물 보호 범위 확대	-저작물의 정의를 종래 하위규범에서 정했던 것을 직접 '법률' 형식으로 규정하면서, 그 내용도 "문학, 예술, 과학영역 내에서

	독창성을 구비하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적 성과를 가리킨다"로 수정함으로써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확대 - '영화저작물 및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을 '시청각 저작물'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쇼트클립(Short clip, 短视频) 등의 새로운 유형의 영상 저작물을 포함하는 등 보호범위를 확대 -"저작물의 특징에 부합하는 기타 지적성과"라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형식의 장르도 저작권에 포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
온라인 공간에서의 보호범위 확대	-기술 진보에 따라서 구법 하에서 상정하지 못했던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권 등을 포함시키고 라이브방송 등을 저작권의 범위에 포함시킴 -방송권과 네트워크권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 전자는 "Non-interactive"를 특징으로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Interactive (쌍방향의, 互动的)" 방식으로 전달하며 이용자가 시간과 장소 선택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별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중계방송 또는 전파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을 보호함
저작물의 권리 귀속 명확화	-영화와 드라마 작품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귀속되며 작가, 감독 등은 서명권 및 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권을 갖음 - 영화와 드라마 작품 이외의 시청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하고 합의가 없을 경우 제작자에게 귀속한다고 하여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자율성을 존중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강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으로 △저작권자가 권리침해로 입은 실제 손실, △침해자의 위법소득, △해당 저작권의 권리 이용료(로열티)의 배수, △500 만 위안 이하의 법정 배상금 등으로 규정함 -침해 정도가 엄중한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액의 최대 5 배까지 배상하도록 함

□ 시사점

- 중국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보호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무단으로 국내의 저작물이 중국에서 빈번하게 침해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으리라 예상되어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됨
- 구법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 사례의 경우 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권리구제에 미흡한 측면이 많았는데, 개정법에 의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복제품 제작에 사용된 재료와 장비 등의 법원의 강제폐기명령 등이 가능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내에서 우리의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 중국 내에서 적절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유통, 방영, 방송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여 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출처

- 중문 원문 다운로드: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http://www.npc.gov.cn/npc/c30834/202011/848e73f58d4e4c5b82f69d25d46048c6.shtml

□ 주요 조항 조문 대조표

중국 (구)저작권법과 개정 저작권법 조문 대조표

(구)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
제 3 조 이 법에서의 저작물이란 다음의 형식으로 창작된 문학·예술 및 자연과학·사회과학·공정기술 등의 저작물을 포함한다. (1) 문학저작물 (2) 구술저작물 (3) 음악·연극·곡예·무용·잡기 등 예술저작물 (4) 미술·건축저작물 (5) 사진저작물	제 3 조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란 문학・예술 분야 및 과학 분야에서 독창성을 갖추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된 지식 성과를 말하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문학저작물 (2)구술저작물 (3)음악・연극・곡예・무용・잡기 등 예술저작물

(6) 영화저작물 및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 (7) 공사 설계도·제품 설계도·지도·설명도 등의 도형저작물 및 모형저작물 (8) 컴퓨터 소프트웨어 (9)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저작물	(4)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5)촬영저작물 (6)시청각저작물 (7)프로젝트 설계도・제품 설계도・지도・안내도 등 도형저작물 및 모형저작물 (8)컴퓨터 소프트웨어 (9)저작물 특징에 부합하는 그 밖의 지식 성과
제 10 조 (11) 방송권 : 무선방식으로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방송 또는 전파하거나 유선으로 전파 또는 중계하는 방식으로 당해 저작물을 대중에 전파·방송할 수 있는 권리 및 확성기 또는 기타 전송부호·소리·그림 등의 유사 도구를 통하여 저작물을 대중에 전파·방송할 수 있는 권리	제 10 조 (11)방송권 :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파하거나 중계할 권리, 스피커 또는 전송 부호・소리・그림 등의 유사 도구를 통하여 대중에게 저작물을 전파・방송할 수 있는 권리. 다만, 본관(本款) 제 12 항에 규정된 권리는 제외함.
제 10 조 (12) 정보네트워크 전송권 : 유선 또는 무선방식으로 대중에 저작물을 제공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개인이 선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 물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권리	제 10 조 (12)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 대중이 선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대중에게 저작물을 제공할 권리
	제 14 조 … 공동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동 저작자가 협상하여 일치하여 행사 한다. 협상으로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일방은 권리의 양도, 타인에게 독점 사용 허가, 담보 설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상대방이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를 통하여 얻은 수익은 모든 공동 저작자에게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져야 한다.(신설)…
제 45 조 <생략>	제 47 조 (3) 방송된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중에게 중계하는 행위. 라디오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이 앞에서 규정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권 행사 또는 저작권자의 관련 권리에 영향・제한・침해가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제 48 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정황에 따라 침해의 정지·영향력제거·공개사과·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해친 경우 저작권행정관리기관은 권리 침해 행위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거나 권리를 침해한 복제품을 몰수 소각할 수 있으며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저작권행정관리기관은 권리침해행위 복제품을 제작하는 데 사용한 주요 자재·공구·설비 등을 몰수할 수 있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 53 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이 법 제 52 조에 규정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권리 침해 행위가 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저작권 주무부서는 권리 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그 행위자에게 경고를 주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권리를 침해한 복제품 및 권리를 침해한 복제품을 제작하는데 주로 사용된 재료·도구·설비 등을 몰수·무해화 및 소각 처리한다. 또한, 위법경영액이 5 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경앵액의 1 배 이상 5 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거나, 위법경영액이 5 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2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 을 추궁한다.
제 49 조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한 경우, 권리침해자는 권리자가 실제 입은 손실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실제 손실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침해자가 얻은 위법소득을 기초로 하여 배상할 수 있다…권리자의 실제 손해 또는 권리침해자의 위법소득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침해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50 만원 위안 이하의 배상금 지급을 판결한다.	제 54 조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권리침해자는 그 침해행위로 권리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실 또는 권리침해자가 얻은 위법소득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 권리자의 실질적인 손실 또 는 권리침해자가 얻은 위법소득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권리 사용료로 배상할 수도 있다.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고의로 침해하고 그 상황이 심각한 경우 앞에 언급된 방법에 따라 확정된 금액의 1 배 이상 5 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수 있다.

□ **파일첨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전문 (한글본)

제 1 장 총칙

제 1 조
문학・예술・과학저작물 저작자의 저작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정신 문명, 물질 문명 건설에 유익한 저작물의 창작과 보급을 장려하고, 사회주의 문화와 과학 사업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 공민・법인・비법인 조직의 저작물은 공표 여부와 상관없이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이 인정된다.
외국인・무국적자의 저작물은 그 저작자가 속하여 있는 국가 또는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약 또는 중국과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무국적자의 저작물이 중국에서 최초로 출판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이 인정된다. 중국과 체결한 협약이 없거나 중국과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이 없는 국가의 저작자 및 무국적자의 저작물은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가입국에서 최초로 출판되는 경우 또는 가입국과 비가입국에서 동시에 출판된 경우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 3 조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란 문학・예술 분야 및 과학 분야에서 독창성을 갖추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된 지식 성과를 말하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문학저작물
(2)구술저작물
(3)음악・연극・곡예・무용・잡기 등 예술저작물
(4)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5)촬영저작물
(6)시청각저작물
(7)프로젝트 설계도・제품 설계도・지도・안내도 등 도형저작물 및 모형저작물
(8)컴퓨터 소프트웨어
(9)저작물 특징에 부합하는 그 밖의 지식 성과

제 4 조
저작권자와 저작권 관련 권리 보유자의 권리 행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도 아니된다. 국가는 작품의 출판・보급을 법에 따라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5 조
이 법은 다음 각 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법률, 법규, 국가기관 의결, 결정, 명령, 그 밖의 입법적・행정적・사법적 성질의 문서, 정부 당국의 공식 번역문
(2)단순 사실 정보
(3)역법, 통용 숫자표(通用数表), 통용 서식 및 공식

제 6 조
민간 문학저작물・예술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 7 조
국무원 저작권 주무부서는 중국 전국의 저작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현급 이상 지방의 저작권 주무부서는 담당 행정지역의 저작권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8 조
저작권자와 저작권 관련 권리 보유자는 저작권집단관리조직에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설립된 저작권집단관리조직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권리 행사의 위탁을 받은 뒤에 저작권자와 저작권 관련 권리 보유자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한 소송・중재・조정 활동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저작권집단관리조직은 위탁 받은 권한에 근거하여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다.
사용료를 받는 기준은 저작권집단관리조직과 사용자 대표가 협상하여 확정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 저작권 주무부서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 저작권 주무부서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저작권집단관리조직은 사용료 수취와 이체, 관리비 인출과 사용, 사용료 미(未)분배 부분 등 종합적인 상황을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표하고, 권리 정보 검색・문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권리자와 사용자에게 검색・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 저작권 주무부서는 저작권집단관리조직에 대하여 법에 따라 감독 및 관리를 시행한다.

저작권집단관리조직의 설립방식・권리의무・사용료 수취와 분배, 그 밖의 감독과 관리 등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저작권

제 1 절 저작권자 및 그 권리

제 9 조
저작권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작가
(2)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하는 자연인・법인・비법인 조직

제 10 조
저작권은 다음의 인신권과 재산권을 포함한다.
(1)발표권 : 저작물을 대중에게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
(2)서명권 : 저작자의 신분을 표기하고 저작물 상에 서명할 권리
(3)수정권 : 저작물을 수정할 권리 또는 저작물을 수정할 권한을 타인에게 위탁할 권리
(4)저작물 완전성 보호권 : 저작물이 왜곡・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저작물을 보호할 권리
(5)복제권 : 인쇄・복제・탁본・녹음・녹화・음반 변환・사진 변환・디지털화 등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1 부 또는 여러 부 제작할 권리
(6)발행권 : 판매 또는 증여의 방식으로 대중에게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제공할 권리
(7)대여권 : 시청각저작물・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타인이 임시로 사용하도록 유상 허가할 권리. 다만,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대여의 주요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함.

(8)전시권 : 미술저작물이나 촬영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공개적으로 진열할 권리
(9)공연권 :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거나, 여러가지 수단으로 저작물의 공연을 방송 할 권리
(10)상영권 : 영사기・환등기 등 기술적인 설비를 통하여 미술저작물・촬영저작물・시청각 저작물 등을 공개적으로 재현할 권리
(11)방송권 :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파하거나 중계할 권리, 스피커 또는 전송 부호・음성・화상 등의 유사 도구를 통하여 대중에게 저작물을 전파・방송할 권리. 다만, 본관(本款) 제 12 항에 규정된 권리는 제외함.
(12)정보 네트워크 중계권 : 대중이 선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대중에게 저작물을 제공할 권리
(13)촬영・제작권 : 시청각저작물을 촬영・제작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저장 장치에 고정(固定)할 권리
(14)각색권 : 저작물 변형을 통하여 독창성을 갖춘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권리
(15)번역권 : 저작물을 어떤 언어・문자로부터 다른 언어・문자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16)편집권 :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단편(片段)을 선택 및 배열한 뒤 취합하여 새로운 저작물로 편성할 수 있는 권리
(17)저작권자가 향유하여야 하는 그 밖의 권리

저작권자는 앞 관의 제 5 항부터 제 17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타인이 행사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약정 또는 이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는 위의 제 1 관제 5 항부터 제 17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약정 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 2 절 저작권의 귀속

제 11 조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저작물을 창작한 자연인은 저작자이다.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의 주관으로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의 의지대로 창작되고, 법인 또는 비법인이 책임을 지는 저작물은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저작자라고 간주한다.

제 12 조
저작물에 서명한 자연인・법인・비법인 조직은 저작자가 되고,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 다만, 이에 상반되는 증명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작자 등의 저작권자는 국가 저작권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등기기관에 저작물 등기를 할 수 있다.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에는 앞의 두 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3 조
기존의 저작물을 각색・번역・주해・정리하여 새로 생겨난 저작물의 저작권은 각색・번역・주해 ・정리를 한 사람이 향유한다. 다만,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 조

2 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동 저작자가 공동으로 향유한다. 창작에 참여 하지 아니한 사람은 공동 저작자가 될 수 없다.

공동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동 저작자가 협상하여 일치하여 행사한다. 협상으로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일방은 권리의 양도, 타인에게 독점 사용 허가, 담보 설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상대방이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를 통하여 얻은 수익은 모든 공동 저작자에게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져야 한다.

공동 저작물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저작자는 각자가 창작한 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동 저작물 전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 조
몇 가지 저작물・저작물의 단편・저작물의 일부 데이터, 그 밖의 자료 편집으로 그 내용을 선택 또는 배열하여 독창성이 드러나게 만든 저작물은 저작물 편집이라고 하며, 이에 대한 저작권은 편집자가 향유한다. 다만,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6 조
기존의 저작물을 각색・번역・주해・정리・편집하여 새로 생겨난 저작물을 출판 또는 연출과 녹음물 및 녹화물 제작을 하는 경우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가를 얻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 다.

제 17 조
시청각 저작물 중에 영화저작물・텔레비전 드라마 저작물의 저작권은 제작자가 향유한다. 다만, 각색・연출・촬영・작사・작곡 등을 한 저작자는 서명권을 향유하며, 제작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앞 관에 규정된 저작물 이외의 시청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당사자 약정에 따라 귀속된다. 약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제작자가 저작권을 향유한다. 다만, 저작자는 서명권과 보수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시청각 저작물 중에 극본・음악 등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저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권리가 있다.

제 18 조
자연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의 업무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창작한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이며, 제 18 조제 2 관에서 규정된 저작물을 제외하고,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가 향유한다. 다만,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은 그 업무 범위에서 해당 저작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저작물 창작 후 2 년 동안 저작자는 단위(单位)의 동의 없이 제 3 자가 단위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저작물은 저작자가 서명권을 향유하며, 저작권에 대한 그 밖의 권리는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향유하고,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은 저작자를 지원 할 수 있다.

(1)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의 물질적・기술적 조건을 주로 이용하여 창작하고,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책임을 지는 프로젝트 설계도・제품 설계도・지도・안내도・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업무상저작물
(2)신문사・간행물 출판사・뉴스 통신사・라디오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 직원이 만든 업무상 저작물
(3)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계약에 따라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향유하도록 약정된 업무상저작물

제 19 조
위탁을 받아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계약을 통하여 약정한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약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은 위탁인에게 귀속된다.

제 20 조
저작물 원본 소유권의 이전으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이 변경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미술저작물・촬영저작물 원본의 전시권은 원본 소유자가 향유한다.

발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촬영저작물 원본의 소유권을 저작자가 타인에게 이전하여 주는 경우 양수인의 해당 저작물 전시는 저작자의 발표권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다.

제 21 조
저작권이 자연인에게 속하여 있는 상태에서 해당 자연인이 사망 하는 경우 이 법 제 10 조제 1 관 제 5 항부터 제 17 항에서 규정된 권리는 이 법에 규정된 보호기간 안에 이 법에 따라 이전한다.

저작권이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에 속하여 있는 상태에서 해당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변경 또는 소멸되는 경우 이 법 제 10 조제 1 관제 5 항부터 제 17 항에서 규정된 권리는 이 법에 규정된 보호기간 안에 해당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향유한다. 해당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없는 경우 그 권리는 국가가 향유한다.

제 3 절 권리의 보호기간

제 22 조
저작자의 서명권・수정권・저작물 완전성 보호권의 보호기간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23 조
자연인의 저작물에 대한 발표권과 이 법 제 10 조제 1 관 제 5 항부터 제 17 항에서 규정된 권리에 대한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및 그가 사망한 뒤 50 년으로 하며, 저작자 사망한 뒤 50 년이 되는 해의 12 월 31 일에 만료된다. 공동 저작물은 가장 마지막 생존자가 사망한 뒤 50 년이 되는 해의 12 월 31 일에 만료된다.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의 저작물,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저작권(서명권 제외)을 향유하는 업무상저작물의 발표권에 대한 보호기간은 50 년으로 하며, 저작물이 창작된 뒤 50 년이 되는 해 의 12 월 31 일에 만료된다. 이 법 제 10 조제 1 관제 5 항부터 제 17 항에서 규정된 권리에

대한 보호기간은 50 년으로 하며, 저작물이 최초로 발표된 뒤 50 년이 되는 해의 12 월 31 일에 만료된다. 다만, 저작물이 창작된 뒤 50 년 안 에 발표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시청각저작물의 발표권에 대한 보호기간은 50 년으로 하며, 저작물이 창작된 뒤 50 년이 되는 해의 12 월 31 일에 만료된다. 이 법 제 10 조 제 1 관 제 5 항부터 제 17 항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보호기간은 50 년으로 하며, 저작물이 최초로 공표된 뒤 50 년이 되는 해의 12 월 31 일에 만료된다. 다만, 저작물이 창작된 뒤 50 년 안에 발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 4 절 권리의 제한

제 24 조
다음의 각 항의 상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저작물의 명칭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끼치거나 저작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불합리하게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개인이 학습・연구・감상을 위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2)저작물에서 어떤 종류의 저작물 소개・논평을 위하여 또는 어떠한 문제 설명을 위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적절하게 인용하는 경우
(3)신문・간행물・라디오 방송・텔레비전 방송 등 미디어 매체가 뉴스를 보도하기 위하여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불가피하게 재현 또는 인용하는 경우
(4)신문・간행물・라디오 방송사・텔레비전 방송 등 미디어 매체가 다른 신문・간행물・라디오 방송・텔레비전 방송 등 미디어 매체가 이미 공표한 정치・경제・종교 문제의 시사성 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하는 경우. 다만,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공표한 경우는 제외함
(5)신문・간행물・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등 미디어 매체가 대중집회에서 발표한 강연을 게재 또는 방송하는 경우. 다만,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공표한 경우는 제외함.
(6)학교 수업 또는 과학 연구를 위하여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번역・각색・편집・방송・소량 복제하여 교재로 사용하거나 과학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경우. 다만, 출판 발행하여서는 아니 됨
(7)국가기관이 공무 집행을 위하여 이미 발표된 저작물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8)도서관・기록물관・기념관・ 박물관・미술관・문화관 등에서 진열 또는 판본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해당 시설이 소장 중인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
(9)이미 발표된 저작물을 무상으로 공연하면서 대중으로부터 비용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자에게 보수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공연하지도 아니하는 경우
(10)공공장소에 설치 또는 진열된 예술저작물을 모사・회화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경우
(11)중국 공민・법인・비법인 조직이 중국어 통용 언어 및 문자로 창작되고 이미 발표된 저작물을 소수민족 언어 및 문자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 발행하는 경우
(12)이미 발표된 저작물을 독해 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읽을 수 있는 무장애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13)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그 밖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앞 관(前款)의 규정은 저작권 관련 권리의 제한에도 적용된다.

제 25 조
의무교육과 국가 교육 규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교과서를 편찬・출판하는 경우, 이미 발표된 저작물의 단편(片段)・짧은 문자(文字)작품・음악작품・단폭(単幅)의 미술작품・촬영작품・도형작품은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교과서에 편집될 수 있다. 다만,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저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저작물의 명칭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저작권자가 이 법에 따라 향유하는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 관의 규정은 저작권 관련 권리의 제한에도 적용된다.

제 3 장 저작권 사용허가와 양도계약

제 26 조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의 저작물 사용 시 저작권자와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용허가 계약에는 다음 각 항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다.
(1)사용허가 권리의 종류
(2)사용허가 권리가 배타적 사용권인지, 비배타적 사용권인지 여부
(3)사용허가 지역의 범위・기간
(4)보수 지급 기준 및 방법
(5)계약 위반 책임
(6)계약 당사자 양쪽이 약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그 밖의 내용

제 27 조
이 법 제 10 조제 1 관 제 5 항부터 제 17 항에 규정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권리양도 계약에는 다음 각 항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다.
(1)저작물 명칭
(2)양도하는 권리의 종류・지역 범위
(3)양도 가격
(4)양도 대금 지급일 및 방식
(5)계약 위반 책임
(6)계약 당사자 양쪽이 약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그 밖의 내용

제 28 조
저작권을 재산권 질권으로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와 질권자는 법에 따라 질권설정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29 조
사용허가 계약과 양도 계약에 저작권자가 허가・양도하는 권리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0 조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수 지급 기준은 당사자 약정에 따를 수도 있고, 국가 저작권 주무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논의하여 제정한 보수 지급 기준에 따를 수도 있다. 당사자 간의 약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 저작권 주무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논의하여 제정한 보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제 31 조
출판자・공연자・녹음 및 녹화 제작자・라디오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 등이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자의 서명권・수정권・저작물 완전성 보호권・보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저작권 관련 권리

제 1 절 도서・간행물 출판

제 32 조
도서 출판자가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 저작자와 출판 계약을 체결하고 도서 출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33 조
저작권자가 도서 출판자에게 교부하여 출판한 저작물에 대하여 도서 출판자가 계약 약정에 따라 향유하는 배타적 출판권은 법적 보호를 받으므로 다른 자는 해당 저작물을 출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4 조
저작권자는 계약에 약정한 기한 안에 작품을 교부하여야 한다. 도서 출판자는 계약에서 약정한 출판 품질, 출판기한에 따라서 도서를 출판하여야 한다.

도서 출판자가 계약에서 약정한 기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제 61 조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도서 출판자가 저작물을 재인쇄・재출간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보수도 지급하여야 한다. 도서가 매진된 이후 도서 출판자가 재인쇄・재출간을 거부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제 35 조
저작권자가 신문사・간행물 발행사에 투고하는 경우 원고를 송부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신문사로부터 게재 결정을 통지 받지 못하거나, 원고를 송부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간행물 발행사로부터 게재 결정을 통지 받지 못하는 경우 동일한 저작물을 다른 신문사・간행물 발행사에 투고할 수 있다. 당사자 양쪽이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작물 게재 이후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의 전재(转载)・발췌 금지를 발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신문사・간행물 발행사는 해당 저작물을 전재하거나 요약・자료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36 조

도서 출판자가 저작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저작물을 수정・일부 삭제할 수 있다.
신문사・간행물 발행사는 저작물의 문자적 수정이나 삭제를 할 수 있다. 내용 수정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출판자는 출판한 도서・간행물의 레이아웃 디자인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권리가 있다.

앞 관에 규정된 권리의 보호 기간은 10 년으로 하며, 해당 레이아웃 디자인을 사용한 도서・간행물의 초판 발행 후 10 년이 되 는 해 12 월 31 일에 만료된다.

제 2 절 공연

제 38 조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연출하는 경우 공연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보수도 지급하여야 한다. 연출팀이 연출하는 경우 해당 연출팀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보수도 지급하여야 한 다.

제 39 조
공연자는 그 공연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권리를 향유한다.
(1)공연자의 신분을 표기할 권리
(2)공연 이미지가 왜곡되지 않고 보호될 권리
(3)현장 공연을 타인이 현장 생방송 및 공개 전송하는 것을 허가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
(4)타인이 자기의 공연을 녹음 및 녹화하는 것을 허가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
(5)자기의 공연을 녹음 및 녹화한 저작물을 타인이 복제・발행・대여하는 것을 허가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
(6)타인이 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연을 대중에게 중계하는 것을 허가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

앞 관의 제 3 항부터 제 6 항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 받은 자도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40 조
공연자가 소속 연출단의 연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직무로 공연을 하는 경우 공연자는 신분을 표기할 권리와 공연 이미지가 왜곡되지 않고 보호될 권리를 향유하며, 그 밖의 권리는 당사자 약정에 귀속된다. 당사자가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 직무 공연의 권리는 연출단이 향유한다.

전문 직무 공연의 권리를 공연자가 향유하는 경우 연출단은 그 업무 범위 안에서 해당 공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 41 조
이 법 제 39 조제 1 관 제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된 권리의 보호기간은 한도가 없다.

이 법 제 39 조제 1 관제 3 항부터 제 6 항에 규정된 권리의 보호기 간은 50 년이며, 해당 공연이 상연된 뒤 50 년이 되는 해의 12 월 31 일에 만료된다.

제 3 절 녹음 및 녹화

제 42 조
녹음 및 녹화 제작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녹음 및 녹화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녹음 및 녹화 제작자가 기존 저작물을 각색, 번역, 주석, 정리하여 만든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색, 번역, 주석, 정리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원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녹음 제작자가 타인이 이미 합법적으로 제작한 녹음 저작물의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여 녹음 저작물을 제작하려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규정에 따라 보수는 지급 하여야 한다.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공표한 경우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3 조
녹음 및 녹화 제작자가 녹음 및 녹화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공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44 조
녹음 및 녹화 제작자는 제작한 녹음 및 녹화 저작물에 대하여 타인이 복제・발행・대여・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중에게 중계하는 것을 허가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권리의 보호기간은 50 년이며, 해당 저작물이 최초 제작된 뒤 50 년이 되는 해의 12 월 31 일에 만료된다.

복제・발행・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녹음 및 녹화 저작물을 대중에게 중계하는 것을 허가 받은 자는 저작권자・공연자의 허가를 받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녹음 및 녹화 저작물을 대여하는 것을 허가 받은 자는 공연자의 허가를 받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45 조
녹음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유선 또는 무선 전파하거나, 음성 전송 기술 설비로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방송하는 경우 녹음 제작자에게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4 절 라디오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 방송

제 46 조
타인이 발표하지 아니한 작품을 라디오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이 방송하려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타인이 이미 발표한 작품을 라디오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이 방송하려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보수를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 47 조
라디오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 받지 않고 행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
(1)방송된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중계하는 행위
(2)방송된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녹화 제작 및 복제를 하는 행위
(3)방송된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중에게 중계하는 행위

라디오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이 앞 관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권 행사 또는 저작권자의 관련 권리에 영향・제한・침해가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 제 1 관에 규정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 년이며, 해당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최초 방송된 뒤 50 년이 되는 해의 12 월 31 일에 만료된다.

제 48 조
텔레비전 방송국이 타인의 시청각 저작물・녹화 저작물을 방송하는 경우 시청각 저작물 저작권자 또는 녹화 제작자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타인의 녹화 저작물을 방송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5 장 저작권과 저작권 관련 권리의 보호

제 49 조
저작권과 저작권 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권리자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모든 조직과 개인은 권리자의 허가없이 기술적 조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파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술적 조치를 회피・파괴할 목적으로 관련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대중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타인이 기술적 조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파괴하도록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도 아니된다. 다만, 법률・행정 법규에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기술적 조치란 권리자의 허가없이 작품・공연・녹음 및 녹화 저작물을 열람・감상하는 행위 또는 작품・공연・녹음 및 녹화 저작물을 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중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기술・장치・부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제 50 조
다음 각 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적 조치를 회피할 수 있다. 다만,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는 기술・장치・부품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에 따라 권리자가 향유하는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도 아니 된다.
(1)학교 교실수업 또는 과학연구를 위하여 교육자 또는 과학자가 사용하도록 이미 발표된 저작물이 소량 제공되었으나, 해당 저작물을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이미 발표된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독해 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읽을 수 있는 무장애 방식으로 제공하고 해당 저작물을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행정 절차・감찰 절차・사법 절차에 따라 국가기관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우
(4)컴퓨터 및 그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안전 성능을 측정하는 경우
(5)암호화 연구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리버스(反向) 엔지니어링 연구를 하는 경우

앞 관의 규정은 저작권 관련 권리의 제한에도 적용한다.

제 51 조
권리자의 허가없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저작물・레이아웃 디자인・공연・녹음 및 녹화 저작물・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관한 권리를 관리하는 정보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원인으로 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2)저작물・레이아웃 디자인・ 공연・녹음 및 녹화 저작물・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관한 권리를 관리하는 정보를 허가없이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 52 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침해 중지・영향 제거・사과・손실배상 등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1)저작권자의 허가없이 그의 저작물을 발표하는 행위
(2)공동 저작자의 허가없이 타인과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을 자기 혼자 창작한 저작물이라고 발표하는 행위
(3)창작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개인의 명예 및 이익을 도모하려고 타인의 저작물에 서명하는 행위
(4)타인의 저작물을 왜곡・변조하는 행위
(5)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는 행위
(6)저작권자의 허가없이 시청각 저작물을 전시 또는 촬영・제작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각색・번역・주해 등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함.
(7)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8)시청각 저작물・컴퓨터 소프트웨어・녹음 및 녹화 저작물의 저작권자・공연자・녹음 및 녹화 제작자의 허가없이 그 저작물 또는 녹음 및 녹화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사본을 대여하는 행위.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함.
(9)출판자의 허가없이 출판된 도서・간행물의 레이아웃 디자인을 사용하는 행위
(10)공연자의 허가없이 현장 공연을 현장 생방송 및 공개 전송하는 행위, 또는 그 공연을 녹화 제작하는 행위
(11)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그 밖의 행위

제 53 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이 법 제 52 조에 규정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권리 침해 행위가 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저작권 주무부서는 권리 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그 행위자에게 경고를 주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권리를 침해한 복제품 및 권리를 침해한 복제품을 제작하는데 주로 사용된 재료 ・도구・설비 등을 몰수・무해화 및 소각 처리한다. 또한, 위법경영액이 5 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경앵액의 1 배 이상 5 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거나, 위법경영액이 5 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2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저작권자의 허가없이 그 저작물을 복제・발행・공연・상영 ・방송・편집・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중에게 중계하는 행위.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함.
(2)타인이 향유하는 독점 출판권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
(3)공연자의 허가없이 그 공연의 녹음 및 녹화 저작물을 복제・발행하거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중에게 공연을 중계하는 행위.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함
(4)녹음 및 녹화 제작자의 허가없이 그 녹음 및 녹화 저작물을 복제・발행하거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중에게 중계하는 행위.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함.
(5)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허가없이 방송・복제하거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중에게 중계하는 행위.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함.
(6)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의 허가없이 기술적 조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기술적 조치를 파괴하는 행위. 기술적 조치를 회피・파괴할 목적으로 관련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대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타인이 기술적 조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파괴하도록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법률・행정 법규에서 별도로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7)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의 허가없이 저작물・레이아웃 디자인・공연・녹음 및 녹화 저작물・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관한 권리를 관리하는 정보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저작물・레이아웃 디자인・공연・녹음 및 녹화 저작물・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관한 권리를 관리하는 정보를 허가없이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만, 법률・행정 법규에서 별도로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8)타인이 서명한 저작물인 것처럼 가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제 54 조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권리침해자는 그 침해행위로 권리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실 또는 권리침해자가 얻은 위법소득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 권리자의 실질적인 손실 또는 권리침해자가 얻은 위법소득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권리 사용료로 배상할 수도 있다.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고의로 침해하고 그 상황이 심각한 경우 앞에 언급된 방법에 따라 확정된 금액의 1 배 이상 5 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 할 수 있다.

권리자의 실질적인 손실・권리침해자가 얻은 위법소득・권리 사용료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침해행위 상황에 근거하여 500 위안 이상 500 만 위안 이하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한다.

배상 금액에는 권리자가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은 배상 금액 확정을 위하여 권리자가 이미 필요한 입증책임을 최대한 다 하였으나, 권리침해행위에 연관된 장부・자료 등을 주로 권리침해자가 장악하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침해자에게 권리침해행위에 연관된 장부・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권리침해자가 장부・자료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자가 장부・자료 등을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이 저작권 분쟁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품을 소각하도록 명령하고, 권리를 침해한 복제품을 제작하는데 주로 사용된 재료・도구・설비 등도 소각하도록 명령하고 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앞에 언급된 재료・도구・설비 등을 상업적 채널로 들여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 55 조
저작권 주무부서는 저작권과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혐의에 대하여 수사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질의할 수 있고, 위법행위와 연관된 상황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 혐의가 있는 당사자와 연관된 장소와 물건에 대하여 현장 검사를 할 수도 있다. 위법행위 혐의와 연관된 계약・영수증・장부・그 밖의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 혐의와 연관된 장소와 물건을 봉인 또는 압류할 수 있다.

저작권 주무부서는 앞 관에 규정된 직무 권한을 법에 따라 행사하는 경우 당사자는 협조・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6 조
저작권자 및 저작권 관련 권리자가 그 권리를 현재 침해하고 있거나, 그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권리의 실현을 방해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고, 적시에 그 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면 합법적인 권익에 대하여 보전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법에 따른 재산보전 조치, 작위명령 또는 부작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57 조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는 도중에 증거가 없어지거나 이후에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 저작권자 및 저작권 관련권리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전항의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3 조부터 제 96 조까지와 제 99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58 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때에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 침해에 대하여 위법소득・권리를 침해하는 복제품 및 위법활동에 사용된 재물을 몰수할 수 있다.

제 59 조
복제품의 출판자・제작자가 그 출판・제작 권한의 합법적인 위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복제품의 발행자 또는 시청각 저작물컴퓨터 프로그램・녹음 및 녹화 저작물 복제품의 대여자가 그 복제품 발행・대여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소송 절차 중에 권리침해자가 그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권리자의 허가를 이미 얻었다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권리자의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 60 조
저작권 분쟁은 조정・화해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작성한 서면 중재협정 또는 저작권 계약의 중재 조항에 근거하여 중재 기구에 중재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작성한 서면 중재 협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저작권 계약에 중재 조항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 61 조
당사자가 계약 의무 불이행 또는 계약 의무 불완전 이행으로 지게 되는 민사 책임과 당사자의 소송 권리행사・보전 신청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6 장 부칙

제 62 조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권이란 판권이다.

제 63 조
이 법 제 2 조에서 말하는 출판이란 저작물의 복제・발행이다.

제 64 조
컴퓨터 소프트웨어・정보 네트워크 중계권의 보호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 65 조
촬영저작물에 대한 발표권과 이 법 제 10 조제 1 관 제 5 항부터 제 17 항까지 규정된 권리의 보호기간이 2021 년 6 월 1 일 이전에 이미 만료된 경우, 그 권리가 이 법 제 23 조 제 1 관에 따라 아직 보호기간이 남아 있어도 더 이상 보호하지 아니한다.

제 66 조
이 법에서 규정된 저작권자・출판자・공연자・녹음 및 녹화 제작자・라디오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의 권리는 이 법의 시행일에 이 법에서 규정된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권리침해행위 또는 계약위반행위는 해당 권리침해행위 또는 계약 위반행위 발생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67 조
이 법은 1991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전문 (중문)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保护文学、艺术和科学作品作者的著作权，以及与著作权有关的权益，鼓励有益于社会主义精神文明、物质文明建设的作品的创作和传播，促进社会主义文化和科学事业的发展与繁荣，根据宪法制定本法。

第二条　中国公民、法人或者非法人组织的作品，不论是否发表，依照本法享有著作权。

外国人、无国籍人的作品根据其作者所属国或者经常居住地国同中国签订的协议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享有的著作权，受本法保护。

外国人、无国籍人的作品首先在中国境内出版的，依照本法享有著作权。

未与中国签订协议或者共同参加国际条约的国家的作者以及无国籍人的作品首次在中国参加的国际条约的成员国出版的，或者在成员国和非成员国同时出版的，受本法保护。

第三条　本法所称的作品，是指文学、艺术和科学领域内具有独创性并能以一定形式表现的智力成果，包括：

（一）文字作品；
（二）口述作品；
（三）音乐、戏剧、曲艺、舞蹈、杂技艺术作品；
（四）美术、建筑作品；
（五）摄影作品；
（六）视听作品；
（七）工程设计图、产品设计图、地图、示意图等图形作品和模型作品；
（八）计算机软件；
（九）符合作品特征的其他智力成果。

第四条　著作权人和与著作权有关的权利人行使权利，不得违反宪法和法律，不得损害公共利益。国家对作品的出版、传播依法进行监督管理。

第五条　本法不适用于：

（一）法律、法规，国家机关的决议、决定、命令和其他具有立法、行政、司法性质的文件，及其官方正式译文；
（二）单纯事实消息；
（三）历法、通用数表、通用表格和公式。

第六条　民间文学艺术作品的著作权保护办法由国务院另行规定。

第七条　国家著作权主管部门负责全国的著作权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主管著作权的部门负责本行政区域的著作权管理工作。

第八条　著作权人和与著作权有关的权利人可以授权著作权集体管理组织行使著作权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依法设立的著作权集体管理组织是非营利法人，被授权后可以以自己的名义为著作权人和与著作权有关的权利人主张权利，并可以作为当事人进行涉及著作权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的诉讼、仲裁、调解活动。

著作权集体管理组织根据授权向使用者收取使用费。使用费的收取标准由著作权集体管理组织和使用者代表协商确定，协商不成的，可以向国家著作权主管部门申请裁决，对裁决不服的，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当事人也可以直接向人民法院提起诉讼。

著作权集体管理组织应当将使用费的收取和转付、管理费的提取和使用、使用费的未分配部分等总体情况定期向社会公布，并应当建立权利信息查询系统，供权利人和使用者查询。国家著作权主管部门应当依法对著作权集体管理组织进行监督、管理。

著作权集体管理组织的设立方式、权利义务、使用费的收取和分配，以及对其监督和管理等由国务院另行规定。

第二章　著作权

第一节　著作权人及其权利

第九条　著作权人包括：

（一）作者；
（二）其他依照本法享有著作权的自然人、法人或者非法人组织。

第十条　著作权包括下列人身权和财产权：

（一）发表权，即决定作品是否公之于众的权利；
（二）署名权，即表明作者身份，在作品上署名的权利；
（三）修改权，即修改或者授权他人修改作品的权利；
（四）保护作品完整权，即保护作品不受歪曲、篡改的权利；
（五）复制权，即以印刷、复印、拓印、录音、录像、翻录、翻拍、数字化等方式将作品制作一份或者多份的权利；
（六）发行权，即以出售或者赠与方式向公众提供作品的原件或者复制件的权利；
（七）出租权，即有偿许可他人临时使用视听作品、计算机软件的原件或者复制件的权利，计算机软件不是出租的主要标的的除外；
（八）展览权，即公开陈列美术作品、摄影作品的原件或者复制件的权利；
（九）表演权，即公开表演作品，以及用各种手段公开播送作品的表演的权利；
（十）放映权，即通过放映机、幻灯机等技术设备公开再现美术、摄影、视听作品等的权利；
（十一）广播权，即以有线或者无线方式公开传播或者转播作品，以及通过扩音器或者其他传送符号、声音、图像的类似工具向公众传播广播的作品的权利，但不包括本款第十二项规定的权利；
（十二）信息网络传播权，即以有线或者无线方式向公众提供，使公众可以在其选定的时间和地点获得作品的权利；
（十三）摄制权，即以摄制视听作品的方法将作品固定在载体上的权利；

（十四）改编权，即改变作品，创作出具有独创性的新作品的权利；
（十五）翻译权，即将作品从一种语言文字转换成另一种语言文字的权利；
（十六）汇编权，即将作品或者作品的片段通过选择或者编排，汇集成新作品的权利；
（十七）应当由著作权人享有的其他权利。

著作权人可以许可他人行使前款第五项至第十七项规定的权利，并依照约定或者本法有关规定获得报酬。

著作权人可以全部或者部分转让本条第一款第五项至第十七项规定的权利，并依照约定或者本法有关规定获得报酬。

第二节　著作权归属

第十一条　著作权属于作者，本法另有规定的除外。

创作作品的自然人是作者。

由法人或者非法人组织主持，代表法人或者非法人组织意志创作，并由法人或者非法人组织承担责任的作品，法人或者非法人组织视为作者。

第十二条　在作品上署名的自然人、法人或者非法人组织为作者，且该作品上存在相应权利，但有相反证明的除外。

作者等著作权人可以向国家著作权主管部门认定的登记机构办理作品登记。

与著作权有关的权利参照适用前两款规定。

第十三条　改编、翻译、注释、整理已有作品而产生的作品，其著作权由改编、翻译、注释、整理人享有，但行使著作权时不得侵犯原作品的著作权。

第十四条　两人以上合作创作的作品，著作权由合作作者共同享有。没有参加创作的人，不能成为合作作者。

合作作品的著作权由合作作者通过协商一致行使；不能协商一致，又无正当理由的，任何一方不得阻止他方行使除转让、许可他人专有使用、出质以外的其他权利，但是所得收益应当合理分配给所有合作作者。

合作作品可以分割使用的，作者对各自创作的部分可以单独享有著作权，但行使著作权时不得侵犯合作作品整体的著作权。

第十五条　汇编若干作品、作品的片段或者不构成作品的数据或者其他材料，对其内容的选择或者编排体现独创性的作品，为汇编作品，其著作权由汇编人享有，但行使著作权时，不得侵犯原作品的著作权。

第十六条　使用改编、翻译、注释、整理、汇编已有作品而产生的作品进行出版、演出和制作录音录像制品，应当取得该作品的著作权人和原作品的著作权人许可，并支付报酬。

第十七条　视听作品中的电影作品、电视剧作品的著作权由制作者享有，但编剧、导演、摄影、作词、作曲等作者享有署名权，并有权按照与制作者签订的合同获得报酬。

前款规定以外的视听作品的著作权归属由当事人约定；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由制作者享有，但作者享有署名权和获得报酬的权利。

视听作品中的剧本、音乐等可以单独使用的作品的作者有权单独行使其著作权。

第十八条　自然人为完成法人或者非法人组织工作任务所创作的作品是职务作品，除本条第二款的规定以外，著作权由作者享有，但法人或者非法人组织有权在其业务范围内优先使用。作品完成两年内，未经单位同意，作者不得许可第三人以与单位使用的相同方式使用该作品。

有下列情形之一的职务作品，作者享有署名权，著作权的其他权利由法人或者非法人组织享有，法人或者非法人组织可以给予作者奖励：

（一）主要是利用法人或者非法人组织的物质技术条件创作，并由法人或者非法人组织承担责任的工程设计图、产品设计图、地图、示意图、计算机软件等职务作品；
（二）报社、期刊社、通讯社、广播电台、电视台的工作人员创作的职务作品；
（三）法律、行政法规规定或者合同约定著作权由法人或者非法人组织享有的职务作品。

第十九条　受委托创作的作品，著作权的归属由委托人和受托人通过合同约定。合同未作明确约定或者没有订立合同的，著作权属于受托人。

第二十条　作品原件所有权的转移，不改变作品著作权的归属，但美术、摄影作品原件的展览权由原件所有人享有。

作者将未发表的美术、摄影作品的原件所有权转让给他人，受让人展览该原件不构成对作者发表权的侵犯。

第二十一条　著作权属于自然人的，自然人死亡后，其本法第十条第一款第五项至第十七项规定的权利在本法规定的保护期内，依法转移。

著作权属于法人或者非法人组织的，法人或者非法人组织变更、终止后，其本法第十条第一款第五项至第十七项规定的权利在本法规定的保护期内，由承受其权利义务的法人或者非法人组织享有；没有承受其权利义务的法人或者非法人组织的，由国家享有。

第三节　权利的保护期

第二十二条　作者的署名权、修改权、保护作品完整权的保护期不受限制。

第二十三条　自然人的作品，其发表权、本法第十条第一款第五项至第十七项规定的权利的保护期为作者终生及其死亡后五十年，截止于作者死亡后第五十年的 12 月 31 日；如果是合作作品，截止于最后死亡的作者死亡后第五十年的 12 月 31 日。

法人或者非法人组织的作品、著作权（署名权除外）由法人或者非法人组织享有的职务作品，其发表权的保护期为五十年，截止于作品创作完成后第五十年的 12 月 31 日；本法第十条第一款第五项至第十七项规定的权利的保护期为五十年，截止于作品首次发表后第五十年的 12 月 31 日，但作品自创作完成后五十年内未发表的，本法不再保护。

视听作品，其发表权的保护期为五十年，截止于作品创作完成后第五十年的 12 月 31 日；本法第十条第一款第五项至第十七项规定的权利的保护期为五十年，截止于作品首次发表后第五十年的 12 月 31 日，但作品自创作完成后五十年内未发表的，本法不再保护。

第四节　权利的限制

第二十四条　在下列情况下使用作品，可以不经著作权人许可，不向其支付报酬，但应当指明作者姓名或者名称、作品名称，并且不得影响该作品的正常使用，也不得不合理地损害著作权人的合法权益：

（一）为个人学习、研究或者欣赏，使用他人已经发表的作品；
（二）为介绍、评论某一作品或者说明某一问题，在作品中适当引用他人已经发表的作品；
（三）为报道新闻，在报纸、期刊、广播电台、电视台等媒体中不可避免地再现或者引用已经发表的作品；
（四）报纸、期刊、广播电台、电视台等媒体刊登或者播放其他报纸、期刊、广播电台、电视台等媒体已经发表的关于政治、经济、宗教问题的时事性文章，但著作权人声明不许刊登、播放的除外；
（五）报纸、期刊、广播电台、电视台等媒体刊登或者播放在公众集会上发表的讲话，但作者声明不许刊登、播放的除外；
（六）为学校课堂教学或者科学研究，翻译、改编、汇编、播放或者少量复制已经发表的作品，供教学或者科研人员使用，但不得出版发行；
（七）国家机关为执行公务在合理范围内使用已经发表的作品；
（八）图书馆、档案馆、纪念馆、博物馆、美术馆、文化馆等为陈列或者保存版本的需要，复制本馆收藏的作品；
（九）免费表演已经发表的作品，该表演未向公众收取费用，也未向表演者支付报酬，且不以营利为目的；
（十）对设置或者陈列在公共场所的艺术作品进行临摹、绘画、摄影、录像；
（十一）将中国公民、法人或者非法人组织已经发表的以国家通用语言文字创作的作品翻译成少数民族语言文字作品在国内出版发行；
（十二）以阅读障碍者能够感知的无障碍方式向其提供已经发表的作品；
（十三）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情形。

前款规定适用于对与著作权有关的权利的限制。

第二十五条　为实施义务教育和国家教育规划而编写出版教科书，可以不经著作权人许可，在教科书中汇编已经发表的作品片段或者短小的文字作品、音乐作品或者单幅的美术作品、摄影作

品、图形作品，但应当按照规定向著作权人支付报酬，指明作者姓名或者名称、作品名称，并且不得侵犯著作权人依照本法享有的其他权利。

前款规定适用于对与著作权有关的权利的限制。

第三章　著作权许可使用和转让合同

第二十六条　使用他人作品应当同著作权人订立许可使用合同，本法规定可以不经许可的除外。

许可使用合同包括下列主要内容：

（一）许可使用的权利种类；
（二）许可使用的权利是专有使用权或者非专有使用权；
（三）许可使用的地域范围、期间；
（四）付酬标准和办法；
（五）违约责任；
（六）双方认为需要约定的其他内容。

第二十七条　转让本法第十条第一款第五项至第十七项规定的权利，应当订立书面合同。

权利转让合同包括下列主要内容：

（一）作品的名称；
（二）转让的权利种类、地域范围；
（三）转让价金；
（四）交付转让价金的日期和方式；
（五）违约责任；
（六）双方认为需要约定的其他内容。

第二十八条　以著作权中的财产权出质的，由出质人和质权人依法办理出质登记。

第二十九条　许可使用合同和转让合同中著作权人未明确许可、转让的权利，未经著作权人同意，另一方当事人不得行使。

第三十条　使用作品的付酬标准可以由当事人约定，也可以按照国家著作权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制定的付酬标准支付报酬。当事人约定不明确的，按照国家著作权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制定的付酬标准支付报酬。

第三十一条　出版者、表演者、录音录像制作者、广播电台、电视台等依照本法有关规定使用他人作品的，不得侵犯作者的署名权、修改权、保护作品完整权和获得报酬的权利。

第四章　与著作权有关的权利

第一节　图书、报刊的出版

第三十二条　图书出版者出版图书应当和著作权人订立出版合同，并支付报酬。

第三十三条　图书出版者对著作权人交付出版的作品，按照合同约定享有的专有出版权受法律保护，他人不得出版该作品。

第三十四条　著作权人应当按照合同约定期限交付作品。图书出版者应当按照合同约定的出版质量、期限出版图书。

图书出版者不按照合同约定期限出版，应当依照本法第六十一条的规定承担民事责任。

图书出版者重印、再版作品的，应当通知著作权人，并支付报酬。图书脱销后，图书出版者拒绝重印、再版的，著作权人有权终止合同。

第三十五条　著作权人向报社、期刊社投稿的，自稿件发出之日起十五日内未收到报社通知决定刊登的，或者自稿件发出之日起三十日内未收到期刊社通知决定刊登的，可以将同一作品向其他报社、期刊社投稿。双方另有约定的除外。

作品刊登后，除著作权人声明不得转载、摘编的外，其他报刊可以转载或者作为文摘、资料刊登，但应当按照规定向著作权人支付报酬。

第三十六条　图书出版者经作者许可，可以对作品修改、删节。

报社、期刊社可以对作品作文字性修改、删节。对内容的修改，应当经作者许可。

第三十七条　出版者有权许可或者禁止他人使用其出版的图书、期刊的版式设计。

前款规定的权利的保护期为十年，截止于使用该版式设计的图书、期刊首次出版后第十年的 12 月 31 日。

第二节　表　　演

第三十八条　使用他人作品演出，表演者应当取得著作权人许可，并支付报酬。演出组织者组织演出，由该组织者取得著作权人许可，并支付报酬。

第三十九条　表演者对其表演享有下列权利：

（一）表明表演者身份；
（二）保护表演形象不受歪曲；
（三）许可他人从现场直播和公开传送其现场表演，并获得报酬；
（四）许可他人录音录像，并获得报酬；
（五）许可他人复制、发行、出租录有其表演的录音录像制品，并获得报酬；
（六）许可他人通过信息网络向公众传播其表演，并获得报酬。

被许可人以前款第三项至第六项规定的方式使用作品，还应当取得著作权人许可，并支付报酬。

第四十条　演员为完成本演出单位的演出任务进行的表演为职务表演，演员享有表明身份和保护表演形象不受歪曲的权利，其他权利归属由当事人约定。当事人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职务表演的权利由演出单位享有。

职务表演的权利由演员享有的，演出单位可以在其业务范围内免费使用该表演。

第四十一条　本法第三十九条第一款第一项、第二项规定的权利的保护期不受限制。

本法第三十九条第一款第三项至第六项规定的权利的保护期为五十年，截止于该表演发生后第五十年的 12 月 31 日。

第三节　录音录像

第四十二条　录音录像制作者使用他人作品制作录音录像制品，应当取得著作权人许可，并支付报酬。

录音制作者使用他人已经合法录制为录音制品的音乐作品制作录音制品，可以不经著作权人许可，但应当按照规定支付报酬；著作权人声明不许使用的不得使用。

第四十三条　录音录像制作者制作录音录像制品，应当同表演者订立合同，并支付报酬。

第四十四条　录音录像制作者对其制作的录音录像制品，享有许可他人复制、发行、出租、通过信息网络向公众传播并获得报酬的权利；权利的保护期为五十年，截止于该制品首次制作完成后第五十年的 12 月 31 日。

被许可人复制、发行、通过信息网络向公众传播录音录像制品，应当同时取得著作权人、表演者许可，并支付报酬；被许可人出租录音录像制品，还应当取得表演者许可，并支付报酬。

第四十五条　将录音制品用于有线或者无线公开传播，或者通过传送声音的技术设备向公众公开播送的，应当向录音制作者支付报酬。

第四节　广播电台、电视台播放

第四十六条　广播电台、电视台播放他人未发表的作品，应当取得著作权人许可，并支付报酬。

广播电台、电视台播放他人已发表的作品，可以不经著作权人许可，但应当按照规定支付报酬。

第四十七条　广播电台、电视台有权禁止未经其许可的下列行为:

（一）将其播放的广播、电视以有线或者无线方式转播；
（二）将其播放的广播、电视录制以及复制；
（三）将其播放的广播、电视通过信息网络向公众传播。

广播电台、电视台行使前款规定的权利，不得影响、限制或者侵害他人行使著作权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

本条第一款规定的权利的保护期为五十年，截止于该广播、电视首次播放后第五十年的 12 月 31 日。

第四十八条　电视台播放他人的视听作品、录像制品，应当取得视听作品著作权人或者录像制作者许可，并支付报酬；播放他人的录像制品，还应当取得著作权人许可，并支付报酬。

第五章　著作权和与著作权有关的权利的保护

第四十九条　为保护著作权和与著作权有关的权利，权利人可以采取技术措施。

未经权利人许可，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故意避开或者破坏技术措施，不得以避开或者破坏技术措施为目的制造、进口或者向公众提供有关装置或者部件，不得故意为他人避开或者破坏技术措施提供技术服务。但是，法律、行政法规规定可以避开的情形除外。

本法所称的技术措施，是指用于防止、限制未经权利人许可浏览、欣赏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或者通过信息网络向公众提供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的有效技术、装置或者部件。

第五十条　下列情形可以避开技术措施，但不得向他人提供避开技术措施的技术、装置或者部件，不得侵犯权利人依法享有的其他权利：

（一）为学校课堂教学或者科学研究，提供少量已经发表的作品，供教学或者科研人员使用，而该作品无法通过正常途径获取；
（二）不以营利为目的，以阅读障碍者能够感知的无障碍方式向其提供已经发表的作品，而该作品无法通过正常途径获取；
（三）国家机关依照行政、监察、司法程序执行公务；
（四）对计算机及其系统或者网络的安全性能进行测试；
（五）进行加密研究或者计算机软件反向工程研究。

前款规定适用于对与著作权有关的权利的限制。

第五十一条　未经权利人许可，不得进行下列行为：

（一）故意删除或者改变作品、版式设计、表演、录音录像制品或者广播、电视上的权利管理信息，但由于技术上的原因无法避免的除外；
（二）知道或者应当知道作品、版式设计、表演、录音录像制品或者广播、电视上的权利管理信息未经许可被删除或者改变，仍然向公众提供。

第五十二条　有下列侵权行为的，应当根据情况，承担停止侵害、消除影响、赔礼道歉、赔偿损失等民事责任：

（一）未经著作权人许可，发表其作品的；
（二）未经合作作者许可，将与他人合作创作的作品当作自己单独创作的作品发表的；
（三）没有参加创作，为谋取个人名利，在他人作品上署名的；
（四）歪曲、篡改他人作品的；

（五）剽窃他人作品的；
（六）未经著作权人许可，以展览、摄制视听作品的方法使用作品，或者以改编、翻译、注释等方式使用作品的，本法另有规定的除外；
（七）使用他人作品，应当支付报酬而未支付的；
（八）未经视听作品、计算机软件、录音录像制品的著作权人、表演者或者录音录像制作者许可，出租其作品或者录音录像制品的原件或者复制件的，本法另有规定的除外；
（九）未经出版者许可，使用其出版的图书、期刊的版式设计的；
（十）未经表演者许可，从现场直播或者公开传送其现场表演，或者录制其表演的；
（十一）其他侵犯著作权以及与著作权有关的权利的行为。

第五十三条　有下列侵权行为的，应当根据情况，承担本法第五十二条规定的民事责任；侵权行为同时损害公共利益的，由主管著作权的部门责令停止侵权行为，予以警告，没收违法所得，没收、无害化销毁处理侵权复制品以及主要用于制作侵权复制品的材料、工具、设备等，违法经营额五万元以上的，可以并处违法经营额一倍以上五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经营额、违法经营额难以计算或者不足五万元的，可以并处二十五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未经著作权人许可，复制、发行、表演、放映、广播、汇编、通过信息网络向公众传播其作品的，本法另有规定的除外；
（二）出版他人享有专有出版权的图书的；
（三）未经表演者许可，复制、发行录有其表演的录音录像制品，或者通过信息网络向公众传播其表演的，本法另有规定的除外；
（四）未经录音录像制作者许可，复制、发行、通过信息网络向公众传播其制作的录音录像制品的，本法另有规定的除外；
（五）未经许可，播放、复制或者通过信息网络向公众传播广播、电视的，本法另有规定的除外；
（六）未经著作权人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人许可，故意避开或者破坏技术措施的，故意制造、进口或者向他人提供主要用于避开、破坏技术措施的装置或者部件的，或者故意为他人避开或者破坏技术措施提供技术服务的，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七）未经著作权人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人许可，故意删除或者改变作品、版式设计、表演、录音录像制品或者广播、电视上的权利管理信息的，知道或者应当知道作品、版式设计、表演、录音录像制品或者广播、电视上的权利管理信息未经许可被删除或者改变，仍然向公众提供的，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八）制作、出售假冒他人署名的作品的。

第五十四条　侵犯著作权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的，侵权人应当按照权利人因此受到的实际损失或者侵权人的违法所得给予赔偿；权利人的实际损失或者侵权人的违法所得难以计算的，可以参照该权利使用费给予赔偿。对故意侵犯著作权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情节严重的，可以在按照上述方法确定数额的一倍以上五倍以下给予赔偿。

权利人的实际损失、侵权人的违法所得、权利使用费难以计算的，由人民法院根据侵权行为的情节，判决给予五百元以上五百万元以下的赔偿。

赔偿数额还应当包括权利人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

人民法院为确定赔偿数额，在权利人已经尽了必要举证责任，而与侵权行为相关的账簿、资料等主要由侵权人掌握的，可以责令侵权人提供与侵权行为相关的账簿、资料等；侵权人不提供，或者提供虚假的账簿、资料等的，人民法院可以参考权利人的主张和提供的证据确定赔偿数额。

人民法院审理著作权纠纷案件，应权利人请求，对侵权复制品，除特殊情况外，责令销毁；对主要用于制造侵权复制品的材料、工具、设备等，责令销毁，且不予补偿；或者在特殊情况下，责令禁止前述材料、工具、设备等进入商业渠道，且不予补偿。

第五十五条　主管著作权的部门对涉嫌侵犯著作权和与著作权有关的权利的行为进行查处时，可以询问有关当事人，调查与涉嫌违法行为有关的情况；对当事人涉嫌违法行为的场所和物品实施现场检查；查阅、复制与涉嫌违法行为有关的合同、发票、账簿以及其他有关资料；对于涉嫌违法行为的场所和物品，可以查封或者扣押。

主管著作权的部门依法行使前款规定的职权时，当事人应当予以协助、配合，不得拒绝、阻挠。

第五十六条　著作权人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人有证据证明他人正在实施或者即将实施侵犯其权利、妨碍其实现权利的行为，如不及时制止将会使其合法权益受到难以弥补的损害的，可以在起诉前依法向人民法院申请采取财产保全、责令作出一定行为或者禁止作出一定行为等措施。

第五十七条　为制止侵权行为，在证据可能灭失或者以后难以取得的情况下，著作权人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人可以在起诉前依法向人民法院申请保全证据。

第五十八条　人民法院审理案件，对于侵犯著作权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的，可以没收违法所得、侵权复制品以及进行违法活动的财物。

第五十九条　复制品的出版者、制作者不能证明其出版、制作有合法授权的，复制品的发行者或者视听作品、计算机软件、录音录像制品的复制品的出租者不能证明其发行、出租的复制品有合法来源的，应当承担法律责任。

在诉讼程序中，被诉侵权人主张其不承担侵权责任的，应当提供证据证明已经取得权利人的许可，或者具有本法规定的不经权利人许可而可以使用的情形。

第六十条　著作权纠纷可以调解，也可以根据当事人达成的书面仲裁协议或者著作权合同中的仲裁条款，向仲裁机构申请仲裁。

当事人没有书面仲裁协议，也没有在著作权合同中订立仲裁条款的，可以直接向人民法院起诉。

第六十一条　当事人因不履行合同义务或者履行合同义务不符合约定而承担民事责任，以及当事人行使诉讼权利、申请保全等，适用有关法律的规定。

第六章　附　　则

第六十二条　本法所称的著作权即版权。

第六十三条　本法第二条所称的出版，指作品的复制、发行。

第六十四条　计算机软件、信息网络传播权的保护办法由国务院另行规定。

第六十五条　摄影作品，其发表权、本法第十条第一款第五项至第十七项规定的权利的保护期在2021年6月1日前已经届满，但依据本法第二十三条第一款的规定仍在保护期内的，不再保护。

第六十六条　本法规定的著作权人和出版者、表演者、录音录像制作者、广播电台、电视台的权利，在本法施行之日尚未超过本法规定的保护期的，依照本法予以保护。

本法施行前发生的侵权或者违约行为，依照侵权或者违约行为发生时的有关规定处理。

第六十七条　本法自1991年6月1日起施行。

참고문헌

□ 참고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중국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률 제정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15 호, 2019.11
-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 (http://www.npc.gov.cn/zgrdw/npc/xinwen/2019-03/15/content_2083532.htm)
- KIEP, 중국의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 주요 내용과 평가, World Economy Focus, 2019.4
-세계법제정보센터,'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1=1&searchPageRowCnt=10&A=A&AST_SEQ=1086&searchType=all&searchNtnl=CN&searchLgslCode=&CTS_SEQ=48112
(검색일, 2021.11.14)
-《外商投资法》：中外合资企业的挑战与机遇, 搜狐, 2019.4.10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国经济, 2019.5.23
http://www.chinajingji.co.kr/2019/05/23/%EC%A4%91%ED%99%94%EC%9D%B8%EB%AF%BC%EA%B3%B5%ED%99%94%EA%B5%AD-%ED%9A%8C%EC%82%AC%EB%B2%95-2/
(검색일, 2021.11.14)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法律, 2014.2.19., 修正]
-국제환경규제종합정보망,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selected_key=02565 검색일 2021.11.24
- CSF 중국전문가포럼, 中 화장품 감독관리 新규정 출범, 주요 내용 분석, 2020.7.9
- 조선일보, "30 년만에 화장품法 손보는 중국", 2021.7.14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mfds.go.kr/brd/m_583/view.do?seq=43240 검색일, 2021.11.21)
-人民网 (http://finance.people.com.cn/n1/2021/0315/c1004-32052030.html,검색일 2021.11.21)
-법률신문,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11.5 (검색일: 2021.11.14)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4096
-정태인외 2 인,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동향",정보보호학회지 제 31 권 제 1 호, 2021.2
- 허욱외 2 인,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SHIN&KIM, 2021.11.1

- 세계법제정보센터, <네트워크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1=1&AST_SEQ=53&CTS_SEQ=41114 (검색일:2021.11.15)
- 한국인터넷진흥원,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동향", 2017.2
- 신재하 외 1 인,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에 관한 연구", 중국법연구 제 37 집, 2019.2.28
-中国人大网,关于《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草案）》的说明,2021.6.11
-이상우, "중국 데이터안전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데이터안전보호를 위한 중점 제도를 중심으로",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vol.17, pp451-502, 2021
- SHIN & KIM "중국 데이터보안법 제정과 시사점", 2021.727
-법률신문, 중국 데이터 안전법 시행, 2021.9.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8447, 검색일 2021.11.20）
- 법률신문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8721,검색일 2021.11.20)
- 김아린, "중국, 12 년만에 <특허법> 전면개정", KDI 2021 년 4 월호,2021.4
-법률신문, "중국 저작권법 3 차 개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0.11.18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6658
-중화인민공화국인민정부,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的决定,
http://www.gov.cn/xinwen/2020-11/11/content_5560583.htm
-구효영, 중국 저작권법 3 차개정 주요 내용 분석, 법제논단, 2021.2.23
- 中伦资讯，《外商投资法》审议通过！中外合资经营企业法人治理结构亟待变革，2019.3.15，
http://www.zhonglun.com/Content/2019/03-15/1253237122.html
- 国家药品监督管理局，"国家药监局关于贯彻实施《化妆品监督管理条例》有关事项的公告（2020 年 第 144 号）"
https://www.nmpa.gov.cn/zhuanti/hzhpjdgl/hzhptlzyxx/20201228172643166.html
（검색일 2021.12.1）
- 搜狐网，一文读懂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的主要变化，2021.4.23
- 律道，《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要点解读， 2021.3.21
- 新浪网，个人信息保护法今起正式实施，法大专家为您解读， 2021.11.1
-中国人大网，网络安全法解读:开启我国信息网络立法进程，
http://www.npc.gov.cn/zgrdw/npc/lfzt/rlyw/node_27975.htm 검색일 2021.12.15
-网易， 《数据安全法》施行后：企业数据合规不容忽视的五大方面， 2021.11.10
-网易，《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修改通过！， 2020.10.19
-知产力，著作权法的修改权如何理解与适用?，2020.8.30 （끝）



K&C Consulting Group Ltd. 'Business Innovation Navigator'
B Block Room 502, Hongqiao International Business Plaza,
No.2679 Hechuan Rd, Minhang District, Shanghai, 201103 China
Tel +21-54730598, 54731128, 54731018 / Mobile 15216600591
E-mail kncrc@qq.com / URL : www.knc-group.com
노의철 수석연구원 책임 작성